

재정법제 자료 07-05

# 재정 관련 법령집

- 독일 · 미국 · 일본 -

2007. 1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재정법제 자료 07-05

# 재정 관련 법령집

- 독일 · 미국 · 일본 -

재정법제연구팀

2007. 10.

# 목 차

## 【독 일】

- ◎ 독일연방공화국 통일조약 ..... 7
- ◎ 독일연방헌법 ..... 15
- ◎ 연방과 州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예산원칙법) .... 27
-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경제안정성장촉진법) ..... 55
- ◎ 독일연방예산법(Bundeshaushaltsordnung- BHO) ..... 69

## 【미 국】

- ◎ 1921년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 ..... 121
- ◎ 미국연방법전 제31편 자금과 재정  
정부기업(GOVERNMENT CORPORATIONS)  
정부기업통제법(Government Corporations Control Act) ..... 155
- ◎ 미국연방법전 제31편 자금과 재정  
예산과정(THE BUDGET PROGRESS)  
제13장 세출예산(APPROPRIATION) ..... 165

◎ 미국연방법전 제31편 자금과 재정	
제 2 장 예산과정(THE BUDGET PROGRESS)	
제11절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	173

◎ 미국연방법전 제 2 편 의회	
제20장 예산적자를 제거하기 위한 긴급권한(EMERGENCY POWERS TO ELIMINATE BUDGET DEFICITS)	
제 1 절 최대적자액을 초과하는 적자의 제거 .....	199

**【일 본】**

◎ 재 정 법 .....	271
◎ 지방재정법 .....	291
◎ 재정융자자금법 .....	329
◎ 국채에 관한 법률 .....	335
◎ 중앙성청등개혁관계법시행법 초(抄) .....	339
◎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349
◎ 지방교부세법 .....	373
◎ 일본의 재정관련 법령	
公庫의 豫算 및 決算에 關한 法律 .....	427
地方公營企業法 중 예산회계관련 규정 .....	437
◎ 회계검사원법 .....	449
◎ 회 계 법 .....	465

장  
의

## 독일연방공화국 통일조약

1990년 8월 31일. (BGBl. II S. 889; GBl. I S. 1629)

(발췌)

### 제 7 조 【재정헌법】

(1) 독일재정헌법은 이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연방 및 제3조에 규정된 지역의 주, 지방자치단체(Gemeindeverbände)에 대한 조세수입의 배분에 대해서는 기본법 제106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1994년 12월 31일까지 제3항 제4문 및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1996년 12월 31일까지 기본법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수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배당분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소득세액을 근거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의 비율로 각 주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다.
3. 1994년 12월 31일까지 기본법 제106조 제7항의 규정과는 달리, 공동 조세(Gemeinschaftssteuer) 총수입 중 주배당액과 주 조세총수입 중 연간 최소 20%, 그리고 제5항 제1호에 따른 독일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의 재원으로부터의 주배당액 중 연간 최소 40%가 지방자치단체(Gemeindeverbände)에 교부된다.

(3) 기본법 제107조를 제3조에서 언급한 지역에 적용하되,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래 독일연방공화국 소속 주들과 제3조에서 언급한 지역의 주들 사이에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 재정균형(Länderfinanzausgleich- 기본법 제 107조 제2항) 의무는 실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Umsatzsteuer)에 대한 독일 모든 주의 배당은 동독의 주와 서독의 주로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 지며, 평균적으로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및 튀링엔 각 주들의 인구 1인당 평균 부가가치세의 연간 배당액은,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브레멘, 헤센, 함부르크,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르란트 및 쉘레스비히-홀슈타인 각 주들의 인구 1인당 평균 부가가치세에 대비하여,

1991년도에는 55%,

1992년도에는 60%,

1993년도에는 65%,

1994년도에는 71%

에 도달하도록 한다. 베를린 주에 대한 배당액은 인구수를 산정기초로 하여 미리 계산된다. 이 항의 규정은 1993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검토된다.

(4) 제3조에 규정된 지역은 관련시행규정을 포함하여 기본법 제91a조, 제91b조, 제104조 제3항 및 제4항이 적용되어지며, 통일조약이 정하는 조건을 근거로 한다.

(5) 독일 통일 이후 “독일통일기금”의 연간집행액은,

1.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및 튀링엔과 베를린 각 주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85%를 보조하며, 서베를린의 주민을 제외한 주민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2. 독일통일기금 중 15%는 위 주들이 중요한 공공임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6)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연방과 각 주는 제3조에 언급한 지역의 적절한 재정조정을 위한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에 관하여 함께 검토한다.

### 제21조 【행정재산】

(1) 독일민주주의 공화국(DDR)이 직접 규정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자산(행정재산)은 1989년 10월 1일 현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각 주, 지방자치단체(Gemeindeverbände) 및 그 밖의 공행정주체가 행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연방재산이 된다. 과거 국가보안부(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des Amtes für Nationale Sicherheit)의 업무수행에 사용된 행정재산은 언급된 시점 이후에 이 자산이 이미 새로운 사회적, 공공적 용도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연방 신탁공사에 귀속된다.

(2) 제1항에 의해서 연방에 귀속되지 않는 행정재산은 (구동독의) 편입이 발효됨과 동시에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행정주체에 귀속된다.

(3) 중앙정부, 각 주 혹은 지방자치단체(Gemeindeverbände)가 무상으로 사용한 다른 공법상 법인 소유의 재산은 해당 법인 혹은 그 법적 승계자에 보상 없이 반환된다. 구 제국재산은 연방재산에 귀속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혹은 연방법에 따라서 행정재산이 연방재산이 되면 그 재산은 제3조에 규정된 지역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재산가치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제22조 【재정재산】

(1) 부동산 및 농업, 임야재산을 포함하여 특정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공공재산(재정재산)은 통일과 동시에 연방 신탁공사의 자산으로 귀속된다.

연방 신탁공사에 귀속되지 않는 사회보장의 자산과 신탁공사법 제1조 제1항 제2문 및 제3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시, 군 등에 귀속된 재산은 제외된다. 구 국가보안부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용된 재정재산은, 1989년 10월 1일 이후 이미 새로운 사회적, 공공적 용도로 양도된 경우라 할지라도 연방 신탁공사에 귀속된다. 연방법에 의해서 연방과 제1조에 규정된 주들이 전체자산의가치의 절반씩을 가지도록 배분한다. 각 주의 배당분의 분할에는 지방자치단체(Gemeindevverbände)들이 적절한 비율로 참여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연방에 귀속되는 재산은 제3조에 규정된 지역의 공공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주에 분배된 자산가치를 해당 각 주에 배분함에 있어서는, 통일시점을 기준으로 각 주의 인구비례에 상응하게 배분된다. 서부 베를린은 인구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때 제21조 제3항이 적용된다.

(2) 연방재무부장관이 연방재산관리국에 자산의 관리를 명한 경우를 제외한, 법적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 재정재산은 기존의 관할관청에 의해서 관리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지역관청(Gebietskörperschaften)들은 지역 사이에 법적 내지 사실적 문제가 명확하지 않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을 시에 토지등기부, 토지대장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항은 주택관련 공공기업에 귀속되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주거사용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공공재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재산은 통일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동시에 채무를 인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 주택소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민영화(Privatisierung)가 신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기관의 공공주택소유에 관하여는 제21조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제23조 【채무에 관한 규정】

(1) 편입이 발효됨과 함께 현재까지 누적된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의 총채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연방특별자산(Sondervermögen)이 인수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다. 특별자산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차입권을 부여받는다.

1. 특별자산의 채무변제
2. 변제기일에 도달된 이자 및 차입비용의 충당
3. 시장육성 차원에 의한 특별자산채무매입

(2) 특별자산은 연방재무부장관이 관리한다. 특별자산은 연방재무부장관의 명의로 소송외적 행위 및 소송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특별재산의 일반적인 재판관할은 연방정부 소재지이다. 연방은 특별자산의 채무를 보증한다.

(3) 편입 발효시점으로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방과 신탁공사는 특별자산이 야기한 이자의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이자의 지불은 특별자산이 제1항에 제시된 이자를 지불한 다음달 1일에 이루어진다.

(4) 1994년 1월 1일자로 연방과 제1조에 규정된 주 및 신탁공사는 1990년 5월 18일자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 공화국 간의 통화, 경제 및 사회복지통합에 관한 조약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3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산에 누적된 전체 채무를 인수한다. 채무의 배분에 관한 개별적인 내용은 1990년 5월 18일 조약을 집행하기 위한 법 제34조(BGBl. 1990 II S. 518)의 규정에 따라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 된다. 제1조에 규정된 각 주에 의해서 인수되는 채무의 각 주별 할당액은 통일시점을 기준으로 서베를린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한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5) 특별재산은 1993년 말로 해산된다.

(6) 통일과 동시에 독일연방공화국은 통일 시점까지 국가예산의 부담으로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이 행한 각종 담보, 보증, 채무이행약속을 인수한다.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들과 베를린은 지금까지 기본법이 미치지 못하던 지역을 위해서 독일연방공화국이 인수한 담보 및 보증과 채무이행약속의 50%에 대해 재보증을 제공한다. 손실총액은 편입의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서베를린 주민 수를 제외한 각 주의 주민 수 비례에 따라 나눈다.

(7) 베를린국립은행에 대한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의 지분은 제1조에 규정된 각 주에 양도될 수 있다. 제1문 및 제3문에 따라 양도될 때까지 베를린국립은행에 대한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의 지분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는 연방에 귀속된다. 조약 당사자는 독점금지법상의 규정에 따른 심사와 관계없이 베를린국립은행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공법상 금융기관 혹은 그 밖의 법적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양도되지 않은 베를린국립은행의 재산 혹은 채무는 청산된다. 베를린국립은행에 대한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의 보증에서 발생하는 채무는 연방이 인수한다. 이 규정은 제1문에 따른 지분양도 및 제3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양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문은 베를린국립은행의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채무에도 적용된다. 연방의 보증책임에서 발생하는 실제 청구권이 행사되면 이 부담은 독일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예산의 전체 부채에 계상되고 편입의 발효와 동시에 제1항에 규정된 행위능력 없는 특별자산에 의해서 인수된다.

#### **제24조 【외국과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청구권 및 채무의 청산】**

(1) 1990년 7월 1일까지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의 대외무역 및 외환독점, 그리고 그 밖의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과 독일연방

공화국에 대해서 발생한 채무로서 편입의 발효 시점에 존재하는 청구권과 채무의 청산은 연방재무부장관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편입의 발효 시점 이후 이루어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채무 전환협정에는 제1문에 열거된 청구권이 포함된다. 관련 청구권이 청산되면 이는 연방재무부장관이 신탁관리하거나 연방으로 양도된다.

(2)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특별자산은 1993년 11월 30일까지 청산이 위임된 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관리비용, 이자수입과 지출의 차액, 그리고 그 밖에 청산기관의 재산으로 변제될 수 없는 청산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양도한다. 1993년 11월 30일 이후에는 연방과 연방 신탁공사가 제1문에 열거된 비용 혹은 손실을 반씩 부담한다. 상세히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3) 독일민주주의 공화국 혹은 그 기관이 동구권상호경제협력위원회(COMECON)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권 및 채무에 대해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이 별도로 규율할 수 있다. 이 별도규정은 1990년 6월 30일 이후 발생한 청구권 및 채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 독일연방헌법

제정일자 : 1949년 5월 23일

2006년 7월 27일 헌법을 변경하는 법률(연방법률공보 I,  
2034면 이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변경됨

(추록)

## X. 재정제도

### 제104a조 【지출분담 ; 재정지원】

- (1) 州와 연방은, 본 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업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지출을 분리하여 부담한다.
- (2) 州가 연방의 위임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출은 연방이 부담한다.
- (3) 금전급부를 허용하고, 州에 의해서 시행되는 연방법률은 금전급부의 전부 혹은 일부를 연방이 부담한다고 정할 수 있다. 연방이 지출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지출을 부담한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연방의 위임아래에서 시행된다.
- (4) 州의 제3자에 대한 금전급부, 금전가치가 있는 물건의 급부 혹은 거기에 비교할만한 서비스의 제공의무를 발생시키고, 고유한 업무로써 혹은 제3항의 제2문에 따라서 연방의 위임아래에서 州에 의해서 시행되는 연방법률은,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출을 州가 부담하게 되는 때,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독 일

(5) 연방과 州는 각각의 행정관청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지출비용을 부담하고, 상호에 대한 관계에서 일정한 규정에 따른 행정행위를 할 책임이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6) 연방과 州는 국내의 권한분담과 업무분담에 따라서 독일의 초국가적인 혹은 국제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국가를 초월하는 유럽연합의 재정수정(변경)이 있는 경우 연방과 州는 15 대 85의 비율로 부담한다. 이 경우 전체 州는 일반적인 분배규정에 상응하게 총부담액의 100분의 35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부담을 초과한 수개의 州들이, 수령한 재원의 한도에 상응하게, 전체부담액의 100분의 50을 몫에 따라서 부담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 제104b조

(1) 본 법이 연방에 입법권한을 부여하는 한, 연방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연합)의 투자를 위한 아래의 각호를 위해서 필수적인 재정보조금을 州에 지급할 수 있다.

1. 전체경제적인 균형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2. 영방영역내에서 상이한 경제력의 조절을 위하여
3.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하여

(2) 상세한 것, 특히 장려될 수 있는 투자의 종류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혹은 연방예산법을 근거로 한 행정합의에 의해서 규정된다. 재원은 기한부로 보장될 수 있고, 그 사용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재정보조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연도의 총액으로 형성될 수 있다.

(3) 연방의회,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상원은 조치의 시행과 이룩한 성과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5조 【조세입법권】

- (1) 연방은 관세와 재정독점에 관하여 배타적인 입법권을 가진다.
- (2) 그 밖의 조세수입(稅收)의 전부 혹은 일부가 연방에게 속하거나 혹은 본법 제72조 제2항의 전제조건이 주어진 때, 연방은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 경합적인 입법권을 가진다.
- (2a) 연방법에 규정된 조세와 같은 종류가 아닌 한, 州는 지역의 소비세와 사치세에 관한 입법권을 가진다. 州는 토지취득세에 있어서 과세율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3) 조세수입이 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연합)에게 전부 혹은 일부가 귀속되는 조세와 관련된 연방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제106조 【조세원천과 조세계약】

- (1) 재정독점으로 인한 수익과 아래의 조세수입은 연방에 귀속된다.
  1. 관세
  2. 제2항에 따라서 州에, 제3항에 따라서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혹은 제6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않는 소비세
  3. 수화물세
  4. 자본거래세, 보험세 그리고 유통어음에 부과되는 세(어음세)
  5. 1회적인 재산적 공과금 및 부담조절의 실행을 위하여 부과된 공과금
  6. 수입세와 법인세를 위한 추가공과금
  7. 유럽공동체에서 과하는 공과금
- (2) 아래의 조세수입(稅收)은 州에 속한다.
  1. 재산세
  2. 상속세
  3. 자동차세

4. 제1항에 따라서 연방에 속하지 않거나 혹은 제3항에 따라서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교통세

5. 맥주세

6. 카지노에 대한 공과금

(3) 제5항에 의하지 않는 소득세수입 그리고 제5a항에 의하지 않는 판매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한, 소득세·법인세·판매세 수입은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귀속한다(공동세). 소득세와 법인세의 수입에 관하여는 연방과 州가 각각 반분한다. 판매세에 관한 연방과 州의 몫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확정된다. 이 몫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에 기반을 둘 수 있다.

1. 현행 수입의 범주 내에서 연방과 州는 각각 그들의 불가피한 지출과 관련하여 보전청구권을 가진다. 이때 지출의 범위는 수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한 가운데 확정될 수 있다.

2. 연방과 州의 보전필요성은 공정한 조절을 목표로 하고, 납세 의무자의 과중한 부담을 회피하고, 연방영역 내에서 생활환경의 균형이 보장되도록 상호 조절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아이들을 고려하기 위해 1996년 1월 1일부터 州에게 발생하는 최소조세수입은 부가적으로 판매세에 대한 주와 연방의 몫을 확정하는 때 고려된다. 상세한 것은 제3항에 따라서 연방법률로 정한다.

(4) 연방과 州의 수입과 지출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리 전개되는 때에는, 판매세에 대한 연방과 州의 몫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3항의 제5문에 따라서 판매세 몫을 확정할 때 부가적으로 고려되는 최소조세수입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방법률에 의해서 부가적인 지출이 州에게 부과되거나 州의 수입이 삭감된다면, 더 이상의 부담(추가부담)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한 연방법률에 의해서, 또한 추가부담이 단기간에 제한된 때에는 연방의 재정할당을 통해서 조

절될 수 있다. 이러한 재정할당의 책정과 그 분배를 위한 원칙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소득세납입을 근거로 하여 州에게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될 수 있는 소득세수입에 대한 몫을 가진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몫을 위하여 징수율을 확정한다고 정할 수 있다.

(5a) 지방자치단체는 1998년 1월 1일부터 판매세수입에 대한 몫을 가진다. 몫은 지역과 경제에 관련된 기준을 근거로 하여 州에게서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된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6) 영업세와 토지세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지방의 소비세와 사치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州의 입법에 따라서 지방자치연합에 귀속된다. 법률의 범주내에서 영업세와 토지세의 징수율을 정할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할 수 있다. 어떤 州에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때에는, 토지세수입과 영업세수입 및 지방의 소비세수입과 사치세수입은 州에 귀속한다. 연방과 州는 할당액을 통하여 영업세수입에 대한 몫을 가질 수 있다. 할당액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州입법에 따라서 토지세와 영업세 및 판매세수입과 소득세수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몫은 할당액의 책정근거가 될 수 있다.

(7) 공동조세의 총수입에 대한 州의 몫으로부터 州의 입법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는 백분율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연합에게 돌아간다. 그 밖에 州의 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연합)에 귀속되는지 그리고 (귀속된다면) 얼마만큼 귀속되는지를 州입법이 정한다.

(8) 연방이 개별 州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연합)의 직접적인 추가지출이나 최저수입(특별부담)을 야기하는 특별한 시설을 개별적인

州 혹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연합)에 설치하도록 한다면, 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연합)가 특별부담을 하리라고 기대되지 않는 때 그리고 기대되지 않는 한, 연방은 필수적인 조절을 보장한다. 조절 시에 제3자의 보상급부와 동 州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연합)에게 시설의 결과로서 발생한 재정적 이익이 고려된다.

(9)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연합)의 수입과 지출은 또한 본조의 의미에서 州의 수입과 지출로 간주된다.

### 제106a조 【대중교통을 위한 보상금액】

1996년 1월 1일부터 연방조세수입으로부터의 일정액이 대중교통을 위해서 州에 귀속된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1문에 따른 일정액은 제107조 제2항에 따른 재정능력을 측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 제107조 【재정보상과 보조금할당】

(1) 조세가 州영역내의 재정관청에 의해 징수되는 한(지역적 수입), 州의 세수입과 소득세·법인세 수입에 대한 州의 몫은 개별 州에 귀속한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위하여 지역의 조세수입의 구분 및 분할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조항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규정될 수 있다. 법률은 또한 다른 지역의 다른 조세수입의 구분과 분할에 관한 조항을 둘 수 있다. 판매세 수입에 관한 州의 몫은 주민수에 비례하여 각 州에 귀속된다. 최대한 이러한 州의 몫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州의 몫의 일부분과 관련하여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州의 조세수입과 소득세 및 법인세로부터의 수입이 주민 1인당 다른 州의 평균이하인 州에 대한 추가몫을 규정할 수 있다. 토지취득세의 경우 조세능력이 고려될 수 있다.

(2) 州의 상이한 재정능력이 적절하게 조절된다는 것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연합)의 재정능

력과 재정수요가 고려될 수 있다. 조절권한이 있는 州의 조절청구권과 조절의무가 있는 州의 조절채무를 위한 전제조건 및 조절금부의 한도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연방은 급부능력이 약한 州에 대하여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보충적으로 충당시켜주기 위한 교부금(추가보조금할당)을 연방의 재원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 제108조 【재정관리】

(1) 관세, 재정전속, 수입판매세를 포함하는 연방법률상으로 규정된 소비세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범주내에서 과하는 공과금은 연방재정관청이 관리한다. 연방재정관청의 조직에 대해서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중급관청이 설치되는 한, 그 관청의 장은 州정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임명된다.

(2) 기타의 조세는 州재정관청이 관리한다. 州재정관청의 조직과 직원의 통합적인 직업교육(練修)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다. 중급관청이 설치된다면, 그 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3)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에 귀속하는 조세를 州재정관청이 관리한다면, 州재정관청은 연방의 위임하에서 관리한다. 본 법 제85조 제3항과 제4항은, 연방재정부장관이 연방정부를 대신한다는 전제하에 적용된다.

(4) 조세법의 집행이 현저하게 개선되거나 완화되는 때 그리고 개선되거나 완화되는 한, 조세행정에 있어서 연방재정관청과 州재정관청의 협력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에 대한 州재정관청의 관리와 다른 조세에 대한 연방재정관청의 관리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연합)에게만 귀속되는 조세와 관련하여 州재정관청의 권한에 속하

독 일

는 관리권(행정권)은 州에 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연합)에게 이양될 수 있다.

(5) 연방재정관청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는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州재정관청에 의해 그리고 제4항 제2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연합)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절차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6) 재정관할은 연방법률이 획일적 규정한다.

(7) 조세행정이 州재정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연합)의 의무에 속하는 한,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관리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 **제109조 【연방과 州의 예산운용】**

(1) 연방과 州는 각자의 예산운용에 있어 자주적이고 상호 독립적이다.

(2) 연방과 州는 그 예산운용에 있어 전체경제적인 균형의 필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3) 예산권, 경기에 상응하는 예산운용 그리고 다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을 위해 연방과 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다.

(4) 전체경제의 균형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아래에 관한 규정이 공포될 수 있다.

1. 영역단체와 목적단체에 의한 신용대부의 최고액, 조건 및 기한의 연속
2. 독일연방은행에 무이자예금을 예치해야 하는 연방과 州의 의무(경기조절적립금)

법령을 공포할 권한은 오직 연방정부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 법령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연방의회가 그것을 요구하는 한, 법령은 폐지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5) 예산규칙의 준수를 위한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104조에 근거를 둔 유럽공동체의 법적행위로 인한 독일연방의 의무는 연방과 州에 의해서 공동으로 이행될 수 있다. 유럽공동체의 제재조치는 연방과 州가 65대 35의 비율로 부담한다. 모든 주는 연대하여 각 州에 해당하는 부담액의 100분의 35를 주민수에 상응하게 부담한다. 모든 州에 해당하는 부담액의 100분의 65를 각 州가 유발분담금에 상응하게 부담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 제110조 【연방의 예산안】

(1) 연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다. 연방기업체와 특별재산에 있어서는 단지 수입금 혹은 교부금만이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로 계정의 대차를 일치시킬 수 있다.

(2) 예산안은 하나 혹은 수개의 회계연도로, 연도에 따라 분리하여, 첫 번째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예산법에 의해서 확정된다. 예산안의 모든 편(編)과 관련하여 그것이 상이한 기한으로, 회계연도에 따라서 분리하여 적용된다고 정할 수 있다.

(3) 제2항의 제1문에 의한 법안제출 또는 예산법과 예산안의 변경을 위한 안(案)은 연방상원에 이송됨과 동시에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연방상원은 6주내에, 변경안의 경우에는 3주내에, 안(案)에 대한 견해(입장)를 표명할 권한이 있다.

(4) 연방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예산법이 염두에 둔 시기(時期)와 관련된 규정들만이 예산법에 포함될 수 있다. 차기 예산법의 공포를 통하여 혹은 제115조에 따른 수권이 있는 경우 추후의 어느 시점에 비로소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예산법은 정할 수 있다.

### 제111조 【예산승인전의 지출】

(1) 회계연도의 종료시까지 차기연도를 위한 예산안이 법률에 의해서 확정되지 아니하면, 연방정부는 그 법률의 발효시까지 다음 각항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a) 현존하는 시설을 법적으로 유지하고, 결의된 조치를 법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 b) 법적으로 발생한 연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 c) 前연도의 예산안에 의해 이미 액수가 승인되었던 한, 건축물·조달 및 기타의 급부를 계속하거나 혹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원조를 계속 보장하기 위하여

(2) 특별법에 근거한 조세·공과금 및 그 밖의 재원으로 인한 수입 혹은 기업체적립금이 제1항의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 연방정부는 경제정책실행의 지속에 필요한 재원을 前연도 예산안의 최종액수의 4분의 1의 한도까지 신용대출(차입)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 제112조 【예산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

예산초과지출과 예산외 지출은 연방재정부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연방재정부장관의 동의는 오직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수요(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 제113조 【지출증가, 수입감소】

(1) 연방정부로부터 제안된 豫算案上의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지출을 포함하거나 혹은 장차 새로운 지출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법률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수입감소를 포함하거나 장차 수입감소를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법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그러한 법률의 의결을 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정부는 6주내에 연방의회에 연방정부의 입장(견해)을 전달하여야 한다.

(2) 연방의회가 동 법률을 의결한 후 4주내에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재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제78조에 따라 법률이 성립되면 연방정부는 6주내에 한해서 동의를 할 수 있고, 연방정부가 사전에 제1항의 제3문과 제4문 혹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개시했었을 때에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기간의 경과된 후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114조 【결산, 연방회계감사원】**

(1) 연방재정부장관은 연방정부의 면책을 위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 또는 차기 회계연도 기간의 자산과 부채에 관하여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2) 구성원이 司法적으로 독립된 연방회계감사원은 회계 또는 예산 집행과 경제정책수행의 경제성과 적정성을 검토한다. 연방회계감사원은 매년 연방정부를 제외하고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 직접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그 밖에 연방회계감사원의 권한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 **제115조 【차입】**

(1) 장래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을 초래할 수 있는 차입 및 보증, 보장 혹은 기타 하자담보의 인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한도가 정해지거나 혹은 특정될 수 있는 수권을 필요로 한다. 차입(신용대출)으로 인한 수입은 예산안에 계상된 투자를 위한 지출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전체경제의 균형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만 예외가 허용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2) 연방의 특별재산에 대해 제1항의 예외가 연방법률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다.

## 연방과 州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예산원칙법)

제정일자 : 1969년 8월 19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 부록1 제4장 사안영역 B  
(연방법률공보 II, 889면 이하)에 의하여,

1990년 7월 18일의 법률(연방법률공보 I, 1146면 이하)에 의하여,

1993년 11월 26일의 법률(연방법률공보 I, 1928면 이하)에 의하여,

1994년 7월 29일의 법(연방법률공보 I, 1928면 이하), 1977년 12월  
22일의 법(연방법률공보 I, 3251면 이하), 1998년 8월 26일 공적  
위임을 위한 법적 근거의 변경을 위한 법률(연방법률공보 I,  
2512면 이하) 제3조 그리고 2001년 10월 29일 7번째  
권능적응법령(연방법률공보 I, 2785면 이하)에 의하여,

2001년 12월 20일 연대조약지속법(연방법률공보 I,  
3955면 이하)에 의하여,

2003년 11월 25일의 법령(연방법률공보 I, 2304면 이하)  
제87조와 2003년 12월 23일의 법(연방법률공보 I,  
2848면 이하) 제63조에 의하여,

2006년 10월 31일의 법령(연방법률공보 I, 2407면 이하)  
제123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변경됨.

### 제 1 편 연방과 州의 입법규정

#### 제 1 조 【입법위임】

본 편의 규정은 연방과 州의 입법을 위한 원칙을 포함한다. 연방과 州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예산법을 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 제 1 장 예산안을 위한 일반규정

### 제 2 조 【예산안의 의미】

예산안은 승인기간동안 연방 혹은 州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수요의 확정과 충족에 이용된다. 예산안은 예산집행과 경제정책의 수행을 위한 근거이다. 예산안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전체경제적인 균형(형평)의 필요성이 고려될 수 있다.

### 제 3 조 【예산안의 효력】

- (1) 예산안은 지출을 행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행정권능을 부여한다.
- (2) 예산안은 청구권이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도, 상쇄(相殺)하는 것도 아니다.

### 제 4 조 【연산연도】

회계연도(예산연도)는 달력상의 1년(歷年)이다.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처)는 세부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 5 조 【지출의 불가피성과 채무부담수권】

예산안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경우 지출 그리고 연방과 州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래연도에 지출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수권(채무부담권능)만이 고려될 수 있다.

### 제 6 조 【경제성, 절약, 비용산정과 급부산정】

- (1) 예산안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경우 경제성의 원칙과 절약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2)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적절한 경제성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 (3) 이 경우 적합한 영역내에서 비용의 산정과 급부의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6a조 【급부와 관련된 예산수립과 예산관리】**

(1) 수입, 지출 그리고 (수권에 의한)채무부담행위는 단위조직의 분산된 책임구조하에서 사전에 산출(계상)될 수 있다. 이 때 재정상의 책임은 예산수권을 근거로 하여 분야별 전문책임을 지는 조직단위에 전가된다. 전제조건은 특히, 각각 처분 가능한 지출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적합한 정보도구와 조절도구이다. 이행하여야 할 급부의 종류와 범위는 법률 혹은 예산안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다.

(2) 제1항의 사례인 경우 법률 혹은 예산안은 각각의 단위조직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수입은 특정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2. 지출은 전용가능하다.
3. 지출과 채무부담행위는 각각 상호간 혹은 일방적으로 보전능력이 있다.

**제 7 조 【전체보전의 원칙】**

모든 수입은 모든 지출을 위한 보전수단으로써 사용된다. 법률을 통하여 예정되거나 혹은 예산안에서 허용하는 한, 수입은 특정된 목적을 위한 사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제 2 장 예산안의 수립**

**제 8 조 【완전성, 완결성, 만기의 원칙】**

(1) 매 예산연도를 위하여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다.

(2) 예산안은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

1. 예산연도에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수입
2. 예산연도에 급부하여야 할 모든 지출
3. 예측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채무부담행위

**제 9 조 【예산안의 유효기간】**

- (1) 예산안은, 연도에 따라서 구분하여, 2년을 예산연도로 하여 수립될 수 있다.
- (2) 예산안은 행정예산과 재정예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양자는, 연도에 따라서 구분하여, 각각 2년을 예산연도로 하여 수립될 수 있다. 兩 예산에 대한 승인기간은 중첩되는 예산연도 내에서 시작될 수 있다.

**제10조 【세부예산안, 전체예산안, 그룹예산안】**

- (1) 예산안은 세부예산안과 전체예산안으로 구성된다.
- (2) 세부예산안은 개별적인 행정분야의 수입·지출·채무부담행위 혹은 특정그룹의 수입·지출·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다. 세부예산안은 장(章)과 항(項)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항(項)의 구분은 종류에 따른 예산안의 수입과 지출의 그룹화에 관한 관리규정(그룹안)을 모범으로 한다.
- (3) 그룹안은 최소한 분리하여 나타낼 수 있다.
  - 1. 수입의 경우 : 세금, 행정수입, 재산양도로 인한 수입, 대부금의 회수, 할당금과 보조금, 차입으로 인한 수입[건전한 재정유지를 위한 차입(지불능력의 강화를 위한 차입)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적립금의 전용, 주화(화폐)발행수입
  - 2. 지출의 경우 : 인건비, 중성적인 관리비지출, 이가지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할당금, 기업에 대한 보조금, 변제지출, 채무보조금, 예비비로의 전용, 투자를 위한 지출. 투자를 위한 지출은 다음을 위한 지출을 말한다.
    - a) 군(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사업
    - b) 중성적인 관리비용으로써 계상되지 않았거나 혹은 軍用목적 이 아닌 동산의 취득

- c) 부동산의 취득
  - d) 지분과 기타 자본재산의 취득, 기업에 대한 지분권과 채권의 취득,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기업의 자본증가로 인한 지분취득
  - e) 대부금
  - f) 담보책임으로 인한 청구권행사
  - g) a에서 f까지에 언급된 목적에 쓰일 지출을 재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할당금과 보조금
- (4) 전체예산안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세부예산안의 수입, 지출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종합(예산개요)
  - 2. 재정잔액의 산정(재정개요). 재정잔액은 한편에는 수입을(이 때 대출시장으로부터 받은 차입, 예비비의 전용, (출납담당부서의) 회계상의 이윤 및 화폐발행으로 인한 수입은 제외한다), 다른 한편에는 지출을[이 때 대출시장에 대한 부채상환으로 인한 지출, 예비비의 조달을 위해 쓰인 지출, (출납담당부서의) 회계상의 손실금액을 보전(補填)하기 위한 지출은 제외한다] 대조한 결과로써 나타난다.
  - 3. 차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과 상환지출에 대한 설명(차입조달안)

### 제11조 【예산안과 기능안에 대한 개요】

- (1) 예산안은 아래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 1. 수입과 지출의 표시
    - a) 특정된 종류에 따른 그룹화(그룹화개요)
    - b) 특정된 업무영역에 따른 편성(기능개요)
    - c) a와 c에 따른 통합(예산성질)
  - 2. 예산을 수입과 지출로 연결시키는 항목에 관한 개요

3. 공무원의 정원 및 고용직과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개요  
첨부서류는 예산초안에 첨부될 수 있다.
- (2) 기능개요는 업무영역에 따른 예산안상의 수입과 지출의 편성에 관한 관리규정을 따른다(기능별 예산안).

**제12조 【총액계상, 세부계상, 자체관리재원, 상세설명, 정원】**

- (1) 수입과 지출은 완전한 총액으로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다. 상기 제1문은 대출시장에서 차입으로 인한 수입의 산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상환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률이 허용할 수 있다. 게다가 특히 취득업무 혹은 양도업무시 부대비용과 부수이익에 대해서 상기 제1문의 예외가 예산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 상기 제3문의 사례의 경우 사전에 산출된 금액의 산정은 예산안에 첨부서류로써 첨부될 수 있거나 혹은 상세설명에 포함될 수 있다.
- (2) 채무부담행위는 각 지출의 경우로 분리하여 사전에 산출될 수 있다.
- (3) 자체관리를 통하여 절약적인 관리가 촉진된다면, 지출은 자체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산출될 수 있다. 자체관리재원은 현행 예산연도를 넘어서 주어진다. 관리시에 발생하는 수입은 자체관리재원으로 귀속된다. 예산결산시 참여한 관청에 대한 재원의 할당은 오직 지출로써만 증명될 수 있다.
- (4) 수입은 발생근거에 따라서, 지출과 채무부담행위는 목적에 따라서 분리하여 사전에 산출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설명될 수 있다. 상세설명은 예외적으로 구속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5)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출과 채무부담행위는 사전에 상이한 비목(費目)으로 산출되어서는 안된다.
- (6) 정원(定員)은 호봉과 관직명에 따라서 예산안에 표시될 수 있다.

### 제13조 【차입권능】

(1) 예산법은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가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한도에 까지 차입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1. 지출의 전보를 위하여

2. 규정에 따른 회계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회계강화차입). 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차입권능은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회계관리의 강화를 위한 차입은 차입의 대상이 된 예산연도가 경과한 후 늦어도 6개월 내에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권(授權)은 차기 예산연도 말까지 적용되고, 이어지는 次期の 두 예산연도를 위한 예산법이 적시에 공포되지 않는 때에는 그 예산법률의 공포시까지이다.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권(授權)은 현행 예산연도 말까지 적용되고, 차기 예산연도를 위한 예산법이 적시에 공포되지 않는 때에는 그 예산법률의 공포시까지이다.

(3) 차입으로 인한 수입에 의해서 보전되어야 하는 지출이 예산안에 표시될 수 있다고 법률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 【기부금】

연방과 州의 관리밖에 있는 관청에 대한 급부를 위한 지출과 채무 부담행위(기부금)는 특정한 목적의 이행을 위하여, 연방 혹은 州가 그와 같은 관청을 통한 (반대급부의)이행과 관련하여 현저한 이익(그러한 이익이 없이는 기부금이 지급될 수 없거나 혹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도 지급될 수 없다)을 가지는 때에만, 고려될 수 있다.

### 제15조 【전용가능성, 보전능력】

(1) 투자를 위한 지출 그리고 목적과 관련된 수입으로 인한 지출은 전용될 수 있다. 기타의 지출은, 그 지출이 경제적·절약적인 사용을 장려하는 때, 예산안에서 전용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2) 관리에 적합한 관련 혹은 객관적인 관계가 존재하거나 혹은 경제적·절약적인 사용이 장려된 때, 예산안에서 지출과 채무부담행위는 각각 쌍방적인 혹은 일방적인 보전능력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사용목적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이 사전에 산출된 지출과 채무부담행위는 보전능력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건설(축)사업, 대규모 조달, 대규모개발의도】**

(1) 건설사업을 위한 지출과 채무부담행위는, 시행의 종류·건설사업비용·토지취득비용·시설비용 또는 예정된 재정조달과 일정을 개관할 수 있는 案 그리고 비용조사·상세설명이 존재하는 때, 비로소 사전에 산출될 수 있다. 서류에는 조치의 완료 후에 발생하는 매년의 예산부담견적서가 첨부될 수 있다.

(2) 대규모의 조달과 대규모의 개발의도를 위한 지출과 채무부담행위는, 비용과 비용상환에 대한 계획과 견적이 있는 때, 비로소 사전에 산출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제2문이 준용된다.

(3) 단지 개별적인 경우 서류가 제때에 작성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추후의 견적으로 인하여 연방과 州에 불이익을 주는 때에만, 제1항과 제2항의 예외가 비로소 허용된다.

**제17조 【결손금액】**

결손금액은 늦어도 차기의 두 번째 예산연도를 위하여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다. 결손금은, 차입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차입으로 인한 수입을 통해서만 보전될 수 있다.

**제18조 【기업(체), 특별재산】**

(1) 연방 혹은 州의 기업(체)은, 예산안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재정관리가 목적에 걸맞지 않는 때, 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영계획 혹은 경영계획에 관한 개요는 첨부서류로써 예산안에 첨부되거나

나 혹은 상세설명에 포함될 수 있다. 예산안에는 오직 수입 혹은 지출만이 사전에 산출될 수 있다. 정원(定員)은 호봉과 관직명에 따라서 예산안에 표시될 수 있다.

(2) 특별재산의 경우 오직 수입 혹은 지출만이 예산안에 사전에 산출될 수 있다. 특별재산의 수입, 지출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그 개요를 첨부서면으로써 예산안에 첨부하거나 혹은 상세설명에 포함할 수 있다.

### 제 3 장 예산안의 집행

#### 제19조 【수입조사, 지출관리】

- (1) 수입은 적시에 그리고 완전하게 조사될 수 있다.
- (2) 경제적·절약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한, 지출은 허용된다. 지출재원은 그것이 개별적인 목적조항에 해당하는 모든 지출을 충족하도록 관리될 수 있다. 本項의 제1문과 제2문은 채무부담행위의 활용에도 준용된다.

#### 제20조 【전체적인 증명, 개별적인 증명】

- (1) 제12조 제1항의 제2문과 제3문으로부터 달리 주어지지 않는 한, 모든 수입과 지출은 그것을 위해서 예정된 비목(費目)에 총액으로 기입될 수 있다.
- (2)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상이한 비목(費目)으로 부터의 지출은 예산안이 그것을 허용하는 때에만 급부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것이 채무부담행위의 활용에도 준용된다.

#### 제21조 【차입으로 인한 지출】

- (1) 차입으로 인한 수입을 통하여 보전되어야 하는 지출이 예산안에 표시되어 있는 한, 이러한 지급과 그와 같은 지급의무부담은 재정담

당권한이 있는 부서(처)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한다. 차입재원이 적시에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는, 지출의 중단 혹은 연기에 의해서 연방 혹은 州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혹은 그 부서(처)가 수입의 전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채무부담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간주하는 때에만, 동의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대신에, 법률에 의하여 투자를 위한 지급과 그와 같은 지급의무부담은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 제22조 【수권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1) 연방 혹은 州가 장래의 예산연도에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는, 예산안이 거기에 대한 수권을 부여하는 때에만, 허용된다.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재정담당 권한이 있는 부서(처)가 동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동 부서(처)의 동의를 요한다. 예산안에 수개의 예산연도의 부담으로 한 예측가능한 채무가 연도별 액수에 따라 표시되고 예산안을 집행하는 경우 이러한 표시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고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3)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원칙적 혹은 현저한 재정적인 의미로 부터 협상의 시작과 경과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4)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전제조건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업무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전용될 수 있는 지출의 활용을 전제로 하여 차기 예산연도의 지출을 초래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채무부담행위를 위한 수권을 필요치 않는다. 상세한 것은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가 정한다.

(5) 본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헌법 제59조 제2항 제1문의 의미에서의 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다.

### 제23조 【담보책임, 차입확약】

(1) 보증, 보장 혹은 장래의 예산연도의 지출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의 하자담보의 인수는 법률에 의하여 한도가 정해진 수권을 필요로 한다.

(2) 차입확약 또는 보증, 보장 혹은 기타의 하자담보책임은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는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는 본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한을 포기할 수 있다.

(3) 본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담당관청은, 담당관청 혹은 담당관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한, 관련자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의 동의를 통하여 감사권의 유보가 배제될 수 있다.

### 제24조 【재정적인 의미가 있는 기타의 조치】

행정규정의 공포, 임금협약체결, 급여규정을 벗어나는 혹은 급여규정외적인 급부의 보장 및 행정급부를 위한 보상의 확정 혹은 변경은, 이러한 규정들이 현행 예산연도 혹은 장래 예산연도의 수입감소 혹은 추가지출을 초래할 수 있는 때,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의 동의를 요한다. 근본적으로 혹은 현저하게 재정적인 의미가 있는 기타의 조치에는, 그 조치가 현행 예산연도의 수입감소 혹은 장래 예산연도의 추가적인 지출을 초래할 수 있는 때, 본조 제1문이 적용될 수 있다.

**제25조 【예산경제적인 장애】**

수입과 지출의 전개과정이 그것을 요구하는 때,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는 의무를 부담할 것인지 혹은 지출을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동 부서(처)의 동의에 의존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기부금, 재원 혹은 재산객체의 관리】**

(1) 기부금은 오직 제14조의 전제조건하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이 경우 목적에 부합하는 기부금의 사용을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 혹은 그 부서(처)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감사권을 확정할 수 있다.

(2) 연방 혹은 州의 재원 혹은 재산객체가 연방 혹은 州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관청이 관리하고 있다면, 제1항이 준용될 수 있다.

**제27조 【본질적, 시간적인 구속】**

(1) 지출과 채무부담행위는 예산안에 표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 그리고 그 목적이 지속되는 한 - 오직 예산연도 말까지만 지급되거나 활용될 수 있다. 활용하지 않은 채무부담행위는 예산법률의 공포시까지 차기예산연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법률에 의해서 허용할 수 있다.

(2) 전용가능한 지출의 경우 예산연도를 넘어서 각각의 사용목적에 위한 승인 후에 이어지는 차기의 두 예산연도 말까지 보유하게 되는 지출잔액이 있을 수 있다.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물의 주요 부분이 사용된 예산연도가 승인예산연도를 대신한다.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는 개별적인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3) 이미 승인을 얻은 조치를 위한 지출이 다음 예산연도에 지급될 수 있는 한,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는 특히 이유가 있는 개별적인 사례의 경우 지출의 전용가능성을 허용할 수 있다.

**제28조 【인사관리원칙】**

- (1) 관직은 채울 수 있는 정원(定員)으로의 지정과 더불어 부여되어야 한다.
- (2) 법률 혹은 임금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인건비는, 특히 그것을 위하여 지출재원이 주어질 때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 【건설사업, 대규모 조달, 대규모 개발의도】**

- (1) 건설사업은 오직 상세한 설계도가 존재하고 비용산정이 이루어진 때에만 시작되어야 한다. 단, 소규모의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계도면과 비용산정에는, 변경이 현저하지 않는 한, 제16조에 표시된 서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외는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2) 대규모조달과 대규모 개발의도는 충분한 서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제2문이 준용된다.

**제30조 【公募】**

업무의 성질 혹은 특별한 사정이 예외를 정당화하지 않는 한, 공모는 조달과 급부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우선한다.

**제31조 【계약의 변경, 청구권의 변경】**

- (1) 계약은, 오직 특별한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사례에서만, 州와 연방의 불이익으로 하여 폐기되거나 혹은 변경될 수 있다. 오직 연방과 州에 있어서 목적에 걸맞고 경제적인 때에만 화해(和解)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 (2) 청구권은 오직,
  - 1. 즉각적인 징수(회수)가 청구권 상대방의 현저한 어려움(난관)과 결부되고 지불유예를 통하여 청구권이 피해를 받지 않는 때에만 지불유예를 허용할 수 있다.

2. 징수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 때 혹은 징수비용이 청구권의 한도를 넘어서는 때 징수한도를 경감할 수 있다.
  3. 징수가 개별적인 사안의 사정에 따라 청구권 상대방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의미하는 때, 소멸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급부액의 상환 혹은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4) 법령에 있는 다른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제 4 장 지불(변제), 부기와 회계검사

### 제32조 【지급(계산)】

계산은 금융기관과 출납담당부서(처)로부터만 지급되거나 혹은 급부된다. 지급명령은 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 혹은 그 부서(처)로부터 수권을 받은 관청에 의하여 서면으로 혹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달되어야 한다.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 제33조 【부기, 증명 의무】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안 혹은 그밖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 부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는 부담한 채무, 금전채권 그리고 기타의 관리과정에 대해서 부기를 명할 수 있다. 모든 기장(記帳)은 증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제33a조 【상법의 원칙에 따른 부기와 결산】

부기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 가운데 부가적으로 일정한 규정에 따른 부기원칙과 결산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제33조 내지 제41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제34조 【예산연도에 따른 기장(記帳)】

- (1) 지급 또는 부담한 채무, 금전채권 그리고 제33조 제2항에 따라서 부기의무가 있는 기타의 관리과정은 예산연도별로 분리하여 부기될 수 있다.
- (2)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예외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지급은, 지급되거나 혹은 급부된 당해 예산연도에 부기할 수 있다.
- (3) 지난 예산연도에 만기가 도래하였지만 그 후에 수령하거나 혹은 급부된 지급은, 장부가 폐쇄되지 않는 한, 지난 예산연도의 장부에 기장될 수 있다.
- (4) 새로운 예산연도를 위하여 아래의 것들이 기장될 수 있다.
  1. 새로운 예산연도에 만기가 도래하지만 그 이전에 얻은 수입
  2. 새로운 예산연도에 만기가 도래하지만 기한에 상응하는 도래로 인하여 수령자에게 그 전에 계산하여야 하는 지출
  3. 우선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봉급, 사회보장비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 또는 새로운 예산연도 초월(初月)의 연금
- (5) 제3항과 제4항 제1호는 세금, 요금, 기타 공과금, 벌금, 과태료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6) 제2항 내지 제4항의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 제35조 【자산부기, 통합부기】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부기할 수 있거나 혹은 어떤 다른 증명을 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부기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부기와 연결(결합)될 수 있다.

### 제36조 【상업장부의 폐쇄】

- (1) 장부는 매년 폐쇄될 수 있다.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가 폐쇄의 시점을 정한다.

독 일

(2) 장부의 폐쇄 후에는 수입과 지출은 더 이상 지난 시점과 관련하여 부기될 수 없다.

### 제37조 【결산】

(1) 담당권한이 있는 관청은 매 예산연도에 대해서 폐쇄된 장부를 근거로 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는 감사관청과의 합의에 의하여 어떤 다른 시점을 정하여 결산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2) 폐쇄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는 매 예산연도에 대해서 예산결산서를 작성한다.

### 제38조 【당좌계정의 구성】

(1) 당좌계정에는 수입과 지출이 제33조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서 수입잔액과 지출잔액(예산잔액) 그리고 초과지출<sup>1)</sup>을 고려한 가운데 예산안의 계정과 대조될 수 있다.

(2) 상세 비목(費目)에 있어서 그리고 최종금액의 경우와 상응하게 아래의 사항이 특별히 언급될 수 있다.

#### 1. 수입의 경우

- a) 현재의 수입
- b) 전용될 수 있는 수입잔액
- c) 현재수입과 전용될 수 있는 수입잔액의 합계
- d) 재산부기가 존재하는 한, 자산형성에 작용하는 현재수입액
- e) 어림잡은 수입
- f) 전연도로부터 이월된 수입잔액
- g) 사전에 산출된 수입과 전연도로부터 이월된 수입의 합계
- h) g로부터의 합계액에 대비한 c로부터의 합계의 최대 혹은 최소금액

---

1) 전용가능한 지출을 초과한 지출.

2. 지출의 경우

- a) 현재의 지출
- b) 전용될 수 있는 지출잔액 혹은 초과지출
- c) 현재 지출총액과 전용될 수 있는 지출 혹은 초과지출의 총액
- d) 자산부기가 존재하는 한, 자산형성에 작용하는 현재 지출의 액수
- e) 어림잡은 지출
- f) 전연도에서 이월된 지출잔액 혹은 초과지출
- g) 사전에 산출된 지출총액과 이월된 지출잔액 혹은 초과지출의 총액
- h) g로부터의 합계액에 대비한 c로부터의 합계의 최대 혹은 최소총액
- i) 계획을 벗어나는 혹은 계획에 없는 지출액 또는 초과지출액

(3) 제33조 제2항에 따라서 그것이 부기의무가 있는 한, 각각의 지출과 총액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와 금전채권의 한도가 언급될 수 있다.

**제39조 【출납담당부서의 결산】**

출납담당부서의 결산에 있어서 아래의 것을 증명할 수 있다.

- 1. a) 현재수입의 총액
- b) 현재지출의 총액
- c) a와 b로부터의 차액(출납담당부서의 연말결산결과)
- d) 아직 처리되지 않은 출납담당부서에 의한 지난연도의 연말결산결과
- e) c와 d로부터 회계상의 전체결과
- 2. a) 대출시장에서의 차입으로 인한 수입의 예외가 있을 수 있는 현재수입, 적립금으로부터의 차용, (출납담당부서의) 회계상의 이윤으로 인한 수입 그리고 주화발행수입 등의 총액

독 일

- b) 대출시장에서 채무변제를 위한 지출의 예외가 있을 수 있는 현재지출, 적립금의 유입 그리고 출납담당부서의 결손금의 보전을 위한 지출 등의 총액
- c) a 와 b로부터의 잔액

#### **제40조 【예산결산】**

예산결산에서 아래의 것이 증명될 수 있다.

1. a) 제39조 제1호 c에 따른 출납담당부서에 의한 연말결산결과  
b) 제39조 제1호 e에 따른 출납담당부서에 의한 전체 결과
2. a) 전연도로부터 이월된 수입잔액과 지출잔액  
b) 다음 예산연도로 이월될 수 있는 수입잔액과 지출잔액  
c) a와 c의 차액  
d) 회계에 의한 제1호 a와 제2호 c로부터의 연말결산결과  
e) 회계에 의한 제1호 b와 제2호 b로부터의 전체결과
3. 제33조 제2항에 따라서 부기의무가 있는 한, 부담한 채무와 금전채권의 한도

#### **제41조 【결산보고】**

출납담당기관에 의한 결산과 예산결산은 보고서형태로 상세하게 설명될 수 있다.

### 제 5 장 감사와 면책

#### **제42조 【감사관청의 권한】**

- (1) 특별재산을 포함한 연방과 州의 전체 예산집행과 경제정책의 수행은 감사관청에 의한 감사를 받는다.
- (2) 감사관청은 특히 아래의 것을 감사한다.
  1. 수입, 지출 그리고 지급채무

2.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
  3. 자산과 부채
- (3) 감사관청은 재량에 따라서 감사를 제한할 수 있고, 회계(계산)는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 (4) 기밀을 요하는 사안의 감사실행은 법적으로 특별하게 규정될 수 있다.
- (5) 감사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감사관청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 제43조 【非행정관청의 감사】

(1) 州법에 상관없이 감사관청은 아래의 경우에 연방과 州의 비행정관청을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1. 非행정관청이 예산안의 일부분을 집행하거나 혹은 연방 혹은 州에게서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은 때
2. 연방 혹은 州의 재원과 재산객체를 관리하거나 혹은
3. 연방 혹은 州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한 때

이러한 관청이 제3자에게 재원을 전달하였다면, 감사관청은 또한 이 제3자를 감사할 수 있다.

(2) 감사는 목적에 걸맞는 관리와 사용 그리고 경제적인 관리와 사용에 까지 미친다. 기부금의 경우, 감사관청이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때, 감사는 또한 수령자의 기타 예산집행과 경제정책수행에까지 미친다.

(3) 연방 혹은 州가 예산재원으로 차입을 보장하는 때 또는 보증, 보장 혹은 기타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수하는 때 감사관청은 관여자들에 대해서 연방 혹은 州의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였는지 혹은 연방 혹은 州의 활용(이용)을 위한 전제조건이 주어졌었는지를 감사할 수 있다.

**제44조 【私企業의 경우 국가에 의한 활동감사】**

- (1) 감사관청은 상업적인 원칙을 준수한 가운데 연방과 州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법상의 조직형식을 갖춘 기업의 연방과 州차원의 활동을 감사한다.
- (2) 州와 연방이 조합원으로써 참여한 영리를 추구하는 협동조합과 경제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제1항은 준용된다.

**제45조 【공동감사】**

수개의 감사관청이 감사를 담당할 권한이 있다면, 감사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특정된 감사관청에 의한 감사가 헌법상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수개의 감사관청은 합의를 통하여 감사업무를 상호 양도할 수 있다.

**제46조 【감사결과】**

- (1) 감사관청은, 정부의 면책을 위해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한, 입법기관을 위하여 감사결과를 매년 보고서형태로 정리한다.
- (2) 보고서는 또한 장래의 혹은 과거의 예산연도에 관한 확인을 포함할 수 있다.
- (3)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 감사관청은 정부와 입법기관에게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다.

**제47조 【감사관청의 면책과 회계】**

- (1) 입법기관은 감사관청의 회계와 매년의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정부의 면책을 의결한다.
- (2) 감사관청의 회계는 또한 면책을 할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 제 6 장 연방과 州의 특별자산과 연방 혹은 州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公法人

### 제48조 【원칙】

- (1) 본 법은,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연방 혹은 州 그리고 연방과 州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公法人에게 준용될 수 있다.
- (2) 제42조 내지 제46조는 州와 연방의 지분에 의존하지 않고 公法人의 조직형식을 갖춘 기업에게도 준용될 수 있다. 법률로 제42조 내지 제46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법에 의하여 허용된 예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3) 제2항의 제1문에서 언급된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과반수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私法人의 조직형식을 취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제 53조와 제54조가 준용된다.

## 제 2 편 획일적,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 제49조 【원칙】

본 편은 연방과 州에 획일적,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 제50조 【재정운용계획시의 절차】

- (1) 州와 연방은 5년의 재정운용계획을 예산관리의 기반으로 한다 (1967년 6월8일의 경제안정성장촉진법 제9조 제1항과 제14조).
- (2) 재정운용계획의 첫 번째 계획연도는 현행예산연도이다.
- (3) 재정운용계획(경제안정성장촉진법 제9조 제2항의 제2문)은 다음 예산연도를 위해 늦어도 예산법초안과 관련하여 입법기관에 제출될 수 있다. 입법기관은 선택가능한 대차계정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 재정운용계획서에 예정된 투자목표가 자세히 설명될 수 있고, 그 이유가 언급될 수 있다.
- (5) 재정운용계획을 근거로 하여 수정보완된 다년간의 투자프로그램이 입법기관에 제출될 수 있다(경제안정성장촉진법 제10조).
- (6) 경제안정성장촉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재정운용계획은 세 번째 재정운용계획연도의 투자계획을 위하여 충분한 범위내에서 단기간에 그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다.
- (7) 정부는 적시에, 개별적인 재정운용계획연도내에서 예측할 수 있는 전체경제적인 급부능력을 고려한 가운데 규정된 예산전개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정운용계획에 따른 필수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1조 【재정운용계획심의회】**

(1) 연방정부에 재정운용계획심의회가 구성된다. 재정운용계획심의회  
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

- 1. 연방재정부장관, 연방경제부장관 그리고 연방노동부장관
- 2. 재정을 담당하는 권한이 있는 州장관
-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 최상급단체의 제안으로 연방상원에 의해서 정해지는 지방자치연합을 대표하는 4인의 대표자

독일연방은행은 재정운용계획심의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2) 재정운용계획심의회는 연방, 州,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 협회회를 위하여 제안 혹은 권고한다. 이 경우 재정운용계획의 획일적인 체계가 수립되거나 또는 국민경제적인 필수성에 상응하는 공적인 업무에 대한 중점(中點)이 구명되어야 한다. 경제안정성장촉진법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경기심의회가 공공기관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3) 제52조에 언급된 시설의 예상되는 수입은 그것이 연방, 州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연합의 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심의와 권고시 고려되어야 한다.
- (4) 재정운용계획심의회는 장은 연방재정부장관이 맡는다.
- (5) 재정운용계획심의회가 심의규정을 마련한다.

**제51a조 【유럽경제연합과 통화연합의 범주내에서 예산규칙의 준수】**

- (1) 연방과 州는 유럽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조약 제104조의 개별 조항의 준수와 유럽의 성장·안정협약의 준수를 위한 책임을 다하며, 조절된 예산이라는 목표를 향해 총순수채무의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
- (2) 재정운용계획심의회는 국민경제적 재정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한 가운데 예산규칙, 특히 모범법률 제4조 제3항의 의미에서 공동의 지출 지침에 대해 권고한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재정운용계획심의회는 예산전개의,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연합을 포함하여 연방과 州의 재정잔고와 지출을 유럽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조약 제104조에 있는 규정의 유럽성장협약·안정협약조항과의 합치가가능성을 논의한다.
- (3) 영역단체의 예산원칙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충분히 상응하지 못한다면, 재정심의위원회는 그 이유를 논의하고 예산원칙의 재수립을 권고한다.

**제52조 【정보의무】**

- (1) 연방과 州는 각각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를 통하여 재정운용계획심의회에 연방과 州가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제공은 또한 각각 담당영역 내에서 작성된 재정운용계획서의 제출을 포함한다.
- (2) 또한 州는 州의 지방자치단체와 기타의 지방단체를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 특별재산<sup>2)</sup> 그리고 州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연합의 기

---

2) 특별재산의 개념은 자본투자회사(투자회사)로부터 관리되는 특정된 투자펀드재산

업 또는 (재정운용계획과 재정위원회의 심의에의 수용이 필수적인) 州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公法人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州가 절차를 정한다.

(3) 특별재산 그리고 연방기업 또는 연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公法人은 필수적인 정보를 연방재정부에 제공한다. 연방재정부는 그 정보를 재정운용계획심의회에 제공한다.

(4) 법정의료보험자, 사회보장보험자, 손해보험자, 농부의 노후보험을 포함한 노령보험자와 법정연금보험자, 그 단체 또는 기타 사회보험 영역의 단체와 노무를 위한 연방중개인은 연방심의회에 있어 필요한 각각 건강·사회보장 혹은 경제와 노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관한 정보를 연방재정부에게 제공한다. 州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는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州의 최고행정관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 제53조 【私法人에 대한 권리】

(1) 사법상의 조직형식을 취한 기업의 지분의 절반이상이 영역단체에 속하거나 혹은 영역단체에 최소한 지분의 4분의 1이 속하고, 지분의 절반이상이 다른 영역단체와 공동으로 영역단체에 속한다면, 영역단체는,

1. 기업이 결산감사의 범주에서 또한 업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공인회계사에게 업무를 맡겼다면 기업은 또한 보고서상으로 아래의 사항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 a) 자산상태와 수익상태의 전개 또는 회사의 변제능력과 수익성
  - b) 손실을 초래하는 업무와 (이 업무 그리고 재산상태와 수익 상태에 대한 원인이 의미가 있는 때) 손실과 그 원인
  - c) 이익산정과 손실산정으로 인하여 증명된 연말결손금액의 원인

---

을 말한다. 특별재산은 투자법(Investmentgesetz, <http://bundesrecht.juris.de/invg/index.html>)에 따르면 자본투자회사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한다.

3. 기업이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그리고 (기업이 콘제른결산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때) 공인회계사의 콘제른감사보고서를 취득한 후 지체없이 영역단체에게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적용을 위하여 영역단체의 특별재산에 속하는 지분도 영역단체의 지분으로 간주한다. 나아가 제1항으로부터의 권리가 부여되는 회사에 속하는 지분도 영역단체의 지분으로 간주한다.

#### **제54조 【회계감사관청의 보고수령권】**

- (1) 제53조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 정관(회사설립계약)에 자본의 4분의3의 다수로, 영역단체의 회계감사관청은 제44조에 따라서 감사시에 나타나는 문제의 해명을 위하여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업의 사업장, 상업장부 그리고 서신(문건)을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 (2) 본 법의 발효 전에 발생한 직접적인 정보수집에 대한 회계감사관청의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55조 【公法人에 대한 감사】**

- (1) 영역단체, 지방단체, 영역단체의 병합 혹은 지방자치연합 혹은 1919년 8월 11일의 독일헌법 제137조에 따른 공법상의 종교단체가 아닌 公法人이 연방 혹은 州로부터 이유와 한도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연방 혹은 州의 보장의무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면, 연방 혹은 州의 감사관청은 법인의 예산집행과 경제정책의 수행을 감사한다. 정관에 감사관청의 동의에 의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제48조에 의해서 발생한 다른 감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 기업이 회계검사로부터 면제되지 않는 한(제48조 제2항의 제2문과 제3문) 제53조는 연방과 州의 지분의 규모와 상관없이 公法人의 조직형식을 갖춘 기업에게 준용된다.

**제56조 【회계감사관청의 권리, 쌍방의 보고】**

- (1) 영역단체의 최상급 관청이 어떤 다른 영역단체의 재원의 관리에 해당하거나 혹은 다른 영역단체의 수입 혹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규정을 공포하거나 일반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면, 다른 영역단체의 회계감사관청은 즉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2) 영역단체의 예산안의 일부를 집행하는 영역단체이외의 관청이 영역단체에 적용되는 예산규정을 위한 관리규정 혹은 어떤 상응하는 법률의 관리규정을 공포한다면, 영역단체의 회계감사관청은 경청할 수 있다.
- (3) 수개의 감사관청이 감사 혹은 징수를 담당할 권한이 있다면, 수개의 감사관청은 쌍방이 작업계획과 검사결과에 관하여 보고한다.

**제57조 【연방출납담당부서, 州출납담당부서】**

- (1) 州재정관청이 관리하는 세금의 징수가 아닌 한, 연방을 위한 계산의 수령과 급부를 하는 경우 출납담당부서의 업무는 연방의 관리내·외부에 있는 모든 관청을 위해 연방출납담당부서(연방국고취급점)<sup>3)</sup>에 의해 이루어진다.
- (2) 달리 정함이 없는 한, 州를 위한 계산의 수령과 급부를 하는 경우 출납담당부서의 업무는 州의 관리내·외부에 있는 모든 관청을 위해 州의 출납담당부서(州국고취급점)에 의해 이루어진다.
- (3) 본 법률의 발효 후 8년 동안 연방을 위한 계산의 수령과 급부를 하는 경우 출납담당부서의 업무는 연방출납담당부서가 아닌 다른 출납담당부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

3)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금출납업무는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은행을 국고취급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독일연방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점에서 연방국고취급점, 각 주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점에서 州국고취급점으로 번역한다.

제57a조 삭제

제57b조 삭제

제57c조 삭제

### 제 3 편 경과규정과 종결규정

#### 제58조 【공법상의 고용관계 혹은 공무원관계, 권한규정】

- (1) 공무원(관리)에 대한 본 법의 규정은 다른 공법상의 고용관계 혹은 공무원관계에 준용될 수 있다.
- (2) 재정담당권한이 있는 부서(처)에 속하는 권한은 어떤 다른 관청에 양도될 수 있다. 자유한자(Hanja)都市인 함부르크市에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권한을 상원(원로원)이 가진다. 예산안의 확정 또는 (그 효과가 예산연도를 넘어서거나 혹은 일정한 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에 속하지 않는)담보급부의 인수를 위해서는 시민결의를 필요로 하는 자유한자도시인 함부르크의 헌법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제59조 【베를린 조항】

본 법률은 1952년 1월 4일의 두 번째 경과법률 제13조를 전제로 하여 베를린州에도 또한 적용된다.

#### 제60조 【발효】

본 법은 1970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경제안정성장촉진법)

제정일자 : 1967년 6월 8일

2003년 11월 25일의 법령(연방법률공보 I, 2304면 이하)  
제101조에 의해서,

2006년 10월 30일의 법령(연방법률공보 I, 2407면 이하)  
제135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변경됨.

연방의회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통하여 아래의 법률을 의결하였다.

### 제 1 조 【전체경제적인 균형의 필수성】

연방과 州는 경제정책적, 재정정책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전체경제적인 균형필수성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치는 시장경제적인 질서의 범주 내에서 동시에 가격수준의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절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경우 높은 고용수준과 대외경제적인 균형을 위하여 공헌하도록 취해질 수 있다.

### 제 2 조 【연방정부의 경제보고서】

(1) 연방정부는 매년 1월 연방상원과 연방의회에 경제보고서를 제출한다. 경제보고서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1. 1966년 11월 8일의 법령(연방법률공보 I, 633면 이하)에서 1963년 8월 14일의 전체경제발전의 (분석)평가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공보 I, 685면 이하) 제6조 제1항의 제3문을 근거로 한 전문가위원회의 연도별 평가에 대한 견해
2. 현행 연도에 연방정부로부터 추진된 경제정책적, 재정정책적 목표(연도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연도별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인 회계를 포함하는 국민경제적인 전체회계의 수단과 형식으로 이용된다.

3. 현행 연도를 위해 계획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본 법 제6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 그리고 제15조와 제19조에 따른 조치 및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조치 그리고 법인세법 제19c1)조에 따른 조치는 연방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1조의 목표달성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근거를 연방상원과 연방의회에 동시에 제시하는 때에만 허용된다.

**제 3 조 【일치된 행위】**

(1) 제1조의 목표 가운데 어느 하나가 위태롭게 된 경우, 제1조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상호 조절된 영역단체·노동조합·기업단체의 행위(일치된 행위)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에게 경제발전에 대한 데이터(자료)가 주어진다. 이러한 경제발전에 대한 자료는 특히, 주어진 상황과 관련하여 전체경제적인 연관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다.

(2) 연방경제·기술부는 관련자의 요구로 경제발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 4 조 【국제적인 협력가능성】**

국내경제적인 조치에 의해서 불가능하거나 혹은 오직 제1조에서 언급된 목표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그 방어가 가능한 전체경제적인 불균형이 국제경제(대외경제)로부터 초래된 경우, 연방정부는 모든 국제적인 협력가능성을 이용해야 한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는 국제경제(대외경제)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주어진 경제정책적인 수단을 투입한다.

---

1) 현재 법인세법 제23조 제5항.

### 제 5 조 【지출책정 - 경기조절적립금】

- (1) 장래 회계연도의 부담으로 한 지출의 범위와 지출의 구성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연방예산안에 제1조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책정될 수 있다.
- (2) 국민경제적 급부능력을 넘어서는 수요의 확대가 있는 경우, 독일연방은행에서 채무의 추가변제를 위한 재원 혹은 경기조절적립금으로의 유입을 위한 재원이 개산(概算)되어야 한다.
- (3) 부가적으로 제1조의 목표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약화된 경우 반드시 필요한 보전재원은 먼저 경기조절적립금으로부터 차용하여야 한다.

### 제 6 조 【지출의 제한 - 부가적인 재원 - 부가적인 차입】

- (1) 국민경제적인 급부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의 확대가 있을 경우, 연방예산안을 집행할 때 연방정부는 제1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출재원의 확보, 건설사업의 개시, 장래 회계연도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채무부담행위 등은 연방재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연방재정부에게 권능을 부여할 수 있다. 연방재정부와 경제·기술부는 필수적인 조치를 제안한다. 연방재정부는 그것을 통하여 회계연도의 종료와 더불어 확보된 재원으로 연방은행에 대한 채무를 추가로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경기조절적립금으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제1조의 목표달성을 저해하는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약화된 경우 연방정부는 추가적인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제2문이 적용될 수 있다. 추가재원은, 재정운용계획서(제10조와 연관된 제9조)에 예정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혹은 전체 경제적인 장애요소의 방어를 위해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연합)의 투자(헌법 제104a조 제4항의 제1문)를 위

한 재정보조금으로써 사용되어야 한다. 그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먼저 경기조절적립금에서 차용되어야 한다.

(3) 연방재정부는 제2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예산법률로 부여된 차입권능을 초과하여 50억 도이치마르크의 한도까지, 상황에 따라서는 채권발행을 통하여, 차입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그러한 차입이 나중에 예산법에 표현된 차입권능으로 평가되는 한, 연방재정부는 차입권능을 새로이 요구할 수 있다.

### **제 7 조 【경기조절적립금의 재원】**

(1) 경기조절적립금은 독일연방은행에 적립될 수 있다. 경기조절적립금은 오직 제5조 제3항과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추가지출의 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2) 연방예산안을 집행하는 경우 경기조절적립금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주어진다면 어느 범위로 주어지는지를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항의 제2문이 적용될 수 있다.

### **제 8 조 【연방예산안의 지출을 위한 공비목(空費目)】**

(1) 연방예산안에는 제6조 제2항의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지출을 위하여 목적이 명시되지 않는 공비목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공비목에 따른 지출은 오직 연방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그리고 경기조절적립금 혹은 제6조 제3항에 따른 차입으로 인한 수입으로써 존재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출안은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 동시에 송부될 수 있다. 연방상원은 2주내에 연방의회에 대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의 제출안이 도착한 후 4주 이내에 거부하지 않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나아가 연방예산안에는 경기조절적립금 그리고 제6조 제3항에 따른 차입으로 인한 수입을 위한 공비목을 포함할 수 있다.

### 제 9 조 【재정운용계획】

- (1) 5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은 연방의 재정운용을 기반으로 한다. 재정운용계획에 예상되는 지출의 범위와 지출의 구성 그리고 전체 경제적인 급부능력의 추정적인 전개에 대한 상호관계속에서 보전가능성을, 상황에 따라서는 선택적인 회계를 통하여, 상세하게 나타낼 수 있다.
- (2) 재정운용계획은 재정부로부터 수립될 수 있고, 그 근거(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 제출한다.
- (3) 재정운용계획은 매년 경제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

### 제10조 【다년간의 투자프로그램】

- (1) 연방 각 부서(처)는 재정운용계획을 위한 서류로써 업무영역과 관련된 다년간의 투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타의 수요예측을 통하여 연방재정부가 정한 시점에 서류를 연방재정부에 송부한다. 투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 업무영역은 연방정부가 정한다.
- (2) 투자프로그램은 긴급성과 연도별 구분(章 또는 編)에 따라서 구성하여 다음 연도에 실행될 수 있는 투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 연도별 구분(章 또는 編)은 당해 연도의 몫에 해당하는 일부금액을 통하여 계속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계획을 나타내어야 한다. 제3자의 투자를 위한 연방의 재정보조는 재정보조의 종류를 표시한 상기와 동일한 구성원칙을 적용하는 때 특별히 마련한 부분(章 또는 編)에 규정될 수 있다.
- (3) 투자프로그램은 매년 경제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

### 제11조 【투자위임의 신속한 교부】

제1조의 목표달성을 저해하는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약화된 경우 적합한 투자위임의 입안(立案)은, 투자계획의 실행이 단기간에 시작될 수 있도록, 가속화될 수 있다. 담당권한이 있는 연방 각 부서(처)는 투자위임의 신속한 교부에 필수적인 모든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 【금융지원으로서 연방재원】

(1) 특정된 목적을 위하여 연방의 관리 하에 있지 않는 관청에게 교부된 연방재원, 특히 금융지원은 제2조의 목표에 모순되지 않게 보장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금융지원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연방예산안초안과 더불어 계산상의 개요서를 연방상원과 연방의회에 2년마다 제출한다. 이 개요서는 특별히 다음의 사항에 기여하는 금융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1. 사업장 혹은 산업부문의 유지
2. 사업장 혹은 산업부문의 새로운 조건에의 적응과
3. 특히 새로운 생산방법과 생산시설을 통하여 사업장 혹은 산업부문의 생산성진보의 장려와 성장

(3) 제2항의 상응하게 구성한 가운데 조세혜택(세금우대)의 개요서가 예측한 최저수입과 더불어 첨부된다.

(4) 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개요서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각각의 금융지원과 조세혜택이 어떤 법적근거 혹은 그 밖의 의무에 근거를 두는지 그리고 주어진 법적 상태에 따라 언제 금융지원과 조세혜택이 고려될 수 있는지를 언급한다. 동시에 연방정부는 사전의 종료 혹은 점진적인 채무의 해소를 위한 법적인 전제조건 혹은 기타의 전제조건과 관련된 안(案)을 제안한다. 그것을 위하여 제2항에 묘사된 구성에 상응하게 일정이 수립된다.

### 제13조 【ERF-특별재산, 연방철도, 연방우체국, 사단, 기관, 재단】

- (1) 제1조, 제5조,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ERP-특별재산<sup>2)</sup>에 준용된다.
- (2) 교통·건설·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연방부서(처)는 연방철도청을 위해 연방재정부와 합의한 가운데 제1항에 따른 필수적인 규정을 공포한다.
- (3) 연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단, 공공시설(기관) 그리고 공법상의 재단은 그들에게 부과된 업무의 범주 내에서 제1조의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 제14조 【州의 예산운용】

제5조, 제6조 제1항과 제2항, 제7조, 제9조 내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은 자구에 구애됨이 없이 州의 예산운용에도 적용된다. 권한규정은 州에게 맡겨져 있다.

### 제15조 【경기조절적립금을 위한 재원의 유입】

- (1) 전체경제적인 균형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 규정을 통하여, 연방과 州가 각각의 경기조절적립금을 재원으로 유입해야한다고 정할 수 있다.
- (2) 연방과 州로부터 조달될 수 있는 전체액수(총액)가 법 규정으로 정하여질 수 있다. 전체액수는 제4항에 따라 예산연도에 경기조절적립금으로 유입되어야하는 금액과 상관없이 지난 예산연도에 연방과 州가 얻은 조세수입의 100분의 3을 넘지 않아야 한다.
- (3) 연방과 州가 그 밖의 어떤 재원조달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연방과 州는 지난 예산연도에 연방과 州가 얻은 조세수입에 비례하여, 州재정조절에 따른 조절할당금과 조절금액을 고려한 가운데

---

2) ERP-특별재산 : 유럽의 재건프로그램(European Recovery Program)을 위한 특별재산.

전체액수를 조달해야 한다. 州의 조세수입을 산정하는 경우 베를린 州, 브레멘州, 함부르크州의 지방자치세와 부담조절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급부해야 하는 보조금은 고려되지 않는다. 연방과 개별 州가 재원을 동일 예산연도에 이미 경기조절적립금으로 유입시켰다면, 그 재원은 채무로 산정된다.

(4)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 수권과 법인세법 제19c조<sup>3)</sup>를 근거로 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가 인상되었다면, 연방과 州는 인상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으로부터 각각 수입세와 법인세가 인상된 백분율에 해당하는 총액을 부가적으로 각자의 현재의 경기조절적립금으로 유입해야 한다.

(5) 오직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정부의 법 규정을 통하여 경기조절적립금이 개방되는 한, 제1항에 따라서 혹은 제4항에 의한 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경기조절적립금으로 유입된 금액은 차용이 허용된다. 개방은 오직 제1조의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일반적인 경제 활동이 약화된 때에만 허용된다. 제1항과 제2항은 제3항의 제3문에 표시된 재원에 적용될 수 있다.

#### **제16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연합의 예산운용】**

(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연합은 그 예산운용에 있어서 제1조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2) 州는 적합한 조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연합의 예산운용이 경기정책적인 필수성에 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7조 【연방과 州 사이의 정보제공】**

연방과 州는 경기에 적합한 예산관리의 실행과 재정운용안의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

3) 지금의 법인세법 제23조.

### 제18조 【경기심의회회의 구성】

(1) 연방정부에 공공기관을 위해서 경기심의회가 구성된다. 경기심의회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연방경제·기술장관과 연방재정부장관
2. 각 州의 1인의 대표자
3. 지방의 상급단체의 제안으로 연방상원에 의해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연합의 4인의 대표자

경기심의회회의 의장은 경제·기술부장관이 맡는다.

(2) 경기심의회회는 연방경제·기술부로부터 공포된 직무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심의)한다.

1. 본 법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기정책적인 조치
2. 공공기관 예산의 수요필요성의 전보를 위한 조치

경기심의회회는 특히 제15조, 제19조 그리고 제20조에 따른 조치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경기심의회회는 공공기관의 차입문제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를 둔다. 그 특별 위원회는 재정부장관을 수장으로 한 가운데 재정부장관이 공포할 수 있는 사무규정에 따라서 심의한다.

(4) 연방은행은 경기심의회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19조 【연방정부에 의한 차입의 제한】

전체경제적인 균형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 규정을 통하여, 예산법률 혹은 예산규칙(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차입권한의 범주 내에서 차입의 방법으로 연방, 州,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연합 또는 공적특별재단과 목적단체에 의한 재원조달이 제한된다고 정할 수 있다. 앞의 제1문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연합 혹은 목적단체가 법인격이 없는 영리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해 조달한 차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0조 【제19조에 따른 법 규정의 내용, 기한 그리고 폐지】**

- (1) 제19조에 따른 법 규정은 아래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제19조에 표시된 관청에 의한 차입은 특정될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하여 최대액수가 제한된다.
  2. 상기 제1문에 따라서 확정된 최대액수의 범주 내에서 특정 차입의 종류 혹은 한도, 특히 채권(債券) 혹은 소비대차(대부)는 일정표에 따라서만 그리고 차입조건(제22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수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액수는 개별관청에 있어서 1년에 최소한 법 규정의 공포 전에 지난 5년간의 예산연도의 평균 내에서 차입하였던 전체액수의 100분의 80에 달해야 한다. 회계(출납)강화차입과 기업(체)의 차입, 독일연방은행 혹은 제19조에 언급된 관청이 허락한 차입 또는 제19조 제2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한 차입은 여기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연합 그리고 목적단체의 차입수요편차의 해소를 위하여 최대액수는 100분의 70으로 축소될 수 있다. 그것을 통하여 형성되는 액수는 州에 의하여 특히 긴급한 투자를 이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연합 그리고 목적단체에게 할당될 수 있다.
- (3) 제19조에 언급된 관청의 차입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제3자로부터의 차입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액수를 어디까지 참작할 수 있는지를 제19조에 따른 법 규정에 정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자본조달과제가 제19조에 언급된 관청을 위해서 이용되거나 혹은 그와 같은 관청이 이자할인재원 혹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기부금을 장려하는 한, 제3자로부터의 차입이 고려될 수 있다.
- (4) 제19조에 따른 법 규정은 1년 이상의 기한을 정할 수 없다.

(5) 제19조에 따른 법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연방의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동 법 규정은 연방의회가 공포 후 6주 이내에 폐지를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폐지된다.

#### **제21조 【수혜받지 못한 차입의 처분】**

제19조에 언급된 관청들 중의 어떤 관청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액수의 범주 내에서 그 어떤 관청의 몫에 해당하는 차입을 받지 못한 경우, 제19조에 언급된 다른 관청은 그 어떤 관청의 동의에 의하여, 차입을 이용하는 한, 차입을 신청할 수 있다. 그것을 벗어나 州,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연합 그리고 목적단체는 차입권능을 넘어서는 일부금액을 부가적인 차입수요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연합 혹은 목적단체에 할당된다고 예산규정에 정할 수 있다.

#### **제22조 【차입의 순서와 한도】**

(1) 경기심의회(제18조 제3항)는 자본시장에서의 상황을 고려한가운데 각각 최장 3개월의 일정표를 수립한다. 일정표에 법 규정으로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정된 차입에 대한 차입혜택의 순서와 한도금액이 확정될 수 있다. 차입조건도 확정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서 작성된 일정은 연방재정부에 의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될 수 있거나 혹은 경기위원회의 특별위원회 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통하여 연방재정부에 의해 일정표가 확정될 수 있다.

(3) 자본시장에서의 상태악화가 임박한 경우 연방재정부는 독일연방은행과 협력하여 일정표의 실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표는 2주 내에 경기심의회(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새로운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

(4) 제19조에 언급된 관청들은 또한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 규정의 대상이 아닌 차입의 경우 차입의 시간적 순서와 차입조건 형성에 있어서 자본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3조 【보장(확보)을 위한 州의 조치】**

개별 州는 적합한 조치를 통하여 州, 그 州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연합과 목적단체에 의한 차입의 방법을 통한 재원의 조달이 이 법률을 근거로 하여 규정된 제한의 범주 내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연방, 州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동등순위원칙】**

-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연방, 州,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동순위의 원칙을 유의하여야 한다.
- (2) 동시에 州의 업무와 지방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베를린州, 브레멘州, 함부르크州의 특별한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25조 【州의 최상급관청에 의한 차입수요에 관한 정보】**

담당권한이 있는 州의 최상급관청은 요구가 있는 경우 연방재정부에 州,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연합 그리고 목적단체의 차입수요에 관한 정보, 그들로부터 수혜받은 차입의 종류와 한도 또는 (경제적으로 고유한 차입과 동일시되는) 제3자로부터의 차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적 특별재산은 제1문에 따른 정보를 즉시 제공한다.

**제26조 내지 제31조<sup>4)</sup>**

**제32조 【베를린 조항】**

본 법률은 1952년 1월 4일의 세 번째 경과법률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 따라서 베를린州에도 적용된다. 본 법률을 근거로 하여 공포된 법률은 세 번째 경과법률 제14조에 따라서 베를린州에도 적용된다.

---

4) 다른 법률의 변경 즉, 세무법상의 규정을 증명하는 경제안정성장촉진법 제26조 내지 제31조의 언급은 제외한다.

**제33조 【발효】**

- (1) 본 법률은 제2항을 유보한 가운데 공포된 날에 효력을 발한다.
- (2) 법인세법 제23a조 제1항 2k와 관련하여 제26조 제3호a와 제27조 제2호의 규정은 1969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한다.

# 독일연방예산법(Bundeshaushaltsordnung- BHO)<sup>1)</sup>

## 제 1 장 예산총칙

### 제 1 조 【예산안의 확정】

예산안은 1년 또는 2년을 회계연도의 단위기간으로 하며, 연도별로 분리하여, 제1차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회계법에 따라 확정한다. 총예산은 예산회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 제 2 조 【예산안의 의미】

예산안은 승인기간 동안 연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재정수요를 확인하고 준비하는데 이용된다. 예산안은 재정운영과 경제정책 수행의 근거가 된다. 예산안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는 경제 전반에 걸친 동등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1) 1969년 8월 19일에 제정, 연방법률공보(BGBl) III/ FNA 63-1.; (연방법률공보:BGBl. I 1284쪽), 1971년 12월 23일에 제정된 법을 통한 개정법(연방법률공보 I 2133쪽), 1980년 7월 14일에 제정된 제2차 개정법(연방법률공보 I 955쪽), 1985년 7월 15일에 제정된 연방회계감사원에 관한 법 제21조(연방법률공보 I 1445쪽), 1985년 12월 19일에 제정된 대차대조표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30조(연방법률공보 I 2355쪽), 1986년 6월 27일에 제정된 연방우편행정에 관한 첫 번째 법안 제4조(연방법률공보 I 946쪽), 1986년 8월 6일에 제정된 제3차 개정법 제1조(연방법률공보 I 1275쪽), 1990년 7월 18일에 제정된 제4차 개정법 제1조(연방법률공보 I 1447쪽), 1993년 12월 21일에 제정된 절약-, 국제정리- 와 성장계획에 제정된 변환에 관한 첫 번째 법 제11조(연방법률공보 I 2353쪽), 1994년 5월 26일에 제정된 보호보험 제30조(연방법률공보 I 1014쪽), 1994년 7월 29일에 제정된 농업사회개선법 제28조(연방법률공보 I 2605쪽), 1994년 9월 22일에 제정된 제5차 개정법 제1조(연방법률공보 I 2605쪽), 1995년 12월 15일에 제정된 사회법법전 제6권에 대한 개정법 제2조(연방법률공보 I 1824쪽), 1996년 5월 2일에 제정된 행정절차에 관한 규칙들의 변경에 관한 법 제2조(연방법률공보 I 656쪽), 1997년 12월 22일에 제정된 예산법-계속적 전개에 관한 법 제2조(연방법률공보 I 3251쪽)와 1999년 6월 17일에 제정된 의회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들의 변경에 관한 법 제3조(연방법률공보 I 1334쪽).

### 제 3 조 【예산안의 효과】

- (1) 예산안은 행정기관에 예산을 지출하고 책임을 질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다.
- (2) 예산안으로 인해 청구권 또는 이행의무(Verbindlichkeit)가 발생하거나 폐지되지는 않는다.

### 제 4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역(歷)을 기준으로 하는 연도(Kalenderjahr)이다. 독일 연방재무부는 개별분야에 따라 회계연도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 제 5 조 【행정규칙, 임시예산운영, 최종예산운영과 경제정책의 수행】

이 법률에 관한 일반적 행정규칙과 임시예산운영, 최종예산운영과 경제정책의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들은 연방재무부가 공포한다.

### 제 6 조 【지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 고려의 필요성】

예산안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는 지출과 ‘다음 회계연도에 연방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출의 이행에 관한 책임권한’(국고채무 부담행위)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 7 조 【경제성과 절약성, 비용계산과 성과계산】

- (1) 예산안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는 경제성과 절약성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통하여, 국가의 업무 또는 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제적인 행위(업무의 분화와 민간위임 혹은 민영화 등)를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 (2) 재정적으로 유효한 모든 조치에 대해 적절한 경제성조사(Wirtschaftlichkeitsuntersuchungen)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기 적합한 영역에 참여를 한 민간 참여자들에게는, 그들이 국가의 업무 또는 공적 목

적에 기여하는 경제적인 행위들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성과에 대한 진술절차 - Interessenbekundungsverfahren).

(3) 각각의 영역마다 비용계산과 성과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 8 조 【총액보전의 원칙】

모든 수입은 모든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財源)으로 사용된다. 수입은 또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거나 예산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제한될 수 있다.

### 제 9 조 【예산담당자】

(1) 그 부서의 장이 직접 예산관련 임무를 맡지 않는다면,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는 모든 부서에서 예산담당자(Beauftragte)를 둘 수 있다. 이 예산담당자는 부서장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있게 된다.

(2) 예산담당자는 재정계획안 및 예산안시안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실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밖에도 예산담당자는 재정적으로 중요한 모든 조치에 관한 업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예산담당자는 예산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의 보고】

(1) 연방정부는 최종적으로 기본법 제59조 제2항에 근거한 협약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행령, 행정규칙 초안 등이, 연방, 주 그리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테의 예산안과 재정계획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요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방의 예상 초과지출에 대한 보완책을 어떤 방식으로 찾을 것인지도 표시하여야 한다. 제1문과 제2문은 연방상원(연방참의회) 제출법률안(Vorlage)에도 적용된다.

(2) 연방정부는 예산전개상의 중요한 변경과 그 변경이 재정계획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연방정부는 연방하원의 의원들이 세입의 감소와 세출의 증가에 대한 제안을 목적으로 하여 재정상 영향을 조사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제10a조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

(1) 예산안은 그 사용내역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지출의 경우 연방회계검사원법(Bundesrechnungshofgesetz) 제19조 제1문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연방회계검사원을 통해 회계검사를 실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2) 불가피한 이유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연방하원은 예산위원회(Haushaltausschuss)의 위원들로 이루어진 예산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비밀유지를 요하는 관리계획안들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지출을 예산입법절차에서 예외적으로 승인(Bewilligung) 할 수 있다. 예산심의위원회는 1978년 4월 11일에 제정된 연방의 보고임무에 대한 의회의 통제에 관한 법 제4조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여 선출기간 동안에 선출된다. 연방하원이 별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연방재무부는 보고하여야할 관리계획안들을 예산심의위원회(Gremium)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심의위원회는 적시에 예산위원회에 관리계획안의 최종금액을 보고한다. 예산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의 통제위원장, 통제위원장대행 그리고 수임위원은 예산신임위원회의 회의에 함께 참여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이는 각 부서의 관리계획안과 그 계획안의 실행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의회의 통제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연방회계검사원은 제2항의 경우에 회계검사원법 제19조 제1문의 제1호에 따라 검사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및

예산운영과 경제정책의 수행에 대한 검사결과를 예산심의위원회, 의회의 통제위원회와 최상급 관할 관청과 연방 재무부에 통지한다. 연방상원의장은 원하는 경우 관할 최상급 관청을 통해 통지받을 수 있다. 제97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 2 장 예산안의 수립

### 제11조 【예산완전성, -통일성, -한정성의 원칙】

- (1)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를 단위기간으로 삼아 수립한다.
- (2) 예산안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항목들이 포함된다.
  1. 모든 예상 수입
  2. 모든 예상 지출과
  3.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국고채무 부담행위

### 제12조 【예산안의 유효기간】

- (1) 예산안은 2년을 회계 단위기간으로 하여 연도별로 나누어 편성할 수 있다.
- (2) 예산안은 관리예산과 재정예산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 두 예산은 각기 2년을 회계 단위기간으로 삼아 연도별로 나누어 편성할 수 있다. 이 두 예산안에 대한 승인시기는 서로 연속해 있는 회계연도에 시작되어 질 수 있다.
- (3) 예산안을 관리예산과 재정예산으로 나누는 경우, 관리예산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1. 예상되는 모든 관리소득
  2.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는 관리지출 (인건비와 기타 관리비)
  3. 관리지출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국고채무부담 행위

### 제13조 【개별예산안, 총예산안, 및 예산의 분류】

- (1) 예산안은 개별예산안과 총예산안으로 구성된다.
- (2) 개별예산안에는 개별 행정분야의 소득, 지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나 특정한 분야의 소득, 지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포함된다. 개별예산안은 장(章)과 항(項)의 과목(科目)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항(項)의 구분은 예산안을 그 성질에 따라 소득(세입)과 지출(세출)로 분류하는데 적용되는 행정규칙에 따른다(예산의 분류 - Gruppierungsplan).
- (3) 예산안을 분류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경우들이 설명되어야 한다.
  1. 세입의 경우 : 세금, 관리수입, 자산처분 수입, 대부금의 회수, 배당금과 보조금, 회계관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회계강화대출 - Kassenverstärkungskredite)이 아닌 대출로 생긴 소득, 예비비에서의 차입금, 화폐발행수입
  2. 세출의 경우 : 인건비, 기본적인 행정관리비, 이지지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당금, 기업에 대한 보조금, 상환지출, 채무업무보조금, 예비비로의 이입금, 투자지출. 투자지출이란 다음의 지출에 해당한다.
    - a) 군(軍) 시설과 관계되지 않은 건설사업
    - b) 행정사무관리비용이 아니거나 혹은 군의 조달에 쓰이는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비고정적인 물품구입비
    - c) 고정적인 물품구입비
    - d) 자본참여와 그 밖의 자산의 취득, 기업에의 지분권과 채권의 취득 및 기업의 자본증액을 위한 유가증권의 취득
    - e) 대부금
    - f) 보증행위에서 발생한 비용
    - g) a에서 f까지에 제시된 목적에 쓰일 지출을 재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배당금과 보조금

(4) 총예산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세부예산안의 세입, 세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요약(예산에 대한 개요)
2. 재정잔액에 대한 계산(재정상태에 대한 개요). 재정잔액은 한편에는 수입을 (이 때 예비비로부터의 차입금, 회계상의 이윤에서 생긴 소득, 화폐발행소득과 신용시장으로부터 받은 신용대부로 생긴 수입은 제외한다), 다른 한편에는 지출을 (이 때 신용시장에 대한 부채상환으로 인한 지출, 예비비의 조달을 위해 쓰인 지출, 회계상의 손실금을 보전(補填)하기 위한 지출은 제외한다) 대조한 결과로써 나타난다.
3. 대출에서 생겨난 소득과 상환지출에 대한 설명(신용자금조달안 - Kreditfinanzierungsplan)

#### 제14조 【예산안에 대한 개요, 기능별 예산안】

(1) 예산안은 다음의 구조를 갖는다.

1. 세입과 세출
  - a) 예산의 특성별 구분(예산의 분류에 대한 개요)
  - b) 예산의 특정 업무영역별 구분(기능별 개요)
  - c) a, b등의 알파벳을 이용한 요약(예산개요)
2. 예산을 소득과 지출로 연결시키는 기본 항목에 대한 개요
3. 정규직 공무원의 정원, 계약직 공무원의 정원과 고용직의 정원에 대한 개요

이 자료들을 예산안시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기능적 예산안에 대한 개요는 예산안에서 세입과 세출을 업무영역에 따라 구분하는 관리규정에 따른다(기능적 예산안 - Funktionenplan).

#### 제15조 【총계예산, 독립적 관리재원】

(1) 수입과 지출은 완전한 총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점은 신용시장의 신용대부에서 생겨나는 수입과 이와 관련

독 일

되어 있는 상환지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특히 구매사업이나 양도사업에서 생겨나는 부대비용(Nebenkost)과 부수입금(Nebenerlöse)의 경우는 제1문의 예외로서 예산안에 포함한다. 제3문의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에 대한 계산내역(Berechnung)이 예산안에 자료로서 첨부되거나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2) 예산절감에 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출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산정할 수 있다. 독립적 관리재원은 현행 회계연도를 지나서 사용된다. 이러한 재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시 독립적 관리재원이 된다. 결산을 할 때 관련 부서에 할당된 독립적 관리재원은 지출로 확인된다.

#### **제16조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지출에서 따로 구분되어 산정되어야 한다. 만일 몇 개의 회계연도에 걸쳐 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 연간 총액이 예산안에 명시되어야 한다.

#### **제17조 【개별산정, 해명, 계획수립자】**

(1) 소득은 그 생성의 근거에 따라, 지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그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자세히 해명되어야 한다. 자세한 해명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2) 여러 해에 걸쳐 있는 사업에 쓰일 지출의 경우 최초 산정시에는 예상되는 총비용을, 그 다음의 산정시에는 재정상의 처리과정을 예산안에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용도가 정해진 소득과 그에 속하는 지출은 그 용도를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4) 동일한 목적에 쓰이는 지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예산안의 서로 다른 비목(費目)에 산정하여서는 안된다.

- (5) 계획수립자는 호봉과 직명에 따라 예산안에 기록된다. 계획수립자는 업무에 따라서만 설정될 수 있는데, 그 업무는 공무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 (6)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수립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책들은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제18조 【대출권】

(1) 대출을 받아 생긴 수입은 투자지출의 총액 수준까지만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경제전반에 걸친 불균형을 막기 위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안의 확정을 위한 입법절차에서 다음의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한다.

- 1. 경제전반의 균형이 심각하고도 지속적으로 위협받거나 그러한 위협이 직접 임박했다는 사실
- 2. 신용대부의 차입을 높이는 것이 경제전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한 확실하면서도 적합한 방법이라는 사실

(2) 예산회계법은 다음의 경우 연방재무부가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다.

- 1. 지출의 보전을 위해서
- 2. 회계관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회계강화를 위한 대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Ermaechtigung)은 대출이 상환되어지는 한도만큼, 다시 이용되어질 수 있다. 회계강화를 위한 대출은 해당 대출이 이루어진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3) 제2항 제1호에 따른 권한의 부여는 다음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적용되며, 제2차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회계법이 적시에 공포되지 않을 경우, 이 예산회계법이 공포되는 때까지 적용된다. 제2항 제2호에 따르는 권한은 현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적용되며,

독 일

다음 회계연도를 위한 예산회계법이 적시에 공포되지 않을 경우, 그 예산회계법이 공포(Verkündung)될 때까지 적용된다.

### 제19조 【예산의 이월】

(1) 투자지출과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지출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지출들은, 예산의 효과적이고 절약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산안 내에서 이월 가능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이월해야 할 지출(지출초과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출재원을 산정하여야 한다. 지출재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앞서 지출해야 할 지출초과분의 보전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책정되어야 한다. 회계법에 맞는 최소한의 지출에서 생겨난 재원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생길 지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경우, 그 지출초과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 제20조 【보전력】

(1) 예산안에서 같은 비목에 포함되어 있는 다음의 사항들은 상호간에 혹은 일방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

1. 상호간에 보전력이 있는 경우

계약직 공무원의 급여와 고용직의 임금을 위한 지출

2. 일방적으로 보전력이 있는 경우

a) 계약직 공무원의 급여와 고용직 직원의 임금으로 쓰이는 지출을 보조하기 위한 공무원의 보수에 사용되는 지출

b) 보조금(Beihilfe)으로 쓰일 지출을 위한 지원금(Unterstützung)으로 쓰일 지출

(2) 행정상으로는나 객관적으로 서로 관련성이 있을 경우 혹은 경제적이고 절약적인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지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안에서 각각 상호간에 혹은 일방적으로 보전력이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그 이용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산정된 지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보전력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 **제21조 【폐지와 변경에 관한 기재】**

(1) 차기의 예산안들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과 정원(定員)은 장차 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한다.

(2) 차기 예산안들에서 더 낮은 호봉의 직급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계약직 공무원 혹은 단순 고용직의 직급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원(定員)은 예산안에서 장차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 **제22조 【제한사항】**

특별한 이유로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혹은 그 일을 부담하기 위한 부채도입이 행해지지 않은 지출은 예산안에서 실행이 제한되어 있는(gesperrt) 것으로 표시된다. 이는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방하원의 승인을 받아 지출을 실행하거나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이용하도록 정할 수 있다.

### **제23조 【부담금】**

연방정부 이외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집된 부서에 부여하는 지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연방이 그 부서를 통한 업무의 완수(달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부담금 없이는 완수할 수 없거나 혹은 필요한 만큼 완수할 수도 없는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

### **제24조 【건설사업, 중장기 조달, 중장기 발전계획】**

(1) 건설사업에 드는 지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계획안·비용조사와 진행방식, 건설비용, 기초비용, 설비비 및 예상되는 용자와 건설 일정 등에 대하여 분명한 정보를 제공 해주는 상세설명서 등이 있

는 경우에만 비로소 산정될 수 있다. 이 자료들에다 해당 사업의 완성단계에 따라 생겨나는 연간(年間) 재정부담금에 대한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중장기 조달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쓰일 지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그 비용과 비용출자 대한 계획수립과 견적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조사하고 심사되어 결정될 수 있다. 제1항의 제2문을 이 경우에 준용(準用)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예외는 자료를 적시에 완성하기가 개별적으로 불가능하고 산정지연으로 인해 연방에 미칠 불이익이 커지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예외가 필요한 경우는 그 근거가 자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실행이 중지된다.

(4) 만일 연방, 주와 게마인데 로부터 받은 부담금에 의해 전체 비용의 50%이상이 보전된다면, 개별적으로 산정된 부담금에 쓰일 지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연방재무부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제25조 【잉여금, 손실금】

(1) 잉여금 또는 손실금은 실제로 획득된 실수입과 실제로 이루어진 실지출간의 차이이다.

(2) 잉여금은 특히 신용대부를 줄이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이용되거나 또는 경기안정을 위한 준비금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잉여금이 부채상환을 위해 이용되거나 경기안정을 위한 준비금으로 귀속된다면, 그 잉여금은 다음에 확정될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1967년 7월 8에 제정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공보 I 582쪽) 제6조 제1항의 제3문은 이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3) 손실금은 늦어도 다음의 제2차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에는 반영되어야 한다. 신용대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면, 손실금은 대출수입을 통해서 보전될 수 있다.

### 제26조 【국영기업, 특별재산, 부담금수혜자】

(1) 예산안을 수입과 지출에 따라 관리하기가 부적절할 때, 국영기업은 관리계획안을 세워야만 한다. 관리계획안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예산안에 자료로 첨부하거나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예산안에는 획득 및 교부만이 산정되어야 한다.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정원은 호봉과 직명에 따라 예산안에 배치되어야 한다.

(2) 특별재산의 경우 예산안에는 획득 및 교부만이 산정되어야 한다. 특별재산에서 발생한 수입, 지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그 개요를 예산안에 자료로서 첨부하거나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다음의 기관 내지 부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그 개요를 예산안에 자료로 첨부하거나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연방에 의해 보조를 받고 있는 공법상의 법인
  2. 총지출 혹은 지출의 대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연방으로부터 부담금을 받고 있는 연방의 행정기관이외의 부서
- 연방 재무부는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권한이 있다.

### 제27조 【예산요구서】

(1) 세부예산안을 담당한 부서들은 그 예산요구서를 연방재무부가 정한 시점에 연방재무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연방재무부는 예산요구서에 조직과 부서에 대한 계획안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개별예산안을 담당한 부서들은 예산요구서를 연방회계검사원에도 보낸다. 연방회계검사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제28조 【예산안 시안의 수립】**

- (1) 연방재무부는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안시안(豫算案試案)을 수립한다. 연방재무부는 이해관련 부서들의 양해(Benehmen)하에 예산요구서를 수정할 수 있다.
- (2) 기본적으로 또는 재정상으로 중요한 경우들에 대해 관할 연방장관은 연방정부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그 사항에 대해 재무부장관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거나 혹은 연방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을 한 경우, 연방재무부장관은 이 결정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연방정부의 직무규정에 의한다.
- (3) 연방정부의 재무부는 예산안시안에 대한 수정이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 연방대통령과 연방하원의장, 연방상원의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연방회계원장들 간의 예산안시안에 대한 의견 차이(Abweichung)를 연방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예산안시안에 대한 결정】**

- (1) 예산회계법초안은 예산안시안과 더불어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 (2) 기본적으로 또는 재정상으로 중요한 경우, 연방재무부가 예산안시안에 수용하지 않았던 수입, 지출, 국고채무부담행위, 기재사항(Vermerk) 등은 관할 연방장관의 제의를 토대로 연방정부의 결정(의결)에 따른다. 이 점은 연방 예산회계법초안의 규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연방정부의 의결에는 제28조 제2항의 제2문이 적용될 수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연방정부의 직무규정에 의한다.
- (3) 예산안시안이 연방대통령, 연방하원의장, 연방상원의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연방회계원장의 예산안과 서로 다르고, 그 수정안 역시 인준을 받지 못했다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던 부분들은 변경하지 않은 채로 예산안시안에 첨부하여 한다.

**제30조 【제출기한】**

예산회계법초안은 예산안시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전에 연방상원에 전달되어야 하고, 연방하원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통 늦어도 9월 1일 이후 연방하원의 최초 정기총회가 시작되는 주까지는 제출되어야 한다.

**제31조 【재정보고】**

예산회계법초안과 예산안시안을 위해 연방재무부는 경제 전반의 발전과 관련된 재정관리의 상태와 발전전망에 대해서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예산안시안의 보충】**

예산회계법초안과 예산안시안에 대한 보충에는 제1장과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추가예산법】**

예산회계법과 예산안에 대한 추가에는 제1장과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추가예산법초안은 해당회계연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예산의 집행**

**제34조 【수입의 징수, 지출관리】**

- (1) 수입은 적시에 완전하게 징수되어야 한다.
- (2) 지출은 경제적이고 예산절감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미리 이루어질 수 없다. 지출재원은 개별적으로 그 목적이 정해진 모든 지출을 보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 (3) 제2항의 내용은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요청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5조 【총액의 명시, 세부금액의 명시】**

(1) 제15조 제1항의 제2문과 제3문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모든 소득과 지출은 그 완전한 총액을 미리 마련된 비목(費目)에 기입하여야만 한다.

(2) 예산안이 허용한다면, 동일한 목적을 위해 쓰이는 지출들이 여러 개의 비목(費目)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요청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36조 【제한요인의 제거】**

법률 또는 예산안에 의해 실행이 중지된 것으로 표시된 지출은 채무부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지출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제22조의 제3문의 경우 연방채무부는 연방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예산안을 초과하는 지출과 예산이외의 지출】**

(1) 예산안을 초과하는 지출과 예산이외의 지출은 연방채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승인은 미리 예상되지는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에 관한 법률이 적시에 유효하게 실시될 수 있거나 혹은 이 지출이 다음 회계법까지 보류될 수 있다면, 이 지출요구는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추가지출액이 개별적으로 예산회계법에 확정되어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혹은 법적인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면, 추가예산에 관한 법률은 필요하지 않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촉진법의 제8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항은 그 지출로 인해 예산안에 산정되어 있지 않은 연방의 채무가 생겨날 수 있는 사업들에도 준용한다.

- (3) 예산안을 초과하는 지출과 예산안이외의 지출은, 같은 개별예산안에 있는 다른 지출들의 절감을 통해서 그 초과지출분이 보전되어야 한다.
- (4) 예산안을 초과하는 지출과 예산안이외의 지출은 그 지출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거나 재정상으로 중요한 경우,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3개월마다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 (5) 그 사용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산정된 지출은 허용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6) 이월 가능한 지출의 경우에서 추가 지출은(선취금 - Vorgriffe) 제 1항의 제1문과 제2항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다음 해에 동일한 목적으로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연방재무부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38조 【국고채무부담행위】**

- (1) 차기 회계연도에 연방이 지출의 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는 사업은 예산안에서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을 때에만 허용된다. 미리 예정되지 않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필요가 있을 경우에 연방재무부는 제37조 제1항의 제3문을 적용하여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 예산을 초과하는 혹은 예산이외의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총금액이 예산회계법에 확정되어 있는 총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혹은 법적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었다면, 추가예산법률은 필요하지 않다.
- (2)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요구는 다음의 경우 연방재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1. 제16조에 설명된 지출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 2. 제16조의 제2문에 해당되는데도 연간총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연방재무부는 권한을 포기할 수 있다.
- (3) 연방재무부는 제1항에 따라 기본적으로 중요하거나 재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그 심의(Verhandlung)의 시작과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채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전제 조건이 없이도 수용될 수 있다. 이월 가능한 지출을 부담하기 위해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될 부채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연방재무부가 정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은 기본법 제59조 제2항의 제1문의 의미로 협약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 제39조 【보증, 신용약정】

(1)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로 이어질 채권, 담보, 그 밖의 보증업무를 인수하려면 그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연방 법률을 통해 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2) 신용약정뿐 아니라 채권, 담보, 그 밖의 보증업무를 인수하려면 연방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연방재무부는 그 심의에 관여할 수 있다. 연방재무부는 그 권한을 포기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 관할 부서들이나 관할 부서의 담당자들은 항상 관련 당사자들에게서 다음 사항을 검사할 것을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

1. 신용약정이나 신용약정의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는지 혹은 있었는지에 대한 검사
  2. 보증업무를 인수할 때, 연방의 요구가 고려될 수 있는지 혹은 그러한 점에 대한 전제조건이 있는지 혹은 있었는지에 대한 검사
- 관할 부서들은 연방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검사권에 대한 요구(Ausbedingung)를 예외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 제40조 【재정상으로 중요한 그 밖의 조치】

(1) 법규정과 행정지침들의 발령(Erlass), 단체협약의 체결 그리고 과도하게 책정되었거나 보수외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허가 및 행정업

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수의 확정과 변경 등은,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당해 회계연도나 다음 회계연도에 수입이 감소되거나 추가지출이 생길 수 있다면, 연방재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1문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거나 재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밖의 다른 사업들로 인해 해당 회계연도 혹은 다음 회계연도에 수입의 감소가 생길 수 있다면, 그 사업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초연방적인 혹은 주 상호간에 필요한 조직을 위한 사업에 연방이 협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제1문이 적용될 수 있다.

#### **제41조 【예산관리상의 제한】**

수입과 지출의 진행과정상 필요하다면, 연방재무부는 관할 연방 행정부의 양해 하에 국고채무부담의 수행 여부나 지출의 이행여부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제42조 【경기정책적인 추가지출】**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촉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전달된 예산요구서의 경우 연방하원은 그 지출을 삭감할 수 있다.

#### **제43조 【회계재원, 경영재원】**

(1) 연방재무부는 사용가능한 회계재원의 범위 내에서 관할관청이 자신의 업무영역 내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금액까지 필요한 지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관할 관청에 부여한다. (경영재원)

(2) 연방재무부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은 회계재원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4조 【부담금, 재원 또는 자산의 관리】**

(1) 부담금은 제23조의 조건을 전제로 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어야 한다. 그 밖에 관할 부서 혹은 담당자의 검사권이 법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보조금의 사용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과 연방회계검사원에 의한 검사와 관련된 행정규칙(제91조) 등은 연방회계검사원과의 협의를 거쳐 공포된다.

(2) 연방의 연방재원 혹은 재산을 연방행정부 이외의 부서들이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

(3) 사법상의 법인들은, 만일 사법인들이 맡은 임무를 합당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또한 행정권의 위임이 공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자신들 고유의 이름이나 공법상 업무라는 형식으로 부담금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권한의 양도와 박탈은 관할 연방행정부의 권리이다. 권한의 양도는 연방재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공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관할 연방행정부의 감독 하에 있다. 관할 연방행 정부는 이 감독권을 하위 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 제44a조 삭제

#### 제45조 【대상과 시기의 결합】

(1) 지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안에서, 그 목적이 필요한 기간에 한해서, 그리고 제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이루어지거나 청구되어야 한다. 만일 다음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법이 적시에 공포되지 않을 경우, 청구되지 않은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그 회계법이 공포될 때까지 유효하다.

(2) 이월 가능한 지출의 경우 지출잔액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지출잔액은 해당 회계연도가 지난 후 승인받은 회계연도의 제 2차 회계연도 말까지 정해진 목적을 위해 처리 가능하다. 건축물(建築物)의 경우, 그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회계연도가 승인 회계연도를 대신한다. 연방재무부는 특별한 경우에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3) 지출초과분의 청구는 재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 승인은 동일한 혹은 다른 개별예산안에서 똑같은 금액의 지출이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혹은 지출초과분의 보전을 위한 지출재원이 산정되어졌을 경우에만 이루어지거나 수용될 수 있다 (제19조 제2항).

(4) 이미 승인된 사업을 위한 지출이 다음 회계연도에도 여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연방재무부는 특별한 근거가 있다면 지출의 이월을 허용할 수 있다.

#### **제46조 【보전력】**

보전력이 있는 지출은, 이용가능한 한도 내에서, 제20조 제1항의 기준 혹은 보전에 대한 기재사항에 따라 다른 용도로 지출할 수 있다.

#### **제47조 【삭제와 변경에 관한 기재사항】**

(1) 예산안에 장차 사용을 중단할 것을 규정한 지출은 예산안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중단의 전제조건들이 충족되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다. 이는 정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어떤 직책을 자세한 설명 없이 장차 폐지될 것으로 표시된다면, 곧 결원이 될 당해 분야의, 당해 호봉의 직책은 충원될 수 없다.

(3) 어떤 직책이 전제조건 없이 장차 변경될 것으로 설명된다면, 장차 공석이 되는 동일 호봉의 직책은 공석이 된 시점부터는 변경에 관한 기재사항에 표시되어 있는 다른 직책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계약직 공무원직과 단순 고용직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48조 【공무원의 임명과 전직】**

만일 지원자가 재무부가 정한 일반적인 연령을 넘어선 경우라면, 연방직 공무원의 임명과 전직은 재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49조 【특정 직책으로의 임용】**

- (1) 공무원의 지위는 특정한 직책의 임명과 동시에 부여될 수 있다.
- (2) 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에 대한 임명이 효력을 가지게 된 첫 달의 업무수행결과를 보고 그 시기에 충원하여야 할 적당한 직책으로 배치될 수 있다. 만일 해당자가 이 기간동안 동일한 비중을 가지는 몇 개의 직무를 맡아 보았고 이미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한 전제조건에 적합하다면, 해당자는 최소한 3개월간의 업무수행결과를 소급 평가하여, 임용된 첫 달에 충원하여야 할 적당한 직책에 임명될 수 있다.

**제50조 【재원과 정원의 재편성】**

- (1) 어떤 업무의 관할이 한 행정부서에서 다른 행정부서로 바뀐다면, 연방정부는 재원과 정원을 재편성할 수 있다. 관계된 당해 관련 연방행정부와 연방재무부가 그 재편성에 대해 의견의 합의를 본 경우라면, 변경을 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결정은 필요하지 않다.
- (2) 미리 예견하지 못했지만 회피할 수는 없는 긴급한 인적 필요성이 생겼다면, 하나의 정원은 연방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의 직무로 전환될 수 있다. 그 자리의 계속적인 존속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안에서 정할 수 있다.
- (3) 파견의 경우, 파견된 공무원을 위한 인건비지출은 연방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파견을 한 행정부가 다음 회계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 지불할 수 있다.
- (4) 제1항 내지 제3항까지는 계약직 공무원직과 단순 고용직을 위한 재원과 정원에도 적용된다.
- (5) 외국에 대해 연방을 대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의 경우, 연방재무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고 6개월 동안 이 자리를 공식으로 남겨둘 수 있다.

**제51조 【특별한 인건비지출】**

법률이나 임금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인건비는, 그 지불재원이 특별하게 마련되어 있을 경우에만 지불할 수 있다.

**제52조 【용익권과 현물급여】**

공무수행자들은 법률 또는 보수계약을 통해 또는 예산안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유효한 보수를 대신해서 용익권과 현물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통근용 운송수단의 이용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수당, 공공시설 이용권, 관사 등의 이용가치에 대한 관리 및 확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재무부가 규율하는 바에 따른다. 계약직 공무원과 고용직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를 제외한 관사들은 예산안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제53조 【재량행위 - Billigkeitsleistungen】**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행위는 지출재원이 특별하게 마련되어 있을 때만 허락될 수 있다.

**제54조 【건설사업, 중장기 조달, 중장기 발전계획】**

(1) 건설사업은, 아무리 소규모의 건설이라고 하더라도, 상세한 설계도와 비용계산서가 있을 때에만 시작될 수 있다. 설계도와 계산서상의 변경은 그 변경내용이 크지 않을 경우에만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료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밖의 예외사항들은 연방재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 중장기 조달과 중장기 발전계획은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해야만 한다. 제1항의 제2문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55조 【공적인 공시】**

(1) 업무의 성질상 혹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

독 일

나라면, 조달과 급부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사전에 공적인 고시(Ausschreibung)가 선행되어야 한다.

(2) 계약의 성립시에는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6조 【사전급부행위】**

(1) 보통 통례적이거나 혹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생각 되는 경우에만, 반대급부(Gegenleistung)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연방의 사전급부행위가 약속되거나 이행될 수 있다.

(2) 부채지불확정일 이전에 연방에 대한 부채지불이 이루어진다면, 연방재무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상당한 액수를 공제할 수 있다.

#### **제57조 【공무수행인과의 계약】**

공무수행인과 그들의 직책 간에는 관할 연방행정부의 승인을 얻어서만 계약 (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그 권한을 하위 종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문은 공적인 공사와 경매의 경우와 일반적인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58조 【계약 및 협정의 변경】**

(1) 관할 연방행정부는,

1. 특별한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방에 불리하게 적용된 계약을 파기(aufheben)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2. 연방의 목적에 부합하고, 경제적인 때에만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

관할 연방행정부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조항 1에 따르는 사업들은, 재무부가 그 권한을 포기하지 않은 한, 연방재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제59조 【청구권에 대한 변경】**

(1) 관할 연방행정부는,

1. 즉각적인 징수가 피청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유예되어도 지급청구가 위태롭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청구를 유예할 수 있다. 유예를 할 때는 보통 적절한 이자를 지불하여야 하고, 확실히 이행될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징수가 그 의도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할 것임이 확실하거나 혹은 징수비용이 청구액에 비해 과도할 때, 지급청구를 중단할 수 있다.
3. 징수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피청구인의 특별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지급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이는 이행비용을 상환하거나 계산하는 경우와 담보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관할 연방행정부는 그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연방재무부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한, 연방재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3) 이 조항은 여타의 규정들에 대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제60조 【선불금, 보관금】**

(1) 업무수행을 위한 급부의무는 이미 확정되었지만 아직 그 지출이 최종적으로 기록될 수 없을 때의 지출은 선불금으로 기재될 수 있다. 선불금은 선불금이 발생한 이후에 뒤따르는 회계연도의 제 2차 회계연도 말까지 최종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연방재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 불입금이 최종적으로 기입될 수 없는 경우, 불입금이 보관금으로 입금될 수 있다. 이 보관금은 이와 관련된 지불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회계강화를 위한 대출은 보관금으로 준용된다.

**제61조 【내부 결제 - Verrechnung】**

- (1) 예산안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연방행정부가 자산들을 처음 조달된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의 완전한 값(가치)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른 직무의 수행을 위해 직무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여타의 규정들에 대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각 직무들 간의 손해전보(Ausgleich)는 생기지 않는다.
- (2) 제1항은, 이관된 자산의 가치 혹은 전보비용이 연방재무부에 의해 확정된 일정 금액을 넘지 않거나 혹은 연방재무부가 다른 예외 조항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 이관된 자산의 가치와 비용은, 국영기업 혹은 연방의 특별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환되어야 한다. 이는 손해전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정협의 과정에서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긴급히 요청된 경우,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
- (4) 자산의 이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제3항을 준용한다.

**제62조 【회계강화준비금】**

신용대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제18조 제2항의 제2문)을 행사하지 않고 회계관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규정에 맞는 예산재원(財源)을 도입함으로써 회계강화준비금(예비비)을 독일 연방은행에 축적하여야 한다.

**제63조 【자산의 취득과 양도】**

- (1) 자산은 그 자산이 특정한 시기에 연방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만 취득되어야 한다.
- (2) 자산은 그 자산이 특정한 시기에 연방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양도될 수 있다.
- (3) 자산은 그 온전한 가치로만 양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은 예산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4) 그 자산의 가치가 미미하거나 혹은 연방의 절실한 이해관계가 존재할 경우, 연방재무부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5) 자산 이용의 위탁(Ueberlassung)에 대해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4조 【토지】

(1) 연방소유의 토지는 재무부와 연방재산을 관리하는 관할 연방행정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양도될 수 있다. 연방행정부들은 그 양도에 관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

(2) 중요한 가치 혹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토지의 경우 그리고 예산안에 그 양도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경우는, 그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가 절박한 이유에서 요청된 것이 아니라면,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승인을 받아서만 양도될 수 있다. 만일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은 즉시 그 양도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3) 취득되어야 할 혹은 양도되어야 할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가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연방소유의 토지에 대한 물권(Dingliche Recht)은 적당한 보상을 대가로(gegen) 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 물권의 설정(Bestellung)은 연방재무부와 연방재산을 관리하는 관할 연방행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연방행정부는 물권의 설정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

(5) 토지를 취득할 때 저당권, 토지채무와 임대채무 등은 구매가격을 고려하여 제38조 제1항의 전제조건을 붙이지 않고 인수될 수 있다.

#### 제65조 【사기업의 참여】

(1)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은 다음의 경우에 사법적 법형식을 가지는 기업이 설립될 때 혹은 그러한 법형식을 가지는 기존 기업에 출자하여야 한다.

1. 연방의 중요한 이익과 관계되어 있고, 연방이 추구하는 목적을 다른 방식으로는 최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연방의 출자금액이 일정한 한도로 제한된 경우
  3. 연방이, 특히 감독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감시기관을 통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경우
  4. 포괄적인 법률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법률규정과 배치되는 경우, 대규모 자본회사(Kapitalgesellschaft)에 대한 상법전(Handelsgesetzbuch) 제3권의 규정들에 맞게 연말결산서와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할 것이 보장되었을 경우
- (2) 연방이 기업에 참여하거나, 그 지분을 높이기 앞서 혹은 그 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기에 이전에, 관할 행정부는 연방재무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며, 연방재산을 관할하는 연방행정부를 참여시켜야 한다. 명목자산이나 기업자산에 변화가 있을 때에도 혹은 연방의 영향력에 변화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연방재무부는 그에 대한 심의(Verhandlung)에 참여하여야 한다.
- (3) 관할 연방행 정부는, 연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연방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업지분의 4분의 1이상의 지분을 얻거나, 지분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그 지분의 전체나 일부를 양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동의를 얻어내기 앞서 연방재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연방재산을 관할하는 연방행정부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제1항의 제3호와 제4호 그리고 제2항 제2문의 기본원칙들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
- (4) 연방재무부와 연방의 재산을 관할하는 연방행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 (5) 조합에 소속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책임이 일정한 총합으로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만, 연방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다. 연방의 조합참여는 연방 재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6) 관할 연방행정부는 연방의 추천으로 선출되었거나 파견된 기업에 대한 감독기관의 구성원이 감독활동을 할 때 연방의 특별한 이익을 고려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7) 기업에의 연방지분이 특별히 중요하고 그 지분의 양도가 예산안에 미리 예정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이유로 예외조항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분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승인을 얻어서만 양도될 수 있다. 만일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은 즉시 그 양도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 **제66조 【연방회계검사원에의 보고】**

예산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의미에서 과반이상의 지분이 있다면, 관할 연방행정부는 예산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권한을 연방회계검사원이 보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제67조 【약정을 통한 심사권】**

연방의 지분이 예산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의미에서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연방 행정부는 연방의 이익에 필요하다면, 주식회사, 합자회사 혹은 조합을 제외한 기업에 정관(定款)이나 회사법(Gesellschaftsvertrag)을 통해 예산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르는 권한이 연방에 주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간접출자의 경우에는, 만일 전체 지분의 4분의 1 이상의 지분을 예산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의미에서 ‘연방이 단독으로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절반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제1문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 **제68조 【관할권에 관한 규정】**

(1) 예산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지분을 관할하는 연방 행정부가 행사한다. 예산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독 일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관을 선출하거나 임명할 때 관할 연방 행정부는 연방회계검사원과 협조하여 연방의 권리를 행사한다.  
(2) 관할 연방행정부는 연방재무부, 연방의 재산을 관할하는 연방행정부 그리고 연방회계검사원장과 협조하여 예산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행사의 포기를 결정한다.

#### **제69조 【연방회계검사원에의 보고】**

관할 연방행정부는 종료된 업무연도를 대상으로 하여 연말결산을 확인하는 주주총회나 기업회의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연방회계검사원에 다음의 서류들을 보낸다.

1. 주주 혹은 동업자로서 연방이 입수할 수 있는 자료들
2. 연방의 추천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파견된 감시기관원들이 기업에 관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류들을 첨부한 보고서
3. 예산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제53조와 제67조에 따라 연방회계검사원에 전달되어야 할 검사보고서

심사의 결과가 통지된다.

## **제 4 장 지불, 기장, 결산**

#### **제70조 【지불】**

지불은 회계창구와 지불창구를 통해서만 허용되거나 이행될 수 있다. 지불은 관할 행정부와 그 행정부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부서를 통해서 수기식이나 전자식으로 지시되어야 한다. 연방재무부는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

#### **제71조 【기장】**

(1) 지불은 예산안에 예정된 혹은 그 밖의 예정된 순서에 따라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연방 관청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연방의

채무부담 내지 금전채권은 연방 재무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다른 관리과정에 대해서 연방 재무부는 기록을 명령할 수 있다.

- (2) 전년도의 수입잔액과 지출잔액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은,
  - 1. 현재 진행중인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기입할 비목(費目Titel)이 다시 마련된다면 그 자리에 기록된다.
  - 2. 현재 진행중인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기입할 비목(費目Titel)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예산안을 입안할 때 예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 기록된다.
- (3) 제2항 제2호는 예산안이외의 수입과 지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제72조 【회계연도에 따른 기록】**

- (1) 지불, 수용된 채무부담, 금전청구 내지 제71조 제1항의 제3문에 따라 기록이 명령된 다른 통제과정들은 회계연도별로 나누어서 기록되어야 한다.
-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외를 제외한 모든 지불은 그 지불이 인수되거나 이행된 회계연도를 기간으로 삼아 기록하여야 한다.
- (3) 종료된 회계연도에 지불되어야 했지만, 뒤늦게 받아들여지거나 이행된 지불은 그 장부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 종료된 회계연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4) 새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새로운 회계연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이미 수용된 수입
  - 2. 새로운 회계연도에 지불되어야 하지만, 그 시기 때문에 해당 자에게 미리 지불되어야 할 지출
  - 3.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첫 달 동안 미리 지불되어야 할 공무원봉급, 관리비나 이에 준하는 비용 및 임대료 등

독 일

(5) 제3항 및 제4항의 제1호는 세금, 사용료, 다른 공과금, 과태료, 벌금 내지 이와 관련된 비용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예산안에는 제2항 내지 제4항까지에 대한 예외조항을 허용할 수 있다.

### **제73조 【자산기장, 통합(integriet) 기장】**

(1) 자산과 부채는 장부에 기록되거나 혹은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재무부는 연방회계검사원과 협의하여 자세한 규정을 세운다.

(2) 자산과 부채에 대한 기록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과 연계되어야 한다.

### **제74조 【공기업의 기장】**

(1) 제26조의 제1문에 따라 관리계획안을 세운 공기업은 제71조에서 제79조에 규정된 기록 방식이 유용하지 않은 경우, 상업복식부기의 규정에 따라 기록할 수 있다.

(2) 관할 연방행정부는 연방재무부, 연방회계검사원과 협의하여, 경영상의 이유에서 목적에 맞을 때, 공기업에 추가적으로 경영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업무연도는 회계연도이다. 이에 대한 예외는 관할 연방행정부가 연방재무부와 협의하여 허용할 수 있다.

### **제75조 【증빙서류첨부의 의무】**

모든 지출은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 **제76조 【장부의 종결】**

(1) 장부들은 매년 종결되어야 한다. 연방재무부가 그 종결시점을 정한다.

(2) 장부가 종결된 후에는 수입이나 지출을 더 이상 종결된 기간에 대해서는 기록할 수 없다.

### 제77조 【회계안전성】

제70조의 의미에서 명령을 내리는 그리고 그 명령에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지불 혹은 기록에 관여할 수 없다. 연방재무부는 회계안전이 다른 방식으로 보장되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제78조 【불시 검사】

지불과 기록을 관할하는 부서들은 최소한 매년마다, 물품행정을 관할하는 부서는 최소한 2년 단위로 불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연방재무부는 이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다.

### 제79조 【연방회계, 행정지침】

(1) 연방을 위한 지불의 수용과 이행에 관한 회계업무는, 연방주의 재무관청에 의해서 관리되는 세금의 징수가 아닌 한, 연방회계를 담당하는 모든 내-외 연방행정 부서에서 관할한다.

(2) 연방중앙금고는 연방재무부에 설치된다. 연방중앙금고는 중앙금고의 임무를 맡는다. 연방재무부는 연방중앙금고가 같은 업무영역에 있는 연방의 상급관청에 설치되도록 정할 수 있다.

(3) 연방금고는 연방주의 재무부에 설치될 수 있다. 연방 국방부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연방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4) 연방재무부는 다음의 사항을 자세히 규정한다.

1. 관할 연방행정부와 협조하여 지불과 기록을 관할하는 연방부서의 설치, 관할 업무영역과 행정절차에 대하여 정한다.

2. 연방회계원과 협의한 장부와 증거서류의 구비에 대하여 정한다.

(5) 연방재무부는 통상적으로 연방회계검사원과 협의하여 장부의 기록과 증빙자료를 통한 증명을 간소화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연방회

독 일

계검사원은 관할 행정부와 협의하여 개별 사안에 대해 간소화를 허용할 수 있다.

### **제80조 【결산】**

(1) 관할 부서는 매 회계연도에 대해 종결된 장부를 토대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방재무부는 연방회계검사원과 협의하여 또 다른 기간을 대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정할 수 있다.

(2) (삭제됨)

(3) 종결된 장부를 토대로 하여 연방재무부는 매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재산에 대한 결산서를 수립한다.

### **제81조 【결산보고서의 구성】**

(1) 결산서에서 세입과 세출은 제71조에서 설명된 순서에 따라 예산 잔액과 선취금을 고려하여 예산의 항목(項目)과 서로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

(2) 개별 항목(項目)과 그에 상응하는 최종금액의 경우 다음의 사항들은 특별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1. 수입의 경우

a) 실수입

b) 이월 가능한 수입 잔액

c) 실수입과 이월 가능한 수입의 총합(총계)

d) 자산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실 수입의 금액

e) 계획된 수입

f) 이전 해에서 이월된 수입의 잔액

g) 계획된 수입과 이월된 수입 잔액의 총액

h) g)항의 총액과 대비한 c)항의 총액의 잉여금과 손실금

#### 2. 지출의 경우

- a) 실지출
  - b) 이월 가능한 지출잔액 혹은 선취금(先取金)
  - c) 실지출과 이월 가능한 지출잔액 혹은 선취금의 총액
  - d) 자산기록이 있다면,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실지출 금액
  - e) 계획된 지출
  - f) 이전 해에서 이월된 지출초과분 혹은 선취금
  - g) 계획된 지출과 이월된 지출초과분 혹은 선취금의 총액
  - h) g)항의 총액과 대비한 c)항 총액의 잉여금과 손실금
  - I) 예산을 초과하는 혹은 예산이외의 지출 금액과 선취금의 금액
- (3) 개별 비목(費目)과 그에 대한 최종금액의 경우에는 제71조 제1항의 제2문의 의미에서 인수된 채무부담과 금전채권의 액수가 특별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 (4) 제25조 제2항의 경우 신용대부의 감소는 동시에 흑자분의 증명을 이용하여 설명될 수 있다.

### 제82조 【회계 결산】

회계 결산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증명되어야 한다.

1. a) 실수입의 총액
- b) 실지출의 총액
- c) a항목과 b항목에서 생겨난 차액(회계결산결과)
- d) 예산상으로 아직 진행되지 않은 이전 해들에 대한 회계결산
- e) c와 d에서 생겨난 총회계결산
2. a) 신용시장으로부터의 대출로 생긴 수입, 예비비의 차입, 회계상의 잉여금과 이자소득을 제외한 실수입총액
- b) 신용시장에 대한 부채상환에 쓰인 지출, 예비비로의 이월금과 재정상의 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해 쓰인 지출을 제외한 실지출 총액

독 일

c) a에서 b까지에서 발생한 융자잔액

### 제83조 【예산의 결산】

예산의 결산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증명하여야 한다.

1. a) 제82조 제1호 c에 따르는 연말회계결산결과  
b) 제82조 제1호 e에 따르는 총회계결산결과
2. a) 전년도에서 이월된 수입잔액과 지출잔액  
b)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될 수 있는 수입잔액과 지출잔액  
c) a와 b사이의 차액  
d) 제1호 a와 제2호 c에서 생겨난 회계상의 연말결산  
e) 제1호 b와 제2호 b에서 생겨난 회계상의 종합결과
3. 제71조 제1항의 제2문 의미로 수용된 채무부담과 금전채권의 액수

### 제84조 【결산보고】

회계 결산과 세입세출의 결산은 보고서로 작성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제85조 【세입세출의 결산에 대한 개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에는 다음에 대한 개요를 첨부하여야만 한다.

1. 선취금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초과하는 지출과 예산이외의 지출, 그리고 그 증빙자료
2. 수입과 지출 그리고 특별재산과 예비비(Rücklage)의 현재액
3. 공기업의 연말결산
4. 제59조에 따른 지급청구액의 업무영역별 총 금액
5.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예산요구서에 반영되지 않은 수입

### 제86조 【자산평가서】

자산평가서에는 회계연도의 시작시점에서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서,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변경사항 그리고 회계연도말의 명세서가 확인되어 있어야 한다.

### 제87조 【공기업의 결산】

- (1) 상업 복식 부기의 규정에 따라 기록하는 공기업은 상법전 제264조 제1항의 제1문의 지침을 적용하여 연말결산서와 상황보고서를 작성한다. 관할 연방행정부는 연방재무부와 협의하여 상황보고서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0조에서 제85조까지의 규정은, 상업 복식부기의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 적용되어진다.
- (2) 경영에 관한 장부의 기록이 준비된 경우, 기업의 결과보고서는 연방재무부와 연방회계검사원에 전달되어야 한다.

## 제 5 장 결산심사

### 제88조 【연방회계검사원의 임무】

- (1) 연방회계검사원은 특별재산과 공기업을 포함하여 연방의 전체 예산운영과 경제정책의 수행에 대해 다음 규정들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 (2) 연방회계검사원은 심사자료를 토대로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와 개별 행정부서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다. 연방회계검사원이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조언을 함으로써, 연방정부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 제89조 【심사】

- (1) 연방회계검사원은 다음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1. 수입, 지출, 지출을 부담하기 위한 채무행위, 자산과 부채
  2. 재정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
  3. 보관금(Verwahrung)과 선불금(Vorschuess)
  4. 독립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재원의 유용성
- (2) 연방회계검사원은 그 재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심사를 행하거나 회계심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제90조 【심사의 내용】

검사의 범위에는 예산운영과 경제정책의 수행에 적용되는 지침과 기본원칙의 준수까지도 포함된다. 특히 다음의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심사가 이루어진다.

1. 예산회계법과 예산안이 엄격히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심사
2. 수입과 지출은 그 근거가 확실하며 또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는지, 예산에 대한 결산과 자본금의 계산이 규정에 맞게 행해졌는지에 대한 심사
3. 경제적이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심사
4. 사소하게나마 인적낭비나 물적 낭비가 있었던 지출이 아니었는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사

### 제91조 【연방 행정부 이외의 부서들에 대한 심사】

(1) 연방회계검사원은 다른 법률 규정들을 조건으로 하여 아래의 경우에 연방행정부 이외의 부서들을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1. 해당 부서들이 연방예산안의 일부를 집행하거나 연방으로부터 그 지출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
2. 연방채원이나 연방의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3. 연방으로부터 부담금(Zuwendung)을 받은 경우 혹은
4. 연방이 그 특별재산을 포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법인이 다른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지는 않은지, 규정에 맞게 공무를 수행했는지 또는 연방의 목적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예산채원이나 연방의 보증을 제공받았거나 그 특별재산의 일부를 받았는지

제3의 채원들이 해당 부서에 전달된다면, 연방회계검사원은 그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

(2) 심사의 내용에는 관리와 사용이 규정에 맞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포함된다. 부담금의 경우 연방회계검사원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 연방회계검사원은 그 밖의 부담금수혜자(Empfänger)의 예산운영과 경제정책의 수행까지도 검사할 수 있다.

(3) 예산재원으로서 신용대부의 보장 및 연방을 통한 보증(Bürgschaft), 담보(Garantie) 혹은 그 밖의 보증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해서 연방회계검사원은 해당 관련자들이 연방의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는지 혹은 연방의 요구사항(Inanspruchnahme)에 대해 전제조건을 부가했었는지를 심사한다.

(4) 제1항 제1문의 제4호의 의미에서의 법인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운영과 경제정책의 수행에 대한 심사가 실시된다. 제1항 제1문의 제4호의 의미에서의 사법인이 기업인 경우, 상업상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진다.

### 제92조 【사기업의 공적활동에 관한 심사】

(1) 연방회계검사원은 연방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법적 법형식을 가지는 기업에서의 연방의 활동을 상업적인 기본원칙들에 유의하여 심사한다.

(2) 제1항은 연방이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제93조 【공동검사】

(1) 연방회계검사원뿐만 아니라 주회계검사원도 심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기본법 제114조 제2항의 제1문은 심사의 주체가 연방회계검사원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연방회계검사원은 협의를 통해서 주회계검사원에 심사임무를 양도할 수 있다. 연방회계검사원은 협의를 통해서 주회계검사원으로부터 심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독 일

(2) 연방회계검사원이 국제법상의 조약이나 행정협정을 통해 혹은 연방정부를 통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연방회계검사원은 외국 심사관청 혹은 주 전체를 관할하는 회계심사청 또는 주들 간의 회계심사청과 협의를 통해서 개별 심사의 이행을 양도하거나 넘겨받을 수 있으며, 초연방적인 혹은 주들간의 조직에 대한 심사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 **제94조 【심사의 시기와 방법】**

- (1) 연방회계검사원은 심사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필요한 장소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한다.
- (2) 연방회계검사원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

#### **제95조 【정보제공의 의무】**

- (1) 연방회계검사원이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들은 연방회계검사원의 요구에 따라 일정기한 내에 연방회계검사원에 전달되어야 하거나 혹은 그 담당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2) 연방회계검사원과 그 담당자는 필요한 정보들을 요청하여 넘겨받을 수 있다.

#### **제96조 【심사결과】**

- (1) 연방회계검사원은 심사결과를 연방회계검사원이 정한 시기 내에 관할 부서들에 통지한다. 연방회계검사원은 다른 부서들과 연방하원의 예산위원회가 특별한 이유에서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필요로 한다면, 그 부서들과 예산위원회에도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2) 기본적으로 중요한 또는 재정상으로 중요한 심사결과들은 연방회계검사원에 의해 연방재무부에 통지된다.
- (3) 연방회계검사원은, 행정부가 심사보고서에 거론한 연방의 요구를 수행하고자 하지 않을 때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 한다. 연방회계검사원은 청문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7조 【검사소견서】

(1) 회계심사 결과가 회계결산과 자산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연방정부의 면책(Entlastung)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면, 연방회계검사원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을 위해 매 해 연방하원, 연방상원 그리고 연방정부에 전달되는 심사소견서에 그 검사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2) 검사소견서를 통해서 특히 다음 사항들이 통지된다.

1. 회계결산과 재산결산에 포함된 금액과 장부에 열거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검사된 수입과 지출이 적법하게 문서로써 증빙되어 있는지
2. 중요한 경우에 있어 예산운영과 경제정책의 수행에 적용되는 지침들과 기본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3. 어떤 중요한 이의신청들이 고유 법인을 가진 기업에서의 심사 활동으로부터 생겨났는지
4. 미래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이 제안되었는지

(3) 심사소견서에는 장래의 혹은 이전의 회계연도에 대한 확인사항도 수록될 수 있다.

(4)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심사소견서는 연방하원의장과 연방상원의장 그리고 연방수상과 연방재무부에게 통지된다.

### 제98조 【손해배상청구】

연방회계검사원의 견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질 수 있다면, 연방회계검사원은 이 사실을 즉시 관할 부서에 통지한다.

### 제99조 【특별사항】

연방회계원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연방하원, 연방상원 그리고 연방정부에 항시 통지할 수 있다. 연방회계검사원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통지를 하는 동시에 연방정부에도 통지를 한다.

### 제100조 【심사관】

연방회계검사원은 심사활동을 준비하고, 보조하고, 보충하기 위해 근무감독과 행정감독을 위임받은 심사관을 통해 심사임무를 실시할 수 있다. 심사관들은 연방회계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연방회계검사원에 적용되는 규정에 맞게 심사임무를 수행한다.

### 제101조 【연방회계검사원의 결산】

연방회계검사원의 결산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이 심사를 행하며, 책임면제 역시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이 행한다.

### 제102조 【연방회계검사원의 보고】

(1) 연방회계검사원은 다음의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상급의 연방관청들이 일반적인 규칙들을 발령했거나, 혹은 어떤 규칙들이 연방예산재원의 통제와 관련되는지 또는 수입과 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할 경우
2. 연방의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조직 혹은 공기업이 만들어 지거나,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되거나 또는 해산될 경우
3. 제65조 제3항의 의미에서 연방이 기업에 직접적인 출자 혹은 간접적인 출자를 시작하거나, 출자의 근본적인 부분을 변경하거나, 출자를 중지한 경우
4. 연방과 연방행정부 이외의 부서 간에 혹은 최상급 관청들 간에 연방회계재원의 통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5. 조직구조상의 사업들 혹은 그밖에 재정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업들이 최상급 관청들에 의해 취해지는 경우

(2)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종류의 지침이나 해설이 연방의 다른 부서들에 의해 공포되었을 지라도, 연방회계검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그 지침과 해설은 연방회계검사원에 통지되어야 한다.

(3) 연방회계검사원은 항상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조치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제103조 【연방회계검사원의 공청】

- (1) 연방회계검사원은 행정규칙의 발령(Erlass)에 앞서 연방예산규정의 집행에 관해 청취하여야 한다.
- (2) 회계창구와 지불창구의 관리와 자산의 기장과 증명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규정들은 제1항의 의미에서의 행정규칙들에 속한다.
- (3) 독일연방공화국이 회원으로 있는 초연방적인 혹은 주들 간의 조직(Einrichtung)의 회계심사를 포함하여 예산(회계)의 본질에 대한 규칙의 발령 혹은 변경에 대한 의결(표결, 결정)에 앞서 관할 연방행 정부는 연방회계검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04조 【사법상의 법인에 대한 검사】

- (1) 연방회계검사원은 다음의 경우 사법인의 예산운영과 경제정책의 수행을 검사한다.
  1. 그 법인이 법률을 근거로 하여 연방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혹은 연방의 보증채무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2. 그 법인이 연방이나 연방에 의해 임명된 사람에 의해 단독으로 혹은 전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3. 연방회계검사원을 통해 회계심사를 받기로 연방회계검사원과 협의한 경우
  4. 그 법인이 기업이 아니며 연방회계검사원의 동의를 받은 정관(定款)에 연방회계원을 통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2) 제1항은 연방에 의해 관리되는 신탁재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3) 연방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업의 이윤 중 4분의 1 이상을 연방에 배당되고 있다면, 연방회계검사원은 기존의 규정에 따

독 일

라 연방의 이익이 유지되도록 유의하여 결산작업과 업무수행을 심사할 수 있다.

## 제 6 장 연방직속 공법인

### 제105조 【기본원칙】

(1) 연방직속 공법인(公法人)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규정 혹은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법규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1. 제106조 에서 제110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며
2. 제1조 에서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방직속 공법인의 경우 관할 연방행정부는 연방의 중요한 재정상의 이익과 관계된 경우가 아니라면 연방재무부, 연방회계원과 협의하여 제1항에 설명된 규칙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 제106조 【예산안】

(1) 연방직속 공법인의 업무운영을 위해 소집된 기관은 회계연도의 시작에 앞서 예산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안에는 회계연도에 예상될 수 있는 모든 수입, 행해질 것으로 예견되는 모든 지출과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되어야 하며,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로 대비되어야 한다. 이 예산안에는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만이 포함될 수 있다.

(2) 법인이 사업운영을 위해 마련된 기관 이외에도 중요한 관리사항을 결정하고, 승인하거나 혹은 사업운영을 감독해야 하는 특별한 의결기관을 가진 경우, 이 의결기관이 예산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사업운영을 위해 설치한 기관은 의결기관에 예산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 【분담금, 회비】**

연방직속 공법인이 그 회원들에게서 분담금이나 회비를 징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새 회계연도 동안에 징수하게 될 분담금과 회비의 상한액은 예산안이 확정됨과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제108조 【예산안의 인가】**

예산안과 분담금 내지 회비의 확정은 연방직속 공법인의 경우 관할 연방행정부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그 밖에 분담금 내지 회비의 확정은 연방재무부의 인가도 필요로 한다. 예산안과 분담금 내지 회비의 확정에 대한 결정은 늦어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에 관할 연방행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예산안과 의결은 오직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09조 【결산, 심사, 책임면제】**

- (1)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업운영을 위해 소집된 연방직속 공법인 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연방직속 공법인의 결산, 예산운영과 경제정책의 수행은 제111조에 따라 연방회계검사원을 통한 심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혹은 정관(定款)에서 정한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의 실행에 관한 정관(定款)규칙은 연방재무부, 연방회계검사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연방행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심사의 결과는 연방회계검사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연방회계검사원은 심사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3) 책임면제는 연방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관할 연방행정부가 승인한다. 특별 의결기관이 있는 경우, 그 의결기관이 책임면제를 승낙할 의무를 지닌다. 그 경우 책임면제는 관할 연방행정부와 연방재무부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 제110조 【경영계획】

예산안의 수입과 지출에 따르는 관리가 목적에 맞지 않을 때, 연방직속 공법인은 경영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법인들이 상업의 복식 부기 규칙에 따라 기록을 한다면, 공법인은 상법 제264조 제1항의 제1문의 규칙을 적용하여 한해의 결산서와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1조 【연방회계검사원을 통한 심사】

(1) 연방회계검사원은 연방직속 공법인의 예산운영과 경제정책의 수행을 심사한다. 제89조에서 제100조, 제102조와 제103조를 이에 적용할 수 있다.

(2) 재정상으로 중요한 연방의 이익이 연관된 경우가 아니라면, 연방직속 공법인에 대해 관할 연방행정부는 연방재무부와 연방회계검사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기존의 권리에 따라 허용된 예외조항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제112조 【특별규정】

(1) 법률상의 의료보험, 사회적인 간병보험(Pflegeversicherung), 법률상의 사고보험(Unfallversicherung)과 농업종사자들의 양로보험을 포함하는 법률상의 연금보험에 대한 연방직속 보험료부담자에게는, 특히 연방법을 토대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연방의 보증채무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면, 제111조만이 적용된다. 만일 단체나 노동조합의 회원이 연방회계검사원을 통한 심사대상에 해당된다면, 제1문에 언급된 사회보장보험자 단체와 노동조합에는 그 범형식과 상관없이 제111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 밖의 사회보장 분야의 단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률의 지침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연방직속 공법인의 범형식을 가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방의 참여정도와는 상관없이 제65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 그리고 제2항, 제

3항, 제4항, 제68조 제1항과 제69조를 적용한다. 제1문에서 언급된 기관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법인의 법형식을 가지는 기관인 경우에는 예산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제 53조와 제54조 그리고 제65조에서 제69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제 7 장 특별재산

### 제113조 【기본원칙】

다른 법규정 혹은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법규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연방의 특별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제1장에서 제4장, 제8장과 제9장을 적용한다. 연방회계검사원은 특별재산의 재정운영과 경제정책의 수행을 심사하는데, 이 경우 이 법률의 제5장이 적용된다.

## 제 8 장 책임면제

### 제114조 【책임면제】

- (1) 연방정부의 책임면제를 위해 연방재무부는 다음 회계연도가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 뿐 아니라 채무와 부채에 관해서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기본법 제114조 제1항). 연방회계검사원은 연방하원, 연방상원 그리고 연방정부에 직접 통지한다.
- (2) 연방하원은 연방상원의 입장표명을 고려하여 중요한 상황을 확인하고 취해야 할 방안을 결정한다.
- (3) 개별 상황들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연방회계검사원으로 반송될 수 있다.
- (4) 도입된 조치에 대해 연방정부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통지를 해야 할 시기는 연방하원이 정한다. 그 조치들이 기대되었던 결과로

독 일

이어지지 않는 한,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은 그 상황을 다시 심사할 수 있다.

(5) 연방하원 혹은 연방상원은 정해진 상황을 분명하게 거부할 수 있다.

## 제 9 장 경과규정과 결정규정

### 제115조 【공법상 의무 또는 관직관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들은 다른 공직 혹은 관직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48조는 연방의 최상급 법원의 법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116조 【최종결정】

(1) 연방재무부는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 밖의 다른 경우 이 법률이 연방재무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면, 관할 연방장관은 연방재무부의 조치에 대해 연방정부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재무부를 대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방정부가 연방재무부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하든가 혹은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을 한다면, 연방재무부는 이를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연방정부의 직무규정은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하고 있다.

(2) 연방을 위협하는 바로 임박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할 경우, 그러한 긴급상황으로 인해 제안된 조치가 제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전동의 또한 적시에 얻어질 수 없다면, 연방재무부의 사전동의를 예외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즉각 연방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7조 【베를린 약관】 해당대상이 없음

**제118조 【연방회계검사원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법의 개정】** 심사중

**제119조 【효력발생】**

- (1) 이 법률은 1970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된다.
- (2) 동시에 아래의 법들은 연방법으로서는 무효가 된다.
  1. 192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제국 예산에 관한 규정(제국법bl. II S.693)과 1930년 4월 14에 공포(公布)된 이 법의 제5장을 제외한 수정안
  2. 1934년 3월 24일에 제정된 상업능력의 육성과 개선을 위한 법률(제국법공보. S.235)
  3. 1950년 6월의 1949년을 회계연도로 하는 연방예산안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그리고 예산운용 및 연방행정의 영역에서의 임시결산심사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공보. S. 199)
  4. 연방회계검사원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와 제9조
  5. 1931년 10월 6에 제정된 경제와 재정의 안전을 위한 그리고 정치적인 권리침해의 극복(대항)을 위한 제국대통령의 제3차 법령(제국법공보. I S. 537/562), 제5부: 무역(상업)정책과 경제정책, 제8장
  6. 1933년 3월 30에 제정된 공공 단체의 경제경영(운영)에 대한 심사의무를 위한 규칙의 시행에 대한 법령(제국법공보. I S.180)
  7. 1940년 7월 5에 제정된 전시(戰時)의 결산보고와 결산심사에 대한 법령(제국법공보. II S. 139)
  8. 1942년 9월 22에 제정된 공공 기관의 경제 정책의 수행에 대한 심사의무에 관한 지침들의 실행을 위한 제8차 법령(제국법공보. I S. 563)

9. 제111조와 제112조 제2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연방직속 공 법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규칙들과 대립되는 정관(定款)규정 들은 제111조에 따라야 한다.

10. 제113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연방의 개별적인 특별재산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규칙들

더 나아가 연방의 개별적인 특별재산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법률 규칙들은 효력을 상실한다.

(3) 다른 법률들이 제2항에 따라 폐지된 규정들과 관련이 된다면, 이 법률의 규칙들이 대신 사용된다.

(4) (효력상실)

(5) 이 법률이 효력을 가진 후 5년 동안 연방의 회계는 제79조 제3 항에 설명된 관청들이 아닌 다른 관청에 남아있을 수 있다.

미 국

# 1921년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

## 제 7 장 감사원

### 제 1 절 정의 및 일반조직

**제701조 【정의】** 이 장에서

1. “기관”은 컬럼비아특별지구정부를 포함하며 입법부나 대법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세출”은 예산으로 승인된 금액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기금
  - 나. 세출 이전단계에 있어서 계약에 따른 부채를 부담할 수 있는 권한
  - 다. 부채나 지불변제를 위한 자금조성 권한

**제702조 【감사원】** ①감사원은 행정부와는 독립된 미국정부의 기구이다.

②감사원의 최고책임자는 감사원장이다. 감사원은 부원장을 둔다.

③감사원장은 감사원에서 사용할 문장(紋章)을 채택할 수 있다.

**제703조 【감사원장과 부원장】** ①1. 감사원장 및 부원장은 상원의 승인과 자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감사원장이나 부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에게 후임자를 추천한다.

동 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한다.

가. 하원 의장

나. 상원 임시의장

다. 상하 양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총무

라. 상원 정부활동위원회 및 하원 정부운영위원회의 각 위원장과 소수당의 각 수석 위원

마. 감사원 부원장이 궐위되었을 경우는 감사원장

3. 감사원장의 궐위로 인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3인이상의 후보를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 이상의 인원을 추천하도록 동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②감사원장의 임기는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부원장의 임기는 감사원장이 새로 임명되는 날에 만료된다. 다만, 부원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③감사원 부원장은

1. 감사원장이 지시한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고
2. 감사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궐위되었을 때 감사원장을 대리하여 근무한다.

④감사원장은 감사원장과 부원장이 모두 부재중이거나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궐위되었을 경우에 감사원장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

⑤1. 감사원장이나 부원장은 70세에 달하고 10년 근무를 마친 때에는 퇴직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면직된다.

가. 탄핵

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양원에서 통보와 청문을 거친 후에 공동결의를 한 경우

- (1) 신체적 불능
- (2) 무능력
- (3) 직무태만
- (4) 부정행위
- (5) 범죄 또는 비윤리적 행위

2. 감사원장 또는 부원장은 위 각호 1에 해당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 다시 임명될 수 없다.

⑥연간 기본보수율은

1. 감사원장은 간부직공무원 보수표의 2등급 상당의 연봉으로 한다.
2. 부원장은 간부직공무원 보수표 3등급 상당의 연봉으로 한다.

(참고) 미국의 간부직공무원 보수표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이며 1등급은 장관급, 2등급은 차관급, 3등급은 차관보급에 적용-번역자註

**제7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기관운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법률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감사원장에게도 적용된다.

②감사원장 또는 부원장이 문장(紋章)에 의하여 증명한 감사원 기록의 사본이나 기록 및 의사록의 등본은 법률 제28편 제17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본이나 등본과 같은 효력을 가진 증거로서 인정된다.

## 제 2 절 일반업무 및 권한

**제711조 【일반권한】** 감사원장은

1. 감사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2. 감사원장이 그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권한과 임무를 감사원 직원에게 위임하며
3. 감사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며
4. 감사 및 결산확인을 하는 경우에 증인에 대하여 선서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712조 【공금사용에 대한 조사】** 감사원장은

1. 수입, 지출 및 공금사용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하고
2. 일반세출법상 특정세출의 지출 제한규정을 이행함에 따른 미국 정부의 비용을 추산하며, 이와 함께 감사원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개선대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3. 공공자금이 경제적·능률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의회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 행정부처의 지출을 분석하며
4. 의회 또는 세입, 세출 및 지출을 감독하는 의회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5. 세입, 세출 및 지출을 감독하는 의회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제713조 【국세청과 주류담배무기국에 대한 감사】** ①감사원장은 감사원 규칙에 의하여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과 주류담배무기국을 감사한다. 이 조항에 의한 감사는 1986년도 국세법 제6406조에 의한 재무장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1. 이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세법 제6103조에 의한 범위 또는 적용한도 내에서

가. 환급에 관한 정보(국세법 제6103조 제2항에 정의된 바에 따라)를 감사원장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나. 국세청이나 주류담배무기국에서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기록을 감사원장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감사원장은 특정 납세자를 확인하고 국세청 또는 주류담배무기국의 환급, 환급통보, 기록이나 재산내용을 관장할 감사원직원의 직위와 성명을 매 6개월마다 고시하여야 한다. 그 임명장 또는 임명장의 공증사본을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상원 정부운영위원회, 하원 정부운영위원회, 양원 조세합동위원회, 국세청장 그리고 주류담배무기국장에게 송부한다.

3. 위 감사원직원은 법률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청이나 주류담배무기국이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록 또는 재산으로부터 획득한 특정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동 기록이나 재산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되는 직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714조 【재정기관조사위원회, 연방준비위원회, 연방준비은행, 연방저축보협공사 및 화폐통제국에 대한 감사】** ①이 조항에서 “기관”이란 재정기관조사위원회, 연방준비위원회, 연방준비은행, 연방저축보협공사, 화폐통제국을 의미한다.

②감사원장은 감사원규칙에 의하여 이들 기관을 감사한다. 그러나 해당기관이 문서로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보험은행이나 은행특수회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연방준비위원회나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감사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중앙은행, 외국정부 또는 공공국제금융기관 등과의 거래
2. 창구할인조작, 회원은행지불준비금, 증권신용, 예금이자율과 공개시장조작 등을 포함하는 통화정책에 관한 검토, 결정 또는 조치
3. 연방공개시장위원의 지시에 따른 거래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연방준비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토의 또는 대화내용의 일부분

③1. 감사원의 직원은 이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은행, 공개은행지주회사 또는 이들 공개·비공개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고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비공개은행 또는 비공개은행지주회사의 고객이 동 은행 또는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력을 가진 단체나 사람들과 관련있거나 연결된다고 감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원장은 이들 비공개은행이나 비공개은행지주회사의 고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감사원 직원은 고객,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들 기관의 직원과 논의할 수 있으며, 명백한 범죄행위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관련법의 집행 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3. 이 항은 어떤 기관의 임직원에게 정보획득 권한이 있는 각 의회위원회의 정보획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④1. 이 조항의 실행을 위하여 감사원장이 통계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표본조사보고서를 포함하여 기관에서 사용 또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록과 재산 그리고 보고와 관련된 감사조서와 통신문을 감사원장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원장은 감사원 직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신분확인을 거쳐 위 기록과 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명단을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이들 직원은 감사상 필요에 따라 복사 또는 기록을 할 수 있다. 해당기관은 감사원장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사무실과 비품, 전화 및 복사시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개 또는 비공개은행, 공개은행지주회사 또는 비공개은행지주회사의 고객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아니하는 감사원장의 감사조서의 일시적 유출을 제외하고는 감사원장의 감사조서, 감사기간 동안 보유했던 기록 및 재산은 모두 관계기관에 존치시켜야 한다. 감사원장은 이들 기록이나 재산에 대하여 인가되지 아니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15조 【컬럼비아특별지구정부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 ①감사원장은 컬럼비아특별지구자치정부및정부재조직법(공공법 93-198, 1988년도 법률 제803호) 제455조에 의하여 행하는 감사 이외에 매년 컬럼비아특별지구정부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원칙과,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감사원장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감사원장은 수행하여야 할 절차와 기록의 조사범위를 지시할 때에는 회계조직과 제도의 효과성, 내부감사 및 내부통제, 그리고 관련 행정관행 등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원칙을 고려한다.

②감사원장은 각각의 감사보고서를 의회 및 컬럼비아특별지구정부 의회와 시장에게 제출한다. 감사보고서는 감사범위, 의회와 지방정부의회 및 시장이 알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장이 판단하는 정보, 그리고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의안 등을 포함한다.

③1.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감사원의 건의안에 대하여 컬럼비아특별지구정부가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서면제출내용의 사본은 의회에 송부되어야 한다.

2. 지방의회는 시장의 검토보고서를 접수한 후에 동 의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자료와 함께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컬럼비아특별지구정부에서 사용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록과 재산을 감사원장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은 감사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한다.

**제716조 【정보의 제공 및 기록의 검사】** ①각 기관은 감사원이 그 기관의 임무, 권한, 활동, 조직 및 재무거래내용을 요구한 때에는 감사원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감사원장은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 이 항은 법률 제31편 제3524조 또는 제3526조 제5항에 의하여 행해진 지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1. 피감사기관의 자료가 적절한 기간내에 감사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원장은 그 기관의 장에게 서면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 요청서에는 자료를 조사하는 이유 및 조사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감사기관의 장은 위 요청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이 답변에는 그 자료를 미제출한 사유 및 기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감사원장이 2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통령, 관리예산처장, 법무장관, 피감사기관의 장 및 의회에 동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감사원장은 서면으로 지명한 변호사를 통하여 피감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자료를 작성하여 주도록 컬럼비아특별지구 미합중국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20일이 경과된 사실

나.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실

3. 법무장관은 피감사기관의 장을 대리할 수 있다. 동 법원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③1. 감사원장은 제4항의 조건에 따라 미국정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록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또는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자료소환장은 조사대상 기록내용 및 조사권한을 제시하고 감사원장의 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 감사원장은 자료소환장에 기재한 수신인에게 자료소환장 사본을 전달하거나 등기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수신인의 주사무소 또는 거주지 주소로 배달하고 개인에게 이 항 규정에 의한 자료소환장을 수령케 할 수 있다. 송달의 증명은 자료소환장 발송인의 발송방법이 기재된 확인서에 의하여 또는 자료소환장의 수령인의 회신용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한다.

2. 재판관할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거주하는 자가 제1호에 의하여 발부된 자료소환장에 불응하는 경우에 감사원장은 서면으로 지정된 변호사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그 관할 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 관할 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며 이 항에 의하여 법원의 명령에 불복중한 경우 법원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1. 감사원장은 다음 각 조건의 경우에 제2항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의한 자료소환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대통령이 해외첩보업무 또는 대적첩보업무로 분류한 활동에 대한 자료

나. 그 자료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1) 감사원장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조건없이 규정한 경우

(2) 감사원장에 대하여 열람할 수 없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한 경우

(3) 감사원장에 대하여 열람할 수 없는 자료의 특정유형을 규정한 경우

다. 대통령 또는 관리예산처장이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으로부터 보고서 제출이 있는 후 20일 이내에 감사원장 및 국회에 법률 제5편 제55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공개가 정부의 활동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경우

2. 대통령 또는 관리예산처장은 제1호 다목에 의한 증명을 위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 증명에서는 증명 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1. 감사원장은 이 조항에 따라 획득한 자료에 대하여 자료제출기관장에게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직원은 대상기관 직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료에 대한 무허가공표나 무단사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감사원장은 법률 제5편 제55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획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의 비밀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조항은 의회의 정보접근을 규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717조 【미국정부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평가】** ①이 조항에서 “기관”이란 미국정부의 행정부처, 청, 정부대행기관(혼합정부투자기업 제외) 또는 컬럼비아특별지구정부를 의미한다.

②감사원장은 다음의 경우에 기존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사업이나 활동의 결과를 평가한다.

1. 감사원장이 평가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2. 상원 또는 하원에서 평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동 사업이나 활동을 관장하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평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감사원장은 정부가 기존 법률에 의거 수행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의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④1. 감사원장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협조한다.

가. 입법목적과 성과평가에 대한 건의, 보고되어야 할 정보, 보고책임, 보고빈도 그리고 시험조사의 타당성 등이 포함된 평가 및 보고방법의 개발

나. 기관자체에서 작성한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2. 감사원장은 의회의원이 요청할 경우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료로서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상임위원회에 의하여 공표된 자료의 사본을 의회의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18조 【보고서안의 활용】** ①제714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감사에 대한 보고서안은 30일동안 내용검토를 위하여 재정기관조사위원회,

연방준비위원회, 연방저축보험공사 또는 화폐통제국에 송부되어야 한다.

②1. 감사원장은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안의 작성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고 좀더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당해 기관에서 검토를 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 감사원의 보고서는 당해 기관에서 검토 기간 내에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연될 수 없다.

2. 보고서안이 피감사기관의 검토를 위하여 송부된 때에는 감사원장은 아래 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보고서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상원이나 하원 위원회 또는 의회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상원이나 하원 위원회 또는 의회의원

나. 상원이나 하원 위원회 또는 의회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외에는 상원 정부활동위원회와 하원 정부운영위원회

3. 이 항은 분류된 정보와 자료의 보관 및 운용에 관한 법령과 행정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③감사원장의 최종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피감사기관의 보고서안 검토결과에 따라 당초의 감사적출사항, 결론, 건의에 있어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조서
2. 그 변경사유서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안이 송부된 경우에는 검토 기간 중에 제출된 기관의 서면검토서

**제719조 【감사원장 보고서】** ①감사원장은 의회의 정기회기초에 감사원의 사업실적을(그리고 대통령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에

계) 보고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는 다음사항에 대한 건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원장이 신속 정확한 회계처리와 결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
2. 감사원장이 수입, 지출 및 공금 사용과 관련하여 권고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1. 감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사항에 다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제717조 제3항에 의한 건의 및 제717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제731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활동내용의 검토

나. 가목 및 다목, 제7항 및 제8항 그리고 제717조, 제731조 제5항 제2호, 제734조, 제1112조 및 제1113조에 의한 감사원장의 업무와 권한의 수행에 관한 정보

다. 의회위원회에 파견 또는 특별임무가 부여된 감사원 직원의 성명, 동 위원회명, 파견 또는 특별임무 부여기간, 파견 또는 특별임무 부여의 종료 또는 계속 여부에 대한 보고, 종료된 파견 또는 특별임무 부여기간중 감사원장에게 지급된 경비

2. 감사원장은 정부공공지출에 대하여 경제성과 능률성 여부에 관한 건의내용을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서 또는 의회가 개최중인 경우에는 의회에 대한 특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감사원장은 의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

1. 대상기관의 위법 계약 또는 지출내용
2. 다음 사항의 적정성 및 효과성
  - 가. 대상기관의 계정 및 청구권에 대한 업무감사내용
  - 나. 기관별 그리고 회계공무원의 회계별 조사내용
3. 제713조 및 제714조에 따라 수행한 감사내용은 가능한 한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장은 매년 상원의 재무위원회 및 정부활동위원회, 하원의 세입위원회 및 정부운영위원회, 그리고 양원 합동조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보고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원장, 국세청장, 주류담배무기국장이 제7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사원장에게 제공된 환급 및 환급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제정한 절차와 요구사항
2. 제71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범위 및 주요사항
3. 감사원장이 제713조에 의거 행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결론 및 건의로서 비능률 또는 부적정 사항에 대한 중요사례 포함

⑤감사원장은 제7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행한 분석내용을 상원 정부활동위원회 및 세출위원회, 하원 정부운영위원회 및 세출위원회 그리고 각 행정부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법을 관장하고 있는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요청하는 비용과 회계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한다.

⑦감사원장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다음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상원 정부활동위원회 및 세출위원회
2. 하원 정부운영위원회 및 세출위원회
3. 미국 정부의 행정부처, 청, 정부대행기관(혼합정부투자기업 제외) 또는 컬럼비아특별지구정부의 활동이나 사업의 일부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의회 위원회
4. 사본을 요구하는 의회의 다른 모든 위원회

⑧1. 감사원장은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가. 매월 전월 기간동안 발행된 보고서의 목록
- 나. 매년 1회이상 지난 12개월 동안에 발행된 보고서의 목록

2. 각 보고서 목록의 사본은 의회 각 위원회 및 각 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감사원장은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서 사본을 각 위원회 또는 각 의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감사원장은 의회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다음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감사원장의 보고서에 대해서 위원회 또는 각 의원과 토의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소관 정부기관의 활동이나 사업의 평가
2. 제안된 법률안의 검토

**제720조 【피감사기관의 보고서】** ①이 조항에서 기관이란 미국정부의 행정부처, 청, 정부대행기관(다만, 혼합정부투자기업 제외) 또는 컬럼비아특별지구정부를 의미한다.

②감사원장이 기관장에 대한 건의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기관장은 건의안에 대한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동 서면보고 내용은 다음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1. 그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원 정부활동위원회 및 하원 정부운영위원회
2. 그 보고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제출된 1차 예산요청에 대하여는 상하원의 각 세출위원회

### 제 3 절 인 사

**제731조 【개요】** ①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원(부원장 제외)의 임명, 급여지급, 임무부여 또는 면직조치를 할 수 있다.

②감사원장은 법률 제5편 제5401조 제1항에 의한 성과급제를 수립하여 관련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③감사원 자문관의 기본보수율은 간부직공무원 보수표 4등급과 같  
이 한다.

④감사원장은 조직, 관리책임 또는 업무량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개 직책의 기본보수를 간부직공무원 보수표의 5등급 이  
내로 고정시킬 수 있다.

⑤감사원장은 법률 제5편 제5332조에 의한 일반공무원 18등급 일일  
요율의 최고한도 이내의 요율로 동 법률 제310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또는 자문회사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5명의 전문가 또는 자문회사를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고용하  
는 경우
2. 10명의 전문가 또는 자문회사를 제717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제719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부직공  
무원 봉급표상의 4등급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영구적으  
로나 일시적으로 또는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

**제732조 【인사관리제도】** ①감사원장은 인사관리제도를 수립 유지하  
여야 한다. 감사원장은 공청회를 공고하고 개최하여야만 이 제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감사원 직원이 동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표시를 했다는 사유로 보복이나 보복위협을 받지 아니한다.

②인사관리제도는

1. 법률 제5편 제2301조 제2항에 규정한 원칙을 포함하고
2. 법률 제5편 제2302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된 인사관행을 금하며
3. 법률 제5편 제73장 제3절에 의하여 금지한 정치적 행위를 금  
하고
4. 직원은 실적과 업무에의 적응성의 기준에 의해서만 임명, 승진  
또는 업무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5편에서 규정한 경쟁에 의한 직책의 경우 임명과 기타 인사행위를 규정하는 조항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미국공무원은 경쟁시험에 의한 방법 또는 경쟁시험이 아닌 비 경쟁적 방법으로 구분하여 채용됨-번역자註

5. 행정부처내에서 우대권이 주어지는 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범위와 방법으로 우대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6. 감사원장은 법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직원의 기본보수는 법률 제5편 제5301조 제1항과 일치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인사관리제도 아래에서

1. 감사원장은 감사원 직원의 기본보수표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제4호 및 제73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표에 의한 가장 높은 기본보수액은 일반공무원 15등급의 가장 높은 기본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733조 제1항 제3호 나목 또는 법률 제5편 제5349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원 직원의 기본보수는 일반공무원 보수표의 수준과 같도록, 그리고 같은 시기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감사원 직원의 보수표는 129개 직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본보수가 일반직공무원 18등급의 최고 보수를 넘지 않는 범위로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제733조에 규정한 감사원 상위관리직원의 직책수는 차감한다(제733조 제3항에 규정한 간부 직원단에 포함된 직책은 제외한다.).
5. 감사원 직원은 법률 제5편 제53장 제4절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등급과 기본보수 수령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④인사관리제도는

1. 감사원 직원에 대하여 법률 제5편 제4302조의 요건에 충족되도록 실적평가제도를 수립한다.

2. 감사원장은 법률 제5편 제4302조에 의하여 인사관리처장이 가진 책임과 동일하게 이 항에 의한 실적평가에 대하여 책임진다.
3. 실적평가의 부진으로 인하여 직원을 강등시키거나 면직시키는 사항은 법률 제5편 제4303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법률 제5편 제75장에 합치되는 기타 인사절차를 수립한다.
5. 제3호 및 제4호, 제5항 또는 제5항 제1호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고충처리절차를 수립한다.

⑤인사관리제도는

1. 각 직원으로 하여금 자유의사에 의하여 벌칙이나 다른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조직을 결성, 가입 또는 지원하거나 그 반대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2. 법률 제5편 제71장의 규정에 맞도록 노사관계 프로그램을 세워야 한다.

⑥1. 인사관리제도는

- 가. 직원이나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지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사활동은 인종, 피부색, 종교, 연령, 성별, 최초 국적, 정당성향, 결혼 여부, 신체장애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법률 제5편 제7201조에 일치하도록 소수민족 충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인종, 피부색, 종교, 연령, 성별, 당초 국적, 정당성향, 결혼여부 또는 신체장애 여부에 의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의하여 이 장의 이 절 및 제4절은 정부의 공무원 채용시 직원 또는 지원자의 권리나 구제절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직원 또는 지원자에 대하여  
가. 감사원 인사소청위원회는 행정부처의 감독 및 소청문제에 관하여 갖는 권한과 동등한 감독 및 소청문제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나. 감사원장은 행정부처에서(감독 및 소청문제를 제외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갖는 권한과 동등한 권한(감독 및 소청문제 제외)을 갖는다.

3. 이 조항은 우대조치로 평등고용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적 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고) 우대조치란 소수민족 차별 철폐 및 여성고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또는 계획 등을 말함-번역자註

⑦인사관리제도에 의한 근무협약에 따라 적어도 1년이상 계속 근무를 이행한 감사원의 직원은 경쟁시험을 요하는 직책에 합당한 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그 직책에 대한 직위 부여에 우선권을 가진다.

**제733조 【상위관리직 직원】** ①감사원장은 다음 요건에 맞는 감사원 상위관리직을 설정할 수 있다.

1. 법률 제5편 제3131조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2. 법률 제5편 제3132조 제1항 제2호에 일치하는 직위 요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3. 기본보수에 있어서
  - 가. 법률 제5편 제5382조에 의하 상위관리직 직원에 대한 최고 호봉 또는 최저호봉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 나. 법률 제5편 제53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위관리직 직원에게 적용되고 조정되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시기와 범위로 조정되어야 한다.
4. 법률 제5편 제43장 제2절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업적평가제도를 수립하고
5.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법률 제5편 제4507조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감사원 상위관리직 직원에게 서열을 부여하는 것을 허락하며
6. 법률 제5편 제3592조 규정에 따라 해고를 하거나 동법 제7543조에 의한 해고 또는 직무정지를 하도록 하고

7.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법률 제5편 제53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 상위관리직 직원에게 성과보상금 지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②감사원장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 제5편의 상위관리직 직원 또는 지원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을 감사원 상위관리직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③감사원 상위관리직에는 제731조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 제2호에 규정한 직책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제732조 제2항 제6호, 제3항,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 그리고 제5항은 감사원 상위관리직 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4조 【직원의 의회파견 및 업무수탁】** 감사원장은 1년 범위내에서 감사원 직원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시 근무형태로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업무수탁을 할 수 있다.

**제7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73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절과 제4절은 제702조 제2항, 제703조, 제731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772조, 제775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절과 제4절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736조 【세출의 승인】** 이 절 및 제4절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감사원장에게 배정할 수 있다.

#### 제 4 절 인사소청위원회

**제751조 【조직】** ①감사원에 인사소청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감사원장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전직 또는 현직 감사원 직원이 아닌 자
2. 위원회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 배경, 훈련 및 경험을 갖춘 자
3. 사건의 처리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적절한 방법으로 임할 수 있는 열의와 능력을 갖고 있는 자

② 감사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을 임명한다.

1. 인사문제에 관한 판결 및 재판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을 통하여(감사원장이 요구하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감사원장에게 추천된 후보자를 검토한 후
2. 감사원장이 감사원 직원을 대표하는 기관과, 제732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사관리제도를 관장하는 의회 각 위원회의 상임 위원장이 지명한 의원과 함께 상의한 후

③ 1.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위원은 재임명되지 아니한다. 임기만료전에 발생한 공석에 임명된 위원은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 재직한다. 다만 그 잔임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감사원장은 잔임기간에 5년을 더한 기간을 그 위원의 임기로 하여 임명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그 위원은 임기 후 6개월 또는 후임자의 임명시기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

2. 가. 1988년 감사원 개정인사법 시행일에 재직중인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1985년에 임명된 2인의 위원중 1인의 임기는 5년 그리고 다른 1인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2) 1986년에 임명된 2인의 위원중 1인의 임기는 6년 그리고 다른 1명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 (3) 1987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나. 위 가목에 규정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감사원장은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 (1) 가목 (1)과 관련하여 어느 위원을 5년 임기로 하고 어느 위원을 6년 임기로 할 것인지
- (2) 가목 (2)와 관련하여 어느 위원을 6년 임기로 하고 어느 위원을 7년 임기로 할 것인지

다. 이 항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책정된다.

- (1) 그 위원이 당초 임명된 일자로부터
- (2) 잔여임기동안 재직하기로 된 위원의 경우 당초 임기로 임명된 전임자의 임명일자로부터

④ 위원은 직무상 무능력, 직무태만,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동 위원회는 면직대상자를 제외한다.)의 다수결에 의하여 면직될 수 있다. 면직대상 위원이 청문기회에 대한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면직통지와 함께 위원회에서의 청문기회를 통지 받아야 한다.

⑤ 미국정부의 직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의 임무(여행포함)를 수행하는 동안 미국 일반직공무원 보수표상 18등급의 일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각 위원은 법률 제5편 제5703조에 의거 여행경비와 일비를 지급받게 된다.

**제752조 【의장 및 자문관】** ① 감사원 인사소청위원회는 위원중에서 1인을 의장으로 선출한다. 의장은 동 위원회의 최고책임자이며 관리권자가 된다.

② 1. 감사원장은 위원회의장이 선출한 사람을 동 위원회의 자문관으로 임명한다. 자문관은 의장의 지침에 따라 근무한다.

2. 의장은 자문관의 보수를 결정한다. 자문관의 기본연봉은 일반직공무원 보수표 6등급의 기본보수 최고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자문관은

가. 감사원 직원에 의하여 불법 인사행위가 발생 또는 존재하거나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73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금지된 인사관행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한다.

나. 제732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혐의사실을 조사한다.

다. 위원회나 위원회 위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라. 위원회로 하여금 그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도록 협력한다.

**제753조 【임무와 권한】** ①감사원 인사소청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정이나 징계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면직, 14일 이상의 직무정지, 감봉이나 강등, 또는 30일이내의 임시휴직 등에 대한 직원의 소청
2. 제73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된 인사관행
3. 제73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된 정치활동
4. 단체교섭을 위한 합법적인 노동자 단체의 결성
5. 단체교섭 대표의 선출 또는 확정
6. 제732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금지된 노동관행을 포함하여 제732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노사관계계획에 따라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
7. 제732조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된 차별에 관련된 행위
8. 감사원장이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결정한 감사원의 인사관련사항에 대한 문제점

②인사소청위원회는 각 위원 또는 위원단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동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내용을 재검토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 또는 위원단의 결정은 동 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간주한다.

③위원회는 자체의 주도아래 또는 일부 위원단의 동의를 있을 경우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임직원에 대하여 법률 제5편 제7701조 및 제7702조에 상응하는 소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2. 위원회의 운영절차에 관한 규정

**제754조 【감사원장에 의한 조치】** 감사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사원 인사소청위원회가 제7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한 조치를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제755조 【사법적 검토】** ①연방순회항고법원은 제75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최종결정을 검토할 수 있다. 법률 제28편 제158장은 청원자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검토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절에 규정한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법원의 판단이 다음과 같은 경우 당해 법원은 최종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1. 임의적이거나, 신뢰성의 결여, 차별대우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2. 규정된 절차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만일 직원 또는 직원이 되기 위한 지원자가 이 조항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다수당사자이거나 제732조 제6항에 의하여 금지된 차별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비용을 1964년 인권법 제706조 제1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제 5 절 연 금

### 제771조 【정의】 이 절에서

1. “부양자녀”라 함은 다음 요건을 갖춘 미혼 부양자녀(의붓자녀 또는 입양자녀를 포함)를 말한다.
  - 가. 18세 이하이거나
  - 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불구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다. 18세에서 22세로서 고교, 상업학교, 기술 또는 직원학교, 초급대학, 대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교육기관에서 거주자로서 연수를 받거나 전일학제에 등록된 학생이어야 한다. 22회 생일이 7월 1일 이전이거나 8월 31일 이후인 자로서 위의 학업 또는 훈련을 이수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 생일이 지난후의 7월 1일을 22세가 되는 날로 본다. 만일 학생으로서 학기중 5개월 이내의 휴학을 하는 경우 같은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서 휴학직후 학업을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감사원 자문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휴학기간 동안 계속 학생신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2. “생존 배우자”라 함은 감사원장 또는 퇴직한 감사원장이었던 자의 살아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며, 그 배우자는
  - 가. 감사원장이 사망하기 직전 최하 1년동안 그 사람과 결혼하고 있었거나
  - 나. 55세 이전까지 재혼하지 아니하고 그와 결혼하여 얻은 자녀의 현재 부모이어야 한다.
3. 감사원장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감사원장으로 재직할 연수 및 만기 월수와 같다.

**제772조 【감사원장의 연금】** ①임기를 완전히 마쳤거나 또는 이 법 제 70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퇴임하게 되는 감사원장은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시 또는 퇴임시의 보수에 상당하는 평생연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 받는다. 65세 이전에 임기만료된 감사원장의 연금은 65세 미만인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월 0.25%씩 감소된다.

②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수준의 평생연금을 받게 된다.

1. 감사원장으로 10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급여
2. 감사원장으로 10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급여액의 50%

③감사원장이 임명당시 법률 제5편 제83장 제3절 또는 제84장에 해당되어 왔거나 해당되는 경우 이 조항에 의한 연금을 받겠다는 선택을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위법 제83장 제3절 또는 제84장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 선택은 취소불가능하며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후 10년 6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기로 선택한 감사원장은 공무원 퇴직 및 장애기금에서 수령한 채권 총액을 감사원 계정에 상환한다.

④감사원장은 법률 제5편 제83장 제3절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기여금으로서 재무부에 잡수익항목으로 재납입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적립하도록 한다.

가. 만일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를 선택한 경우에는 제 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금액 이전 단계에 감사원장으로서 수령하는 봉급액의 3.5%와 적립되는 금액에 대하여 매 12월 31일마다 3% 복리이자액을 합한 금액

나. 만일 이 절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를 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으로서 수령하는

공제전 봉급액의 8%와 매 12월 31일마다 적립하는 금액에 대하여 3%의 복리이자액을 합한 금액

2. 감사원장이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가. 유족급여를 선택한 경우에는 감사원장으로서 받는 봉급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기여금으로서 공제한다.

나. 유족급여를 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원장으로서 받는 봉급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기여금으로서 공제한다.

⑤이 조항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감사원장은 미국 정부의 다른 법률에 의한 퇴직 또는 장애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773조 【유족급여】** ①감사원장은 유족급여를 받기 위하여 감사원장 보수와 연금을 감소시킬 것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임명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제772조 제3항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후 60일까지 선택하여야 한다.

②유족급여를 받기로 선택한 감사원장은

1. 감사원장 봉급의 4.5%에 상당하는 금액과 연금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며

2. 재무부에 잡수익으로 재납입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다음 금액을 적립시킨다.

가. 감사원장으로서 받는 공제된 연금 및 봉급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나. 의회의원으로 또는 제7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배우자의 연금에 가산 대상이 되는 다른 공무원으로서의 근무에 따른 기본보수의 4.5%

다. 적립금액에 대하여 1947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 4%, 1948년 1월 1일 이후의 경우 3%에 상당하는 연말부 연간복리이자

③이 절은 유족배우자나 부양자녀로 하여금 제774조에 의한 연금을 받는 동안 다른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774조에 의하여 계산된 근무시간을 다른 연금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유족급여 지급을 위하여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원장의 연금공제는 그 배우자가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에 종결된다.

**제774조 【유족연금】** ①이 조항에서

1. “군복무 산입기간”이라 함은 군복무기간이 다른 연금에 가산되어 있지 아니할 때 군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미국정부의 명령에 따라 민방위대에 근무한 기간 포함) 활동한 근무기간을 말한다.
2. “기타 전직근무 산입기간”이라 함은 제4항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연방정부 또는 컬럼비아특별지구정부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3. “의회직원”이란 법률 제5편 제2107조에 규정한 의미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②감사원장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1. 제773조에 따른 유족급여의 선택
2. 근무중 또는 제772조의 연금을 받는 동안 사망
3. 사망 당시 제1항과 제4항에 의하여 환산된 공직근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
4. 과거 공직기간 18개월동안 제773조에 의한 공제 또는 적립시

③만일 감사원장 또는 퇴임한 감사원장이 다음의 경우와 같은 유족이 있을 때는

1. 배우자만의 경우에는 그 유족배우자는 감사원장 또는 퇴임 감사원장이 사망한 날 또는 그 배우자가 50세에 달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된 연금을 받는다.
2.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제4항에 의한 연금을 즉시 받고, 부양자녀는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즉시 연금으로 받는다.
  - 가.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된 연평균 지급액의 10%
  - 나.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된 연평균 지급액의 20%를 부양자녀 수대로 나눈 금액
3. 부양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양자녀는 다음 금액중 적은 금액을 즉시 연금으로 받게 된다.
  - 가. 위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받게 될 연금액을 부양자녀수로 나눈 금액
  - 나.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된 연평균 지급액의 20%
  - 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된 연평균 지급액의 40%를 부양자녀수로 나눈 금액

④유족배우자의 연금은 다음 금액과 같다.

1. 연평균 급여(감사원장으로서 최고급여를 받은 3년간과 기타 전직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의 1.5%에 다음을 곱한 금액
  - 가. 다음의 근속연수
    - (1) 감사원장이나 의회의원으로서 근무한 연수
    - (2) 군복무 산입기간을 합산한 연수
  - 나. 의회직원으로서 근무산입기간이 15년을 넘지 아니한 기간
2. 그리고 제1호에 의하여 환산된 평균급여의 0.75%에 기타 허용된 산입기간 연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다.

⑤유족배우자의 연금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환산된 연평균 급여의 50%를 초과하거나 25%에 미달되어서는 아니된다. 만일 감

사원장이 제773조 제2항에 의한 적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유족배우자 연금은 미적립기간 동안 그 배우자가 유예하지 아니하기로 하지 않는 한 그 기간동안 유예된다. 그러나 그 연금은 감사원장 또는 퇴임감사원장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미납부 적립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소된다.

**제775조 【환급】** ①제772조에 의한 연금 수령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감사원장이 그 직에서 물러난 경우에는 제772조의 규정에 따라 봉급에서 공제된 금액 또는 연금기여금으로 적립한 금액에 매년 3%로 복리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②감사원장으로서 제77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선택하였으나 제77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수혜받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773조의 규정에 의한 봉급에서 공제하여 적립한 금액에 1947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하여는 4%, 1948년 1월 1일 이후에 대하여는 3%를 퇴임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여 산출한 복리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만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772조 및 제7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금액을 194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4%, 1948년 1월 1일 이후에는 3%에 해당하는 연간복리이자액을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으로서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 감사원장이 제774조에 의한 공직근무기간 5년이 완성되기 이전에 근무 중 사망하거나 공직근무기간 5년은 경과하였으나 제714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연금자격이 있는 부양자가 없는 경우
2. 만일 퇴직한 감사원장이 제77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연금자격이 있는 부양자가 없이 사망한 경우

④감사원장 또는 퇴임감사원장이 이 조항에 의한 환급이 있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환급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1. 감사원장 또는 퇴임감사원장이 서면으로 수익자를 지명하였고 그 지명이 감사원장이나 또는 퇴임감사원장이 사망하기 전에 감사원에 제출된 경우 그 수익자
2. 유족배우자
3. 자녀 또는 사망한 자녀의 후계자
4. 부모에게 각각 동등하게 또는 부모 한쪽만 생존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
5. 감사원장이나 퇴임감사원장의 재산관리인 또는 집행인
6. 감사원장 또는 퇴임감사원장의 사망 당시 거주지의 법률에 의거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감사원 자문관이 판단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

⑤자문관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유족배우자나 자녀를 결정할 때에는 제771조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⑥만일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개인들의 연금액이 제772조 및 제773조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에 1947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 4%, 1948년 1월 1일 이후의 경우 3%에 해당하는 사망시까지 복리이자액을 합한 금액과 동일한 경우 제4항에 의하여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제776조 【유족급여의 지급】** ①제774조에 의한 연금은 연금지급 개시월로부터 매월 첫 근무일에 지급된다.

②1. 유족배우자의 연금은 그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종결된다.

2. 부양자녀의 연금은 그 자녀가 18세(당시에 제771조 제1호 다목에 의한 학생 신분이 아닌 한)가 되거나 사망 또는 결혼 일자중에서 가장 먼저 도래하는 때에 종결된다. 그러나 만일 그 자녀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독립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회복하거나 결혼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 연금이 종결된다.

3. 만일 배우자는 사망하고 부양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부양자녀의 연금은 제77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된다.
  4. 어느 한 부양자녀의 연금이 종료하였을 때에 다른 부양자녀에 대한 연금은 연금 종료된 자녀가 없는 것으로 하여 재계산된다.
- ③유족연금은 종료되었으나 이미 권리로 부여된 연금이 미지급된 경우는
1. 사망 이외의 이유로서 미지급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고
  2.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 가. 각 개인의 재산관리인 또는 집행인
    - 나. 만일 재산관리인이나 집행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후 30일 이내에 감사원 자문관이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 자에게 지급된다.
- ④1. 제3항 제2호 나목 또는 제775조 제4항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연금 수령권의 회복을 주장할 수 없다.
2. 제773조 내지 제775조에 의한 급여는 법적 절차의 대상이 되거나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777조 【연금의 증액】** ①이 절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연금은 법률 제5편 제834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되는 연금비율과 같은 비율로 동시에 증가되어야 한다.

②제772조에 의한 연금은 감사원장의 기본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유족배우자의 연금은 제774조 제5항의 제한규정에 관계없이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증가된다.

**제778조 【유족 및 장애여부의 결정】** 감사원장의 자문관은 제773조 내지 제776조에 의거 부양여부, 장애여부 또는 무능력이면서 부양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최종적 효력을 갖는다.

**제779조 【세출의 사용】** 이 절에 규정한 연금 및 환급금은 감사원 세출예산에서 감사원장에 의하여 지출된다.

## 제 6 절 재산관리

**제781조 【감사원 건물에 대한 권한】** ①감사원장은 감사원 건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컬럼비아특별지구 441번지에 위치한 건물에 대하여 구역내 청사운용, 유지, 보호, 개조, 수선 및 공간배치 등 전적인 관리통제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관리통제권한은 감사원 건물내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류, 설비, 예비품, 도구에까지 적용된다.

감사원장은 감사원 건물의 구조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1959년도 공공건물법(미국법령집 제40-606호로 수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처장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②총무처장은 감사원장의 요청에 따라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감사원내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경찰의 제공,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또는 구내 보안 체계의 점검 등 필요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용역은 감사원장과 총무처장의 협의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다.

③1. 감사원장은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개정법률(미국법령집 제41-5호) 제3709조의 규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재산 또는 용역획득을 위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법적으로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

은 취득할 수 없다. 감사원장은 이 조에 의하여 허락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1984년 계약법상의 경쟁원리와 목적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2. 기금이 채무이행을 위하여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도·전기 등 기간설비를 위한 협정이나 계약을 10년 범위내에서 체결할 수 있다.
3. 감사원장은 이법 제33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이종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내의 협정이나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선금급, 용역진행독려 및 여타의 지출을 할 수 있다.

**제782조 【감사원건물내의 여유공간 임대】** 감사원장은 공공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법인, 개인 또는 미국정부의 원, 처 등의 기관에 감사원 건물내의 여유공간을 임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감사원장은 감사원 인근지역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비교가능한 여유공간의 일반거래요율에 상응하는 임대요율을 정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장은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사원 건물내의 강당, 회의실 및 거실을 문화, 교육 또는 여가활동(1976년 공공건물합동사용법 제105조에서 정의)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회사 또는 단체에 사용요율 및 조건 등을 정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감사원장은 감사원건물내 여유공간 활용을 위하여 총무처장과 협약하여야 하고 연방정부기관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여유공간 또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금은 선불하거나 후불할 수 있으며 특별계좌에 적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제한에 불구하고 연도별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감사원 건물의 운용, 유지관리, 보호, 개조 또는 수선을 위한 경비에 충당한다.

**제783조 【규칙 및 규정】** ①감사원장은 감사원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제2항의 범위내에서 동 규칙 및 규정에 벌칙규정을 부가할 수 있다. 그러한 규칙 및 규정은 연방재산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월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미국연방법전 제31편 자금과 재정  
정부기업(GOVERNMENT CORPORATIONS)  
정부기업통제법(Government Corporations Control Act)

31 U.S.C. §§ 9101~9110  
TITLE 31, SUBTITLE VI, CHAPTER 91

§ 9101.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부기업(Government corporation)”은 혼합 소유 정부기업과 완전 소유 정부기업을 의미한다.
- (2) “혼합소유 정부기업(mixed-ownership Government corporation)”은 다음과 같다.
  - (A) 협동조합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for Cooperatives)
  - (B)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C) 연방주택대출은행(the Federal Home Loan Banks)
  - (D) FICB(농민 또는 농산물판매업자의 생산 및 유통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설립된 은행 : the Federal Intermediate Credit Banks)
  - (E) 연방 토지 은행(the Federal Land Banks)
  - (F) the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Central Liquidity Facility
  - (G) 협동조합 지역은행(the Regional Banks for Cooperatives)

- (H) 1936년 농촌전화진흥법(the Rural Electrification Act of 1936, 7 U.S.C 950(a))의 제410조a에 의해 은행의 소유권, 관리 감독권, 경영권이 전환된 농촌 전화 은행(the Rural Telephone Bank)
  - (I) 금융공사(the Financing Corporation)
  - (J) 정리신탁공사(the Resolution Trust Corporation)
  - (K) 정리금융공사(the Resolution Funding Corporation)
- (3) “완전소유 정부기업(wholly owned Government corporation)”은 다음과 같다.
- (A) 상품금융공사(the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 (B) CDIF Fund(지역 개발 금융기관 펀드)
  - (C) 미국 수출입 은행(the Export-Import Bank of U.S)
  - (D) 연방 농산물 보험공사(the 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 (E) 연방 형무소 산업 법인(the Federal Prison Industries, Incorporated)
  - (F) 국가와 지역 서비스를 위한 공사(the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 (G) 정부저당금고(the 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 (H) 해외민간투자공사(the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 (I) Pennsylvania Avenue 개발 공사(the Pennsylvania Avenue Development Corporation)
  - (J) 연금투자이익보증공사(the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 (K) 1936년 농촌전화진흥법(the Rural Electrification Act of 1936, 7 U.S.C 950(a))의 제410조a에 의해 은행의 소유권, 관리 감독권, 경영권이 전환될 때까지의 농촌 전화 은행(the Rural Telephone Bank)
  - (L) Saint Lawrence 항로 개발 공사(the Saint Lawrence seaway Development Corporation)

- (M) 연방주택국의 기금과 관련하여 의무와 권한이 부여된 주택도시개발공사(the 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when carrying out duties and powers related to the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und)
- (N)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the Tennessee Valley Authority)
- (O) 삭제
- (P) 파나마 운하 위원회(the Panama Canal Commission)
- (Q) the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 9102. 【공사의 설립과 매수】**

기관(agency)은 미합중국 법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법령에 근거를 둔 기관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법인/회사/공사(corporation)를 설립하거나 매수할 수 있다.

**§ 9103. 【완전정부소유기업(wholly owned government corporation)의 예산】**

(a) 각각의 완전정부소유기업은 매 해 대통령에게 사업유형에 따른 예산안(a business-type budget)을 대통령이 법률에 의해 지정한 기한 안에 일정한 양식으로 준비, 제출하여야 한다.

(b) 각 완전정부소유기업에 관한 예산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1) 재무조건에 대한 견적서와 현재와 다음 회계연도 공사 사업설명서, 지난 회계연도 사업 운영 상황과 결과에 관한 설명서
- (2) 재무제표, 수입·지출 대조표, 자본금의 출처와 이용에 관한 일람표, 잔여금과 잉여금 분석표와 재무조건에 대한 부가적인 보고서와 자료, 주요 활동, 관리비용, 차용금액, 회계 연도 동안 국고로 환원될 미합중국 정부 자본금 수치, 자본 손실금 복구에 필요한 정부지출금 등 사업 운용에 관한 견적서를 포함한 공사의 계획서

- (3) 또한, 긴급상황과 비상시 등 기타 상황에서 공사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c) 대통령은 완전정부소유기업이 제출한 예산 프로그램(대통령에 의해 변경된)을 이 법 제1105장에 의거하여 제출된 예산안의 일부로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후, 대통령은 언제라도 공사의 예산 프로그램을 변경시킬 수 있다.

**§ 9104. 【완전정부소유기업의 예산에 관한 의회의 활동】**

- (a) 의회는
  - (1) 대통령이 제출한 완전정부소유기업의 예산 프로그램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법에 기초하여 필요한 할당량을 정하여야 한다.
  - (3) 경영과 행정상의 비용을 위한 공사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 (4) 자본의 상환과 배당금의 지급을 준비하여야 한다.
- (b) 이 조항은
  - (1) 완전 정부소유 기업이 다른 법에 근거하여 재정을 마련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2) 1933년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에 관한 법(16 U.S.C. 831y)의 제26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 (3) 회계연도의 제한 없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완전정부소유 기업의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9105. 【회계감사】**

- (a) (1) 정부 공사의 제무재표는 1978년 감찰감(Inspector General)법 또는 다른 연방법에 의해 임명된 공사 감찰관 또는 감찰관이 정한 외부 독립적인 감사관에 의해 감사를 받는다. 만약 감찰관이 없을 경우 공사의 장이 대신한다.

- (2) 이 항에 의한 감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부의 감사 기준과 일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3) 이하의 항(subsection)에서 요구하는 감사가 종료되면, 재무제표를 감사자는 공사의 장, 하원의 정부 운영 위원회(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의 의장, 상원의 정부 업무 위원회(the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of the Senate)의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미합중국의 감사원장(The Comptroller General)은

- (A) 감찰관 또는 외부 감사관에 의하여 세부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재무제표 감사를 재심사 할 수 있다.
- (B) 의회, 관리예산과의 장(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재무제표를 준비한 공사의 기관장에게 재심사의 결과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미합중국의 감사원장으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C) 감사원장의 재량 또는 의회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공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다.

이 단락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원장이 수행하는 감사는 이 조의 (1)호의 단락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른 감사를 대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감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감사원장은 재무제표를 준비한 기관의 감찰감과 상의를 하여야 한다.

- (5) 공사는 이 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원장 또는 감사원장이 지정한 자에 의해 이루어진 감사에 든 모든 비용을 미합중국 감사원장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여기서 걸어진 모든 배상금은 잡종금(miscellaneous receipts)으로 국고에 예치해야 한다.

(b) 미합중국 회계감사원장의 요구에 따라, 공사는 미합중국 감사원장에게 모든 장부, 계좌, 재무기록, 보고서, 과일, 근무기록지(workpaper), 공사의 소유재산 또는 이용재산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합

중국 감사원장의 감사관은 이 조항에 근거한 모든 감사 또는 재심사와 관련한 모든 필요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c) 이 조항에서 정하는 미합중국 감사원장의 행위는 기타 다른 법에 의해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공사의 재무거래 감사를 대신한다.

**§ 9106. 【경영보고서(Management reports)】**

(a)(1) 공사는 회계연도 마감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연간 경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하 경영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재무상태변동표

(B) 경영제표(a statement of operations)

(C) 현금흐름제표(a statement of cash flows)

(D) 공사의 예산 보고서에 대한 조정표(가능한 경우)

(E) 내부회계에 관한 보고서와 공사의 경영 관리자에 의한 행정 관리 시스템, 이는 경영자의 자금 투명화를 위한 연방법(Public Law 97-255) 개정에 정하고 있는 내부 회계와 경영관리시스템에 관한 기관 보고서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F) 본 장 제9105조에 의해 이루어진 공사의 재무제표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G) 기타 공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에 관하여 의회에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의견서와 보고서

(b) 공사는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대통령, 관리예산과의 장, 미합중국의 감사원장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9107. 【계정(Accounts)】**

(a) 감사원장의 승인이 있으면, 공사는 만약 현금이 법에 정해진 대로 사용되는 경우에 현금을 자신들의 계정에 합칠 수 있다.

(b) 재무장관은 공사의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keep the accounts). 만약 장관이 승인한 경우, 연방준비은행 또는 예탁(depositary)은행 또는 미합중국 정부의 재무대리인은 계정을 관리할 수 있다. 장관은 다음 조항의 요구사항을 보류할 수 있다.

(c)(1) 이 조 (b)항은 한 은행에서 50,00\$ 이하의 가계정(temporary accounts)의 유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조 (b)항은 공사가 정부 출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혼합소유 정부기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 (b)항은 연방중개신용은행(Federal Intermediate Credit Banks), 협동조합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Cooperatives), 협동조합 지역은행(the Regional Banks for Cooperatives), 또는 연방토지은행(the Federal Land Banks)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은행의 장들은 계정이 관리되고 있는 예탁(depositary) 명단을 매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연간보고서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문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대통령,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 9108. 【채권(Obligation)】

(a) 공사에 채권을 발행하고 민간(public)과 채권계약을 체결하기(offering obligation to the public) 이전에, 재무장관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채권양식(the form), 채권가액(denomination), 만기일(maturity), 이자율(interest rate), 조건(conditions)

(2) 채권 발행의 방식과 시점

(3) 채권 매각 가격

(b) 공사는 지시채권(direct obligation) 또는 원금, 이자, 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보장된 채권, 재무장관이 매각과 매수를 승인한 100.000\$

이상의 채권을 사거나 매각할 수 있다. 재무장관이 필요한 경우, 다음 조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류할 수 있다.

(c) 재무장관은 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 이 조항의 수행과 관련한 기관의 임직원을 지명할 수 있다.

(d)(1) 이 조항은 정부출연자금을 받지 않는 혼합소유 정부관계기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a)와 (b)항은 1936년 농촌전화진흥법(the Rural Electrification Act of 1936, 7 U.S.C 950(a))의 제410조a에 의해 은행의 소유권, 관리 감독권, 경영권이 전환된 농촌 전화 은행(the Rural Telephone Bank), 지역통화은행(the Rural Telephone Bank), FICB(농민 또는 농산물판매업자의 생산 및 유통자금수요를 커버하기 위하여 설립된 은행), 협동조합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for Cooperatives), 협동조합 지역은행(the Regional Banks for Cooperatives), 연방 토지 은행(the Federal Land Banks)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의 은행의 장들이 (a)와 (b)항에서 정하고 있는 종류의 행위를 하기 전에, 재무장관과 의논하여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무장관은 그 이유를 공사, 대통령, 의회에 문서로서 보고할 수 있다.

#### § 9109. 【완전정부소유기업의 예외】

대통령이 이득이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은 본 편의 제1105조의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예산과 관련하여 완전 정부 소유 정부기업이 본 편의 제11장에서 정하는 사유와 재정문제에 있어 제외되는 기관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건의가 의회에서 승인되면 공사는 제11장에서 정하는 사유와 회계연도의 승인 이후 회계연도 개시와 관련한 재정 문제들에 있어서 제외되는 기관으로 간주된다. 공사의 독립성/자주성(entity)은 이 조항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

§ 9110. **【정부가 지원하는 회사의 증권을 보유하는 예치기관에 대한 기준(Standard for depository institutions holding securities of a Government-sponsored corporation for customers)】**

(a) 재무장관은 증권거래법의 제3조 (a)항 (42)조의 (B)(C)목에서 정하고 있는 국채(obligation that are government securities)의 보호와 사용에 관한 기준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국채브로커(government securities broker) 또는 국채딜러(government securities dealer)가 아니고, 자기계좌(own account)가 아닌 고객 계좌의 신탁, 관리, 또는 그 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탁기관(depository institution)에만 적용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매매각 또는 매매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포함하여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적절하게 분리해야 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

(b) (a)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위반은 (12 U.S.C. 93(a) or (b)의) 현행제정법 제5239조 (a) 또는 (b)항, 미국연방예금보험법(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의 제8조 (b)항(c)항, 주택보유자대출법(Home Owners' Loan Act of 1933)의 제5조 (d)항(2)목 또는 (3)목, 국가주택법(National Housing Act)의 제407조 (e)항(f)항, 연방신용조합법(Federal Credit Union Act)의 제206조 (e)항(f)항에서 정하는 명령발포의 구성요건이 된다. 이와 같은 명령은 적합한 규제기관에 의한 수탁기관의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신용기관에 의해 연방적으로 보증된 신용기관의 차원에서 발포된다.

(c) 이 조문은 다른 법조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해당 기관들의 권한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영향을 끼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d) 재무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 규제하기에 앞서, 적정한 단속기관과 국가신용기관의 양쪽 측면에서 그 규칙과 기준이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재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로부터 특정 수탁기관을 제외시킬 수 있다.

(d)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는

- (1) “depository institution(수탁기관)”은 Federal Reserve Act의 제19조 (b)항(1)호 (a)의 (i)에서(vi)까지 정하는 기관, 외국은행의 기관 또는 외국은행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상업대출회사(국제 은행법에서 정의하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용어)를 의미한다.
- (2) “government securities broker(국채브로커)” 증권거래법의 제3조 (a)항(44)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 (3) “government securities dealer(국채딜러)”는 증권거래법의 제3조 (a)항(34)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 (4) “appropriate regulatory agency(적합한 규제기관)”는 증권거래법 제3조 (a)항(34)호(G)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미국연방법전 제31편 자금과 재정  
예산과정(THE BUDGET PROGRESS)  
제13장 세출예산(APPROPRIATION)

31 U.S.C. §§ 1301~1310  
TITLE 31, SUBTITLE II, CHAPTER 13

§ 1301. 【적용범위】

- (a) 세출예산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세출의 조성 목적이 되었던 대상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 (b) 세출의 재승인과 세출이 본래 조성되었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미사용 잔고(unexpended balance)의 전용은 새로운 충당으로 해석되고 간주되어야 한다. 미사용잔고는 전용한 금액까지 감축되어야 한다.
- (c) 정기적 연간 세출법에서의 세출은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영구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유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1) 만약 세출이 강, 항구, 등대, 공공건물 혹은 군대나 해병대에 지불할 금액인 경우
  - (2) 세출이 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회계연도 후에 유용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
- (d) 재무부로부터 세출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법을 해석하거나 혹은 세출금을 초과한 금액을 지불하는 계약을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그 법에서 세출

금이 조성된다고 혹은 이와 같은 계약이 형성된다고 특별하게 규정  
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다.

**§ 1302. 【세출승인액 결정】**

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출법에서 승인하고 있는  
세출 총액은 법이 각각의 규정에서 승인하고 있는 특정액이나 세  
(specific amounts or rates)를 합하여 산정한다.

**§ 1303. 【세출금 항목 변경 효과】**

법에 의하여 지불 가능토록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 대상 혹은 특별  
목적용을 위한 지출금(그리고, 관련 세출법에서 세출 아이টে을 위하여  
이전에 사용되었던 특정 항목에 의하여 이 법에서 언급된)은 특정  
항목이 향후 세출법으로부터 변경되거나 삭제된 경우에 이에 상응  
하는 세출 아이টে으로부터 조성될 수 있다.

**§ 1304. 【판결, 중재(awards), 합의】**

(a) 필요한 금액이 최종판결, 중재(awards), 합의 결과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세출된다. 그리고 판결에서 특정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법  
률에서 권한을 부여받으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자와 비용 역시  
세출된다.

- (1) 지불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않은 경우
- (2) 법무부장관이 지불을 보증한 경우
- (3) 재판, 중재, 합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불 가능하다.
  - (A) 제28절 2414조, 제2517조, 제2672조 혹은 제2677조에 의한 경우
  - (B) 본 절의 제3723조에 의한 경우
  - (C) 계약항소위원회의 판결에 의한 경우
  - (D) 기관의 세출금으로부터 지불 가능한 액수를 초과한 상태에  
서, 제10절 제2733조 혹은 제2734조, 제32절 제715조, 혹은

1958년 제정된 국가항공우주법(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42 U.S.C. 2473) 제203조에 의하여 충분히 근거 있는 요청에 대하여 지불하는 경우

(b)

(1) 이자는 다음의 경우 이 조항에 의하여 조성된 세출금으로부터 지불될 수 있다.

(A) 미 정부의 청원이나 항소를 재검토 한 후의 최종판결인 경우에만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거하고, 승인 위임(mandate of affirmance) 일자 전일 동안의 재무부장관의 판결문서 접수일 그 이후에만(지불될 수 있다.)

(B)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혹은 미 연방청구법원(Court of Federal Claims) 판결에 의거하고 승인 위임(mandate of affirmance) 일자 전일 동안의 재무부장관의 판결문서 접수일 그 이후에만(지불될 수 있다.)

(2) 연방대법원 재심 결과 본 조항 하에서 지불 가능한 이자는 판결에서 확정된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지불이 허가될 수 없다.

(c)

(1) 정부에 반하는 판결이나 합의는, 판결이나 합의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본 조항 및 제28절 제2414조, 제2517조 그리고 제2518[1]조 하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단 위의 계약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A) 육군 및 공군 복지지원(the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B) 해군 복지지원(the Navy Exchanges)

(C) 해병 복지지원(the Marine Corps Exchanges)

(D) 해안근위병 복지지원(the Coast Guard Exchanges)

(E) 우주항공행정단 지원협의(the Exchange Councils of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2) 본 계약을 형성하는 지원은 정부가 지불한 액에 대하여 정부에 상환하여야 한다.

**§ 1305. 【기타 영구 세출승인】**

필요한 금액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승인된다.

(1) 외국에서 사망하는 미국시민의 개인 추정 재산을 적정한 요구가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망자의 법적 대리인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2) 지불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하에서 공적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하여

(3) 미 법원에서 유기 혹은 해난(海難)사건으로 판결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지불금액의 지불을 위하여

(4) 제108조 하에서 주택 및 도시개발부 장관(the 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 의하여 보증 받은 채무의 이자를 지불하기 위하여 1974년 주택 및 사회 개발법(the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제108조 하에서 형성된 계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기 위하여

(5) 1975년 1월 이전에 금액이 승인되었으나, 그 금액이 세출되지 못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위하여 1949년 주택법 제103조 (b)에 의거하여 형성된 계약 하에서 요구되어지는 금액을 지불하기 위하여

(6) 건물건축 및 Smithsonian 기관의 운영비를 위하여 James Smithson의 유산으로부터 축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개정 법률(the Revised Statutes - 20 U.S.C. 54) 제5590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로 지급하기 위하여. 원조 주택에 대한 매년 기부

- (7) 1937년 개정 미 주택법(Housing Act - 42 U.S.C. 1437c) 제5조에서 형성된 계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학 기숙사 증여
- (8) 1950년 개정 주택법(12 U.S.C. 1749 et seq.) 제4절 하에서 형성된 계약에서 요구되는 금액을 지불하기 위하여. 전세 보충 프로그램
- (9) 1965년 개정 주택 및 도시개발법(Urban Development Act(12 U.S.C. 1701s)) 제101조 하에서 형성된 계약에서 요구되는 금액을 지불하기 위하여. 주택소유 및 전세 지원
- (10) 개정 국가 주택법(the National Housing Act - 12 U.S.C. 1715z, 1715z1) 제235조, 제236조 하에서 형성된 계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기 위하여

**§ 1306. 【외국 자산의 유용】**

(a) 일반규정

어떠한 기관이든지 그 기관을 위하여, 미국에 채무가 존재하거나 미국에 소유된 외국 자산(외화 포함)을 현 회계연도 기간동안 세출예산을 조성한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이와 같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거나 자산의 사용을 요구하는 법률의 집행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는 향후 그 기관의 해당 세출금으로부터 재무부에 상환을 할 경우에 가능하다.

(b) 상환요구의 예외규정

본 조(a)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 승인에 의하여 혹은 개인자산의 매각 결과로 얻은 자산은 이와 유사한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상환하지 않고도 법률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 1307. 【공공물 건축(Public building construction)】**

공공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승인된 금액은 공사가 완결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건물이 완공되고, 건물 건축 관련 잔존 채무들이 이행되고 나면, 잔고는(balances remaining) 곧바로 재무부에 귀속된다.

**§ 1308. 【전화 및 요금제 서비스】**

회계연도에 시작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종료하거나 일정 할당 기간에 시작하여 다음 할당기간에 종료하는 전화 및 각종 공과금납입대상(metered services)의 요금(가스, 전기, 수도, 스팀)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말에 세출이나 할당(allotment)에 반하여 부과될 수 있다.

**§ 1309. 【사회보장세】**

미 정부 관료 및 공무원들의 보수를 위하여 유용 가능토록 된 금액은 1986년 국제세협정(Internal Revenue Code - 26 U.S.C. 3101 et seq) 제21장 하에 고용주로서 기관에 부과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310. 【사설기관을 위한 세출예산】**

(a) 재무부장관은 사설기관을 위하여 기관의 세출 회계담당관에게 세출승인을 보증하여야 한다. 보증은 다음에 근거하여 경우 수행되어야 한다.

(1) 재무부

(2) 미 정부의 지정 금고(국립은행을 제외한)

(b) 다음과 같은 경우 회계담당관은 오로지 회계담당관의 체크로 세출승인의 지불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 지불대상인의 요구에 따라 지불 가능할 때

(2) 그 금액이 적용되는 특수한 목적을 언급하고 있을 때

(c)

- (1) 다음과 같은 경우 회계담당관은 체크에서 세출금 중 20달러 미만의 금액을 지불 할 수 있다.
  - (A) 회계담당관의 요구에 지불할 수 있을 때
  - (B) 적은 액수의 요청에 적용될 금액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
- (2) 회계담당관은 체크가 작성된 재무부 혹은 미 정부 지정국고에게 요청금액 중 보증된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목록은 각각의 요구자의 이름 및 요구액 그리고 그 종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미국연방법전 제31편 자금과 재정

### 제 2 장 예산과정(THE BUDGET PROGRESS)

#### 제11절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31 U.S.C. §§ 1101~1119  
TITLE 31, SUBTITLE II, CHAPTER 11

#### 제1101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기관(agency)”은 콜롬비아특별지구정부(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를 포함하나, 대법원이나 입법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세출승인(appropriations)”이라 함은 예산으로 승인된 금액을 의미하며 문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포함한다.
  - (A) 기금(fund)
  - (B) 세출 이전단계에 계약(합의; contract)에 따른 지출원인행위(obligations)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 (C) 그 밖에 지출원인행위나 지불변제를 위한 자금조성 권한

#### 제1102조 【회계연도】

재무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이다. 법규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에 출간되어야 할 수입액과 지출금(receipts and expenditures)의 계산결과는 회계연도 기간동안 공표되어야 한다.

### 제1103조 【예산상한】

의회는 위원회를 통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 예산 지출액이 그 해 정부 수입(receipt)을 초과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재확인하여야 한다.

### 제1104조 【대통령의 예산과 세출에 대한 권한】

(a) 대통령은 제1105조에 근거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과 제1107조에 의거하여 추가경정세출예산안(deficiency and supplemental appropriations)을 작성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세출예산안의 목적 및 조건을 기술하는 데 있어 가능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b) 본 장(chapter)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은 지출(expenditure)과 추계지출예산서(estimated expenditure)와 예산안(proposed appropriations) 및 세출승인요구안과 함께 제출된 보고서의(information submitted with the budget and proposed appropriations) 내용과 순서를 규정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예산안 및 세출승인요구안에 1950년 회계연도의 예산에 자료가 포함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및 인적 물적 관련 비용들에 대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단,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를 예산에 포함시키라는 요구는 양원의 세출위원회(the Committees on Appropriations of both Houses of Congress)의 공동 결정으로 철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회 위원회가 규정에서 근거하고 있는 양식에 의거하여 정보요구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c) 대통령이 예산형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출할 예산안상에 직전회계연도 예산항목을 나타내는 예산정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만 한다. 다만, 대통령은 상·하 양원 세출위원회와 예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만 예산안의 기능적 분류를 변경시킬 수 있다. 상·하 양원의 위원회는 그러한 모든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통지를 받는다.

(d) 대통령은 행정부(executive agencies)로 하여금 통계 정보의 편집·분석·편찬·배포를 확대 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예산처에 정보및규제사무국(Administrator for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in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장을 둔다.

(e)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은 대통령이 본 장(chapter)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부처의 기록들을 열람하고 조사할 수 있다.

#### **제1105조 【예산안의 내용 및 의회 제출】**

(a) 매 년 1월 첫째 월요일 혹은 그 이후 그러나 늦어도 매 년 2월 첫째 월요일까지 대통령은 다음 회계연도 연방정부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각의 예산(안)에는 예산교서(budget message), 요약본(summary) 및 다음과 같은 관련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정부의 활동과 기능에 관한 사항
- (2) 정부의 사업운영의 필요한 비용과 얻을 수 있는 성과물
- (3) 정보의 유형별 분류
- (4) 지출에 대한 개략적 정보와 세출승인안과의 조정
- (5) (b)항의 규정을 제외한 예산이 제출된 당해 회계연도와 그 이후 4년의 회계연도 기간 동안 정부를 지원하는데 불가피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추계지출금 및 세출승인안
- (6) 회계연도 및 그 이후 4년간의 예산에 대한 정부의 추계세입(estimated receipts).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하에 계산된다.
  - (A) 예산안 제출 당시 효력이 있는 법규
  - (B) 세입을 높이기 위한 예산안 신청(proposals in the budget)

- (7) 전 회계연도의 세출승인, 지출예산 및 세입
- (8) 당해 회계연도상의 세출승인, 지출예산 및 세입
- (9)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대차대조표(balanced statement)
  - (A) 전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서의 재무부의 재정상태
  - (B) 현(current)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서의 예상되는 재무부의 재정상태(estimated condition)
  - (C) 예산안에 대한 재정 신청들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점에서의 예상되는 재무부의 재정상태(estimated condition)
- (10) 국가(정부)채무에 관한 주요 정보
- (11) 정부의 재정상태 중, 대통령이 실질적 세부내역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부재정상태에 대한 재정관련 정보
- (12) 정부 활동이나 기능을 성립시켜 주거나 확대시킬 수 있는 법률에 의하여 예산안에 계상된 각각의 계획에 대하여
  - (A) 다음 회계연도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상된 세출승인 및 지출금액과
  - (B) 다음 회계연도 이후 4회계연도동안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출승인의 추계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 (13) 예산이 제출되어지는 회계연도에 대한 추가적인 추계지출금과 및 세출승인안에 대한 한도액
- (14) 당해년도 예상치 못했고, 불가피 했던 지출의 한도액
- (15) 1974년도 의회예산법(the Congressional Budget Act)의 제301조의 제a항 제1호 내지 제5호(2 U.S.C. 632 (a)(1)-(5))에 규정한 상업 각각에 대한 분류서
- (16) 1974년 제정된 현행 의회예산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the Congressional Budget Act, 2 U.S.C. 622 (a)(3))의 3(a)(3)) 다

음 회계연도조세지출예산의 규모. 다만, 현재 상황에서 예산안상의 계획을 집행할 때에는 그에 따라 변화되는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17) 직전 회계연도 세출승인법 상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승인이 수권되고 다음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세출수권이 있는 각 사업상의 증여·계약 및 기타 지불에 대한 다음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세출승인추계에 대한 정보
- (18) 상대적으로 불가피한 지출이 소요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액과 실제지출액의 비교자료(주요사업별 분류)
- (19) 직전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액과 실제 세입액의 비교자료 및 주요 세입원천별로 세입예산액과 실제 세입액의 비교자료
- (20) 제18호 및 제19호에서 비교된 개별 금액간의 차액에 대한 설명과 분석자료
- (21) 수평적 예산(horizontal budget)은 다음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 (A) 국가기상사업법 제5조(15 U.S.C. 2904)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상사업 및 기상학과 관련된 사업
  - (B) 각 기관의 사업의 특징과 세출승인액
  - (C) 추계목표와 재정소요
- (22) 예산권한, 예산수권안, 실제지출과 실제지출안 및 다음 각목에 따른 정보
  - (A) 기관(제101조)별 사업 및 임무단위로 표신한 국가재정수요에 대한 자세한 구조
  - (B) 사업 및 임무에 대한 자료
- (23) 1970년도에 제정된 직업안전과 건강에 관한 법률(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29 U.S.C. 651 et seq.)과 1977년 탄광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연방법률(the Federal Mine Safety and Health Act)에 따른 세출승인에 대한 개별 세출계정

- (24)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부투자기관(mixed-ownership corporation : 제9101조)에 의한 국고자금 회수에 대한 재무부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
- (25) 1978년 검찰법(the Inspector General Act of)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관과 관계되는 사업에 대한 개별 세출계정
- (26) 국가마약통제계획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고 국가마약통제국이 요구한 세출승인금액에 관한 사업별 설명서
- (27) 연방재정운영사무국(Office of Federal Financial Management)에서 요구하는 세출승인금액에 관한 사업별 설명서
- (28) 1999년 회계연도의 시작 당시, 제1115조에 규정에 따른 통합 예산에 대한 연방정부 성과 계획
- (29) 범죄방지신탁기금(the Violent Crime Reduction Trust Fund)에 관한 사업별 설명서
- (30) 1994년 제정된 연방인력구조조정법(the Federal Workforce Restructuring Act) 제5조에 규정에 부합하기 위하여 현재 기관별 정규직 직위규모와 감축계획
- (31) 대통령 직속 기관(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의 재정 담당책임자들이 요구하는 세출승인금액에 관한 사업별 설명서
- (32) 1985년에 제정된 균형예산 및 긴급재정적자통제법 제257조 (b)(2)(A)에서 규정된 기준선과 동법 제257조(b)(2)(C)에서 규정된 물품세(exercise taxes)를 확대하는 경우, 개별사업의 예산수권 및 지출액의 수준(규모)에 관한 보고서
- (33) 재무부의 범죄수사대감찰관(the Inspectors General Criminal Investigator Academy) 및 재무부 법의학연구소감찰관(Inspectors General Forensic Laboratory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대한 세출관련 사업별 세출계정

(b) 이 규정(a)(5)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예산에 입법부와 사법부의 추계된 지출계획 및 세출승인안은 매년 10월 16일 이전에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은 이를 수정 없이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c) 대통령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추계액(예산안 제출시의 현행 법률하에서)과 금번 회계연도말 세출총당에 사용도리 수 있는 자금추계액이 지출추계약보다 적은 경우,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상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d) 대통령이 예산을 제출할 경우 혹은 예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대통령은 예산이나 자료가 제출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당해 회계연도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

(1) 대통령은 1985년 1월 1일 이후부터 (a)항에 따라 전달된 각 예산안에 관련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의회에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 회계연도를 위한 동 보고서는 공·사 합동 자본투자사업 및 군사 자본투자사업으로 분류되는 주요사업을 위한 세출승인요구안 및 신규지출원인행위수권 및 실제지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는 상기한 두 가지 사업을 위한 세출승인요구안 및 지출원인행위수권 및 실제지출의 총 합계약에 대한 요약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공공자본투자나 군사본투자의 현재 서비스 수준의 추정치 및 5년 기간동안의 기준 년도 화폐가치(constant dollars)와 10년간의 당해 연도 화폐가치(current dollars)로 이와 같은 투자를 했을 경우 양자 중 높거나 낮은 수준의 추계서

(B) 10년 동안 각각의 주요한 프로그램 영역에서의 공공자본투

자 필요성에 대하여 표준 지표에 의거하여 가장 최근 시행한  
평가의 (사정) 분석 및 그 개요보고서

(C) 각각의 주요한 사업을 위한 추정 공공투자자금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정책현안들의 확인 및 분석

(D) 다음 중 각각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투자자본 필요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확인 및 분석(단, 열  
거한 사항에 국한되지 않음)

(i) 경제적 가정(economic assumptions)

(ii) 공학적 기준(engineering standards)

(iii) 경영 및 유지를 위한 지출의 추계(estimateds of spending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iv) 주 및 지방자치정부의 유사 투자지출의 추계(estimateds of  
expenditures for similar investments by State and local go-  
vernments)

(v) 이와 같은 투자로부터 파생된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한  
추계 및 서비스 용량의 추계(estimateds of demand for public  
services derived from such capital investments and estimateds  
of the service capacity of such investments.)

법에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연방의 재정지원이 이루어는 사업  
과 관련하여 이 목에 따라 요구되는 분석보고서의 한도까지,  
자료가 이용가능하다면 동보고서는 주 또는 주내의 주요대도시  
정부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한다.

(2)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세출승인, 신규지출원인행위, 또는  
실제 지출이 다년간에 걸쳐 서비스 및 기타 편익을 제공하지만  
제3호에 의하여 군사 자본투자로 분류되지 않는 실물자산의 건  
설·취득 및 복원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공·사 합동자본투자

로 분류하여야 하고 그 자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열거한 사항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A) 도로 또는 교량
  - (B) 공항과 항공 시설
  - (C) 대중교통시스템
  - (D) 폐수 처리 및 부대시설
  - (E) 수자원사업
  - (F) 병원
  - (G) 자원재활용시설
  - (H) 공공건물
  - (I) 우주 및 통신 시설
  - (J) 철도
  - (K) 연방지원주택건설사업(federally assisted housing)
- (3)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세출승인, 신규지출원인행위 또는 실제 지출이 다년간에 걸쳐 국가방위 및 안보를 위한 서비스나 이득을 창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실물자산의 건설, 취득, 복원 (construction, acquisition, or rehabilitation)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이를 군사 자본투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에는 군사기지, 주둔지, 군사시설 및 설비를 포함된다.
- (4) 공공 및 군 자금투자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기준과 가이드라인 또, 주요한 자금투자과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자금투자프로그램을 구별하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 및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과 협의를 거친 후에 관리예산국장(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 하에서 제출된 분석보고서는 그러한 기준과 지침에 대한 해설을 첨부하여야 한다.
- (5) 이 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A) “건축(construction)”이라 함은 디자인하는 것, 계획하는 것, 새로운 시설이나 장치를 건설하는 것, 기본 시설이나 장치를 건설하는 것, 기존 시설 및 장비를 확장하는 것, 현존하는 유적지 혹은 유적지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것, 이와 같은 시설이나 장치들을 위한 신규 및 대체장비의 설치를 포함한다.
  - (B) “취득(acquisition)”이라는 함은 구매, 리스, 무역, 기부 등으로 득한 토지, 부지, 장비, 구조물, 장치 혹은 주식의 운용을 포함한다.
  - (C) “복원(rehabilitation)”이라는 함은 현재의 시설 및 장치의 결함을 보정하여 사용연한을 연장하거나 효과성을 개선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하자보수 및 변환 또는 운용주식의 부분적 대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f) (a)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은 1985년 제정된 균형예산과긴급재정적자통제에관한법률(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의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g)
- (1) 관리예산국장(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이 조에 따라 연례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각 예산안상 개별 대상단위로서의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자문과 지원업무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 (A) (1)항에서의 (B)목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1)의 “자문 및 지원업무(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라 함은 비정부기구에 의하여 제공되어 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의미한다.
      - (i) 경영과 전문적 지원업무(Management and professional support services)

- (ii) 연구, 분석, 평가(Studies, analyses, and evaluations)
- (iii) 공학 및 기술적 업무(Engineering and technical services)
- (B) (1)에서, “자문 및 지원업무(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라 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i) 정형화·자동화된 자료처리와 의사전달업무가 자문 및 지원업무의 조달계약에 있어 주요부분이 아닐 경우의 의사전달업무
  - (ii) 브룩스 건축 및 기술법(the Brooks Architect-Engineers Act) (40 U.S.C. 541) 제901조에 명시된 건축적 및 기술업무
  - (iii) 기초 수학, 의학, 생물학, 물리학, 사회학, 심리학 및 기타 현상에 근거한 조사업무

**제1106조 【예산안 추계 보완 및 변경】**

- (a) 매년 7월 16일 이전에 대통령은 제1105조(a)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추가요약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요약서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다음 회계연도의
    - (A) 세출과 세입의 추계치의 실질적 변동사항 및 재평가
    - (B) 예산안 제출후 예산상 강제되는 중요한 지출원인행위
    - (C) 제1105조 (a)(8)과 (9)(B)와 (C)에 규정된 자료에 대한 최신 자료
    - (D)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방정부의 재정상태·지출원인행위·지출수요·기능별 예산 및 기능별 추계에 대한 최신의 추가적 정보에 대한 사항
  - (2) 예산이 제출된 회계연도 이후 4년간 앞으로 의무적 지출사업의 지출추계에 관한 정보
  - (3)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될 추계잔액의 장래 지출계획에 정보
- (b) 대통령은, 현재의 자료에 근거하고 필수적이며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매년 7월 16일 전에 요구되는 예산수권상의 변경에 대한 설명

서 및 예산이 제출되어지는(행정부 산하기관을 위하여 제안된 이전의 변경사항들을 포함하여) 회계연도 추정세입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제1105조(q)(1)-(14)와 (b)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가능한 한 근거가 되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7월 16일 이전에 제출된 설명서는 (a)(1)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c) 제1105조(a)항 및 제1105(f) 항의 내용은 이 조에 의하여 제출되는 추가요약서와 수정사항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07조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제출】**

대통령은, 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제정된 법률로 인하여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률로 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이 본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를 포함하여 제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총액이 당초 예산안에 포함되면 대통령이 본편 제1105조(C)에 의한 권고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이 조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108조 【세출승인요구안의 작성 및 제출】**

(a) 이 조에서의(하부규정인 (b)(1)과 (e)를 제외하고), “기관(agency)”은 연방정부의 부, 처, 산하기관을 의미한다.

(b)

- (1) 각 기관의 장은 대통령에게 각 기관의 세출승인요구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출승인요구안은 대통령이 정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준비되고 제출되어야 하고, 대통령이 정한 날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그 날까지 기관의 장이 요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기관의 세출승인요구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거나 예산안의 변경 또는 추가예산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기관의 세출승인요구안을 변경할 수 있다. 기관의 세출승인요구안은 대통령이 정하는 원가기준예산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그 원가기준예산은 기관을 운영 및 세출승인서의 과목을 구분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2) 행정부 산하 기관의 공무원등은, 오로지 기관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만, 대통령이나 의회에 기관의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수권입권 요구안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c) 각 기관장은 대통령에게 제출된 세출승인요구안에, 본편 제1501조와 부합하는 지출원인행위를 기재한 지출원인행위명세보고서 및 보고서와의 일치여부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기관장은 기록을 확인할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무원은 그 확인의무를 위임할 수 없고, 그 확인과 기록은 당해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1) 회계검사와 조정이 용이한 상태

(2) 회계검사와 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

(d) 실행 할 수 있는 한도에서 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주요기능이나 관련 부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임무를 위하여 기관의 예산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제공

(2) 기관 고유의 사업과 기관의 임무에 연계

(e) (f)의 규정을 제외하고 당해 기관의 공무원 등 의회 또는 의회위원회에 세출예산 추계서 및 요구안, 동 추계서 및 요구안상의 증액 요청 그리고 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f)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는 예산추계서, 예산요구안, 정보 및 입법권고안, 의회 청문회를 위하여 준비증언, 입법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과 관리예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위 정보에 관하여 주간통상위원회에 조건을 부과하거나 동 위원회와 의회 또는 의회위원회 위원간의 의사전달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g) 세출예산추계서에 대한 현장실지조사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동 비용의 사용은 의회의 세출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의한다.

#### 제1109조 【현 사업 및 활동 평가】

(a) 매년 1월 3일 이후 맞이하는 첫째 월요일에 혹은 그 이전에(1986년에는 2월 5일에 혹은 그 이전에), 대통령은 추정 예산지출 및 만약 미국정부의 사업활동들이 변화 없이 정책적으로 현 회계연도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음 회계연도동안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추정예산지출안과 제안된 예산권한을 의회 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기능 및 기관에 의한 예산권한과 지출”라는 제목의 예산 개요 테이블의 분류에 따른 주요 기능 혹은 부수 기능에 의한, 기관에 의한,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의한, 추정예산지출액 및 제안된 예산권한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나 실질적 경제성장, 실업률 프로그램, 담당건수, 임금상승 등 예산지출이나 예산 권한이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경제 가설(economic assumption) 및 사업 가설(program assumption)에 대한 문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b) 공동경제위원회(The Joint Economic Committee)는 추정예산지출액 및 제시된 예산권한을 검토하고 예산지출 및 예산권한의 경제적 평가서를 매년 3월 1일 이전에 양원의 예산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0조 【수권입법의 조기요청】**

신규예산권한에 회계연도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의 요청서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그 전 해의 3월 16일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신규 사업이나 활동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11조 【경제성 및 효율성의 개선】**

미국정부의 경제성장과 효율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은 아래의 사항들을 행하여야 한다.

- (1) 대통령은 각 기관에 대하여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변경사항들을 선정하고, 그 변경사항들에 대한 권고안의 의회제출
  - (A) 기관의 조직, 활동, 그리고 수업수행방법
  - (B) 기관 세출승인
  - (C) 특정사업에 대한 활동의 할당
  - (D) 업무의 재판
- (2) 정부의 행정부 산하기관의 행정 조직, 기능조정, 운영에 대한 개선계획의 평가 및 개발

**제1112조 【회계, 예산, 사업정보】**

- (a) 이 조에서 “기관(agency)”은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미국 정부의 부처, 기관, 및 대행기관을 의미한다.
- (b) 감사원장과 협력하여, 재무부장관과 관리예산국장(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은 정부 수요와 실질적인 범위 내에서의 주 및 자치정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사용할 회계, 예산, 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정부시스템 및 표준 데이터 프로세싱을 설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c) 감사원장은

- (1) 재무부장관, 관리예산국장, 의회예산국장과 협력하여 정부의 회계, 예산, 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기간 및 분류의 표준(기준) (standard terms and classifications)을 설정·유지하고 출간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회계정책, 수입, 지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기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2)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기간 및 분류에 대하여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의 행정산하기관에 의한 기간 및 분류의 표준(기준)(standard terms and classifications)의 설정, 유지,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법을 입법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 (3) 본 조의 내용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 양원의 세출및예산에관한위원회(Committees on Appropriations and on the Budget of both Houses of Congress), 의회세입위원회(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of the House), 상원재정위원회(the Committee on Finance of the Senate), 의회예산국(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필요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d) 기관들은 국회에 회계, 예산 및 프로그램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의 (c)(1) 규정하에 발행된 이러한 표준 용어 및 표준분류(standard terms and classifications)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대통령과 협의를 함에 있어서, 각 행정 기관의 장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을 이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예산과 회계 분류(accounting classification)의 일치
- (2) 이러한 분류와 조직의 구조 사이의 조화(synchronization between those classification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 (3) 예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활동 및 사업비용에 대하여 조직단위로 제공된 자료

(f) 의회예산처장, 감사원장 및 주·지방자치정부의 대표들과 협의하여, 관리예산국장은 필요한 범위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원조로서 수령한 그들의 예산에 대한 충격을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판단하는데 필요한 회계, 예산, 프로그램 정보를 주 및 지방자치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13조 【의회의 정보】

(a)

(1) 세입과 세출을 소관으로 하는 의회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은 위원회에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의회 위원회로부터 요구되어질 경우, 검찰국에 의하여 원래 요구되어졌던 세출승인예산액과 관련정보는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b) 의회 위원회에 요구에 따라, 감사원장, 의회 예산국장이나 재무부장관, 관리예산국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소재 및 이용가능한 재정·예산 및 사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위 재정·예산 및 사업정보에 관한 요약표의 작성과 위원회·회계검사원장 및 의회예산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관련정보의 작성

(3) 집행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수행된 사업평가서의 제공

(c) 의회예산국장, 재무부장관, 그리고 관리예산국장 및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재의 재정·예산 및 사업정보에 관한 목록 및 그 정보체계의 구축·유지와 동 목록 및 정보체계 내용의 요약

- (2) 요청이 있는 경우, 의회의 위원회와 위원이 목록상의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지원
- (3) 요청이 있는 경우, 의회의 위원회와 위원이 목록상의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실행가능한 한도에서의 지원
- (d) 감사원장과 의회예산국장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까지,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의회가 회계, 예산 및 프로그램 정보를 본 타이틀 본 조 및 제717조, 제1112조 하에서 수행한 회계, 예산 및 프로그램 정보를 위하여 제시한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 정보 파일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이 파일은 예산요구, 의회의 지출원인행위, 지출 권한, 할당금 예비비 활동(reserve actions), 세출금과 지출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감사원장과 의회예산국장은 파일 및 파일의 색인을 유지하여 위원회 위원들과 의회 기관들이 이 정보 검색하고 통신 장비를 통하여 파일 및 색인을 사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e)
  - (1) 감사원장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 (A) 본 타이틀의 본 조 및 제1112조 하에서 수행하는 회계, 예산, 프로그램 정보에 관한 위원회 및 국회위원들의 요구를 확인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수행
    - (B) 의회 위원회 필수적 정보 취득에 대한 지원
    - (C) 의회 및 위원회의 반복적으로 보고되어지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
    - (D) 변경사항과 개선사항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불필요한 보고를 없애기 위하여, 감사원장에 의하여 확인된 정보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구서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 변경사항과 개선사항들을 의회 및 위원회에 권고

- (2) 매년 9월 2일 이전에 감사원장은 의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A) 본 조 (1)(A)하에서 정보수요의 확인
  - (B) 기존의 보고요청과 위 정보수요와의 관계
  - (C) 확인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재 미국정부의 행정부 산하기관에 의하여 보고되는 범위의 변동
  - (E) 활동, 경과, 그리고 본 조의 (1)(B)-(D) 하에서 수행되는 감사원장의 프로그램의 결과
  - (F) 전 연도 행정부서의 경과
- (3) 매년 3월 2일 이전에 관리예산국장과 재무부장관은 의회에 본 조의(1)(A)하에서 확인된 요구의 충족을 위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의회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분류에 대하여 가할 시행계획
  - (B) 전년도 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
  - (C) 기본 정보분류기준의 사용

**제1114조 【Pub. L. 103-355, title II, § 2454(c)(2), Oct. 13, 1994, 108 Stat. 3326】**

자문 서비스에 대한 예산정보에 관한 Section, Pub. L. 97-258, Sept. 13, 1982, 96 Stat. 916, 규정의 삭제

**제1115조 【성과 계획】**

(a) 제1105조 (a)(29),[1]의 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관리예산국장은, 각 기관의 예산에서 설명한 각각의 프로그램 활동을 다루는 연간성

과(performance) 계획을 준비 할 것을 각 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계획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프로그램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질 성과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성과 목표의 설정
  - (2) 하부규정(b)에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이상, 객관적이고 계량적이며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이러한 목적들을 표현
  - (3) 운영과정, 기능 및 기술, 인적 물적 자원, 정보, 혹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기타 정보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
  - (4) 확실한 결과물, 서비스 수준, 각 프로그램 활동의 결과물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성과 척도의 설정
  - (5) 설정된 성과 목표와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결과와의 비교에 대한 근거의 제공
  - (6) 측정된 가치를 증명하고 확인하는데 사용될 방법들에 대한 설명
- (b) 만약 기관이 관리예산국의 자문을 받은 후, 특정 프로그램 활동의 성과목표를 객관적이고 계량적이며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관리예산국장은 대안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다음 사항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A)

(i) 효과가 가장 미미한 프로그램

(ii) 성공적인 프로그램

(B) 관리예산국장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부여받은 대안이며, 그 기재사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그것이 정확하고 독립적인 판단할 수 있는 기간

- (2) 성과목표를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정해진 양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거나 실용적이지 못한지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한다.
- (c) 본 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관은, 프로그램들을 모으거나 통합하는 것이 그 기관의 주요 기능이나 운영을 구축하는 프로그램활동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빠뜨리거나 축소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으거나 분산시키거나 혹은 통합할 수 있다.
- (d) 기관은 매년 성과 계획과 함께 그 성과 계획의 특정분야에 대한 부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그러한 성과 계획의 특정분야는 행정부에 의하여 수립된 기준 하에서 국가안보나 국제정책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 (2) 그러한 성과 계획은 행정부의 지시와 같은 사항에 따라 분류된다.
- (e) 본 조의 기능과 역할은 정부의 고유한 기능으로 여겨져야 한다. 본 조에 근거한 성과 계획의 초안은 오로지 연방 공직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f) 본 조와 제1116조에서 제1119조 및 제9703조 및 제9704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기관(agency)”은 제5타이틀 제306조(f)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과 동일한 의미이다.
  - (2) “결과 측정(outcome measure)”은 프로그램활동을 의도된 목적과 비교하여 나온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 (3) “산출물 측정(output measure)”은 도식화, 계산, 혹은 활동 및 노력에 대한 기록을 의미하고, 양적이거나 질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4) “성과목표(performance goal)”는 실제의 성과가 비교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측량 가능한 대상으로 표현되는 성과의 목표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상은 양적인 기준, 가치, 비용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목적을 포함한다.
- (5) “성과 척도(performance indicator)”는 결과나 산출물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특정 가치나 성격을 의미한다.
- (6) “프로그램 활동(program activity)”은 프로그램에 등재되어 있는 특별한 활동이나 프로젝트 그리고 미국 정부의 매년 예산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의미한다.
- (7) “프로그램 평가(program evaluation)”는 객관적인 평가 및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연방프로그램이 의도했던 사항들을 이론 방법과 정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116조 【프로그램 성과 보고서】**

(a) 기관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150일 이내에 각 기관의 장은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프로그램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

- (1) 각각의 프로그램 성과 보고서는, 그해 회계연도의 계획상에 나타난 성과 목표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 낸 프로그램 실행결과와 함께, 제1115조 하에서 작성된 기관의 성과 계획에서 성립된 성과 표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2) 성과 목표가 제1115조 (b)규정 하에서 대안적인 방식으로 설명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결과는 이와 같은 설명과 연관지어서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는 성과가 최소한의 효과를 거두는 프로그램의 기준 혹은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하였는지 여부를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c) 2000년 회계연도 기간의 보고서는 전 회계연도의 실제적인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2001년 회계연도 기간의 보고서는 2년간의 회계연도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2002년 회계연도의 보고서 및 그 이후의 모든 보고서는 3년간의 회계연도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d)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회계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2) 보고서에 나타난 성과목표를 통해 얻어진 성과와 관련된 현 회계연도의 성과계획을 평가해야 한다.

(3) 성과 목표가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설명 및 기술(프로그램활동의 성과가 제1115조 (b)(1)(A)(ii) 규정에 성공적인 프로그램 활동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지거나, 다른 대안적인 양식이 사용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성과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진 경우)

(A)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B) 수립된 성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및 일정

(C) 성과 목표가 실용적이지 못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 및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추천

(4) 제9703조[1] 하에서 공시된 성과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의 평가 및 사용에 대한 설명하여야 한다.

(5) 보고서에 나타난 회계연도 기간동안 완성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 개요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6) 보고서에 의한 회계연도에 완성된 프로그램 평가의 요약본을 포함한다.

(e)

(1) (2)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 프로그램 성과 보고서는 보고서에 포함된 성과 데이터(performance data)의 완성도 및 신

뢰도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행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성과보고서의 완성도 및 신뢰도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족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이 취할 수 있거나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성과 보고내용이 제3516조 하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 대신에 제3516조에서의 요구사항들이 적용된다.

(f) 기능과 역할들은 정부의 고유한 기능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성과 계획의 기초작업은 오로지 연방 공직자들에 의하여만 행하여 질 수 있다.

#### **제1117조 【면제】**

관리예산국장은, 매년 지출이 약 20,000,000달러가 되거나 이보다 작은 비용을 지출하는 기관들이 본 타이틀의 제1115조 및 제1116조 그리고 제5타이틀 제306조의 규정하에서 요구하는 요구들로부터 면제된다.

#### **제1118조 【성과 목적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a) 관리예산국장은 각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최소한 10개 이상의 기관을 1994년, 1995년, 1996년의 회계연도 동안 성과 측정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대상기관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선정된 기관은 프로그램 성과를 보고하고 측정하는 데 있어 정부 기능 및 능력의 대표 범주(representative range)를 반영하여야 한다.

(b) 선정된 기관들이 수행하게 될 파일럿 프로젝트는 제1115조에서 요구한 성과 계획의 준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관의 가장 중요한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제1116조 및 제1116조 중 (c)의 규정에서 요구한 프로그램 보고서의 준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c) 1997년 5월 1일까지, 관리예산국장은 대통령 및 국회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파일럿 대상 기관들에 의하여 준비된 정부성과및측정결과에 관한 법(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의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계획서와 보고서들의 손익 및 계획의 유용성 평가
- (2) 파일럿 대상기관들이 이러한 계획들과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경험한 중대한 문제점들의 확정
- (3) 1993년 정부성과및측정결과에 관한 법률, 표제5 제306조, 제1105조, 제1115조, 제1117조, 제1119조 및 본 타이틀의 9703[1] 및 본 조항의 규정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권고한 변경사항들에 대한 설명

#### **제1119조 【성과예산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

- (a) 관리예산국장은, 각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1998년 및 1999년의 회계연도 기간동안의 성과예산에 있어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관을 최소한 5개 기관 이상 지명하여야 한다. 최소한 세 개의 기관은 제1118조의 규정 하에서 파일럿 프로젝트의 수행기관으로 지명된 기관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성과를 보고하고 측정하는 정부의 기능 및 능력의 대표 범위를 반영하여야 한다.
- (b) 지정된 기관들의 파일럿 프로젝트는 성과예산의 준비에 대하여 다루어야 한다. 이와 같은 예산은, 기관의 가장 중요한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기능 및 운영 다양한 수준의 성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른 예산금으로부터 나온 결과물과 관련 성과가 포함된다.
- (c) 관리예산국장은 1999년 회계연도 동안 제1105조의 규정 하에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대체적 예산 증여로서 이번 회계연도 동안 지정된 기관의 성과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d) 2001년 3월 31일까지 관리예산국장은 대통령 및 의회에 파일럿 프로젝트 성과 예산의 보고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한다.

- (1) 제1105조 하에 제출되는 매년 예산의 일부분으로서 성과예산의 포함 가능성 및 타당성
  - (2) 파일럿 대상기관들이 성과예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맞이하게 될 문제점들에 대한 설명
  - (3) 성과 예산이 제안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입법화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 및 일반 입법 규정들에 대한 추천
  - (4) 본 타이틀의 9703[1], 제1105조, 제1106조, 제1107조 및 1993년의 정부성과및측정결과에관한법률 표제5 제306조의 다른 요구사항들에 있어서의 제안된 변경사항의 설명
- (e) (d)에서 요구한 보고서를 수령한 후에 의회는 성과예산이 제1105조 규정 하에서 제출된 연간 예산의 일부로서 제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미국연방법전 제2편 의회  
제20장 예산적자를 제거하기 위한 긴급권한  
(EMERGENCY POWERS TO ELI-  
MINATE BUDGET DEFICITS)  
제1절 최대적자액을 초과하는 적자의 제거

2 U.S.C. §§ 900~909  
TITLE 2, CHAPTER 20, SUBCHAPTER I

**§ 900. 【삭감을 통한 예산 집행에 대한 총칙; 정의】**

(a) [생략]

(b) 삭감을 통한 예산 집행에 대한 통칙

이 부분은 [2 U.S.C. §900 이하] 하원 공동결의84(제105회기, 일차 개회)에서 요구한 예산 집행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공개].

(c) 이 부분에서 사용된 바에 따른 용어의 정의[2 U.S.C. §900 이하]

(1) “예산권한(budget authority),” “신규예산권한,” “총경비,”와 “적자”라 함은 1984년 의회예산 및 압수 조정법 제3조[2 U.S.C. §622]에서 정의된 바와 같으며 “재량적 지출 한도”라 함은 제251장[2 U.S.C. §901]에 규정된 바와 같다.

(2) “삭감하다”와 “삭감”이라 함은 재량적 세출예산 또는 직접 지출법에 규정된 예산자원(budgetary resources)의 취소를 지칭 또는 의미한다.

(3) “위반”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그 해의 신규예산권한 또는 총경비(재량적 세출예산의 대상이 되는 각 범주내의)가 각

범주에 있어서 그 해의 신규예산권한 또는 총경비에 부과된 재량적 지출한도를 초과함을 말한다.

(4)

(A) “범주(category)”라 함은 251(c)[2 U.S.C. §901(c)]의 재량적 세출예산배정의 하위집합을 말한다. 각 범주의 재량적 세출예산배정은 1997년 균형예산법에 대한 회의보고서에 첨부된 공동 설명서에 서술된 바와 같다. 새로운 계정 또는 활동은 하원 및 상원의 예산세출위원회가 협의한 이후에 범주로 인정된다. 그 협의는 가능한 경우 관련 위원회가 새로운 계정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공식조치를 하기 전에 의사표시를 할 기회를 갖기 위해 관련 위원회와 서면 의사소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B) “고속도로 범주(highway category)”라 함은 the Safe, Accountable, Flexible, Efficient Equity Act: A Legacy for Users에 명시된 계약권한(contract authority)에 부과된 채무 한도규정에 저축되는 다음의 예산계정 또는 그 일부분을 말한다.

- (i) 69-8083-0-7-410 (연방지원 고속도로)
- (ii) 69-8020-0-7-410 (고속도로 교통안전 지원금)
- (iii) 69-8048-0-7-410 (전국 자동차 운반차 안전 프로그램)
- (iv) 69-8016-0-7-410 (운영과 연구 NHTSA)
- (v) 69-8362-0-7-410 (전국 운전자 등록부)
- (vi) 69-8159-0-7-410 (자동차 운반차 안전 운영 및 프로그램)
- (vii) 06-8158-0-7-410 (자동차 운반차 안전 지원금)

(C) 대중교통범주

“대중교통범주”라 함은 the Safe, Accountable, Flexible, Efficient Equity Act: A Legacy for Users에 명시된 계약권한(contract au-

thority)에 부과된 채무한도규정에 저촉되거나 그 법에 따라 세출이 배정된 다음의 예산계정, 또는 그 일부분을 말한다.

- (i) 69-1120-0-1-401 (행정비용)
- (ii) 69-1134-0-1-401 (자본 투자 지원금)
- (iii) 69-8191-0-7-401 (재량적 지원금 )
- (iv) 69-1129-0-1-401 (공식적 지원금)
- (v) 69-1127-0-1-401 (각 주간의 교통 환승 지원금 - 통과)
- (vi) 69-1125-0-1-401 (직장 접근 및 역방향 통근)
- (vii) 06-1122-0-1-401 (기타 효력만료 계정)
- (viii) 06-1122-0-1-401 (연구, 훈련 및 인력자원)
- (ix) 06-8350-0-7-401 (신용기금 분담비용)
- (x) 06-1137-0-1-401 (통과 계획 및 연구)
- (xi) 06-1136-0-1-401 (대학교 교통 연구)
- (xii) 06-1128-0-1-401 (워싱턴 수도권 지역 교통청)

(D) 특례

- (i) 어느 한 예산연도에 있어서 251(c)[2 U.S.C. §901(c)]에 명시된 재량적 지출한도를 초과하여 지출된 조정 후 고속도로 또는 대중교통 범주 총경비는 비방위 범주 총경비 또는 재량적 범주 총경비로 간주된다.
- (ii) 한 회계연도에 세출예산법(an appropriation Act)에 규정된 고속도로 또는 대중교통 범주 계정의 채무한도가 21세기 교통형평법 제8103조[2 U.S.C. §901 각주]에 명시된 그 회계연도의 조정 후 채무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회계연도 다음 4년 동안 각 회계연도(“이후연도(outyear)”라고 함)에 그러한 초과채무로 인해 발생하는 총경비는 아래의 (iii)에 따라 계산하여 그 회계연도 다음 4년 동안의 각 해당 회계연도(이후연도 outyear)의 재량적 범주에 귀속시킨다.

- (iii) 위 (ii)의 목적상, 초과채무로 인한 추산 총경비는 기준선 (baseline)에서 그 범주의 지출율(the spendout rates)의 평균 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 (E) “보전 지출 범주”라 함은 토지, 서식지, 야생동물 및 기타 자연 자원을 보전 또는 보호하거나 여가 활동 기회제공, 그리고 연관된 목적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배정한 아래의 예산 계정 또는 그 일부에 열거된 보전활동을 위한 재량적 세출예산 배정을 말한다.
  - (i) 14-5033 토지 관리 취득청
  - (ii) 14-5020 어류 및 야생동물 사업 토지취득
  - (iii) 14-5035 국립공원사업토지취득 및 각 주 지원
  - (iv) 12-9923 산림지 사업 토지취득
  - (v) 14-5143 어류 및 야생동물 사업 협동조합 멸종위기 종 보 전기금
  - (vi) 14-5241 어류 및 야생동물 사업 복미 습지 보전 기금
  - (vii) 14-1694 어류 및 야생동물 사업 각 주 야생동물 지원금
  - (viii) 14-0804 미국지질학회 조사 연구, 각주 합동계획프로그램: 지역사회/연방 정보제휴, 도시 활성화 및 자원관리결정 지원
  - (ix) 12-1105 산림지 사업 각 주 및 사유 산림지, 산림지 물려 주기 프로그램, 도시 및 지역사회 산림지, 올바른 육성 프 로그램
  - (x) 14-1031 국립공원서비스 도시공원 및 여가 원기회복 프로 그램
  - (xi) 14-5140 국립공원서비스 사적 보전기금
  - (xii) 청소년 보전 회사(Youth Conservation Corps.)
  - (xiii) 14-1114 토지관리 세금 대체 납부금 관리국

- (xiv) 연방 사회기반시설 개선
- (xv) 13-1460 NOAA 구매 취득 및 건설, 국립해양 보호구역 및 국립 강하구 지역 연구보전 시스템
- (xvi) 13-1450 NOAA 운영, 연구, 시설물, 연안지역 관리법 프로그램, 국립 해양보호구역, 국립 강하구 지역 연구보전 시스템 및 연안복구프로그램
- (xvii) 13-1451 NOAA 태평양 연안 연어 구조
- (F) “연방 및 각 주 토지 및 수자원 보전 기금 하위범주”라 함은 (E)(i) 내지 (E)(iv) 또는 그 중 일부분에 있는 계정들에 기술된 활동들을 위한 재량적 세출예산배정을 말한다.
- (G) “각 주 및 기타 보전 하위범주”라 함은 (E)(ix) 또는 그 일부분에 기술된 도시 및 지역사회 산림지를 제외한 (E)(v) 내지 (E)(ix) 또는 그 일부분 계정들에 기술된 활동들을 위한 재량적 세출예산배정을 말한다.
- (H) “도시 및 역사적 보전 유지 하위범주”라 함은 (E)(ix) 또는 그 일부분에 기술된 산림지 물려주기 및 올바른 육성을 위한 연합을 제외한 (E)(ix) 내지 (E)(xii) 계정에 기술된 활동들을 위한 재량적 세출예산배정을 말한다.
- (I) “세금 대체 납부금 하위범주”라 함은 (E)(xiii) 또는 그 일부분 계정에 기술된 활동들을 위한 재량적 세출예산배정을 말한다.
- (J) “연방 이연 관리 하위범주”라 함은 (E)(xiv) 또는 그 일부분 계정에 기술된 활동들을 위한 재량적 세출예산배정을 말한다.
- (K) “연안 지원 하위범주”라 함은 (E)(xv)-(E)(xvii) 또는 그 일부분 계정에 기술된 활동들을 위한 재량적 세출예산배정을 말한다.
- (5) “기준선”이라 함은 신규예산권한, 총경비, 수입액, 흑자 및 적자에 관하여 현행연도(current year) 수준을 예산연도(the budget

- year) 및 다음 4년 동안의 회계연도(“이후연도 outyear”)로 투사예측(section 257[2 U.S.C. §907]에 기술되어 있음)한 것을 말한다.
- (6) “예산재원(budgetary resources)”이라 함은 신규예산권한, 비 채무(unobligated) 예산잔액, 직접지출권한 및 채무한도를 말한다.
- (7) “재량적 세출예산배정”이라 함은 세출예산배정법에 규정된 예산재원(직접지출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은 제외)을 말한다.
- (8) “직접지출”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A) 세출예산법 외 다른 법에 규정된 예산권한
  - (B) 권리성 권한(entitlement authority) 및
  - (C) 무료급식쿠폰(food stamp) 프로그램
- (9) “현행(current)”이라 함은 U.S.C. 제31편 1105(a)에 의거한 예산안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한 관리 및 예산사무국장(OMB) 세입세출예산(OMB estimates)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가정과 일치하는 세입세출예산(the estimates)을 말하고, 이때 제출되지 않고 예산제출 후에 이루어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제출된 대통령 예산안의 경제적 기술적 가정과 일치하는 세입세출예산을 말한다.
- (10) 한 회계연도에서 “실질경제성장”이라 함은 물가상승률 조정 후, 통상부 정의에 따른 한 회계연도 동안의 국민총생산증가를 말한다.
- (11) “계정”이라 함은 세출예산법에서 세출예산배정이 이루어진 항목을 말하고 세출예산법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대통령 예산안에서 예산계정증명코드번호가 지정된 항목을 말한다.
- (12) “예산연도(the budget year)”라 함은 의회회기와 관련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10월 1일에 시작되는 정부회계연도를 말한다.
- (13) “현행연도”라 함은 한 예산연도와 관련하여 그 예산연도의 바로 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

- (14) “이후연도(outyear)”라 함은 한 예산연도와 관련하여 그 예산연도 다음 4년간의 각 회계연도를 말한다.
- (15) “OMB”이라 함은 관리 및 예산사무국 국장을 말한다.
- (16) “CBO”라 함은 의회예산사무국 국장을 말한다.
- (17) 이 부분[2 U.S.C. §900 이하]에 사용된 바와 같이 권리성 권한에 대한 모든 언급은 1997년 균형예산법에 대한 회의보고서에 첨부된 관리자들과의 공동 설명서에 포함된 강제적세출예산배정(mandatory appropriations) 목록을 포함한다.
- (18) “예금보험”이라 함은 현행 세입세출예산 하에서 유효한 예금보험보장의무의 전액 및 지속적인 자원지급을 위한 연방예금보험기관들 및 피보험예금기관을 감독하는 기타 연방기관들의 비용을 지칭한다.
- (19) “자산공매”라 함은 미국이 그 전부 또는 일부분을 소유하는 실물 또는 금융 자산(1974년 의회예산법 Title 5[2 U.S.C. §661 이하]에서 다루고 있는 자산은 제외)을 일반대중에 공매하는 것을 말한다.

**§ 901. 【재량적 지출한도에 대한 집행】**

[주의: 본 조는 §275(b) Act Dec.12, 1985, P.L. 99-177에 따라 2 U.S.C §900 각주에 표시한 바와 같이 2002년 9월 30일자로 효력을 상실함]

(a) 집행

(1) 삭감

의회가 회기를 끝내고 정회한 후 15일 이내로 제252조, 제253조 [2 U.S.C §902, §903]에 준한 삭감이 있는 당일(삭감이 있는 경우)에, 각 범주에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 예산연도 위반을 제거하기 위한 삭감을 한다.

(2) 위반(breach)의 제거

한 범주 내의 각 비 면제 계정의 액수를 감하는 데 그 금액은 그 시점에서 그 계정에서 삭감할 수 있는 예산재원(budgetary re-

sources)의 기준선 수준(baseline level)과 그 범주에서 발생한 위반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일정비율(uniform percentage)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dollar amount)이다. 256(e)[2 U.S.C §906(e)]에 명시된 보건프로그램은 2%이상 감하지 않아야 하며 대신 그 위반을 제거하기 충분한 수준으로 본 항에 언급된 다른 프로그램들에 적용되는 일정비율을 상향조정(필요한 경우)한다. 만약 한 범주 내에서 신규예산권한 및 총경비 모두가 재량적 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A) 우선, 신규예산권한의 위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일정비율을 계산하고
- (B) 그 다음, 총경비에 위반이 잔존할 경우, 그 위반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일정비율을 상향조정한다.

(3) 군속(military personnel)

대통령이 255(f)[2 U.S.C §905(f)]에 준하여 군속에 대하여 삭감을 면제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051번 하위기능범주내의 각 계정(255(f)[2 U.S.C §905(f)]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군속 계정은 제외)을 추가로 감소한다. 그 감소액은 그 시점 그 계정에서 비면제 예산재원의 입안 수준(the enacted level of non-exempt budgetary resources)과, 위의 대통령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군속계정에서 감소되지 못하게 된 총경비의 금액을 상계하는 데 필요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4) 부분연도(part-year) 세출예산배정

위 (1)항에 규정된 일자에 어느 예산계정과 관련하여 한 회계연도의 일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법이 새롭게 효력이 발생하고 있거나, 계속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2)항, (3)항에 준하여 그 계정에서 삭감 하도록 계산된 금액은 다음에서 차감한다.

(A) 연총액 혹은 (the annualized amount) 그 세출예산배정 또는 후속 부분연도 세출예산배정에 의하여 법적으로 그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B) 그 계정에 대하여 전체회계연도기준 세출예산배정이 입안된 경우 그 금액 또는 전체회계연도에 세출예산배정 되었을 금액

(5) 소급 검토(look-back)

현재 진행 중인 회계연도에서 어느 한 범주와 관련하여, 그 연도 상에 위반(그 범주 내의 삭감금액을 고려한 후)을 야기하는 예산배정이 6월 30일 이후에 입안된 경우에는, 그 위반액수 또는 액수들을 그 다음 회계연도 분으로 책정된 그 범주의 재량적 지출한도에서 감소시킨다.

(6) 회기 내 삭감

어떤 범주에 있어서 진행 중인 회계연도(a fiscal year in progress) 상의 위반발생(그 범주 내에서 있었던 모든 이전 삭감 액수를 고려한 후)을 야기하는 예산배정이 입안된 경우에는 (의회가 그 예산연도(that budget year)를 위한 회기를 끝내고 정회한 후 그리고 그 회계 연도(that fiscal year)의 7월 1일이 시작하기 전), 그로부터 15일 이후 (2)항 내지 (4)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그 범주 내의 위반을 제거하는 삭감을 한다.

(7) 세입세출예산(Estimates)

(A) 의회예산사무장(이하 “CBO”라 함)의 세입세출예산

의회의 재량적 세출예산배정입안이 끝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CBO는 하원 및 상원 예산 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리 및 예산사무국 국장(이하 “OMB”라 함)에게 그 배정입안에 규정된 바와 같은 현행연도(적용사항이 있는 경우) 및 예산연도의 예산권한과 총경비를 통고 한다. (역자 주: 예산연도(budget year)

는 § 900 (c)(12)에, 현행연도(current year)는 § 900 (c)(13)에 정의됨, 예산연도는 현행연도의 다음해로 10월 1일에 시작.)

(B) OMB는 하원 및 상원에 CBO의 세입세출예산 및 차액 설명 재량적 세출예산배정을 입안한 후 7일 이내에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그 법을 위한 CBO의 세입세출예산 (CBO estimates)을 담고 있는 보고서, 그 법에 규정된 현행연도(적용사항이 있는 경우) 및 예산연도의 재량적 신규예산권한의 액수와 총경비에 대한 OMB의 세입세출예산(OMB estimates) 및 위 2개의 세입세출예산의 차이를 설명한다. OMB는 보고서 준비중에 OMB와 CBO간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차이에 대하여 하원 및 상원의 예산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에는 가능한 한도내에서 보고서의 발표이전에 예산위원회에 의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서면의 사교환을 포함한다.

(C) 가정 및 지침

본 항에서의 OMB의 세입세출예산은 현재의(current) 경제 기술적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역자 주: current는 § 900 (c)(9)에 정의됨.) OMB는 본 항에 따라서 의회에 통보되는 OMB세입세출예산을 사용한다. OMB와 CBO는 하원 및 상원의 예산위원회, OMB 및 CBO 간의 협의 후에 결정되는 scorekeeping 지침을 따라 본 항의 세입세출예산을 준비한다.

(D) 연간 세출예산배정

본 항의 목적상, 연간 세출예산배정금액은 이전에 입안된 법에 의하여 자금이 배정된 계정들에 대한 현행연도(적용사항이 있는 경우)와 예산연도를 위한 신규예산권한 및 총경비를 포함한다.

## (b) 재량적 지출한도 조정

## (1) 사전검토 보고

## (A) 개념 및 정의

U.S.C. 제31편 제1105조에 준하여 대통령이 예산을 제출하면 OMB는 계산을 하여야 하며 그 예산은 예산연도와 이후연도(outyear)의 재량적 지출한도(한도들은 누적적으로 조정됨)에 대한 개념 및 정의들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조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변경들은 최신의 개념과 정의를 사용한 신규예산권한 및 총경비를 기준으로 한 수준들에서, 변경 이전에 유효했던 개념과 정의들을 사용한 수준들을 차감한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변경은 하원 및 상원의 예산위원회 및 세출예산배정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협의는 이러한 변경에 관한 공식 행위를 하기 전에 예산위원회에 의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인 서면의사교환을 포함한다.

## (B) 고속도로 지출과 수입을 조율하기 위한 조정

(i) 대통령이 U.S.C. 제31편 제1105조에 준하여 예산을 제출하면 OMB는 계산을 하여야하며 예산은 (ii)(I)(cc)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예산연도와 각 이후연도(outyear)의 고속도로 범주에 대한 조정을 포함한다.

## (ii)

## (I)

(aa) OMB는 현행연도 직전 연도의 고속도로의 실제수입에서 아래의 (II)의 고속도로 수입의 추산 수준과 그 연도에 대하여 (bb)에 따라 이미 계산되어 있는 금액의 합산을 차감한다.

(bb) OMB는 예산연도의 고속도로 수입의 현 추산액(current estimate of receipts)에서 그 예산 연도 수입의 추산 수준(estimated level of receipts)을 차감한다.

(cc) OMB는 (aa) 및 (bb)에 따라 계산된 총 금액의 합계에, 21세기를 위한 교통형평법 제8103조에 명시된 예산연도의 고속도로범주의 채무액을 합산하고, 현 추산액(역자 주: current estimates의 current는 § 900 (c)(9)에 정의됨)을 사용한 예산연도와 각 이후연도의 금액과 비교하여 그 채무 변경에서 비롯한 경비 변경을 계산한다. 위와 같이 계산을 한 뒤, OMB는 (aa) 및 (bb)에 따라 계산된 금액들의 합계를 더함으로써, 예산연도에 관하여 위 조(제8103조)에 명시된 채무액을 조정한다.

(II) 이 조목(clause (ii))의 목적상 고속도로 수입의 추산 수준은

(aa) 2005년 회계연도, \$ 31,562,000,000

(bb) 2006년 회계연도, \$ 33,712,000,000

(cc) 2007년 회계연도, \$ 34,623,000,000

(dd) 2008년 회계연도, \$ 35,449,000,000

(ee) 2009년 회계연도, \$ 136,220,000,000 및

(III) 본 조목(clause (ii))에서 “고속도로 수입”이라 함은 고속도로신탁자금이 라고 하는 고속도로계정의 대변에 가입하는 정부수입을 말한다.

(C) 위 (B)가 요구하는 조정 외에 U.S.C. 제31장의 제1105조에 준하여 대통령이 회계연도들 [연도] 2007년, 2008년 또는 2009년도에 대하여 예산을 제출하면 OMB는 계산을 하여야 하며 예산은 예산연도와 각 이후연도에 대하여 고속도로 및 대중교통범주 총경비 한도에 대한 아래와 동일한 액수의 조정을 포함한다.

(i) (D)에 의거한 현 기술적 가정을 사용한 조정후의 추산액과 일치하는 채무수준들을 가정하고 계산한 적용대상 범주의 총경비, 여기서 아래 총경비를 차감함

(ii) (D)의 추산액에 명시된 적용대상 범주의 총경비

(D)

(i) OMB와 CBO가 2006년 회계연도의 최종삭감 보고서를 제출할시 그 보고서는 현 가정들을 사용한 the Safe, Accountable, Flexible,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A Legacy for Users using current assumption 제8003조에 명시된 수준의 채무에 기인하는 2007년 내지 2010년 회계 연도의 각 범주들의 총경비 추산액을 포함한다.

(ii) U.S.C. 제31편 제110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2007년, 2008년, 2009년 또는 2010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예산을 제출하면 OMB는 (B)와 (C)에 의한 조정으로 (i)조목에서 이루어진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한다.

(E) OMB는 예산위원회와 협의하고 (B)와 (C)에 의한 조정을 사전검토보고서에 포함한다.

(2) 삭감 보고서들

OMB가 한 회계연도에 254(e), (f), 또는 (g)[2 U.S.C §904(e), (f), 또는 (g)]에 의거한 삭감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계산을 하여야 하며 U.S.C. 제31편 1105(a)항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제출한 삭감 보고서 및 후속예산은 그 회계연도와 각 후속연도에 대한 재량적 지출한도(조정된 후의 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포함한다.

(A) 긴급 세입세출예산

어느 한 회계연도에 대통령과 의회가 법규에서 동일하게 긴급 필요자금으로 지칭한 재량적 계정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이 입안되면 조정액은 긴급 필요자금이라고 지칭된 재량적 계정들의 세입세출예산과 그 세입세출예산에서 모든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총경비의 합계이다. (A)는 농산물재난지원을 위한 세입세출예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특별 경비 허용액(세출금 : allowance)

어느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한 범주의 총경비는 그 범주에 적용되는 재량적 지출한도를 초과하지만 신규예산권한은 그 범주에 적용되는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필요한 경우 (a)(2)에 기술된 삭감의 첫 단계를 적용한 후), 한 회계연도의 총경비에 대한 조정액은 그 초과액이고 그 회계연도의 총경비에 대한 조정 후 재량적 지출한도합계의 0.5%를 초과하면 아니 된다.

(C) 지속적 장애에 대한 검토들

(i) 한 회계연도를 위한 사회보장행정부의 “행정비용에 대한 한도”라는 제목 하에 지속적인 장애의 검토를 위한 금액을 규정하는 세입세출예산의 법안 또는 합동결의가 입안되면, 그 회계연도에 대한 조정액은 그 회계연도의 그 검토에 대한 그 법에 규정된 추가신규예산권한 및 그 금액들에서 발생하는 추가 총경비이며, 조정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I) 1998년 회계연도의 경우 추가신규예산권한 \$290,000,000  
및 추가총경비 \$520,000,000

(II) 1999년 회계연도의 경우 추가신규예산권한 \$520,000,000  
및 추가총경비 \$520,000,000

(III) 2000년 회계연도의 경우 추가신규예산권한 \$520,000,000  
및 추가총경비 \$520,000,000

(IV) 2001년 회계연도의 경우 추가신규예산권한 \$520,000,000  
및 추가총경비 \$520,000,000

(V) 2002년 회계연도의 경우 추가신규예산권한 \$290,000,000  
및 추가총경비 \$520,000,000

(ii) (C)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 (I) “지속적 장애 검토”라 함은 사회보장법 201(g)(1)(A)항[42 U.S.C §401(g)(1)(A)] 및 1996년도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의 제211항에 정의되어 있는 검토 또는 재결정을 말한다.
  - (II) “추가신규예산(additional new budget authority)”이란 어느 한 회계연도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법에서 \$200,000,000을 초과하여 배정되고, 사회보장 행정처의 “행정비용에 대한 한도”라는 제목 하에 지속적인 장애 검토를 위한 비용 지불을 위하여 명시된 금액을 말한다.
  - (III) “추가총경비”라 함은 사회보장 행정처의 “행정비용에 대한 한도”라는 제목 하에 지속적인 장애 검토를 위해 명시된 금액에서 발생하는 어느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200,000,000을 초과하는 총경비를 말한다.
- (D) IMF를 위한 허용액(세출금: allowance). (i)와 (ii)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포함하는 2002년 말까지 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법안 또는 공동결의가 입안되면 조정액은 the Special Drawing Rights를 달라로 환산한, 다음에 관한 조치에 있어 예산권한금액이다.
- (i) 국제통화기금 11차 쿼타 검토부분(미국 쿼타) 중 미국 쿼타의 증가, 또는
  - (ii) 때때로 (New Arrangements to Borrow) 이루어지는 조정 후의, Bretton Woods Agreements ACT[22 U.S.C §286e-2]에 의거하여 재무장관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의 증가
- (E) 국제 연체금액(arrearages)에 대한 허용액(세출금: allowance)
- (i) 조정액  
그 회계연도의 국제조직, 국제평화유지 및 다각적 개발은 행에 대한 연체금액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을 포함하는 1998

년, 1999년, 또는 2000년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법  
안 또는 공동결의가 입안되는 경우, 그 조치에서의 예산 권  
한금액 및 모든 회계연도에 있어서 그 예산권한에 기인하  
는 총경비

(ii) 한도액

(E)에 준하여 이루어진 1998년에서 2000년까지 조정액의 총  
액은 예산권한부분에서 \$1,884,000,000을 초과하지 않는다.

(F) EITC 준수 이니셔티브

(i) 1998년 회계연도의 경우 추가신규예산권한 \$138,000,000  
및 추가총경비 \$131,000,000

(ii) 1999년 회계연도의 경우 추가신규예산권한 \$143,000,000  
및 추가총경비 \$143,000,000

(iii) 2000년 회계연도의 경우 추가신규예산권한 \$144,000,000  
및 추가총경비 \$144,000,000

(iv) 2001년 회계연도의 경우 추가신규예산권한 \$145,000,000  
및 추가총경비 \$145,000,000

(v) 2002년 회계연도의 경우 추가신규예산권한 \$146,000,000  
및 추가총경비 \$146,000,000

(G) 입양 동기부여 지불액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또는 2000년 회계연도에 있어  
서 이 부분[2 U.S.C. §900 이하]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적  
용되는 입양 동기부여 지불액에 관한 세입세출예산 법안 또는  
공동결의가 입안되면

(i) 조정액은 입양 동기부여 지불 조치에 규정된 신규 예산권  
한 금액으로 \$20,000,000를 초과하면 아니 된다. 그리고

(ii) 총경비에 대한 조정은 위 금액에 기인하는 초과 총경비  
이다.

(H) 보전 지출

- (i) 어느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을 배정하는 법안 또는 공동결의가 (c)에 명시된 보전지출범주 한도보다 적은 금액을 예산배정하면, 그 범주의 익년 회계연도를 위한 신규예산권한 및 총경비에 대한 조정액은 그 범주를 위해 (c)에 명시된 금액과 예산배정된 금액 간의 차액과 동일하다.
- (ii) 어느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을 배정하는 법안 또는 공동결의가 (c)(11)-(c)(16)에 명시된 보전지출하위범주를 위한 금액을 예산배정하면, 그 하위범주의 익년 회계연도를 위한 신규예산권한에 대한 조정액은 그 하위범주를 위해 (c)(11)-(c)(16)에 명시된 금액과 예산 배정된 금액 간의 차액과 동일한 액수의 신규예산권한 액수이다.
- (iii) 보전지출범주내의 보전활동에 주어진 총액은 그 활동에 대해 허락된 한도를 초과하면 아니 된다.

(c) 재량적 지출한도

이 부분[2 U.S.C. §900 이하]에서 사용된 “재량적 지출한도”라는 말은

- (1) 2005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 (A) 고속도로범주: 총경비 \$31,277,000,000
  - (B) 대중교통범주: 신규예산권한 \$955,792,000 및 총경비 \$6,674,000,000 및
- (2) 2006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 (A) 고속도로범주: 총경비 \$33,942,000,000
  - (B) 대중교통범주: 신규예산권한 \$1,643,000,000 및 총경비 \$7,359,000,000
- (3) 2007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 (A) 고속도로범주: 총경비 \$36,960,000,000
  - (B) 대중교통범주: 신규예산권한 \$1,712,000,000 및 총경비 \$8,120,000,000

- (4) 2008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 (A) 고속도로범주: 총경비 \$39,123,000,000
  - (B) 대중교통범주: 신규예산권한 \$1,858,000,000 및 총경비 \$8,742,000,000
- (5) 2009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 (A) 고속도로범주: 총경비 \$40,660,000,000
  - (B) 대중교통범주: 신규예산권한 \$1,977,500,000 및 총경비 \$9,180,000,000
- (6) 2005년 회계연도 보전지출범주에 대하여: 신규예산권한 \$2,240,000,000 및 총경비 \$2,192,000,000
- (7) 2006년 회계연도 보전지출범주에 대하여: 신규예산권한 \$2,400,000,000 및 총경비 \$2,352,000,000
- (8) 2002-2006년 회계연도 보전지출범주의 연방 각주 토지 수질 보전 기금하위범주에 대하여: 신규예산권한 및 총경비 \$540,000,000
- (9) 2002-2006년 회계연도 보전지출범주의 각주 및 기타 보전하위범주에 대하여: 신규예산권한 및 총경비 \$300,000,000
- (10) 2002-2006년 회계연도 보전지출범주의 도시 및 역사적 사적 보전 하위범주에 대하여: 신규예산권한 및 총경비 \$160,000,000
- (11) 2002-2006년 회계연도 보전지출범주의 세금대체 지불금 하위범주에 대하여: 신규예산권한 및 총경비 \$50,000,000
- (12) 2002-2006년 회계연도 보전지출범주의 연방 이연 관리 하위범주에 대하여: 신규예산권한 및 총경비 \$150,000,000
- (13) 2002년 회계연도 보전지출범주의 연안지원하위범주에 대하여: 신규예산권한 및 총경비 \$440,000,000, 2003년 회계연도 보전지출범주의 연안지원하위범주에 대하여: 신규예산권한 및 총경비 \$480,000,000, 2004년 회계연도 보전지출범주의 연안지원하위범주에 대하여: 신규예산권한 및 총경비 \$520,000,000, 2005년 회계연

도 보전지출범주의 연안지원하위범주에 대하여: 신규예산권한 및 총경비 \$560,000,000, 2006년 회계연도 보전지출범주의 연안 지원하위범주에 대하여: 신규예산권한 및 총경비 \$600,000,000 (b)의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조정한 후를 의미한다.

§ 901a. 삭제

§ 902. 【수입 내 지출억제(pay-as-you-go) 집행】

(a) 목적

이 조의 목적은 적자를 가중시키는 직접지출 또는 세입에 영향을 주는, 2002년 10월 1일 이전에 입안된 모든 법규에 대하여 상계 삭감을 보장하는데 있다.

(b) 삭감

(1) 시점

의회가 회기를 끝내고 정회한 후 15일 이내 그리고 제901조 또는 제903조에 준한 삭감이 있는 당일(해당 경우)에, 2002년 10월 1일 이전에 입안된 모든 직접지출 및 수입 법규에 기인하고, (2)항에 준하여 계산된 순 적자증가금액을 상계하기 위하여 삭감을 한다.

(2) 적자증가의 계산

OMB는 다음을 합산하여 적자 증가액 또는 감소액을 계산한다.

(A) (d)항에 준하여 전달된 예산연도에 대한 직접지출 및 수입법의 모든 OMB 세입세출예산

(B) OMB의 전년도에 대한 최종 삭감 보고서에서 발표된 본 조 또는 제903조에 의거한 그 전년도의 삭감에서 발생한 예산연도에 적용되는 직접지출프로그램의 절약 추산액, 그리고

(C) OMB의 현행연도에 대한 최종 삭감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d)에 준하여 전달된 현행연도에 대한 직접지출 및 수입

법의 모든 OMB세입세출예산에 기인한 현행연도의 순 적자 증가 또는 감소

(c) 적자증가의 제거

(1) (b)항에 의거하여 한 회계연도에 삭감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순서로 행해지는 행위에 따라 비 면제 직접지출계정에서 취득된다.

(A) 첫째, 256(a)[2 U.S.C. §906(a)]에 명시된 자동지출증가들에서 모두 감소를 실행한다.

(B) 둘째, 직접지출계정에서 추가 감소가 필요한 경우 256(b)[2 U.S.C. §906(b)](보장 학생 직접 대출) 및 256(c)[2 U.S.C. §906(c)](수양부모 및 입양지원)가 허용하는 최대차감

(C) 셋째

(i) 직접지출계정들에서 추가 감소가 필요한 경우, (1)항에서 요구하는 직접지출의 감소에 필요한 일정비율로, 남아있는 각 비 면제 직접지출계정에서 감소시킨다. 256(d)[2 U.S.C. §906(d)]에 명시된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4%이상 감소되어서는 아니 되며 본 항에 준하여 모든 여타의 직접지출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일정비율을 (필요한 경우) 직접지출에 대한 필수 감소를 달성하기위한 충분한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ii) (i)의 감소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익년 회계연도에 일어날 총경비감소는(삭감을 하는 회계연도의 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의 일용품가격유지계약의 삭감에 기인한) 삭감을 하는 회계연도에 총경비 감소액으로 대변에 기재한다.

(2) 본 (c)항의 계정들은 기준선 수준에 있다고 가정한다.

(d) 세입세출예산

(1) CBO 세입세출예산

의회가 직접지출 또는 수입 법(legislation)에 대한 처리를 끝낸 뒤 가능한 한 빨리, CBO는 OMB에게 그 법의 세입세출예산을 전달한다.

(2) OMB 세입세출예산

직접지출 또는 수입 법안의 입안일 후 7일 이내에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OMB는 하원 및 상원에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보낸다.

(A) 그 법의 CBO 세입세출예산

(B) 현재의 경제 및 기술의 가정에 따른 그 법의 OMB 세입세출예산

(C) 위 두 세입세출예산 간의 차액에 대한 설명

(3) 중대한 차이

(2)항에 준하여 OMB는 보고서를 준비 중에 OMB와 CBO의 세입세출예산이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면, OMB는 그 차이에 대하여 하원 및 상원의 예산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에는 보고서의 발표이전에 예산위원회에 의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가능한 한도에서의 서면의사교환이 포함된다.

(4) 세입세출예산의 범위

이 조에 준한 세입세출예산은 현행연도(적용사항 있을 때), 예산연도, 및 각 이후연도에 대하여 총경비 및 수입에 있어서 다음에 기인한 변경액수를 포함한다.

(A) 현 세입세출예산 하에서 유효한 예금자보험 보장액의 전액 또는 지속적 지원, 및

(B) (e)항에서 지정하는 긴급 규정

(5) Scorekeeping 지침

OMB와 CBO는 서로 협의하고, 하원 상원 예산위원회와 협의하여

(A) 공동 Scorekeeping 지침을 만든다.

(B) 그 지침을 따라 이 조의 세입세출예산을 준비한다.

(e) 긴급 입법

어느 한 회계연도에 대통령이 긴급필요자금으로 지칭하고 의회가 법규에서 동일하게 지칭한 직접지출 또는 수입법 규정이 입안되면, 그 규정에 기인한 모든 회계연도의 신규예산권한, 총경비 및 수입 금액은 (d)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에서 긴급 필수액으로 지칭된다. 본 (e)항은 농산물재난지원을 위한 세입세출예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903. 【적자목표 집행】**

[주의: 이 조는 2002.9.30자로 2 U.S.C. §900 각주의 §275(b) of Act Dec. 12, 1985, P.L. 99-177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다.]

(a) 삭감

의회가 회기(the One Hundred First Congress 세외)를 끝내고 정회한 후 15일 이내 그리고 제251조와 제252조[2 U.S.C §901, § 902]에 준한 삭감이 있는 당일(해당 경우에), 그리고 제251조[2 U.S.C. §901] (재량적 지출한도 집행) 또는 제252조[2 U.S.C. §902](수입내 지출 집행)이 요구하는 삭감 후에, 초과적자가 Margin을 초과할 경우 초과적자를 제거하기 위한 삭감을 한다.

(b) 초과적자; Margin

초과적자는 0보다 클 경우, 다음의 항목들을 차감한 예산연도의 추정 적자액이다.

- (1) 그 해의 최대 적자 금액
- (2) 252(e)[2 U.S.C. §902(e)]에 의거하여 긴급 직접지출 또는 수입 법으로 지칭된 그 해의 금액, 그리고
- (3) 기술적 경제적 재추산에 대한 완전한 조정이 없었던 회계연도에 대하여, (h)항에 준하여 계산된 그 해의 예금자보호 재추산 (또는 재 세입세출예산)

1992년 또는 1993년 회계연도의 Margin은 0이고 1994년 또는 1995년 회계연도의 Margin은 \$15,000,000이다.

(c) 삭감분할

한 예산연도의 초과적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수 총경비 삭감의 절반은 비 면제 방위 계정(대통령의 1991 회계연도 예산제출에서 기능 050으로 지칭된 계정들), 또 다른 절반은 비 면제 비 방위 계정에서 실행한다(모든 비 면제 계정들).

(d) 방위

각 비 면제 방위계정은 (c)항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정비율과 그 시점에 그 계정의 삭감할 수 있는 예산재원 수준을 곱한 금액만큼 감소시킨다. 예외적으로 군속이 면제될 경우 조정은 252(a)(3)[2 U.S.C. §902(a)(3)]에 명시한 절차에 따른다.

(e) 비 방위

비 방위 계정들을 감소시키는 처리는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 첫째

256(a)[2 U.S.C. §906(a)]하의 자동 지출 증가에서 모든 감소를 실행한다.

(2) 둘째

비 방위 계정들에서 추가 감소가 필요한 경우 256(b)[2 U.S.C. §906(b)](보장학생 직접 대출) 및 256(c)[2 U.S.C. §906(c)](수양부모 및 입양지원)가 허용하는 최대 감소액

(3) 셋째

(A) 비 방위 계정들에서 추가 감소가 필요한 경우, (c)항에서 요구하는 비방위총경비의 감소를 하는 데 필요한 동일한 비율에 의해, 각 남아있는 비 면제 비 방위계정들에서 감소시킨다. 예외적으로

(i) 256(d)[2 U.S.C. §906(d)]에 명시된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제 252조[2 U.S.C. §902]에 준한 2%이하의 감소를 포함하여, 2% 이상 감소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 제252조[2 U.S.C. §902]에 준하여 2%이상 차감될 경우, 본 조에 의거하여 추가 감소 하지 않는다. 그리고

(ii) 256(e)[2 U.S.C. §906(e)]에 명시된 보건프로그램은 합산하여 2%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251[2 U.S.C. §901]에 의한 감소를 포함하여).

그리고 본 항에 의해 모든 다른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정해진 비율은 비방위 총경비의 필수감소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B) (A)목의 감소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익년 회계연도에 발생할 경비감소(삭감회계연도의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일용품 가격유지계약의 삭감결과)는 삭감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경비감소로 대변에 기입한다.

(f) 기준선 가정. 부분연도 세입세출예산

(1) 예산 가정

(b), (c), (d), (e) 목적상, 계정들은 기준선으로부터 제251조와 제252조[2 U.S.C. §901 and 902]가 요구하는 감소를 공제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2) 부분 연도 세입세출예산

본 조의 (a)에 명시된 일자에, 비 면제 계정에 대하여 회계연도 일부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새로 만들거나 지속하고 있는 법의 경우, (d) 또는 (e)에 준하여 그 계정을 위하여 계산된 삭감은 다음에서 이루어진다.

(A) 그렇지 않은 경우의, 그 해 또는 후속 부분연도 세입세출예산 하에서 그 계정에 법에 의하여 배정되는 연분액수, 그리고

(B) 그렇지 않은 경우로, 그 계정의 전체연도 세입세출예산이 입안된 경우에는 전체연도 세입세출예산 하에서 배정되는 금액, 예외적으로 입안금액이 그 계정의 기준선보다 적을 때에는 그 세입세출예산에 의해 절약되는 액수가 그 계정에서 삭감할 금액이다(단 0이하로 내려가면 아니 된다).

(g) 최대 적자금액의 조정

(1) 조정

(A) 대통령이 1992년 회계연도의 예산을 제출하면, 1992년, 1993년, 1994년 및 1995년의 최대적자금액은 경제기술가정의 최신 변경된 재추산 및 개념, 정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대통령이 1993년 회계연도의 예산을 제출하면 1993년, 1994년 및 1995년의 최대적자금액은 경제기술가정의 최신 변경된 재추산 및 개념, 정의를 반영하여 다시 조정한다.

(B) 대통령이 1994년 회계연도의 예산을 제출하면 대통령은 경제기술가정의 최신 재추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1994년 및 1995년의 최대적자금액을 조정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대통령이 1994년 회계연도의 예산을 제출하고 조정을 선택하면, 1995년 회계연도의 예산을 제출할 때 동일한 조정절차를 쓸 수 있다. 각 경우, (2)항에 기술된 무조정, 또는 완전조정 간에 선택을 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완전 조정을 선택하면, 251(b)(1)(C)과 251(b)(2)(E)[2 U.S.C. §901(b)(1)(C) and (2)(E)]에 기술된 재량적 지출한도 조정을 위한 절차를, 그렇지 않은 경우 1993년, 1994년 회계연도를 통하여 적용되는(경우에 따라) 절차를 1994년(적용대상인 경우, 1995년) 회계연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C) 1994년 또는 1998년 회계연도 예산과 제254조[2 U.S.C. §904]에 준한 1994년, 1995년 삭감보고서를 제출할 때, 대통령이

(B)목에 명시된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그 회계연도의 최대 적자금액은 251(b)[2 U.S.C. §901(b)]에 의한 그 해에 처음 적용될 수 있는 재량적 지출한도에 대한 조정 금액에 의하여 조정한다.

(D)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그해의 대통령의 예산 제출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요구되는 조정은 OMB가 그 해를 위한 삭감 최신 보고서와 최종 삭감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OMB는 그 해에 관한 대통령의 예산에서 사용한 경제기술가정을 계속 사용한다.

각 조정은 1974년 예산법의 제601조에 명시된 최대적자 금액을 증가 또는 감소하여 실행한다.

(2) 조정액의 계산

필요한 증가와 감소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A) 기준선 적자와 흑자는 제252조[2 U.S.C. §901]에 준하여 조정을 한 데로, 최신 경제 기술적 가정들, 최신 개념과 정의, 그리고 재량적 세입세출예산의 기준선 수준대신 1974년 예산법의 제601조에 명시된 재량적 지출한도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B) 본 조의 입안일자[1990.11.5] 이후 입안된 모든 직접지출과 수입입안이 야기한 순 적자의 증가 및 감소(직접 지출 계정의 삭감을 위하여 조정을 한 후)는 다음을 합하여 각 회계연도별로 계산한다.

(i) 252(d)[2 U.S.C. §902(d)]에 준하여 전달된 각기 그 회계연도에 대하여 계산된 직접 지출 및 수입 법의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ii) (있을 경우에) OMB의 그 해를 위한 최종삭감보고서에 담겨있는 본 조 및 직접지출에 관한 제252조[2 U.S.C. § 902]에 준하여 지난해의 삭감에 기인한 각 그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직접 지출 프로그램의 절약 추산액

(C) (B)목에서 계산된 금액을 (A)목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감소시킨다.

(D) 1974년 예산법의 제601조에 명시된 최대적자금액을 (C)목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감소시킨다.

(E) (D)목에서 계산된 금액은 (1)항에서 요구하는 조정금액이다.

(h) 예금자보험의 처리

(1) 최초 세입세출예산

1994년, 1995년 회계연도의 연방예금자보험의 순 비용의 최초 세입세출예산(1993년 예산제출일자에 유효한 예금자보험 보장의 전액 자금지원 또는 그의 지속을 가정함)은 그 예산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재추산액(reestimates) 또는 재 세입세출예산

1994년, 1995년 회계연도의 예금자보험의 비용의 재추산액은 예금자보험비용의 현 세입세출예산에서 (1)항에 명시한 그 해를 위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그러나 1993년 회계연도 예산제출일자에 유효한 예금자보험 보장의 전액 자금지원 또는 그의 지속을 가정함).

**§ 904. 【의회의 처리】**

(a) 일정

한 예산연도에 이 부분[2 U.S.C. §900 이하]에 관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b) 보고서의 제출과 사용가능성

이 조에서 요구하는 각 보고서는 CBO의 경우 하원, 상원, OMB에 제출, OMB의 경우, 하원, 상원, 대통령에게 발행일에 제출한다. 그 익일에 연방관보에 보고서를 통지한다.

(c) 삭감 사전검토 보고서

(1) 보고 의무

(a)에 명시한 일자에 OMB와 CBO는 그 날까지 입안된 법에 근거한 재량적, 수입 내 지출 억제 및 적자 삭감에 관한 사전검토 보고서를 발행한다.

(2) 재량적 삭감보고

사전검토보고서는 현행연도와 2002년까지 각 범주의 적용 재량적 지출 한도의 추산액(estimates)과 제251조[2 U.S.C. §901]에 준한 한도의 조정에 대한 설명을 명시한다.

(3) 수입내 지출억제 삭감보고서

사전검토보고서는 현행연도와 예산연도를 위한 다음 각각의 추산액(estimates)을 명시한다.

(A) 252(b)[2 U.S.C. §902(b)]에 의해 계산한 순 적자증가 또는 감소액

(B) 적자증가 감소 계산에 포함된 이 조가 입안된 후, 입안된 법과 실행된 삭감 및 그러한 법의 예산에 대한 효과를 명시하는 목록

(C) 삭감비율 또는 (필수 삭감비율이 medicare(의료보험)를 위한 최대허용 비율보다 클 때) 252(c)[2 U.S.C. §902(c)]하에서 적자 증가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비율들

(4) 적자삭감보고서

사전검토보고서는 다음에 관하여 예산연도 세입세출예산을 명시한다.

(A) 최대 적자 금액, 253(b)[2 U.S.C. §903(b)]하에 계산된 추정적자, 초과적자 및 Margin

(B) 제252조[2 U.S.C. §902]에서 요구되는 감소액, 그러한 감소가 이루어진 후에 남은 초과적자, 방위계정에 요구되는 감소액, 비 방위계정에 요구되는 감소액

(C) 253(d)[2 U.S.C. §903(d)]에 준하여 방위계정에서 요구되는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삭감비율

(D) 253(e)(1)와 253(e)(2)[2 U.S.C. §903(e)(1)(2)]에서 요구되는 감소

(E) 253(e)(3)[2 U.S.C. §903(e)(3)]에 의거하여 비방위계정에서 요구되는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삭감비율

CBO 보고서는 1992년, 1993년 또는 대통령이 253(g)(1) (B)[2 U.S.C. §903(g)(1)(B)]에 주어진 선택권행사에 의하여 최대적자금 액을 조정할 것을 하원 및 상원에 통지한 회계연도의 최대적자금액 외의 항목들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5) 차이의 설명

OMB보고서는 본 항(역자주 (c))에 명시된 각 항목에 대하여 OMB와 CBO 세입세출예산 간의 차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d) 군속에 대한 통지

(a)항에 명시된 일자 또는 그 이전에,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대통령이 255(f)[2 U.S.C. §905(f)]하에서 군속계정이 관하여 유연성 (flexibility)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지한다.

(e) 삭감 최신 보고

(a)항에 명시된 일자에 OMB와 CBO는 그 날까지 입안된 법을 반영하고 삭감사전검토보고서가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삭감 최신 보고서를 발행한다.

(f) 최종 삭감보고.

(1) 보고의무

(a)항에 명시된 날에 OMB와 CBO는 그 날까지 입안된 법을 반영하는 최종 삭감보고서를 발행한다.

(2) 재량적 삭감보고서

최종보고서는 다음의 각각을 위한 세입세출예산을 명시한다.

- (A) 현행연도에서 2002년까지 매해마다 각 범주의 적용 재량적 지출 한도 및 제251조[2 U.S.C. §901]에 준한 그 한도에 대한 조정의 설명
  - (B) 현행연도와 예산연도에 관한 각 범주의 추산 신규 예산권한, 총경비 그리고 각 범주의 위반(해당경우)
  - (C) 삭감이 요구되는 각 범주에 대해 필수적인 감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삭감비율
  - (D) 예산연도에 있어서 삭감되어야 하는 각 계정에 대해 삭감될 수 있는 예산재원의 기준선의 세출세입예산, 초래되는 총경비, 삭감될 예산재원의 금액 및 초래되는 총경비 차감
- (3) 수입 내 지출 억제 및 적자삭감 보고
- 최종보고서는 수입 내 지출 억제 및 적자삭감 사전검토보고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더불어 예산연도에 대해 삭감되어지는 각 계정에 관하여 이 보고서는 삭감될 수 있는 예산재원의 기준선 수준의 세입세출예산, 초래되는 총경비, 삭감될 예산재원의 금액 및 초래되는 총경비 감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직접지출프로그램에 대하여 각 이후연도에 있어서 삭감의 총경비(outlays of the sequestration)의 효과에 관한 추산(estimate)을 포함한다.
- (4) 차이의 설명
- OMB 보고서는 252(b)[2 U.S.C. §902(b)]하에서 계산된 순 적자 변화, 초과 적자, 위반, 필수 삭감비율에 있어서 OMB와 CBO의 세입세출예산이 다를 경우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OMB보고서는 그 차이가 \$5,000,000보다 크면 어느 삭감대상 예산계정에 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재원의 금액 간의 차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 (5) 대통령령
- (a)항에 명시된 일자에, 최종삭감보고서에서 OMB가 삭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면, 대통령은 그 보고서에 명시된 OMB 계산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삭감을 변동 없이 완전히 실행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한다.

(g) 회기 내 삭감보고와 명령

진행 중인 회계연도에 위반을 야기하는 세입세출예산이 입안되면 (의회가 그 예산연도를 위한 회기를 끝내고 정회한 후 그리고 그 회계연도의 7월 1일 이전), CBO는 10일 후에 (f)(2)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발행한다. 그리고 OMB는 입안 15일 이후 (f)(2)와 (f)(4)가 요구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보고서를 발행한다. OMB보고서 발행과 같은 날, 대통령은 그 보고서에 명시된 OMB 계산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삭감을 변동없이 완전히 실행하는 대통령령을 발표 한다. 대통령령은 발표 즉시 유효하다.

(h) GAO compliance 보고서

하원 및 상원 예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Comptroller General은 의회와 대통령에게 다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 (1) 이 조에 의하여 대통령이 내린 명령이 이 부분에 [2 U.S.C. 900 et seq.] 포함된 모든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정도에 대하여 그 명령이 이러한 요구사항과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지적하여야 한다. 그리고
- (2) OMB와 CBO가 이 조에 준하여 발행한 보고서가 이 부분에 [2 U.S.C. 900 et seq.] 포함된 모든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정도에 대하여 그 명령이 이러한 요구사항과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지적하여야 한다.

(i) 저성장 보고서

CBO는 다음의 경우 반드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 (1) 그러한 통지가 주어진 4분기, 그 이전 4분기, 그 이후 4개의 4분기로 이루어진 기간 동안 CBO와 OMB는 그 기간동안 어느 이어지는 2개의 4분기에 관하여 실질경제성장이 0 이하로 투자, 추정된다고 판단하거나

(2) 가장 최근의 통상부의 실제 실질경제성장에 대한 선제 예비 또는 최종보고서가 가정 최근에 보고 된 4분기와 그 직전 4분기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1%보다 적다고 판단할 경우

(j) 경제 기술 가정들

이 조에서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에서 OMB는 U.S.C. 제31편의 1105(a)에 준하여 대통령이 제출한 가장 최근 예산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경제 기술 가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 905. 【면제 프로그램 및 활동】**

(a) 사회보장혜택(benefits) 및 I조(tier I) 철도 퇴직 혜택

The Social Security Act(사회보장법) 제2편[42 U.S.C. §401 et seq.]에 의한 노년, 유족, 장애 보험 프로그램 하에서 지불하는 혜택과, The Railroad Retirement Act(철도 은퇴법) of 1974[45 U.S.C. §231b(a), 231b(f)(3), 231c(a) or 231c(f)]의 3(a), 3(f)(3), 4(a), or 4(f)에 의해 지불하는 혜택은, 이 부분 [2 U.S.C. §900 et seq.]에 따른 모든 명령으로 인한 감소(reduction)로부터 면제된다.

(b) 퇴역군인(veterans)을 위한 혜택

다음의 프로그램들은 이 부분(this part)[2 U.S.C. §900 et seq.]에 의한 모든 명령으로 인한 감소(reduction)로부터 면제된다.

국가생명보험기금(National Service Life Insurance Fund) (36-8132-0-7-701)

장애를 입은 퇴역군인을 위한 보험기금(Service-Disabled Veterans Insurance Fund) (36-4012-0-3-701)

퇴역군인 생명보험기금(Veterans Special Life Insurance Fund) (36-8455-0-8-701)

퇴역군인 재기보험기금(Veterans Reopened Insurance Fund) (36-4010-0-3-701)

미연방 정부 생명보험기금(United States Government Life Insurance Fund) (36-8150-0-7-701)

퇴역군인 보험 및 배상(Veterans Insurance and Indemnities) (36-0120-0-1-701)

특별한 치료 및 회복활동 기금(Special Therapeutic and Rehabilitation Activities Fund) (36-4048-0-3-703)

군인편의시설서비스 회전기금(Canteen Service Revolving Fund) (36-4014-0-3-705)

U.S.C. 제38편 제21절[38 U.S.C. §2101 et seq.]에 준한 군복무와 관련된 장애를 입은 퇴역군인을 위한 특수 장치 개조 주택 및 주택 장기금융보호 생명보험과 관련된 혜택 (36-0120-0-1-701)

U.S.C. 제38편 제907조에 준한, 군복무와 관련된 장애로 사망한 퇴역군인을 위한 매장 혜택과 관련된 혜택 (36-0155-0-1-701)

U.S.C. 제38편 제39절[38 U.S.C. §3901 et seq.]에 준한, 일부 장애 퇴역군인들 및 육군 장병들을 위한 자동차 및 적응(adaptive) 장치와 관련된 혜택 (36-0137-0-1-702)

보상금(Compensation) (36-0153-0-1-701)

연금(Pensions) (36-0154-0-1-701)

U.S.C. 제38편 제35절[38 U.S.C. §3500 et seq.]에 준한 군복무와 관련된 장애를 입은 일부 퇴역군인들의 유족과 부양자녀(dependents)들을 위한 교육지원과 관련된 혜택 (36-0137-0-1-702)

U.S.C. 제38편 제31절[38 U.S.C. §3100 et seq.]에 준한 군복무와 관련된 장애를 입은 일부 퇴역군인들을 위한 훈련 및 재활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36-0137-0-1-702)

U.S.C. 제38편 제37절의 I, II, and III[38 U. S.C. §3701 et seq., 3710 et seq., 3720 et seq.]에 준한, 일부 퇴역군인들 및 배우자들, 일부 퇴역군인들의 배우자 보장배상 프로그램계정을 위한 주택융자와 관련된 혜택 (36-1119-0-1-704)

미 국

용자 보장 프로그램계정 (36-1025-0-1-704) 및

직접 용자 프로그램계정 (36-1024-0-1-704)

(c) 순 이자(net interest)

이 부분[2 U.S.C. §900 et seq.]에 준하여 발령되는 어떠한 명령에 의하여 순이자(주 기능 범주 900번 일절)의 지급이 감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d) 근로소득 세금혜택(Earned income tax credit)

The Internal Revenue Code(소득세법) of 1954[26 U.S.C. §32]의 제32조에 준한 개인에 대한 지급액은, 이 부분[2 U.S.C. §900 et seq.]에 준하여 발령되는 어떠한 명령으로 인한 감소로부터 면제된다.

(e) 비 방위 비 채무 잔액(Non-defense unobligated balances)

방위범주 잔액을 제외한 이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비 채무 예산 권한 잔액은, 이 부분[2 U.S.C. §900 et seq.]에 준하여 발령되는 어떠한 명령으로 인한 감소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f) 군속에 대한 선택적 면제

(1) 총칙

어떤 군속계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그 계정을 삭감으로부터 면제하거나,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보다 작은 일정한 비율감소(uniform percentage reduction)를 규정할 수 있다.

(2) 제한

대통령은 예산연도에 관하여 254(a)[2 U.S.C. §904 (a)]에 명시된 일자 또는 그 이전에 위의 (1)에서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는 방법을 의회에 통보하기 전에는 그 권한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

(g) 기타 프로그램 및 활동

(1)

(A) 다음의 예산 계정 및 활동들은 이 부분[2 U.S.C. §900 et seq.]에 준하여 발령되는 어떠한 명령으로 인한 감소에서 면제된다.

개인 기부, 유증 또는 정부에 대한 자발적 기부에 의한 활동들  
지불을 하고 제공받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에 자발  
적으로 지불하는 금원으로 지원되는 활동

통치령 행정, 북 마리아나 군도 협정 지원금 (14-0412-0-1-806)

알래스카 전력 관리청, 운영, 관리 (89-0304-0-1-271)

콜럼비아 자치구 세출예산배정(지역적으로 각출된 기금의 세  
출예산배정인 경우)

공법(Public Law) 93-454(1974) section 13[16 U.S.C. § 838k]에  
의해 설정된 개정

Bonneville 전력 행정기금 및 차입권한 (89-4045-0-3-271)

인디언 관련업무, 인디언 토지 및 하천 소유권 타협에 대한  
기타 지불금 관리청 (14-2303-0-1-452)

인디언 관련업무 및 기타 신탁기금 (14-9973-0-7-999)

청구, 판결 및 구제법 (20-1895-0-1-808)

자유연합협정(Compact of Free Association) (14-0415-0-1-808)

대통령 보수 (11-0001-0-1-802)

보전 유지관리 프로그램 (12-2319-0-1-302)

세관업무, 기타 영구 세출예산배정 (20-9922-0-2-806)

화폐, 감정 감정관 기금 (20-8413-0-8-373)

이중 혜택 지불계정 (60-0111-0-1-601)

환률 안정 기금 (20-4444-0-3-155)

농장 신용 행정관리, 행정관리비용한도 (78-4131-0-3-351)

농장신용시스템 재정지원회사, 이자지급 (20-1850-0-1-908)

농장신용시스템 재정지원회사, 이자지급 (20-1850-0-1-351)

연방 예금자 보험회사, 은행보험기금 (51-4064-0-3-373)

연방 예금자 보험회사, FSLIC 결의 기금 (51-4065-0-3-373)

연방 예금자 보험회사, 저축은행보험기금 (51-4066-0-3-373)

연방주택융자금지원 위원회 (95-4039-0-3-371)  
철도퇴직계정에 대한 연방지원 (60-0113-0-1-601)  
해외 방위산업판매 신탁기금 (11-8242-0-7-155)  
의학계 학생융자금 보험기금 프로그램계정 (75-0340-0-1-552)  
고등교육시설융자금 (91-0240-01-502)  
푸에르토리코 국내세금 징수 (20-5737-0-2-806)  
총경비가 주로 다른 정부계정들이 입금한 재원에서 파생되는 것들을 포함한 정부내 기금(intragovernmental funds): 명령이 유효한 회계연도에 대한 직접 세출예산배정에 의해 그러한 기금이 확장된 부분은 예외이다.  
파나마운하위원회, 파나마운하 회전기금(Panama Canal Commission, Panama Canal Revolving Fund) (95-4061-0-3-403)  
의료시설보장 및 융자금기금, 연방이자 보조금, 의료시설을 위한 연방이자보조금 (75-9931-0-3-550)  
국립 신용조합은행(Credit Union) 행정처 운용기금 (25-4056-0-3-373)  
국립 신용조합은행 행정처, 중앙 유동성 시설 (25-4470-0-3-373)  
국립 신용조합은행 행정처, 신용조합은행 지분 보험기금 (25-4468-0-3-373)  
저축은행 감독 사무국 (20-4108-0-3-373)  
베트남, USS Pueblo 전쟁포로의 청구에 대한 지불 (15-0104-0-1-153)  
공무원 퇴직 지불 및 장애 기금 (24-0200-0-1-805)  
사법 신용 기금에 대한 지불 (10-0941-0-1-752)  
저작권자에 대한 지불 (03-5175-0-2-376)  
건강보험 신용기금에 대한 지불 (75-0580-0-1-571)  
군인 퇴직 기금에 대한 지불 (97-0040-0-1-054)

사회보장신용기금에 대한 지불 (75-0404-0-1-651)  
해외근무퇴직 및 장애기금에 대한 지불 (11-1036-0-1-153 and  
19-0540-0-1-153)  
각 기금에 정당하게 귀속되는 기타 수입 또는 간접세의 신용  
기금에 대한 지불  
미국 통치령, 재정지원에 대한 지불 (14-0418-0-1-806)  
사망의회의원의 미망인, 상속인에 대한 지불 (00-0215-0-1-801)  
우편사업기금 (18-4020-0-3-372)  
정리신탁공사 회전기금(Resolution Trust Corporation Revolving  
Fund) (22-4055-0-3-373)  
헌법 제3조에 의한 판사 급여  
군인 및 항공병의 주택, 청구 지불 (84-8930-0-7-705)  
남동부 전력 관리청의 운영 관리 (89-0302-0-1-271)  
남동부 전력 관리청의 운영 관리 (89-0303-0-1-271)  
테네시강유역 개발공사기금(Tennessee Valley Authority fund),  
비 전력 프로그램, 활동제외 (64-4110-0-3-999)  
저축기금(Thrift Savings Fund)  
United States Enrichment Corporation (95-4054-0-3-271)  
예방주사 피해 기금 (75-0320-0-1-551)  
예방주사 피해 보상 프로그램 신탁기금 (20-8175-0-7-551)  
United States Enrichment Corporation  
워싱턴수도권지역교통청, 이자지급 (46-0300-0-1-401)  
서부지역 전력 관리청, 건설, 재활, 운영, 관리 (89-5068-0-2-271),  
그리고  
서부지역 전력 관리청, 콜로라도강 유역 전력판매기금(89-  
4452-0-3-271)

(B) 다음의 연방 퇴직 및 장애 계정 및 활동들은 이 부분[2 U. S.C. §900 et seq.]에 준하여 발령되는 어떠한 명령으로 인한 감소로부터 면제된다.

흑폐장애신용기금(Black Lung Disability Trust Fund) (20-8144-0-7-601)

중앙정보부퇴직 및 장애 시스템기금(Central Intelligence Agency retirement and disability system fund) (56-3400-0-1-054)

공무원퇴직장애기금(Civil service retirement and disability fund) (24-8135-0-7-602)

일반 은퇴 시스템 감독관들 (05-0107-0-1-801)

해외근무퇴직장애기금(Foreign service retirement and disability fund) (19-8186-0-7-602)

사법유족연금기금(Judicial survivors' annuities fund) (10-8110-0-7-602)

사법공무원퇴직기금(Judicial Officers' Retirement Fund) (10-8122-0-7-602)

청구법원판사기금(Claims [Court] Judges' Retirement Fund) (10-8124-0-7-602)

특별 노동자보상비용, 연안부두노동자 배상혜택(Special workers compensation expenses, Longshoremen's and harbor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16-9971-0-7-601)

군인 퇴직연금(Military retirement fund) (97-8097-0-7-602)

국립 해양대기청 퇴직연금(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retirement) (13-1450-0-1-306)

전직대통령 연금(Pensions for former Presidents) (47-0105-0-1-802)

철도산업연금기금(Railroad Industry Pension Fund) (60-8011-0-7-601)

철도보조연금 기금(Railroad supplemental annuity pension fund) (60-8012-0-7-602)

퇴직금, 연단경비(Retired pay, Coast Guard) (69-0241-0-1-403)  
위임공무원, 공중보건 퇴직금 및 의료혜택(Retirement pay and  
medical benefits for commissioned officers, Public Health Service)  
(75-0379-0-1-551)

특별혜택, 연방직원 보상법(Special benefits, 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 (16-1521-0-1-600)

장애 광부를 위한 특별혜택(Special benefits for disabled coal  
miners) (75-0409-0-1-601)

세무법원판사유족연금(Tax Court judges survivors annuity fund)  
(23-8115-0-7-602)

(2) 다음의 예산계정과 활동은 이 부분[2 U.S.C. §900 et seq.]에 준  
하여 발령되는 어떠한 명령이 있더라도 이로부터 면제된다.

바이오메쓰 에너지발전(Biomass energy development) (20-0114-0-  
1-271)

위조보험기금(United States Treasury check) (20-4109-0-3-803)

채권청산회계(Credit liquidating accounts)

근로자 생명보험기금(Employees life insurance fund) (24-8424-0-  
8-602)

에너지 보호 보존(Energy security reserve (Synthetic Fuels Corpora-  
tion)) (20-0112-0-1-271)

연방 비행 관리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비행보험회전기금(Aviation insurance revolving fund) (69-4120-0-  
3-402)

연방 농작물보험회사기금(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und)  
(12-4085-0-3-351)

연방 긴급 관리청, 국립 홍수보험기금(Federal Emergency Man-  
agement Agency, National flood insurance fund) (58-4236-0-3-453)

연방 긴급 관리청, 국립보험개발기금(National insurance development fund) (58-4235-0-3-451)

지열자원 발전기금(Geothermal resources development fund) (89-0206-0-1-271)

주택소유자지원기금, 방위(Homeowners assistance fund, Defense) (97-4090-0-3-051)

국제무역관리청, 운영, 관리(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Operations and administration) (13-1250-0-1-376)

저임대료 공공 주택, 융자금 및 기타 비용(Low-rent public housing, Loans and other expenses) (86-4098-0-3-604)

해상관리청, 전쟁위험보험회전기금(Maritime Administration, War-risk insurance revolving fund) (69-4302-0-3-403)

해외 사적 투자 회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71-4030-0-3-151)

연금혜택보장회사기금(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fund) (16-4204-0-3-601)

철도사업지원(Rail service assistance) (69-0122-0-1-401)

퇴역군인 관련국, 군인 단체생명보험기금(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Servicemen's group life insurance fund) (36-4009-0-3-701)

퇴역군인관리청 융자금보장회전기금(Veterans Administration, Loan guaranty revolving fund) (36-4025-0-3-704)

퇴역군인관리청, 군인 단체생명보험기금(Veterans Administration, Servicemen's group life insurance fund) (36-4009-0-3-701)

(h) 저소득 프로그램(Low-income programs)

다음의 프로그램은 이 부분[2 U.S.C. §900 et seq.]에 준하여 발령되는 어떠한 명령이 있더라도 이로부터 면제된다.

저소득가정을 위한 일시 지원을 위한 각 주에 대한 일괄 상여금  
(block grants)

아동 영양 프로그램(특별우유프로그램 예외) (12-3539-0-1-605)

저소득가정을 위한 일시 지원 (75-1552-0-1-609)

비상 기금(Contingency fund) (75-1522-0-1-609)

각 주의 아동보호권 (75-1550-0-1-609)

생필품 보조 식량프로그램(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12-3512-0-1-605)

무료급식프로그램 (12-3505-0-1-605 and 12-3550-0-1-605)

각 주의 의료보험 보조금(Grants to States for Medicaid) (75-0512-0-1-551)

보조 지원 소득 프로그램(Supplemental Security Income Program) (75-0406-0-1-609) 및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12-3510-0-1-605)

각 주의 가족 후원 지원금(Family support payments to States) (75-1501-0-1-609)[.]

(i) 프로그램의 식별

(b)항, (g)항, (h)항을 위하여, 각 계정은 미국정부 1998-부록에 명시된 지정예산계정 식별코드번호에 의하여 식별되고 계정의 활동은 활동의 이름과 그 계정의 식별코드로 지칭된다.

## § 906. 【일반 및 특별 삭감 규정】

(a) 자동 지출 증가(Automatic spending increases)

자동 지출 증가들은 다음 프로그램에서 인덱스 변화에 기인한 총 지출의 증가분을 말한다.

- (1) 특별 우유 프로그램, 및
- (2) 직업 재활을 위한 기본적인 각 주에 대한 지원.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자동 지출 증가가 아닌 모든 액수들은 이 부분[2 U.S.C. §900 et seq.]에서 준하여 발령되는 어떠한 명령으로 인한 감소로부터 면제된다.

(b) 학생 용자금

제254조[2 U.S.C. §904]에 의한 삭감 명령이 제252조 또는 제253조 [2 U.S.C. §902 or 903]하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기간 동안, the Higher Education Act(고등교육법) of 1965의 IV편의 part B 또는 D[20 U.S.C. §1071 et seq. or 1087,a et seq.]하에서 대출된 학생용자금에 대하여, 위 법의 438(c)(2) 및 455(c)[20 U.S.C. §1087-1(c)(2), 1087e]에 준한 대출 수수료(origination fees)는 각각 0.50 퍼센트만큼 증가한다.

(c) 위탁양육 및 입양 지원 프로그램의 처리

제254조[2 U.S.C. §904]에 준한 대통령의 명령은, 해당 회계연도동안 위탁양육유지 지불율(payments rates) 및 입양지원 지불율의 증가의 효력이 미치는 주(state)가 지불한 지불금 및 비용에 대하여서만, 그리고 각 주의 지불금의 중 그 해 동안 효력이 있는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법의 제474조[42 U.S.C. §674] (그 회계연도에 대하여)하에서 각 주가 달리(otherwise) 받는 연방 매칭(동일한 액수를 지불하여줌) 지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적용감소를 통한 필수 감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탁양육 및 입양 지원 프로그램 하에서 달리(otherwise) 요구되는 감소를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 IV편, part E에 의하여 설정됨 [42 U.S.C. §670 et seq.]). 위탁양육유지 지불금 및 입양 지원유지 지불금에 있어서 연방정부가 지불하는, 각 주에 대한 어떤 매칭(matching)지불액도 국내적용삭감율(the applicable domestic seques-

tration percentage)을 초과하는 비율로 감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떤 주도 이 공동결의[1985년 12월 12일에 입안]의 입안일자 이후에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42 U.S.C. §670 et seq.]의 IV편, part E에서 승인된 각 주 계획(State plan)의 지불 시간표에 대하여, 그 부분(E)에 의거하여 비용을 지출한 회계연도에 대한 변경효과를 갖는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d) 메디케어(의료보험)를 위한 특별규정

(1) 개별 지불액의 감소계산

사회보장법 제710조[42 U.S.C. §911]에도 불구하고 OMB는 제252조와 제253조[2 U.S.C. §902 and 903]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총 비율 감소(percentage reduction)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을 해야 하며, 제254조[2 U. S.C. §904]에 준한 대통령령은 사회보장법 XVIII편[42 U.S.C. §1395 et seq.]에 준한 대통령령이 발령된 후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한 건강보험프로그램의 지불액에 적용되는 비율 감소를 실행하며, 그 대통령령 하에서 이루어진 감소는, 그 회계연도의 지불액에서 요구되고, 12개월 기준으로 결정되는 총 비율 감소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감소 적용의 시기

(A) 통칙

아래의 (B)의 규정을 제외하고, (1)항에 준하여 삭감명령에 의한 지불액의 감소가 있으면, 그 명령이 효력이 있는 기간동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지불액에 대하여 감소가 이루어진다. 앞 문장의 목적상, 개인에게 제공되는 입원환자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는 개인이 입원시설로부터 퇴원한 일자에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B) 원가보고 기간에 기초한 지불액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 XVIII편[42 U.S.C. §1395 et seq.]하에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불이, 제공자의 원가보

고기간동안의 서비스의 적정 원가에 관련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 질 때에는, 삭감명령에 의하여 (1)항에 의한 지불액수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삭감명령이 유효한 기간동안 일어난 모든 제공자의 원가보고기간동안의 어느 시점에 발생한 모든 서비스와 그 서비스들의 원가에 대해 감소를 적용하지만 삭감명령의 유효 기간과 원가보고기간(각기 그러한 원가보고 기간 동안에 대하여)간의 분할(분수, fraction)과 같은 비율로 감소한다.

(3) 배분과 관련하여 수혜자 부담금의 증가는 없음

사회보장법 XVIII편, part B[42 U.S.C. §1395j et seq.]하에서 지불된 서비스에 관하여 (1)항에 의한 지불액수의 감소가 1842(b)(6)(B)[42 U.S.C. §1395u(b)(6)(B)]에 준하여 이루어지거나 1870(f)(1), of such Act[42 U.S.C. §1395gg(f)(1)]에 서술된 절차에 의해, 1842(b)(3)(B)(ii)[42 U.S.C. §1395u (b)(3)(B)(ii)]에 서술된 배분 기준으로 이루어지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삭감명령에 의하여 감소한 지불액을 전액지불로 간주한다.

(4) AAPCC의 계산에 대한 영향은 없음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장관은 사회보장법 1876(a)(4)[42 U.S.C. §1395mm(a)(4)]의 목적상 1인당 조정 평균 원가를 계산할 때에는, 이 부분[2 U.S.C. §900 et seq.]에 준하여 이미 발효되거나 발효될지도 모르는 지불액수의 감소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e) 지역사회 및 이동 건강 센터, 인디언 건강센터 및 시설, 퇴역군인을 위한 의료보험(medical care)

(1) 어느 회계연도를 위하여 제254조[2 U.S.C. §904]하에서 발령된 명령에 의한, 아래의 (2)에 나열된 모든 계정을 위한 예산권한의 감소는 최대 2% 내에서 허용된다.

(2) 위의 (1)에서 언급한 계정들을 다음과 같다.

(A) 지역사회 건강센터(Community health centers) (75-0350-0-1-550)

(B) 이동 건강센터(Migrant health centers) (75-0350-0-1-550)

(C) 인디언 건강 시설(Indian health facilities) (75-0391-0-1-551)

(D) 인디언 건강 서비스(Indian health services) (75-0390-0-1-551)

(E) 퇴역군인 의료보험(Veterans' medical care) (36-0160-0-1-703)

이 (2)항의 이전 조항들의 목적상, 프로그램들은 미국정부의 예산에 명시된 지정 예산 계정 식별코드에 의하여 식별된다 - 부록.

- (f) 이혼가정 자녀양육비(child support) 집행 프로그램의 처리 예산 계정 명시(display)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254조[2 U.S.C. § 904]에 의한 대통령령은 사회보장법 455(a)[42 U.S.C. §655(a)]이 규정한(해당 회계연도를 위하여)데로, 그리고 아래의 액수만큼 비용들을 감소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각 주의 그 프로그램으로 인한 행정비용에 대한 연방 매칭율(federal matching rate)을 감소함으로써, 사회보장법 제455조와 제458조[42 U. S.C. §655 and 658]에 준한 비용의 필요 감소 전액을 달성한다.

(g) 연방 임금

(1) 총칙

제254조[2 U.S.C. §904]하에서 발령된 어떤 명령의 목적상

(A) 법정 급여시스템 하에서 연장 급여 및

(B) 군인 급여의 구성요소

들은 연방예산의 다른 행정비용 구성요소들과 같은 방법으로 명령에 의하여 감소한다. 예외적으로 그러한 명령은 개인인 어떤 법정 급여시스템(제5304조 of 제5편, U.S.C. 또는 제302조 of the Federal Employees Pay Comparability Act of 1990[5 U.S.C. §5304 note]하에서 지불하는 금액에 의해 증가된 후)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율, 그러한 법정 급여시스템 또는 U.S.C. 제37편하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군인급여의 어느 구성요소의 비율, 또는

U.S.C. 제5편 제5303조와 제37편 제1009조 또는 기타 다른 법규정하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급여율의 인상을 감소하는 효과는 없다.

(2) 정의

이 조의 목적상

(A) “법정 급여시스템”이라 함은 U.S.C. 제5편, 5302(1)에서 정의된 바에 의한다.

(B) “군인 급여 구성요소”라 함은

(i) U.S.C. 제37편 제1009조에 규정된 유니폼을 입은 서비스 요원들을 위한 보상의 구성요소

(ii) 제37편 403a와 405[37 U.S.C. §403a and 405]에 준하여 유니폼을 입은 서비스요원들을 위한 충당금(allowances), 및

(iii) 제37편 203(c)[37 U.S.C. §203(c)]에 준한 생도 급여 및 선원(midshipman) 급여

(C) “유니폼을 입은 서비스요원”라 함은 U.S.C. 제37편 101(3)하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h) 연방 행정비용의 처리

(1) 이 편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부서와 공공기관(독립적 공공기관포함)들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과 계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비용들은, 다른 경우에 그러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에 적용되는 면제, 한도 또는 특별한 규칙과 무관하게, 제254조[2 U.S.C. §904]하에서 발령되는 명령에 의해 감소된다.

(2) 다른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립형이 아니고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과 계정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비용들은 이 부분[2 U.S.C. §900 et seq.]에 의하여 특별하게 면제되지 않는 한 삭감명령 하에서 감소된다.

- (3)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과 계정과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각 주 또는 정치적 하위분야가 발생시킨 행정비용을 보상하거나 매칭하는 지불액은 이 조의 목적상 연방정부의 행정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고, 이 부분[2 U.S.C. §900 et seq.]에 의하여 감소나 삭감적용을 받으며 그 정도(그리고 그 정도만)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과 계정과 관련된 연방정부에 의한 다른 지불액들이 그러한 감소나 삭감의 적용을 받는 정도와 같다. 예외적으로 (h)(1)(i)(1)에 명시된 실업보상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각 주가 발생시킨 행정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각주에 주어진 연방 지불액은 (h)(1)에 의한 면제에도 불구하고 [2 U.S.C. §900 et seq.]에 의하여 감소나 삭감적용을 받는다.
- (4) 다른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통화감독관(Comptroller of the Currency)
  - (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C) 저축은행 감독 사무국(Office of Thrift Supervision)
  - (D) 국립 신용조합은행 행정처(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 (E) 국립 신용조합은행 행정처, 중앙 유동성 시설(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central liquidity facility)
  - (F) 연방 퇴직저축투자위원회(Federal Retirement Thrift Investment Board)
  - (G)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
  - (H) 농장 신용 행정처(Farm Credit Administration)
- (i) 실업보상프로그램에 관한 지불과 선지급금 처리
- (1) 제254조[2 U.S.C. §904]의 목적상
    - (A) 실업신탁기금 계정에서 각 주에 의하여 정규적 실업보상금으로 지불된 액수(사회보장법 904(a)[42 U.S.C. § 1104(a)]에 의하여 설정)

- (B) 연방실업계정에서 각 주에 주어진 선지급금(사회보장법 XII 편[42 U.S.C. §1321 et seq.]과 동법 904(g)[42 U.S.C. §1104(g)]와 동법 제1203조[42 U.S.C. §1323]하에서 연방실업계정으로 배정된 선지급금에 의하여 설정), 그리고
- (C) 연방 직원 보상 계정으로부터의 지불액(동법 제909조[42 U.S.C. §1109])하에서 U.S.C. 제5편 제85장의 목적상 [5 U.S.C. §8501 et seq.] 설정, 그리고 그 계정에 배정, 전달 또는 달리 입금된 기금은 감소하면 아니 된다.

(2)

- (A) 각 주는 the Federal-State Extended Unemployment Compensation Act, 1970[26 U.S.C. §3304 note]에 준하여, 어느 기간 동안의 어느 실업주간에 대하여서도, 각 주에 주어진 연방지불액이 제254조[2 U.S.C. §904]에 준한 명령(order)에 기인하여 그 주간에 감소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비율만큼 감소시킨 지불액을, 위 법의 제204조[26 U.S.C. §3304 note]하에서 지불한 각 주급 실업수당(benefit)에서 감소할 수 있다.
- (B) (A)목에 따른 각 주에 의한 감소는 1954년의 소득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26 U.S.C. §3304 (a)(11)] 3304(a)(11)의 요구사항에 대한 미충족(failure to fulfill)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j) 상품신용회사

(1) 상품신용회사의 권한(Powers and authorities)

상품신용회사로서 국제무역에서 상품을 매매하고, 다른 채무변제와 기타 회사설립목적에 맞는 운용 회전자금으로 그 수익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신용회사의 권한행사는 이 title(편)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다.

(2) 계약상 지불액의 감소

- (A) 제254조[2 U.S.C. §904]에 준한 명령의 발령이전에 상품신용회사와 개인이 체결한 계약상의 대출 가능액은 이 후 발령된

명령에 의하여 감소되지 않는다. 한 회계연도에 명령이 발령된 후의 상품신용회사에 의한 융자금 또는 융자금 결손에 대한 현금 지급액은 (B)목을 적용하며 명령에 의하여 감소된다. (B) 농산품(a crop of commodity)에 관하여 (A)목에 준한 감소를 적용하며 생산자들, 생산자협동조합과 체결한 각 융자 계약은 동일한 항목과 조건에 준하여 감소한다. 만약 농산품에 적용되는 일부 계약(모든 계약은 아니더라도) 이 제254조[2 U.S.C. §904]에 의한 명령 발령 이후에 체결되면, 그 명령은 상품에 적용되는 계약상 지불액의 필수 감소가, (3)항에서 주어진 권한 하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농산품계약에도 일정하게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3) 총경비에 대한 이연 감소 허용

이 편(title)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 254조[2 U.S.C. §904]에 준한 명령이 발령되면, (1)항에 서술된 계약에 적용되는 명령에 의한 어떠한 감소라도 그 감소는, 위 명령이 적용되는 회계연도 다음의 회계연도에 있을 관련 계정의 총경비의 감소들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다.

(4) 일정비율(Uniform percentage rate) 감소와 기타 한도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제254조[2 U.S.C. §904]에 준하여 발령된 명령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2)항에 기술된 모든 감소들은, 각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및 관련계정을 위한 총경비가 그 모든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및 계정들에 있어서 동일한 비율(percentage rate)에 의하여 확실히 감소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어느 한 항목에 있어서도 감소비율(a percentage rate of reduction)이 그 명령에 명시된 비율(rate)을 초과하면 아니 된다.

(5) 낙농제품 프로그램

이 조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유가격유지프로그램 총경비의 감소를 달성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농림부장관은 미국에

서 생산되고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모든 우유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의 감소를 규정할 수 있다. 그 가격의 감소(판매 우유의 100 단위 무게마다 센트로 측정된다)는 제254조[2 U.S.C. §904]에 준한 삭감명령이 있는 당일에 시작한다. 그 가격의 감소는, 적용 회계연도동안 이 조항에서 우유 또는 우유제품 구매액을 감소하는 방법으로 하고, 달리(otherwise) 도달할 수 있었던 우유가격 유지프로그램 총경비의 총 감소액수를 초과하면 아니 된다.

(6) 제한할 수 없는 권한

이 공동 결의의 어떠한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도 상품신용회사의 순 실현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예산권한 수여에 관한 예산배정을 제한하거나 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k) 삭감의 효과

삭감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1) 어느 계정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재원은 (5)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영구적으로 취소된다.
- (2)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경우, 한 예산 계정내의 모든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등에 동일한 비율의 삭감이 적용된다. (예산배정법, 또는 그 계정을 관할(cover)하는 관련 회계연도보고서에 기술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들, 또는 가장 최근에 제출된 대통령예산에 기술되어 있는 예산배정법에 포함되지 않은 계정들과 함께.)
- (3) 삭감을 실행하는 행정규제(regulations)와 유사한 처분 등은 삭감명령 후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 계정,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 내에서, 예산재원의 서로 다른 수준들(levels)에서 공식 배분들(formula allocations)이 서로 다르면, 더 적은 총 예산배정(lower total appropriation)이 이루어지도록 삭감을 해석한다. 잔여 예산액은 실정법에서 프로그램 배분공식들(allocation formulas)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채무화(obligated)된다.

- (4) 달리 규정이 없으면, 삭감된 계정의 채무는 삭감이 있는 회계연도에만 감소한다.
- (5) 자동지출증가에서 삭감이 이루어지면, 삭감의 결과 무시되는 증가(해당 인덱스에서)는 이후 어느 회계연도에서도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 (6) 회전(revolving), 신탁기금, 특별기금 계정들에서 삭감된 예산채원들과 예산배정계정(appropriations accounts)들에서 삭감된 상계 균(offsetting collections)은 삭감이 이루어진 회계연도동안 채무(obligation)로 사용할 수 없지만, 달리 규정된 법에 따라 이후연도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 907. 【기준선 The baseline[Caution: See prospective amendment note below.]】**

(a) 총칙

어느 예산연도에 있어서, 기준선(baseline)이란 신규예산권한, 총비용, 수입과 흑자 또는 적자의 현행연도수준을 그 예산연도와 이후연도(outyears)를 향하여, 적용일까지 입안된 법안에 근거하여, 투사(projection)한 것을 지칭한다.

(b) 직접지출과 수입

예산연도와 각 이후연도에 대하여 기준선은 다음의 가정들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1) 총칙

직접지출과 수입을 규정(providing)하거나 창조하는 법은 각 연도의 그 법들에 명시된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권리부권한(entitlement authority)에 대한 자금지원은 그러한 법들이 요구하는 모든 지불금을 지불하는데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2) 예외

(A)

- (i) The Balanced Budget Act of 1997[enacted Aug. 5, 1997]의 입안일 또는 그 이전에 입안된 법에 의하여 설정된 추산현행연도총경비가 \$ 50,000,000을 초과하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예산연도 또는 이후연도 내에 종료한다고 가정하면 아니 된다. 추산 총경비가 \$ 50,000,000을 초과하는 신규 프로그램의 채점(scoring)은 예산위원회 또는 OMB의 채점에 기초한다. 프로그램의 채점에 관하여 CBO와 OMB간에 차이가 있을 때는 OMB, CBO와 예산위원회는 협의를 한다.
  - (ii) 제171조 of Public Law 104-127[7 U.S.C. § 7301]에 준하여 효력이 유예된(suspend) 법규정에 대하여 효력정지가 만료되고, 위 (i)의 목적상 추산현행연도총경비가 \$ 50,000,000을 초과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그 프로그램은 효력정지만료직전에 운영되었던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B) 그 회기에 입안된 법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 한 회계연도의 퇴역군인에 대한 보상 인상은 퇴역군인연금에 관하여 법 상 요구되는 바와 동일하다고 가정된다.
- (C) 신용기금에 헌납되는 간접세는 만료 시에는 현행비율로 연장된다고 본다.
- (D) 어느 법이 예산연도 또는 어느 이후연도(outyear)이전에 만료되면, 그 법에 준하여 운영되는 추산 현행연도 총경비가 \$ 50,000,000을 초과하는 어느 프로그램도 그 법의 만료 직전에 유효했던 것처럼 그 법 하에서 계속 운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3) 병원보험신용기금
- 다른 어떤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원보험신용기금의 수입과 사용은 이 법(this Act)에서 요구하는 모든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c) 재량적 예산배정

예산연도와 각 이후연도에서, 기준선은 (b)항에서 거론한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액수들에 대하여 다음의 가정들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 (1) 현행연도 예산배정의 인플레이션

비채무잔액(unobligated balances) 외의 예산재원은 전체연도 예산배정법(full-year appropriations Act)에서 예산연도를 위해 규정된 수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어느 계정에 있어서 전체연도 예산배정이 입안되지 않았다면, 비채무잔액(unobligated balances) 외의 예산재원은 현행연도에 사용되는(available) 수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료를 앞둔 주택계약의 경우는 (2)항에 명시된 데로, 사회보험행정비용은 (3)항에 명시된 데로, 급여 흡수(pay absorption)와 급여 연봉화(annualization)는 (4)항에 명시된 데로, 인플레이션은 (5)항에 명시된 데로, 순차적으로 누적적으로 조정하고, 법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급여 외 직원 혜택 지불액수준의 변경을 계상하여야 한다.

## (2) 만료되는 주택계약

수년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주택계약을 갱신하기 위한 신규예산재원은 그 회계연도에 만료되도록 예정된 계약들의 숫자와 현행연도에 만료되는 계약숫자 간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평균 현행연도 계약갱신비용과 동일한 계약 당 갱신비용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3) 사회보험 행정비용

다음의 신탁기금의 행정비용을 위한 예산재원은 현행연도에서 그 회계연도사이에 수혜자인구의 비율변화(percentage change)에 의하여 조정된다. 연방병원보험신용기금, 보조 의료보험신용기금, 실업신용기금 및 철도퇴직계정

(4) 급여 연봉화(Pay annualization); 급여 흡수 상계(offset to pay absorption)

연방직원들을 위한 현행연도 신규예산근원은 그 회계연도에 있었던 급여조정의 12개월 전체동안의 비용(흡수 없이: without absorption)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5) 인플레이터(Inflators)

직원들과 관련된 예산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1)항에서 사용된 인플레이터는, 그 회계연도에 있어 임금, 월급, 개인 사업 노동자(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Employment Cost Index) 평균과, 현행연도의 그 지수(인덱스)와의 차이를 백분율(percent)로 표시한다. (1)항에서 사용된 다른 모든 예산 재원을 조정하기 위한 인플레이터는 그 회계연도의 추산 총 국내 생산 체인형(chain type) 물가 지수 평균과 현행연도의 그러한 추산지수의 평균과의 차이를 백분율(percent)로 표시한다.

(6) 현행연도 예산배정

어느 계정에 대하여 지속되고 있는 예산배정이 현행연도 일부분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면, 현행연도액수(current year amount)는, 지속되고 있는 예산배정이 전체 회계연도에 미치는 경우의 사용가능(available) 액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현행연도의 예산계정들 간에 법에 의하여 예산권한의 편입(transfer)이 허용된다면, 한 계정에 대한 현행연도의 수준은, 예산연도에 대한 대통령의 원예산(original budget)의 제출에 의해 달성되며, 대통령의 원예산(original budget)에서 현행연도에 대하여 가정되는 편입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d) 최신(up-to-date) 개념들

어느 예산연도 또는 이후연도를 위한 기준선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현행연도 액수들은 그 예산연도에 대하여 요구되는 개념과 정의를 사용하여 계산 한다.

## (e) 자산 구매

자산구매가 채점 지침(Scorekeeping guidelines) 하에서 연방정부에 채무비용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자산구매로 실현된 액수들은 제 251조 내지 제253조[2 U.S.C. §901, 902, or 903]에 의거한 추산(estimates)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907a. 【전쟁 또는 저성장시 유예(Suspension)】**

## (a) 저성장보고 시의 절차

## (1) 시작(Trigger)

CBO가 254(j)[2 U.S.C. §904(j)]하에서 저성장보고서를 발표할 때마다, 하원의 다수당 당수는 254(j)[2 U.S.C. §904(j)]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었다고 선언하고, 또 1974년 의회예산법(the 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의 본 편(this title), III편, VI편[2 U.S.C. §631 et seq. and 665 et seq.]과 U.S.C. 제31편, 제1103조상의 관련조항들을 유예하는, 공동결의((2)항에 명시된 형태로)를 도입할 수 있고, 상원의 다수당 당수는 그러한 공동 결의를 도입하여야 한다.

## (2) 공동결의형태

(A) (1)항에 준하여 도입된 공동결의의 결의조항 후는 다음과 같다. 의회는 1985년도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2 U.S.C. §904(j)]의 254(j)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었고, 1974년도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제31편 제11장, U.S.C.[31 U. S.C. §1101 et seq.]의 실행 및 1985년도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2 U.S.C. § 900 et seq.]의 part C가, 1985년도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2 U.S.C. §908 (b)]의 258 (b)에 기술된 바처럼, 수정되었다고 선언한다.

(B) 공동결의의 명칭은 “Section 258(a)(2) of 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2 U.S.C. §908(a)(2)]에 준한 어떤 법 규정들을 유예하는 공동결의”이다. 공동결의는 어떠한 서문도(preamble) 포함하면 아니 된다.

(3) 위원회의 행동

(1)항에 준하여 도입된 각 공동결의는, 경우에 따라, 하원의 해당 위원회 또는 상원의 예산 위원회로 보내진다. 그 위원회는 공동결의가 도입된 이 후 개최된 하원 회기 5일째 또는 그 이전에 하원에 개정 없이 그 공동결의를 보고한다. 만약 위원회가 이전 문장에 언급된 5일의 기간동안 공동결의를 보고하지 않으면, 공동결의는 자동적으로 더 이상 고려되지 않고 (discharged from further consideration) 그 공동결의는 적절한 다음기회로 넘어간다.

(4) 공동 결의의 고려

(A) 공동결의가 보고된 날 이후 열린 회기로부터 5일이 끝나기 전 또는 위원회가 공동결의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게 된 후에, 상원에 보고되거나 (3)항에 의하여 고려되지 않았던, 공동결의의 최종 통과에 대하여 투표를 한다. 만약, 상원 또는 하원의 공동결의가 각 상원 또는 하원에서 통과되기 전에, 상원 또는 하원이 다른 쪽 의회로부터 동일한 공동결의(the same joint resolution)를 전달받으면

(i) 상원 또는 하원에서의 절차는 그러한 공동결의를 다른 쪽으로부터 전달받지 않은 때와 동일하다. 그러나

(ii) 최종통과에 대한 투표는 다른 쪽 의회의 공동결의에 대하여 한다.

공동결의에 동의하면, 하원의 서기관(하원의 공동결의가 하원에서 동의된 경우), 또는 상원의 비서관(상원의 공동결의

가 상원에서 결의된 경우)은 공동결의를 정서, 인증하여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의회(the other House of the Congress)로 보낸다.

(B)

- (i) 이 항에 준한 공동결의는 상원에서 면책특권을 갖는다.
- (ii) 이 항에 준한 공동결의에 대한 상원에서의 토론과 그와 관련하여 토론될 수 있는 발의와 항소는 5시간으로 제한된다. 그 시간은 다수당 당수, 소수당 당수 또는 그 피지명자간에 균등하게 배분되고 사용된다.
- (iii) 이 항에 준한 상원에서의 공동결의와 관련하여 토론될 수 있는 발의와 항소는 1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되고 그 시간은 공동결의의 발의자와 관리자간에 균등하게 배분되고 사용된다. 예외적으로 공동결의의 관리자가 그러한 발의와 항소에 찬성할 경우 그에 반대하는 시간은 소수당 또는 그 피지명자에 의하여 통제된다.
- (iv) 이 항에 준하여 공동결의에 대한 토론을 제한하지는 상원의 발의는 토론대상이 될 수 없다. 의사진행절차상 이 항에 준한 공동결의를 보류하거나 다시 회부하는 발의는 할 수 없다.

(C) 상원절차상 이 항에서 고려되는 공동결의에 대해서는 개정을 할 수 없다.

(b) 삭감절차들의 유예

(a)항에 기술된 전쟁선포나 공동결의의 입안의 경우

(1) 그 후로 삭감보고 또는 삭감명령을 하는 것은 배제 된다.

(2) 1974년도 Congressional Budget Act[2 U.S.C. §633(f), 641(d), 642

(a)와 665 et seq.]의 302(f), 310(d), 311(a)과 VI편은 유예된다. 그리고

(3) U.S.C. 제31편의 제1103조는 유예된다.

(c) 삭감절차의 회복

(1) 전쟁의 선포로 인하여 삭감절차가 유예된 경우, 필수 조약이 상원에 의해 비준되어 전쟁상태가 종료된 후, 첫 번째 회계연도에 개최되는 회기부터, 전쟁선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했던 (b)항의 법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 (a)항에 기술된 공동결의의 입안에 기인하여 삭감절차가 유예된 경우, 그 공동결의의 입안 후 적어도 12개월 이후에 시작하는 첫 번째 회계연도부터, 그 결의에 의하여 발생했던 (b)항의 법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907b. 【대통령령의 수정[Caution: See prospective amendment note below.】**

(a) 공동결의의 도입

한 회계연도에서 OMB가 제254조[2 U.S.C. §904]에 준하여 최종삭감보고를 발표한 이후 언제라도, 다만 그 보고의 발표이후에 시작된 의회회기의 20일째 되는 날이 끝나기 전에, 상원, 또는 하원의 다수당 당수는 제254조[2 U.S.C. §904]에 준해 발표되는 가장 최신 명령을 대통령이 수정(modify)하도록 지시하는 법규정을 포함하는 공동결의를 도입하거나 그 회계연도의 적자를 감소시키는 대안을 규정할 수 있다. 한 의사일정 연도(calendar year)(1월 1일에 시작)에서 상원 또는 하원이 최초로 그와 같은 공동결의를 도입한 후, 같은 의사일정 연도(calendar year)에 상원 또는 하원에서 도입된 다른 어떤 공동결의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b) 공동결의의 고려 절차

(1) 위원회 회부

(a)항에 준하여 상원에서 도입된 공동결의는 상원의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이 항에 따라 그 공동결의의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예정날짜를 정해둔다.

## (2) 상원에서의 고려

상원의 Standing Rules의 Rule XXII를 포함하여 상원의 어느 규칙 또는 선례에도 불구하고, (a)항에 준하여 공동결의에 대한 상원 회기내 예정일 이 후 3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 지난 이후에는, 상원의 의원은 공동결의를 고려하자는 발의 (같은 취지의 이전 발의에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를 하여야 한다. (발의가 적용되는) 공동결의 도입 8일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부터는 발의는 필요하지 않다. 상원의 공동결의는 면책특권을 가진다. 발의에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투표를 다시 고려하는 발의는 필요하지 않다. 공동결의를 고려하자는 발의에 동의가 있으면, 상원은 즉시 중간 발의, 명령, 또는 다른 사안 없이 공동결의를 고려하게 되고 처리가 될 때까지 공동결의는 상원에서 미결 사안으로 남는다.

## (3) 상원에서의 토론

(A) 상원에서, (a)항에 준하여 도입된 공동결의에 대한 토론 및 개정과 그와 관련된 토론 대상 발의와 항소(appeals)는 10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간은 다수당과 소수당 당수 (또는 피지명인)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진다.

(B) 지연 발의(a motion to postpone), 다른 사안을 고려하자는 발의는 필요하지 않다. 발의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투표를 다시 고려하는 발의와 공동결의를 다시 부의하는 발의는 필요하지 않다.

## (C)

(i) 제254조[2 U.S.C. §904]에 의거한 명령 또는 공동결의 규정과 밀접하지 않은 어떠한 개정도 상원에서 필요하지 않다. 상원에서, 개정, 개정에 대한 개정, 토론대상 발의, 항소는 30분 이내에 토론하고 그 30분은 발의자와 다수당당수

(피지명인)간에 배분되고 그들에 의하여 통제된다. 예외적으로 다수당 당수가 개정, 발의, 향소를 했을 경우 소수당 당수(또는 피지명자)는 개정, 발의, 향소에 반대하여 구 시간을 통제한다.

(ii) 상원은, 개정내용이 공동결의를 한 곳 이상 개정하거나 이전에 개정된 문구를 또 개정하는 경우라도, 달리(otherwise)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을 한다. 공동결의, 개정에 포함된 숫자가 수학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원이 그 공동결의, 개정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한 투표는 필요하지 않다.

(4) 최종 의결에 대한 투표

(a)항에 준하여 도입된 공동결의에 대한 토론, 상원규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순 정족수 요청(a single quorum call)과 (3)항에 준한 미결 개정안이 해결되면 즉시 공동결의에 대한 최종 의결 투표를 하여야 한다.

(5) 향소

의장의 결정에 대한 향소는 토론 없이 이루어진다.

(6) 회의보고

상원에서 the 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의 III, IV, VI편[2 U.S.C. §631 et seq., 651 et seq., and 665 et seq.]에 준한 명령의 요점(points of order)은, 공동결의 또는 공동결의내용의 개정들에 대한 회의보고서에 적용된다.

(7) 다른 의회로부터의 결의

(a)항에 준한 상원의 공동결의가 상원에서 통과하기 전에, 상원이 하원으로부터 (a)항에 준하여 도입된 공동결의를 받으면 다음 절차를 적용한다.

(A) 하원의 공동결의는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결의시기를 정해 둔다.

(B) (a)항에 준하여 상원에서 도입된 공동결의에 대하여

(i) 상원의 절차는 하원으로부터 공동결의를 받지 못한 경우와 같다. 그러나

(ii)

(I) 상원에서 계류 중인 공동결의와 동일한 하원의 공동결의에 대하여 최종의결을 위한 투표를 한다. 또

(II) 하원의 공동결의가 상원에 계류 중인 공동결의와 같지 않고, 상원이 상원의 공동결의를 통과하면 상원은 상원 공동결의의 문안에 의하여 개정된 하원공동결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C) 하원에서 받은 공동결의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상원에서 제출된 결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8) 하원결의에 대한 상원의 처리

상원이 하원이 통과한 공동결의와 동일한 상원 출처(originated)의 결의를 처리한 후, (a)항에 준하여 도입된 하원의 공동결의를 받으면, 상원출처의 결의의 상원의 처리는 하원출처의 공동결의에 대한 상원의 처리로 간주된다. 그 내용이 하원이 통과한 공동결의와 동일하지 않으면 상원은 상원의 공동결의 문안에 의하여 개정된 하원의 공동결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 907c. 【방위프로그램들, 프로젝트들과 활동들 간의 유연성[Caution: 이 section은 2 U.S.C. §900 note의 §275(b) of Act Dec. 12, 1985, P.L. 99-177에 준하여 September 30, 2002에 효력이 만료된다.】**

(a) 대통령에 명시된 액수를 초과하는 감소들

(b)항, (c)항, (d)항에 준하여, 신규예산권한 및 주기능 범주 050내의(군속계정은 예외) 프로그램들, 프로젝트들과 활동들을 위한 비

채무 잔액들은 그 회계연도에 제254조[2 U.S.C. §904]에 준하여 발령된 대통령령에 명시된 액수보다 감소될 수 있다. 그 회계연도에 위와 같은 추가적 감소가 이루어지고 추가적 총 경비 감소가 있는 정도만큼, 대통령은 신규예산권한과 주기능 범주 050내의(군속계정은 예외) 프로그램들, 프로젝트들과 활동들을 위한 비채무 잔액들에 대하여, 발생하는 총경비증가가, 추가적 총 경비 감소를 초과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축소 감소(lesser reductions)들을 결정할 수 있지만, 어떠한 프로그램, 프로젝트와 활동도 예산배정법에 준하여 실제로 사용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항에서 계산을 할 때 대통령은 제254조[2 U.S.C. §904]에 준하여 OMB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정 지출 비율(account outlay rates)을 사용하여야 한다.

(b) 기준 폐쇄(base closures)의 금지

한 회계연도에서 (a)항에 준한 어떠한 대통령의 조치도, 그것이 없을 경우 U.S.C. 제10편 제2687조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준폐쇄(domestic base closures) 또는 재조정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c) 보고 및 공동결의 필요

대통령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이 조에서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은 각 계정에 대하여 이 조에 준하여 그 회계연도에 이루어지도록 제안된 상세한 변경들을 명시한 단일 보고를 의회에 제출한다.

(2) 그 보고서는 의회의 다음회기의 시작 5일 내에 제출한다. 그리고

(3) 이 조에 준한 대통령이 제안한 변경들을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공동결의는 법규가 된다.

(d) 공동결의의 도입

한 회계연도에 (c)(1)에 준하여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후, 회기의 5일 내에, 상원 및 하원의 다수당 당수는 (요청에 의하여) 이 조에 준하여 대통령이 제안한 변경된 규정내용을 포함하는 공동결의를 도입하여야 한다.

(e) 공동결의 형태와 명칭

(1) (d)항에 준하여 도입된 공동결의의 결의조항은 아래와 같다.  
 “258B[this section]에 준하여 ... 일자에 제출된 대통령의 보고가 이에 승인된다.”

(2) 공동결의의 명칭은 “1985년도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this section]의 258B에 준하여 제출된 대통령의 보고를 승인하는 공동결의”라 한다.

(3) 이러한 공동결의는 서문을 포함하지 않는다.

(f) 상원에서의 공동결의에 대한 예정과 고려

(1) (d)항에 준하여 상원에 도입된 공동결의는 예산위원회로 회부되어야 하며, 도입 일자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내에 보고되지 않으면, 그 공동결의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이 항에 준하여 그 공동결의의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pending disposition) 적절한 예정날짜를 정해둔다. 상원에서는 제254조[2 U.S.C. §904]에 준한 명령 또는 공동결의 규정과 밀접하거나 관련이 있는 개정(대체물적인 성격을 갖는)외에는 예산위원회에서 제안된 다른 어떤 개정도 필요하지 않다. 이 항의 목적상 050기능(국방)에 관한 개정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the Standing Rules의 Rule XXII를 포함하는 상원의 규칙 또는 선례에도 불구하고, (a)항에 준하여 공동결의를 상원 회기에 예정한 날로부터 3일째(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 이후에

는, 상원의 의원은 공동결의를 고려하자는 발의(같은 취지의 이전 발의에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를 하여야 한다. (발의가 적용되는) 공동결의가 예정된 8일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부터는 발의는 필요하지 않다. 발의는 토론대상이 아니다. 상원의 공동결의는 면책특권을 가진다. 발의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투표를 다시 고려하는 발의는 필요하지 않다. 공동결의를 고려하자는 발의에 동의가 있으면, 상원은 즉시 중간 발의, 명령, 또는 다른 사안 없이 공동결의를 고려하게 되고 처리될 때까지 공동결의는 상원에서 미결로 남는다.

(g) 공동결의에 대한 토론; 발의들

- (1) 상원에서, (d)항에 준하여 도입된 공동결의, 그에 대한 개정, 관련 발의 및 항소에 관한 토론은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그 시간은 다수당, 소수당 당수 간에 균등하게 배분한다(또는 피지명자들).
- (2) 연기 발의, 다른 사안을 고려하는 발의는 필요하지 않다. 공동결의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투표를 재고려 하는 발의는 필요하지 않다. 공동결의를 재부의(recommit)하는 발의는 필요하지 않다.

(h) 공동결의의 개정

- (1) 상원에서는, 제254조[2 U.S.C. §904]에 의거한 명령 또는 공동결의 규정과 밀접하지 않은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이 항의 목적상 050기능(국방)에 관한 개정은 관련이 있다고 간주된다. 상원에서, 개정, 개정에 대한 개정, 토론대상 발의, 항소는 30분 이내에 토론하고 그 30분은 발의자와 다수당당수(피지명인)간에 배분되고 그들에 의하여 통제된다. 예외적으로 다수당 당수가 개정, 발의, 항소를 했을 경우 소수당 당수(또는 피지명자)는 개정, 발의, 항소에 반대하는 시간을 통제한다.

- (2) 상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개정은, 그것이 공동결의를 한 곳 이상 개정하거나 이전에 개정된 문구를 또 개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개정에 포함된 숫자가 수학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한 개정한다. 공동결의, 개정에 포함된 숫자가 수학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한 상원에서 그 공동결의, 어떤 개정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한 투표는 필요하지 않다.
- (3) 어느 개정 또는 회의보고가 어떤 특정한 예산 경비를 감소시키고, 그 공동결의에 규정된 그 경비감소들의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그러한 개정 또는 회의보고가, 적어도 그 개정 또는 회의 보고에 규정된 총경비의 인상과 동일한 규모이고, 다른 특정의 예산 총경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 (d)항에 준하여 도입된 공동결의에 대한 어떤 개정, 또는 회의보고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4) (3)항을 적용하는 목적상, 개정안의 총경비 수준과 특정예산경비감소들은 상원 예산위원회의 추산액(estimated, 또는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i) 최종 의결에 대한 투표
- (d)항에 준하여 도입된, 공동결의에 대한 토론, 상원규칙에서 요구되는 단순 정족수 요청과 (h)항에 준한 미결 개정안의 해결이 있은 후 즉시, 공동결의의 최종 의결에 대한 투표를 실행하여야 한다.
- (j)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소
- (d)항에 기술된 공동결의 관련 절차에 상원 규칙을 적용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장이 결정한 항소는 토론 없이 결정된다.
- (k) 상원에서 결정된, 1974년도 the Congressional Budget Act의 III, IV, VI편[2 U.S.C. §631 et seq., 651 et seq., and 665 et seq.]에 준한 명령 요점(points of order)은 공동결의 또는 그 공동결의내용의 개정들에 대한 회의보고서에 적용된다.

(l) 다른 의회로부터의 결의

(d)항에 준한 상원의 공동결의가 상원에서 통과하기 전, 상원이 (d)항에 준하여 도입된 공동결의를 하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적용한다.

(1) 하원의 공동결의는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다.

(2) (d)항에 준하여 상원에서 도입된 공동결의에 대하여

(A) 상원의 절차는 하원으로부터 공동결의를 받지 못한 경우와 같다. 그러나

(B)

(I) 상원에서 계류 중인 공동결의와 동일한 하원의 공동결의에 대하여 최종통과를 위한 투표를 한다. 또

(II) 하원의 공동결의가 상원에 계류 중인 공동결의와 같지 않고, 상원이 상원의 공동결의를 통과하면 상원은 상원공동결의의 문안에 의하여 개정된 하원공동결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3) 하원에서 받은 공동결의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상원에서 제출된 결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m) 하원의 결의에 대한 상원의 처리

상원이 하원이 통과한 공동결의와 동일한 상원출처의 결의를 처리한 후에, (d)항에 준하여 도입된 하원의 공동결의를 받으면, 상원출처의 결의의 처리에 있어서 상원의 처리는 하원출처의 공동결의에 대한 상원의 처리로 간주된다. 그 내용이 하원이 통과한 공동결의와 동일하지 않으면 상원은 상원의 공동결의 문안에 의하여 개정된 하원의 공동결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 907d. 【특별 화해과정 Special reconciliation process【Caution: See prospective amendment note below.】**

(a) 결의와 화해의 입안 보고 및 상원에서의 결의

(1) 대통령령에 대한 위원회의 대체안

제252조 또는 제253조[2 U.S.C. §902 or 903]하에서 삭감을 계획하여 제254조[2 U.S.C. §904]에 준하여 만든 OMB 삭감 최신(update)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상원의 각 상임 위원회는 10월 10일 이전에, 그러한 명령이 위원회의 관할영역(jurisdiction)의 범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 보고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명령에 대한 대체안들에 관하여, 1974년 Congressional Budget Act[2 U.S.C. §632 (d)]의 301(d)에 기술된 종류의 정보를 상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최초 예산 위원회 행동

보고서 제출 후에 상원의 예산위원회는 10월 15일 이전에 상원에 결의를 보고하여야 한다. 결의는 그 보고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명령의 과급효과를 전체를 승인하거나 부분적으로 승인(인정: affirm)할 수 있다. 결의에는 승인하지 않은 부분을 기술하고 1974년 Congressional Budget Act[2 U.S.C. §641(a)]의 310(a)에 언급된 종류의, 상원위원회들에게 보내는 지침(instruction)을 포함시킨다. 지침은 적어도 승인(affirm)되지 않은 부분들에 포함되어 있던 적자감소의 전체 수준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3) 위원회들의 반응

(2)항에 준하여 지침을 받은 위원회들은 (2)항에서 언급된 결의에 대한 동의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 넘기 전에 예산위원회에 응답을 제출한다. 예외적으로 단지 한 위원회만 지침을 받았을 경우 그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날까지 그러한 지침에 대한 응답으

로 자신의 추천사항을 담고 있는 화해법안, 또는 화해결의를 상원에 보고한다. 그 위원회가 자신의 관할영역에 있는 사안에 관하여, 그러한 지침에서 지시된 전체 감소(total reduction)와 적어도 동일한 액수의 적자 감소(reduction in the deficit)를 발생시키는 추천안으로 응답하면 그 위원회는 (2)항에서 채택한 결의에 대한 모든 지침을 준수하였다고 간주한다.

(4) 예산위원회 처리행동(Budget Committee action)

(2)항에 언급된 결의의 응답으로 받은 추천안들을 받으면, 예산위원회는 화해안이나 화해결의 또는 양쪽 모두를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상원에 보고한다. (2)항에 언급된 결의에 의하여 지침을 받은 위원회가 어떠한 추천안도 제출하지 않으면(또는 오직 한 위원회가 지침을 받았을 때 화해 입안 또는 결의를 하지 않으면), 예산위원회는 지침을 따르지 않는 위원회의 관할영역 한도 내에서, 본 항에 따라 보고 된 화해 입안 또는 결의안에 그 지침에서 지시한 적자 감소액을 달성하기 위한 법언(legislative language)을 포함한다.

(5) 명령의 요점(Point of order)

(4)항에 준한, 한 회계연도, 그에 대한 개정, 그에 대한 회의보고에 관하여 만약 아래와 같은 것들이 그 회계연도의 최대 적자액을 초과하는 적자액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상원은 어떠한 화해 입안 또는 결의안도 고려 할 필요가 없다.

(A) 보고 된 바와 같은 법안, 결의

(B) 그러한 개정의 채택과 입안, 또는

(C) 그러한 회의 보고서에서 추천한 법안 또는 결의의 입안

제254조[2 U.S.C. §904]에 준하여 제출된 저성장보고서가 그 회계연도, 또는 그 회계연도안의 2개의 연속되는 4분기에 대하여, 마이너스의 실질 경제 성장을 투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일부 개정안의 처리

만약, (2)항에 언급된 종류의 지침을 추가되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지침이 새로운 사안이라는 이유로 관련이 없다고(non-germane, 역자주: §907b.(b)(3)(C) (i), §907c.(f)(1)참조)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항에 준하여 보고된 결의에, 그러한 결의를 고려하면서, (2)항에 언급된 종류의 지침을 추가하는 개정을 하여야 한다.

(7) “일(day)”에 대한 정의

(1)항, (2)항, (3)항의 목적상, “일(day)”이라 함은 상원이 회기 중인 날을 의미한다.

(b) 절차

(1) 총칙

(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상원은, 예산에 대한 병행 결의(concurrent resolutions) 및 그에 대한 회의보고서의 고려를 위한 1974년 Congressional Budget Act[2 U.S.C. §636 and 641]의 제305조와 제310조의 규정들을, 이 조항 하에서 보고된 결의들, 화해법안과 화해결의들 및 그에 대한 회의보고서의 고려에 적용한다.

(2) 토론에 대한 제한

(a)(2)에 준하여 보고된 어떤 결의에 대한 상원에서의 토론과 그에 대한 개정, 그와 관련된 토론가능 발의와 항소는 10시간으로 제한된다.

(3) 개정에 대한 제한

Congressional Budget Act[2 U.S.C. §641(d)(2)]의 310(d)(2)은 이 조항 하에서 보고된 화해법안과 화해결의에 적용된다.

(4) 하원에서 전달받은 법안과 결의

이 조항의 목적상 상원의 화해법안과 화해결의에 부수하는, 하원에서 상원으로 전달된 법안과 결의는 이 조항의 규정에 준하여 상원에서 고려된다.

미 국

(5) “결의”의 정의

이 조항의 목적상, “결의”라 함은 단순(simple), 공동(joint), 또는 병행(concurrent) 결의를 말한다.

§ 908. 삭제

§ 909. 삭제

의  
개

# 재 정 법

## 제 1 장 재정총칙

### 【이 법률의 목적】

**제 1 조** 국가의 예산 그 외의 다른 재정의 기본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수입지출 및 세입세출의 정의】

**제 2 조** ①수입은 국가의 각 부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의 재원이 될 현금의 수납을 말하고, 지출은 국가의 각 부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현금의 지불을 말한다.

②전항의 현금의 수납에는, 다른 재산의 처분 또는 새로운 채무의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포함하고, 동항의 현금의 지불에는 다른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도 포함한다.

③또한 제1항의 수입 및 지출에는 회계 간의 조입 또는 다른 국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④세입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말하고, 세출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 【과징금, 전매가격 및 나라의 독점사업의 과금의 결정과 국회의 권한】

**제 3 조** 조세를 뺀 나머지, 국가가 국권에 기초하여 수납하는 과징금 및 법률 또는 사실상 국가의 독점에 속하는 사업에 따른 전매가격 또는 사업요금에 관해서는 일체 법률 또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정하여야 한다.

**【공채 및 차입금재원에 의한 세출지불의 제한】**

**제 4 조** ①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써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부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채를 발행 또는 차입금을 형성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금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공공사업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매회계년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채발행 및 차입금차입의 방법의 제한】**

**제 5 조** 모든 국채의 발행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에 이를 인수받고, 또 차입금의 차입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이 이를 차입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결산상의 잉여금의 공채등상환재원에의 충당】**

**제 6 조** ①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생긴 경우에는 당해 잉여금 중에서 2분의 1 이상의 금액은, 다른 법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그것을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익익연도까지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잉여금의 계산에 대해서는 정령에 이를 정한다.

**【재무성증권의 발행 및 일시차입금】**

**제 7 조**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 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무성증권을 발행하거나 일본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改正》평성11法160

②전항에 규정한 재무성증권 또는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써,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改正》평성11法160

③재무성정권의 발행 및 일시차입금의 차입최고액에 대하여는 매회계연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改正》평성11法160

### 【채권의 면제 및 효과변경】

**제 8 조** 국가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의 변경함에는 법률에 의하여야한다.

### 【재산의 처분 및 관리의 원칙】

**제 9 조** ①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교환, 다른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적정한 대가 없이 이를 양도 또는 대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의 재산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이를 관리하고, 그 소유의 목적에 알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를 운용하여야한다.

### 【나라의 특정사무의 비용을 타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의 제한】

**제10조** 국가의 특정한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가 이외의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 제 2 장 회계구분

### 【회계년도】

**제11조**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월 4월 1일 시작하고, 익년 3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회계년도독립의 원칙】**

**제12조** 각 회계연도에 따른 경비는 그 해의 세입으로써 지불해야 한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3조** ① 국가의 회계를 나누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②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행할 경우, 특정한 자금의 보유하고, 그 운용을 할 때에는 기타 다른 특정한 세입으로써 특정의 세출로 충당하고,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제 3 장 예 산

### 제 1 절 총 칙

**【총계예산주의】**

**제14조**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계속비】**

**제14조의2** ① 국가는 공사, 제조 또는 기타 다른 사업에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에 대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비의 총액 또는 연합액을 정하고,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의결한 것에 따라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 가능한 연한은 당해회계연도 이후 5개년도 이내로 한다. 단,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이 가능한 경비는 이를 계속비라고 한다.

④전 제3항의 규정은 국회가 계속비 성립 후의 회계연도의 예산의 심의에 관하여 당해 계속비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월명허비】

**제14조의3** ①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상 또는 예산 성립 후의 사유에 의해 연도내의 그 지출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비는 이를 조월명허비라고 한다.

### 【국고채무부담행위】

**제15조** ①법률에 의한 또는 세출예산의 금액 (제43조3에 규정한 승인 이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에 재해복구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매 회계연도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 내에 있어서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의하여 지출할 연한은 당해회계연도 이후 5개년도 이내로 한다. 단, 국회의 의결에 의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하거나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또는 연금, 지방공공단체의 채무의 보증 및 채무의 원리 또는 이자의 보급, 토지, 건물의 임료 또는 국제조약에 의한 분담금에 관한 것,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음의 정기국회에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이를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한다.

## 제 2 절 예산의 작성

### 【예산의 내용】

**제16조**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조월명허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한다.

### 【세입세출등의 견적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송부】

**제17조** ①중의원장, 참의원장, 최고재판소장관 및 회계검사원장은 매 회계년도 그 소장(所掌)에 관계된 세입, 세출, 계속비, 조월명허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견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것을 내각의 예산의 통합조제에 올리기 위하여 내각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내각총리대신 및 각성대신은 매회계년도 그 소장에 관계된 세입, 세출, 계속비, 조월명허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견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재무대신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 【세입세출등의 개산의 작제 및 각의 결정】

**제18조** ①재무대신은 전조의 견적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하고, 세입, 세출, 계속비, 조월명허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개요를 작성하여 각의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②내각은 전항의 결정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국회, 재판소 및 회계검사원에 관계된 세출의 개요에 대하여는, 사전에 중의원의장, 참의원의장, 최고재판소장관 및 회계검사원장에 대하여 이 결정에 관한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독립기관의 세출견적의 감액의 경우의 조치】**

**제19조** 내각은 국회, 재판소 및 회계검사원의 세출견적을 감액한 경우에는 국회, 재판소 및 회계검사원의 송부에 관한 세출견적에 관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상세히 부기함과 동시에 국회가 국회, 판결소 및 회계검사원에 관한 세출액을 수정한 경우에 필요한 재원에 관하여서도 명기하여야 한다.

**【세입예산명세서, 예정경비요구서 등의 제작 및 송부】**

**제20조** ①재무대신은 매회계년도 제18조의 각의 결정에 의하여 세입예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②중의원의장, 참의원의장, 최고재판소장관, 회계검사원장 및 내각총리대신 또는 각성대신(이하 각성각청의 장이라고 한다)은 매회계년도 제18조의 각의결정이 있는 개산(概算)의 범위내에서 예정경비요구서, 계속비요구서, 조월명허비요구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이하 예정경비요구서 등 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재무대신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예산의 작성 및 각의 결정】**

**제21조** 재무대신은 세입예산명세서, 중의원, 참의원, 재판소, 회계검사원 및 내각 (내각부를 제외한다), 내각부 및 각성 (이하 각성각청이라 한다)의 예정경비요구서등에 의한 예산을 작성하고 각의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예산총칙】**

**제22조**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조월명허비 및 국고채무

무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이외에 아래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채 및 차입금의 한도액
2.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비의 범위
3.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본은행의 국채의 인수 및 차입금의 차입한도액
4.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재무성정권의 발행 및 일시차입금의 차입최고액
5.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한도액
6. 전각호의 사항 이외의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기타 정령에 정하는 사항

《改正》 평성9法109

###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23조** 세입세출예산은 그 수입 또는 지출의 관계가 있는 부국 등의 조직별로 구분하고, 그 부국 등의 내에 있어서는, 다시 세입은 그 성질에 따라 부로 대별하고, 각부는 이를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따라 이를 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예비비】

**제24조**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각은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계속비의 구분】

**제25조** 계속비는 그 지출의 관계가 있는 부국 등의 조직별로 구분하고, 그 부국 등의 내에서는 항으로 구분하며, 다시 각 항마다 그 총액 또는 연할액을 표시하는 동시에 그 필요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구분】**

**제26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하며, 동시에 행위를 한 연도 및 채무부담의 한도액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행위로 인하여 지출을 할 연도 연한 또는 연할액을 표시하여야한다.

**【예산의 국회제출】**

**제27조** 내각은 매회계년도의 예산을 전년도 1월중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상례로 한다.

**【예산에 첨부하는 참고서류】**

**제28조** 국회에 제출할 예산에는 참고를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예산명세서
2. 각성각청의 예정경비요구서 등
3. 전전년도세입세출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 전년도세입세출결산추정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
4. 국고의 상황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실적 및 전년도말 및 당해연도말의 추정에 관한 조서
5. 국채 및 차입금의 상황에 관한 전전년도말의 실적과 전년도말 및 당해연도말의 현재고에 대한 추정과 그 상환연차표에 관한 조서
6.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고와 전년도말 및 당해연도말의 현재고의 추정에 관한 조서
7. 국가가 출자하고 있는 주요법인의 자산, 부채, 손익 기타에 관한 전전년도,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상황에 관한 조서

8.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익년도 이후에 행할 것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및 지출액의 추정,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수회계연도에 걸쳐 행할 사업에 수반하는 것에 대한 그 전체의 계획 기타 다른 사업 등의 진행상태에 관한 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및 지출액의 추정,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 등에 관한 조서
10. 기타 다른 재정의 상황 및 예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보정예산】

**제29조** 내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산작성의 절차에 준하여 보정예산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을 보전하는 이외, 예산작성 후에 발생하는 사유에 의하여 특히 긴급하게 된 경비의 지출(당해연도에 있어서의 국고내의 이환에 그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채무의 부담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추가를 행하는 경우
2. 예산작성 후에 생기는 사유에 의하여 예산에 추가이외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

### 【잠정예산】

**제30조** ① 내각은 필요에 따라서 1회계연도 중의 일정기간에 걸친 잠정예산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잠정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했을 때에는 실효하는 것으로 하고, 잠정예산에 기한 지출 또는 그에 기한 채무의 부담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기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본다.

### 제 3 절 예산의 집행

#### 【예산의 배부】

**제31조** ① 예산이 성립한 때에는 내각은 국회의 의결한 바에 따라, 각 성각청의 장에 대하여 그 집행의 책임을 질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배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및 계속비를 배부하는 경우에는 항을 목적으로 구분하여야한다.

③ 재무대신은 제1항에 따른 배부가 있는 때에는 회계검사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改正》 평성11法160

#### 【예산의 목적외사용의 금지】

**제32조** 각성각청의 장은 세입세출예산 및 계속비에 대하여는, 각항에 정해진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예산의 이용 및 유용】

**제33조** ① 각성각청의 장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계속비의 정해진 각 부국 등의 경비의 금액 또는 부국 등 내의 각 항의 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는, 각 부국 등의 사이 또는 각 항 사이에 있어서 피차이용할 수 없다. 단, 예산의 집행 상 필요에 의해 사전에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재무대신의 승인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改正》 평성11法160

② 각성각청의 장은 각자의 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는 재무대신의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항목 간에 있어서 피차유용을 할 수 없다.

《改正》 평성11法160

③재무대신은 제1항 단서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또는 유용한 경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에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④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또는 유용한 경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에 있어 그것을 명확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불계획】

**제34조** ①각성각청의 장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된 예산에 기하여, 정령의 정해진 바에 따라 지출담당사무직원마다 지출의 소요액을 정하고, 지불계획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며, 이를 재무대신에게 송부하고 그 승인을 거쳐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②재무대신은 국고금, 세입 또는 금융상황 및 경비의 지출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시에 지불계획승인에 관한 방침을 작성하고, 각의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③재무대신은 제1항의 지불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각성각청의 장에게 통지하고, 재무대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일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改正》 평성14法152

### 【공공사업비등에 관한 지불부담행위의 시행계획】

**제34조의2** ①각성각청의 장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된 세출예산,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공공사업비 기타 재무대신이 지정한 경비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정령에 정한 바에 따르고,

당해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지출부담행위(국가의 지출이 원인이 된 계약 기타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획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재무대신에 송부하여 그 승인을 거쳐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②재무대신은 전항의 지출부담행위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각성각청의 장 및 회계검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 【예산비의 관리 및 사용】

**제35조** ①예비비는 재무대신이 이를 관리한다.

《改正》 평성11法160

②각성각청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 금액 및 누계의 기초를 명확히 한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무대신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③재무대신은 전항의 요구를 조사하고 이에 필요한 조정을 가하여 예비비 사용서를 작성해서 각의의 결정을 구하여야한다. 단, 사전에 각의의 결정을 거쳐 재무대신이 지정한 경비에 대하여는 각의를 거치지 않고, 재무대신이 예비비 사용서를 결정할 수 있다.

《改正》 평성11法160

④예비비사용서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소요부분에 적힌 경비에 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배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전항의 규정은 각성각청의 장이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예비비사용조서】**

**제36조** ①예비비로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각성각청의 장은 그 조서를 작성하고 다음 국회의 정기국회의 개회 후 곧 이를 재무대신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②재무대신은 전항의 조서에 기하여 예비비로 지불된 금액의 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③내각은 예비비로써 지불한 총조서 및 각성각청의 조서를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승낙을 구하여야 한다.

④재무대신은 전항의 총조서 및 조서를 회계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 제 4 장 결 산

**【세출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송부】**

**제37조** ①각성각청의 장은 매회계년도 재무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장 관계된 세입 및 세출의 결산보고서와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무대신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②재무대신은 전항의 세입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세입예산명세서와 동일한 구분에 따라 세입결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③각성각청의 장은 그 소장의 계속비에 관계된 사업이 완성된 경우에는 재무대신의 정한 바에 따라 계속비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무대신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세입세출결산의 작성】**

**제38조** ①재무대신은 세입결산명세 및 세출의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여야한다.

《改正》 평성11法160

②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이를 작성하며 아래의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1. 세입
  - 1. 세입예산액
  - 2. 징수 결정된 금액(징수결정이 없는 세입에 대하여는 수납 후에 징수된 것으로 정리한 금액)
  - 3. 수납된 세입액
  - 4. 납부되지 않은 결손액
  - 5. 수납되지 않은 세입액
- 2. 세출
  - 1. 세출예산액
  - 2. 전년도이월액
  - 3. 예비비사용액
  - 4. 류용 등 증감액
  - 5. 지출된 세출액
  - 6. 익년도이월액
  - 7. 불용액

**【결산의 회계검사원에의 송부】**

**제39조** 내각은 세입세출결산에 세입결산명세서, 각성각청의 세출결산보고서 및 계속비결산보고서와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고 이를 익년도 11월 30일까지 회계검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결산의 국회제출】**

**제40조** ① 내각은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익년도 개회한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상례로 한다.

② 전항의 세입세출결산에는 회계검사원의 검사보고 외에 세입결산 명세서, 각성각청의 세출결산보고서 및 계속비결산보고서와 국가의 채무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다.

**【결산상의 잉여의 익년도 조입】**

**제41조** 매회계연도에 있어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그 익년도의 세입에 이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장 잡 직**

**【세출예산의 조원사용의 제한 및 사고이월】**

**제42조** 조월명허비의 금액을 제외하고, 매회계연도의 세출예산경비의 금액은 이를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단, 세출예산경비의 금액 중 연도 내에 지출부담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경우 (당해 지출부담행위에 관계된 공사 기타 사업의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을 요하는 경비의 금액을 포함한다.)에는 이를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의 절차】**

**제43조** ① 각성각청의 장은 제14조의3 제1항 또는 전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월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조월계산서를 작성하고 사항마다 그 사유 및 금액을 명확하게 하여 재무대신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改正》 평성11法160

②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경비에 관련된 세출예산은 그 승인이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각성각청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을 한 때에는 사항마다 그 금액을 명확히 하여 재무대신 및 회계감사원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평성11法16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을 한 경우에는 당해 경비에 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배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계속비연할액의 이월사용】

**제43조의2** ①계속비의 매회계년도의 연할액에 관계된 세출예산경비의 금액 중 그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낼 수 없는 것은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에 관한 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순차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전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이월명허비에 관한 익년도에 이른 채무부담】

**제43조의3** 각성각청의 장은 조월명허비의 금액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 및 금액을 명확하게 하고 재무대신의 승인을 거쳐 그 승인이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익년도에 지출할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 【특별자금의 보유】

**제44조** 국가는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 【특별회계에 의한 특례】

**제45조**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과 다른 정함을 행할 수 있다.

**【내각의 재정상황의 보고】**

**제46조** ① 내각은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는 곧 예산, 전전년도의 세입 세출결산 및 국채, 차입금과 국유재산의 현재고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인쇄물, 강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것 외에 내각은 적어도 매4반기마다 예산사용의 상황, 국고의 상황 기타 재정의 상황에 대하여 국회 및 국민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예외】**

**제46조의2**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등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법률(평성14年 법률 제151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追加》 평성14法152

**【서류등의 자기적기록에 의한 작성】**

**제46조의3**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과 작성되고 있는 서류 등 (서류, 조서 기타 문자, 도형 등 사람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종이 기타 유체물을 말한다. 다음 조에 대하여도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서류 등에 기재될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타인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의 이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재무대신이 정한 것을 말한다. 다음 조 제1항에 대하여서도 같다.) 의 작성으로써 당해서류 등의 작성에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전자적 기록은 당해 서류 등으로 간주한다.

《追加》 평성14法152

**【자기적방법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

**제46조의4** ①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에 대하여는 당해 서류증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중 재무대신이 정한 것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追加》 평성14法15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서류 등의 제출을 받을 자가 사용에 관계하는 전자계산기에 준비된 파일에 기록이 이루어진 때에 당해 제출을 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追加》 평성14法152

**【정령에의 위임】**

**제47조**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 이를 정한다.

# 지방재정법

소화23년 7월 7일 법률 제109호

최종 개정 : 평성17년 4월 1일 법률 제25호

## 【이 법률의 목적】

**제 1 조** 이 법률은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이하 지방재정이라고 한다.)의 운영,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과의 관계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제 2 조** ①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의 재정 또는 다른 지방공공단체의 재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시책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주성을 훼손하거나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시책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 【예산의 편성】

**제 3 조** ① 지방공공단체는 법령의 정함에 따르는 한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고 그것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지방공공단체는 모든 자료에 기초하여 정확히 그 재원을 파악하는 한편,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수입을 산정하고 그것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산의 집행 등】**

**제 4 조 ①** 지방공공단체의 경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여서는 안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수입은 적합하고 엄정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연도간 재정 운영의 고려】**

**제 4 조의2** 지방공공단체는 예산을 편성·집행하거나, 지출증가 또는 수입감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뿐만 아니라 다음 년도 이후의 재정상황도 고려하여 그 건전한 운영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연도간의 재원의 조정】**

**제 4 조의3 ①** 지방공공단체는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당해 년도에 있어서의 지방 교부세액과 그 산정에 사용된 기준재정수입액과의 합산액이 당해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된 기준재정수요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당해 년도에 있어서 일반재원액(보통세, 특별양여세, 국유 자산등 소재 시읍면 교부금, 국유 자산등 소재 도도부현 교부금, 국유 제공 시설등 소재 시읍면 조성 교부금, 일본 우정공사 소유자산 소재 시읍면 납부금, 일본 우정공사 소유자산 소재 도도부현 납부금 및 지방 교부세 또는 특별구 재정 조정교부금액의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동일)이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전년도 일반재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초과액이 새롭게 증가한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에 관한 일반재원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그 현저히 초과하는 액을 재해에 의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 또는 재해에 의해 발생한 減收를 보충하기 위한 재원, 전년도 말까지 발생한 세입흡결을 보충하기 위한 재원 또는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 등의 건설사업의 경비 등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발생할 재원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 익년도 이후 재정의 건전한 운영으로 도모하기 위해 적립하고 장기재원의 육성을 위한 재산 취득 등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또한 상환기간을 앞당겨서 행하는 지방채 상환의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적립한 금액(이하 「적립금」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전부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적립금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의 예금,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정부보증채권(그 원본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말한다) 등의 증권을 매입하는 등의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적립금의 처분】

**제 4 조의 4**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열거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1.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히 부족하게 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
2. 재해로 발생하는 경비의 재원 또는 재해에 의해 발생한 수입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
3. 긴급한 실사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등의 건설사업의 경비 등 불가피한 이유로 발생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는 경우
4. 장기 재원의 육성을 위한 재산의 취득 등을 위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는 경우
5. 상환 기한을 앞당겨 행하는 지방채 상환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

### 【할당적 기부금 등의 금지】

**제 4 조의 5** 국가(국가의 지방행정기관 및 재판소법(소화22년 법률 제59호) 제2조에 규정한 하급재판소를 포함한다)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주민에 대해, 지방공공단체는 다른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민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불문하고 기부금(이것에 상당한 물품 등을 포함한다)을 할당하여 강제적으로 징수(이것에 상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지방채의 제한】

**제 5 조** 지방공공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가지고 그 재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1. 교통사업, 가스사업, 수도사업 등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기업(이하 ‘공영기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으로 하는 경우
2. 출자금 및 대부금의 재원으로 하는 경우(출자 또는 대부를 목적으로 토지 및 물건을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재원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지방채의 상환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재원으로 하는 경우
4. 재해 응급 사업비, 재해복구 사업비 및 재해 구조 사업비의 재원으로 하는 경우
5. 학교 등의 교육시설, 보육원 등의 후생시설, 소방시설, 도로, 하천, 항만 등의 토목시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 또는 공용시설의 건설사업비(공공적 단체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출자한 법인으로 정령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건설사업에 관한 부담 또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공공용 또는 공공에 제공하기 위한 토지나 그 대체물로서 사전에 취득한 토지의 구입비(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의 재원으로 하는 경우

### 【지방채의 상환 연한】

**제 5 조의2** 전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동호의 건설사업비에 관한 지방채의 상환연한은 당해 지방채를 재원으로 건설한 공공시

설 또는 공공시설의 耐用年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해 지방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지방채의 협의 등】

**제 5 조의 3** ① 지방공공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채의 방법, 이율 또는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와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경미한 경우 등 총무성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에는 지방채 발행의 목적, 한도액, 기채방법, 자금, 이율, 상환방법 및 그 외 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명확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에 있어서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동의를 얻은 지방채에 대해서만, 당해 동의에 관계된 정령에서 정하는 공적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제1항의 협의에서 동의한 지방채에 관한 원리상황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교부세법(소화25년 법률 제 211호) 제7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조 제2호의 지방단체의 세출총액의 목표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한다.

⑤ 지방공공단체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 후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기채의 방법, 이율 및 상환의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그 취지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그 외에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공공단체가 당해 동의를 얻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채의 방법, 이자율 및 상환의 방법을 변경한 후에 다음 회의에서 그 취지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⑥총무대신은 매년도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의에 의한 동의 및 다음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한 허가를 제1항에 규정하는 협의에 있어서 장관은, 매년도, 정령으로 정한 바(점)에 의하고,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제1항에 규정한 협의에 있어서 동의 및 다음 조 제1항 및 제3항으로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허가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때문에) 필요로 된 기준을 정하고, 및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제1항에 규정한 협의에 있어 동의를 한 지방채(다음 조 제1항 및 제3항으로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고 허가를 한 지방채를 포함한다.)의 예정액의 총액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것들을 공표한 것으로 한다.

⑦총무대신은, 제1항에 규정한 협의에 있어서 총무대신의 동의 및 전항에 규정한 기준의 작성 및 동항의 서류의 작성에 관해서는, 지방재정 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된다.

#### 【지방채에 관한 관여의 특례】

**제 5 조의 4** ①다음에 기재한 지방공공단체는, 지방채를 만들고, 또는 채권 발행의 방법, 이율 또는 상환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정령으로 정함에 의하고,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의를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해당 연도의 전년도의 세입(정령으로 정한 바(점)에 의하고 산정한 세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 동일.)가 세출(정령으로 정한 바(점)에 의하고 산정한 세출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 동일.)에 부족하기 위해(때문에) 해당 연도의 세입을 앞당기고 이것으로 충당한액 및 실질상 해당 연도의 전년도의 세입이 세출에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전년도에 지불해야 할 채무로 그 지불을 해당 연도에 연기한 액 및 해당 연도의 전년도에

집행해야 할 사업에 관계된 세출에 관계된 예산액으로 해당 연도에 이월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산정한 금액 이상 지방공공단체

2. 정령으로 정한 지방채에 관계된 원리상환금(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 「지방채의 원리 상환금」이라고 한다.)의 액과 지방채의 원리상환금에 준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한 것(이하 이 호에 있어 「준 원리 상환금」이라고 한다.)의 액과의 합산액으로부터 지방채의 원리 상환금 또는 준원리상환금의 재원에 충당한 것이 가능한 특정한 세입에 상당한 금액과 지방교부세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지방채에 관계된 원리상환에 필요로 한 경비로서 보통 교부세액의 산정에 이용한 기준재정수요액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고, 산정한 금액(특별구에 있어서는, 이것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총무대신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 「산입 공채비의 금액」라고 한다.)와의 합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표준적인 규모의 수입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고, 산정한 금액으로부터 산입공채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빼고 남은 수치로 해당 연도 전3년도 내의 각 연도에 관계된 것을 합산한 것의3분의 1의 수치가, 정령으로 정한 수치 이상인 지방공공단체
3. 지방채의 원리상환금의 지불을 지연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
4. 과거에 있어 지방채의 원리 상환금의 지불을 지연된 것이 있는 지방공공단체 중, 장래에 있어 지방채의 원리 상환금의 지불을 지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총무대신이 지정한 것
5.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하지 않은, 또는 이 항 및 제3항으로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고, 지방채

를 형성하고, 또는 채권 발행의 방법, 이율 또는 상환의 방법을 변경한 지방공공단체중,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총무대신이 지정한 것

6.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 또는 이 항 및 제3항 으로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음에 해당하고, 당 해협의 또는 허가에 관한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것, 그 밖 에 부정의 행위를 한 지방공공단체 중,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 해 총무대신이 지정한 것

②총무대신은, 전항 제4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되어진 때는,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해당 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한다.

③경영의 상황이 악화된 공영기업으로 다음에 언급한 것을 경영한 지방공공단체(제1항 각호에 언급한 것을 제외한다.)는, 해당 공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비의 재원으로 하는 지방채를 일으키고, 또는 채권 발행의 방법, 이율 또는 상환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총무 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지방공영기업법(소화27년 법률 제292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지방 공영기업 중 조월결손금이 있는 것 및 지방 공영기업 이외의 기업에서 동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 것 중 조월결손금이 있는 것 및 해당 연도에 있어 새롭게 동법 의 규정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 것에서,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고 산정한 해당 연도의 전년도의 자금의 부족액이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고 산정액 이상인 것

2. 전호에 언급한 것 외, 제6조에 규정한 공영기업으로 정령으로 정한 것 중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산정한 해당 연도의 전년도 자금의 부족액이 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산정한 금액 이상인 것

④보통세(지방 소비세, 도부현 담배소비세, 시읍면 담배소비세, 광구세, 특별토지보유세 및 법정외보통세를 제외한다.)의 세율의 어느 한쪽이 표준 과세율 미만인 지방공공단체(제1항 각호에 기재한 것을 제외한다.)는, 제5조 제5호에 규정한 경비의 재원으로 한 지방채를 만들고, 또는 채권 발행의 방법, 이율 또는 상환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의를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지방세법(소화25년 법률 제226호) 제5조 제2항에 언급한 세금 중 동법 제734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고 도(수도)가 부과한 것(특별토지보유세를 제외한다.)의 과세율의 어느 한쪽이 표준 과세율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구(제1항 각호에 언급한 것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진 것을 제외한다.)는, 제5조 제5호에 규정한 경비의 재원으로 하는 지방채를 만들고, 또는 채권 발행의 방법, 이율 또는 상환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의를 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⑥전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으로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관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으로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허가를 얻은 지방채에 관하여, 동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으로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허가를 얻은 지방채에 관계된 원리 상환에 필요로 한 경비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총무대신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총무대신의 허가 및 제1항 제4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해체에 관해서는, 지방재정 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

**제 5 조의 5** ①지방공공단체는, 증권을 발행한 방법에 의하고 지방채를 형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모집, 매출 또는 교부의 방법에 의한 것이 가능하다.

②전항의 증권은, 할인의 방법에 의하고 발행한 것을 가능하다.

### 【상법의 준용】

**제 5 조의 6** 회사법(평성17년 법률제86호) 제683조, 제701조, 제70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09조의 규정은 전조 제1항의 지방채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중 「회사」로 있는 것은 「지방공공단체」와, 「사채원부관리인」으로 있는 것은 「지방채원부관리인」과, 「사채원부」로 있는 것은 「지방채원부」로, 「사채관리인」으로 있는 것은 「지방채의 모집 또는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와, 「사채권자」로 있는 것은 「지방채권자」와, 「사채권」으로 있는 것은 「지방채증권」으로 바꿔 읽는 것으로 한다

### 【지방채 증권의 공동 발행】

**제 5 조의 7** 증권을 발행한 방법에 의하고 지방채를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는, 둘 이상의 지방공공단체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해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지방공공단체는, 연대한 해당 지방채의 상환 및 이자의 지불의 책임지우는 것으로 한다.

**【정령으로의 위임】**

**제 5 조의 8** 제5조로부터 전조까지 정한 것 외, 지방채의 발행에 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공영기업의 경영】**

**제 6 조** 공영기업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에 관해서는, 그 경리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이를 행하고, 그 경비는, 그 성질상 해당 공영기업의 경영에 수반한 수입을 가지고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비 및 해당 공영기업의 성질상 능률적인 경영을 행해도 또한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써 충당한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에 수반한 수입(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에 의한 수입을 포함한다.)으로써 이것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때는, 일반 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조입에 의한 수입을 가지고 이것을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잉여금】**

**제 7 조** ①지방공공단체는, 각 회계년도에 있어 세입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잉여금 중 2분의 1을 밀돌지 않는 금액은 잉여금이 생긴 다다음해까지 적립하거나, 또는 상환기한을 앞당기고 행해진 지방채의 상환의 재원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제4조의3 제2항 및 제3항 및 제4조의4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적립한 금액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전조의 공영기업에 관하여, 세입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 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 본

④ 제1항 및 전항의 잉여금의 계산에 관해서는, 정령으로 이것을 정한다.

**【재산의 관리 및 운용】**

**제 8 조** 지방공공단체의 재산은, 항상 양호의 상태에 있어 이것을 관리하고, 그 소유의 목적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공공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 경비】**

**제 9 조**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지방자치법(소화22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17의2 제1항 및 제291조의2 제2항의(것) 규정에 근거하고, 도도부현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 시읍면이 처리한 것이라고 한 사무 및 도도부현이 가입하지 않은 동법 제284조 제1항의 광역 연합(제28조 제2항 및 제3항에 있어 「광역 연합」이라고 한다.)이 처리한 것이라고 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행하기 위해 필요로 한 경비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공공단체가 전액 이것을 부담한다. 단, 다음 조부터 제10조의4까지 규정한 사무를 행하기 위해 필요로 한 경비에 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나라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법령에 근거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무에 필요로 한 경비】**

**제10조** 지방공공단체가 법령에 근거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무이고, 나라와 지방공공단체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중, 그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더욱, 나라가 나서서 경비를 부담한 필요가 있고, 다음에 언급한 것에 관해서는, 나라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1. 의무교육 직원의 급여(퇴직수당,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및 여비를 제외한다.)에 필요로 한 경비

2. 삭제
3. 의무교육제 학교의 건물의 건축에 필요한 경비
4. 생활보호에 필요로 한 경비
5. 감염증의 예방에 필요로 한 경비
6. 임시의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을 받았던 것에 의한 질병, 장애 및 사망에 관하여 행한 급부에 필요로 한 경비
7.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의 복지에 필요로 한 경비
8. 마약, 대마 및 아편의 만성중독자의 의료에 필요로 한 경비
9. 신체 장애자의 갱생 원호에 필요로 한 경비
10. 부인 상담소에 필요로 한 경비
11. 지적 장애자의 원호에 필요로 한 경비
12. 노인 보건 사업에 필요로 한 경비
13. 간호 보험의 간호 급부 및 예방 급부 및 재정 안정화 기금에 의 편입에 필요로 한 경비
14. 아동일시보호소, 미숙아, 신체 장애아 및 골관절 결핵 그 밖의 결핵에 관련되고 있는 아동의 보호, 아동복지시설(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보육소를 뺀다) 및 양부모에게 필요로 한 경비
15. 아동 수당에 필요로 한 경비
16. 국민 건강 보험의 요양의 급부 및 입원시 식사 요양비, 입원시생활요양비, 보험외비용요양비, 요양비, 방문 간호 요양비, 특별 요양비, 이송비 및 고액요양비의 지급 및 노인 보건 의료비 거출금 및 간호 납부금의 납부에 필요로 한 경비
17. 원자 폭탄의 피폭자에 대한 간호 수당의 지급 및 간호 수당에 관계된 사무의 처리에 필요로 한 경비
18. 중증 장애아에 대한 장애아 복지 수당 및 특별 장애자에 대한 특별 장애자 수당의 지급에 필요로 한 경비

19. 아동 부양수당에 필요로 한 경비
20. 직업 능력 개발교 및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교의 시설 및 설비에 필요로 한 경비
21. 가축 전염병 예방에 필요로 한 경비
22. 민유림의 삼림 계획, 보안림의 정비 그 밖에 삼림의 보속 배양에 필요로 한 경비
23. 삼림 병해충등의 방제에 필요로 한 경비
24. 국토 교통 장관이 정한 특정 계획 또는 국토 조사 사업10개년 계획에 근거한 지적조사에 필요로 한 경비
25. 취학 장려에 필요로 한 경비
26. 공영주택의 집세의 저렴화에 필요로 한 경비
27. 소방청장관의 지시를 받았던 긴급 소방구조대의 출동에 필요로 한 경비
28. 무력 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 및 긴급 대처 사태에 있어서 긴급 대처 보호조치에 필요로 한 경비 및 이것들에 관계된 손실보상 또는 실비의 변상, 손해의 보상 또는 손실의 보전에 필요로 한 경비 및 나라의 기관과 공동해서 행한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 및 긴급 대처 보호조치에 관한 훈련에 필요로 한 경비

**【나라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건설 사업에 필요로 한 경비】**

**제10조의2** 지방공공단체가 국민 경제에 적합하도록 종합적으로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률 또는 정령으로 정한 토목 그 밖의 건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에 언급한 경비에 관해서는, 나라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1. 도로, 하천, 사방, 해안, 항만 등에 관계된 중요한 토목 시설의 신설 및 개량에 필요로 한 경비

2. 임지, 임도, 어항 등에 관계된 중요한 농림 수산업 시설의 신설 및 개량에 필요로 한 경비
- 2의2. 땅 미끄럼 방지 공사 및 저질탄산 붕괴방지 공사에 필요로 한 경비
3. 중요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로 한 경비
4. 공영주택의 건설에 필요로 한 경비
5. 아동복지시설 그 밖 사회 복지시설의 건설에 필요로 한 경비
6. 토지개량 및 개척에 필요로 한 경비

**【나라가 그 일부를 부담한 재해에 관계된 사무에 필요로 한 경비】**

**제10조의3**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률 또는 정령으로 정한 재해에 관계된 사무로, 지방세법 또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그 재정 수요에 적합한 재원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것을 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다음에 언급한 경비에 관해서는, 나라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1. 재해 구조 사업에 필요로 한 경비
2. 재해 조위금 및 재해 장애 위로금에 필요로 한 경비
3. 도로, 하천, 사방, 해안, 항만 등에 관계된 토목 시설의 재해복구 사업에 필요로 한 경비
4. 임지 황폐 방지 시설, 임도, 어항 등에 관계된 농림 수산업 시설의 재해복구 사업에 필요로 한 경비
5.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시설의 재해복구에 필요로 한 경비
6. 공영주택의 재해복구에 필요로 한 경비
7. 학교의 재해복구에 필요로 한 경비
8. 사회 복지시설 및 보건 위생 시설의 재해복구에 필요로 한 경비
9. 토지개량 및 개척에 의한 시설 또는 경지의 재해복구에 필요로 한 경비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 경비】**

**제10조의4** 오로지 나라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무를 행하기 위해 필요로 한 다음에 언급하는 것 같은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공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

1. 국회의원의 선거, 대법원재판관 국민심사 및 국민투표에 필요로 한 경비
2. 나라가 오로지 그 사용에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한 통계 및 조사에 필요로 한 경비
3. 외국인 등록에 필요로 한 경비
4. 검역에 필요로 한 경비
5. 의약품의 검정에 필요로 한 경비
6. 아편의 단속에 필요로 한 경비(제10조 제8호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
7.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특별아동부양수당에 필요로 한 경비
8. 자작농의 창설 유지 그 밖에 토지의 농업상의 이용 관계의 조정에 필요로 한 경비
9. 미인양방인(未引揚邦人)의 조사에 필요로 한 경비

**【나라와 지방공공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할 비율 등의 규정】**

**제11조** 제10조로부터 제10조의3까지 규정한 경비의 종목, 산정기준 및 나라와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법률 또는 정령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재정 수요액에의 산입】**

**제11조의2** 제10조로부터 제10조의3까지 규정한 경비 중,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제10조 제13호에 언급한 경비중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간호 보험의 재정 안정화 기금

거출금을 가지고 충당해야할 부분을 제외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지방공공단체에 교부해야 할 지방 교부세액의 산정에 이용한 재정 수요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제10조 제 16호에 언급한 경비(국민 건강 보험에 관한 특별회계에의 편입에 필요로 한 경비 중 소득이 적은 자에 관하여 행한 보험료 또는 국민 건강 보험세의 감액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4호에 언급한 경비 및 제10조의3 제5호에 언급한 경비에 관해서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다.

###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할 권한을 갖지 않는 사무에 필요로 한 경비】

**제12조** ①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할 권한을 갖지 않는 사무를 행하기 위해 필요로 한 경비에 관해서는, 법률 또는 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그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 같은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경비는, 다음에 언급되어진 것으로 한다.

1. 나라의 기관의 설치, 유지 및 운영에 필요로 한 경비
2. 경찰청에 필요로 한 경비
3. 방위청에 필요로 한 경비
4. 해상 보안청에 필요로 한 경비
5. 사법 및 행형에 필요로 한 경비
6. 나라의 교육시설 및 연구 시설에 필요로 한 경비

### 【새로운 사무에 수반한 재원 조치】

**제13조** ①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경비를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한 나라의 기관이 법률 또는 정령에 근거하고 새로운 사무를 행한 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나라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재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전항의 재원 조치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지방공공단체는, 내각을 경유하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할 수 있다.

③내각은, 전항의 의견서를 받아들였을 때는, 그 의견을 첨부하고,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14조 및 제15조 삭제

##### 【보조금의 교부】

제16조 나라는, 그 시책을 행하기 위해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한하고, 해당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 【나라의 부담금의 지출】

제17조 나라는, 제10조로부터 제10조의4까지 규정한 사무로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경비를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하는 나라의 기관이 행한 것에 관하여 제10조로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의해 나라가 부담하는 금액(이하 「나라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해당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 【지방공공단체의 부담금】

제17조의2 ①나라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규정한 사무를 스스로 행한 경우에 있어, 지방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는, 해당 지방공공단체는, 그 부담하는 금액(이하 「지방공공단체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나라에 대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나라가 행한 하천, 도로, 사방, 항만 등의 토목 사업으로 지방공공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에 대한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부담금의 예정액은, 해당 공사의 착수전에 미리 해당 지방공공단체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업 계획의 변경 등에 의해 부담금의 예정액에 현저한 변경이 있던 경우도 같다.

③지방공공단체는, 전항의 통지를 받았던 경우에 있어 부담금의 예정액에 불복이 있을 때는, 총무대신을 경유해, 내각에 대한 의견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 【나라의 지출금의 산정의 기초】

**제18조** 나라의 부담금, 보조금등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지출금(이하 나라의 지출금이라고 함.)의 금액은, 지방공공단체가 해당국의 지출금에 관계된 사무를 행하기 위해(때문에) 필요하고, 동시에 충분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이를 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나라의 지출금의 지출 시기】

**제19조** ①나라의 지출금은, 그 지출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비의 지출 시기에 지연되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전항의 규정은, 지방공공단체의 부담금등의 나라에 대한 지출금에 이것을 준용한다.

### 【위탁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 규정】

**제20조** 전2조의 규정은, 나라의 공사를 그 위탁을 받고 지방공공단체가 행한 경우 및 지방공공단체의 공사를 위탁을 받고 나라가 행한 경우에 있어, 나라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에 속한 지출금에 이를 준용한다.

### 【지출금의 산정 또는 지출 시기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제20조의2** ①나라의 지출금 또는 전조의 나라의 부담에 속한 지출금의 산정, 지출 시기, 지출금의 교부에 들어 맞는 조건, 그 밖에 지출금의 교부에 해당되어진 지시,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불복이 있

는 지방공공단체는, 총무대신을 경유하고 내각에 대하여 의견을 신청, 또는 내각을 경유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제13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것을 준용한다.

####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을 동반한 법령 안】

**제21조** ①국무총리대신 및 각 성의 대신은, 그 관리하는 사무에서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을 동반한 것에 관한 법령안에 관하여, 법률안 및 정령안에 있어서는 각의를 구하기 전, 명령안에 있어서는 공포하기 전에 미리 총무대신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총무대신은, 전항에 규정한 법령안 중 중요한 것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 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을 동반한 경비의 견적서】

**제22조** ①내각총리대신 및 각 성의 대신은, 그 소장에 속한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견적 중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을 동반한 사무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재정법(소화22년 법률 제34호)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서류 및 동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한 조서를 재무대신에게 송부한 때, 총무대신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총무대신은, 전항에 규정한 서류 및 조서 중 중요한 것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 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 【나라의 영조물에 관한 사용료】

**제23조** ①지방공공단체가 관리한 나라의 영조물로 해당 지방공공단체가 그 관리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부담한 것에 관해서, 해당 지방공공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영조물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전항의 사용료는,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나라가 사용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사용료】

**제24조** 나라가 지방공공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의 시설을 사용하는 때는, 해당 지방공공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나라에 있어서 그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동의가 있었던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다.

### 【부담금등의 사용】

**제25조** ①나라의 부담금 및 보조금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금은, 법령이 정하는 대로 따르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지방공공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에 관해서 나라는 해당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그 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하지 않거나 그 반환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지방공공단체의 부담금에 관하여, 나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공공단체는, 나라에 대해서 해당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출하지 않고 또는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 【지방 교부세의 감액】

**제26조** ①지방공공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해서 현저하게 거액의 경비를 지출하고, 또한 확보해야 할 수입의 징수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 있어서는, 총무대신은, 해당 지방공공단체에 대하고 교부해야 할 지방 교부세액을 감액하고, 또한 이미 교부 한 지방 교부세액의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감액하고, 또한 반환을 명한 지방 교부세액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고 지출하고, 또한 징수 등을 소홀히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총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 교부세액을 감액하고, 또한 지방 교부세액의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도도부현이 행한 건설 사업에 대한 시읍면의 부담】**

**제27조** ①도도부현이 행한 토목 그 밖의 건설 사업(고등학교의 시설의 건설사업을 제외한다.)으로 그 구역내의 시읍면에 이익이 된 것에 관해서는, 도도부현은, 해당 건설 사업에 의한 수익의 한도에 있어, 해당 시읍면에 대해, 해당 건설 사업에 필요로 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②전항의 경비에 관하여 시읍면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해당 시읍면의 의견을 듣고, 해당 도도부현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읍면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시읍면은, 해당 금액의 결정이 있던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총무대신에게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총무대신은, 전항의 이의의 신청을 받았던 경우에 있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진 때에는, 해당 시읍면의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지방자치법 제257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것을 준용한다.

⑥총무대신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시읍면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도도부현이 시읍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되는 경비】**

**제27조의2** 도도부현은, 나라 또는 도도부현이 실시하고, 나라 및 도도부현이 그 경비를 부담하는 도로, 하천, 사방, 항만 및 해안에 관계된 토목 시설에 관한 대규모이면서 광역에 걸치는 사업에 정령으로 정한 것에 필요 한 경비로서 도도부현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전부 또는 일부를 시읍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도도부현이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아니되는 경비】**

**제27조의3** 도도부현은, 해당 도도부현립의 고등학교의 시설의 건설 사업비에 관하여, 주민에 대해서, 직접이거나 간접이든지 불문하고, 그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아니된다.

**【시읍면이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아니되는 경비】**

**제27조의4** 시읍면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 해당 시읍면의 부담에 속한 것으로 되어져 있는 경비로 정령에 정한 것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 직접이거나 간접이든지 불문하고, 그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아니된다.

**【도도부현이 그 사무를 시읍면 등이 행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경비】**

**제28조** ①도도부현이 그 사무를 시읍면이 행한 것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도부현은, 해당 시읍면에 대해서 그 사무를 집행하는 것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전항의 규정은, 도도부현이 그 사무를 도도부현이 가입하지 않는 광역연합이 행한 것으로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 제2항의 재원 조치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시읍면 또는 도도부현이 가입하지 않는 광역연합은, 관계 도도부현지사를 경유해서, 총무대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의견서를 받아들였을 때는 그 의견을 첨부하고, 지체 없이, 이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⑤전항의 의견은, 해당 도도부현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공공단체 서로 간에 있어서 경비의 부담관계】**

**제28조의2** 지방공공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고 경비의 부담구분이 정해져 있는 사무에 관하여, 다른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해당

사무의 처리에 필요로 한 경비의 부담을 전가하고, 그 밖에 지방공공단체 서로 간에 있어서 경비의 부담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을 해서는 아니된다.

**【도도부현 및 시읍면의 부담금의 지출】**

**제29조** ①도도부현은, 법률 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역 내의 시읍면이 행한 사무에 필요로 한 경비에 관하여 도도부현이 부담한 금액(이하 도도 부현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해당 시읍면에 대해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②시읍면은,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도도부현에 대해, 부담한 금액(이하 시읍면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해당 도도부현에 대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 및 시읍면의 부담금등에 있어서 준용 규정】**

**제3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도도부현 및 시읍면의 부담금 및 도도부현이 시읍면에 대해 교부하는 보조금등의 지출금에, 이것을 준용한다.

**【지방재정의 상황에 관한 보고】**

**제30조의2** ①내각은, 매년도 지방재정의 상황을 명확히 하여,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총무 대신은, 전항에 규정한 지방재정의 상황에 관한 보고 안을 작성할 경우, 지방재정 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사무의 구분】**

**제30조의3** 도도부현이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도도 부현이 신청을 받았던 협의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동항에 규정한 동의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제5조의4 제1항, 제3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도도부현이 행한 허가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한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 부 칙 조

### 【시행 기일】

**제3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소화24년도 분부터 시행한다.

### 【당첨금부증표의 발매】

**제32조** 도도부현 및 지방자치법 제252조의19 제1항의 지정 도시 및 전제로 인한 재정상의 특별한 필요를 감안해 총무 대신이 지정한 시는, 당분 간, 공공사업과 그 밖에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지방 행정의 운영상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하여, 총무 성령으로 정한 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필요 할 경우, 당첨금부증표법(소화23년법률제144호)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첨금부증표를 발매 할 수 있다.

### 【공영 경기를 행한 지방공공단체의 납부금】

**제32조의2** 지방공공단체는, 소화45년도부터 평성22년도까지의 사이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영 경기를 행할 경우, 공영기업에 관계된 지방채(공영기업 금융 공고법(소화32년 법률 제83호)부칙 제10항 각호에 언급한 사업에 관계된 지방채를 포함한다.)의 이자의 경감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매년도,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해당 공영 경기의 수익 중에서, 그 매득금 또는 매상금의 금액에 천

분의 12 이내에 있어 정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하고 얻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영기업 금융 공고에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에 관계된 특별 감세 등에 따른 지방채의 특례】**

**제33조** ①지방공공단체는, 평성6년도 및 평성7년도에 한해, 지방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된 법률(평성6년 법률 제111호 다음조 제1항 및 제33조의4 제1항에 있어 「지방세법등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방세법(차항 제1호 및 다음 조 제2항 및 제3항에 있어 「구지방세법」이라고 한다.)부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에 관계된 특별 감세 또는 조세특별조치 법(소화32년 법률 제26호) 제86조의4 제1항에 규정 한 보통승용자동차의 양도 등에 관계된 소비세의 세율의 특례의 적용 기간종료에 의한 평성6년도에 있어서의 소비세 수입의 감소에 따른 도도부현 또는 시읍면에 대해 양여된 소비 양여세의 금액의 감소에 의한 해당 각 년도의 수입 감소 액을 메우기 위해, 제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할 수 있는 해당 각 년도의 지방채의 금액은, 다음에 언급하는 금액의 합산 액으로 한다.

1. 구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4의 규정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해당 각 년도의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의 소득할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해당 각 년도의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의 소득할의 수입 전망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자치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산정한 금액
2. 조세특별조치법 제86조의4 제1항에 규정 한 보통승용자동차의 양도 등에 관계된 소비세의 세율의 특례의 적용 기간종료에 의

한 평성6년도에 있어서 소비세의 수입의 감소에 따른 해당 각 년도에 있어서 도도 부현 및 시읍면에 대해 양여해만 하는 소비 양여세 금액의 감소에 의한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해당 각 년도의 소비 양여세의 감소 액으로서 자치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산정한 금액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에 관계된 감세에 따른 지방채의 특례】**

**제33조의2** ①지방공공단체는, 평성6년도부터 평성8년도까지로 한하고, 지방세법등 개정법의 시행에 의한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에 관계된 해당 각 년도의 수입 감소 액을 메우기 위해, 제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할 수 있는 해당 각 년도의 지방채의 금액은, 구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한 경우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해당 각 년도의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의 소득할의 수입 전망 액으로부터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해당 각 년도의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의 소득할의 수입 전망 액(평성8년도에 있어서는, 지방세법등의 일부를 개정된 법률(평성8년 법률 제12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지방세법(다음조에 있어 「평성8년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의4의 규정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의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동년도의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의 소득할의 수입 전망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자치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평성8년도에 있어 전항의 공제한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대한 평성8년도 분의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에 관계된 구지방세법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구지방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292조 제4항 중 「전년」라고 있는 것은, 「이전년」이라고 한다.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에 관계된 특별 감세에 대한 지방채의 특례】**

**제33조의3** ①지방공공단체는, 평성8년도에 한해, 평성8년 개정 후의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에 관계된 특별 감세에 의한 동년도의 수입 감소액을 메우기 위해, 제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 할 수 있는 평성8년도의 지방채의 금액은, 평성8년 개정 후의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4의 규정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동년도의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의 소득할의 수입 전망 액으로부터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동년도의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의 소득할의 수입 전망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자치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평성9년도에 있어서 지방채의 특례】**

**제33조의4** ①지방공공단체는, 평성9년도에 한해,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동년도의 지방 소비세 또는 지방 소비세 교부금(지방세법 제72조의 115의 규정에 의해 시읍면에 대해 교부되어지는 지방 소비세에 관계된 교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수입 전망 액 및 소비 양여세 상당액(지방세법등 개정법 부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년도에 양여된 폐지전의 소비 양여세에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수입 전망 액의 합산액이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평성10년도 이후의 각 년도의 지방 소비세 또는 지방 소비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에 비해 과소하여 재정의 안정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재정 운영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제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 할 수 있는 평성9년도의 지방채의 금액은, 도도 부현에 있어서는 해당 도도부현의 동년도의 지방 소비세의 수입 전망액 및 소비 양여세 상당액의 수입 전망액의 합산액으로부터 지방 소비세 교부금의 교부 전망액을 공제한 금액이 해당 도도부현의 평성10년도 이후의 각 연도의 지방 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지방 소비세 교부금의 교부 전망액을 공제한 금액에 비해 과소라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지방세법 제72조의114 제1항에 규정한 소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로서 자치성령으로 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 시읍면에 있어서는 해당 시읍면의 평성9년도의 지방 소비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 및 소비 양여세 상당액의 수입 전망액의 합산액이 해당 시읍면의 평성10년도 이후의 각 연도의 지방 소비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에 비해 과소라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동법 제72조의115 제1항에 규정한 인구 및 종업원 수를 기초로서 자치성령으로 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에 관계된 특별 감세등에 따른 지방채의 특례】**

**제33조의5** ①지방공공단체는, 평성10년도 및 평성11년도에 한해, 지방세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평성11년 법률 제15호. 차항에 있어 「지방세법 개정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개정전의 지방세법(이하 이 조에서 「구지방세법」이라고 함) 부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에 관계된 특별 감세에 의한 해당 각 년도의 수입 감소액 및 구지방세법 부칙 제11조의4 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취득세의 감액에 관계된 평성10년도의 수입 감소액을 메우기 위해, 제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 할 수 있는 평성10년도 및 평성11년도의 지방채의 금액은, 도도부현에 있어서는 제1호에 언급하는 금액으로, 시읍면에 있어서는 제2호에 언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1. (1) 및 (2)에 언급하는 금액의 합산 액(평성11년도에 있어서, (1)에 언급한 금액)

(1) 구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4의 규정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도도 부현의 해당 각 년도의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의 소득할의 수입 전망 액으로부터 해당 도도 부현의 해당 각 년도의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의 소득할의 수입 전망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자치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산정한 금액

(2) 구지방세법 부칙 제11조의4 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도도 부현의 평성10년도의 부동산취득세의 수입 전망 액으로부터 해당 도도 부현의 동년도의 부동산취득세의 수입 전망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자치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산정한 금액

2. 구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4의 규정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시읍면의 해당 각 연도의 개인의 시읍면 민세의 소득할의 수입 전망 액으로부터 해당 시읍면의 해당 각 연도의 개인의 시읍면 민세의 소득할의 수입 전망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자치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산정한 금액

**【평성 19년도로부터 평성21년도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지방채의 특례 등】**

**제33조의5의2** ①지방공공단체는, 평성19년도로부터 평성21년도까지의 사이에 한하고,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행하는 지방채 외, 적정한 재정 운영을 행함에 관하여 필요로 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부칙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공제한 금액에 관계된 동항에 규정한 산정방법에 준한 것으로 하고 총무 성령으로

정한 방법에 의하고 산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일으키는 것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공공단체가 발행 할 수 있는 지방채의 원리 상환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지방교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지방공공단체에 교부해야 할 지방 교부세 금액의 산정에 이용한 기준 재정 수요액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 【평성14년도에 있어서 지방세의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채의 특례】

**제33조의5의3** 지방공공단체는, 평성14년도에 한해, 도도부현에 있어서는 도부현민 세금의 소득할, 법인세할 및 이자할 및 법인이 행한 사업에 대한 영업세의 수입 감소에 의해, 시읍면에 있어서는 시읍면 민세의 소득할 및 법인세할 및 지방세법 제71조의26의(것) 규정에 의해 시읍면에 대해 교부하는 이자할에 관계된 교부금의 수입 감소에 의해,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또한 적정한 재정 운영을 행함에 필요로 하는 재원에 부족이 생긴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동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 【지방세법등의 개정에 따른 지방채의 특례】

**제33조의5의4** 지방공공단체는, 당분간, 지방세법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평성15년 법률 제9호) 및 소득세법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평성15년 법률 제8호)의 시행에 따른 지방세에 관계된 각 년도의 수입 감소 액을 메우기 위해, 제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각 년도의 수입 감소 액을 감안하여 총무 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 【퇴직수당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의 특례】

**제33조의5의5** 지방공공단체는 평성18년도부터 평성27년도까지의 사이에 한해서, 당해 각 년도에 지급해야 할 퇴직수당(도도부현에 있어

서는 시읍면립학교직원급여부담법(소화23년법률제135호)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한 도도부현이 부담하는 퇴직수당을 포함, 시읍면에 있어서는 당해 도도부현이 부담하는 퇴직수당을 뺀,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8에서 같음)의 합계액이 현저히 다액인 것에 의해 재정의 안정이 훼손되어지는 것이 아닌 정도의 퇴직수당(공영사업에 관한 것을 뺀)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제5조의 규정에 상관 없이, 당해 년도에 지불해야 할 퇴직수당의 합계액 중 현저히 다액인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부분으로서 통무성령에서 정하여진 것에 의해 산정된 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광해 복구 사업에 관계된 지방채의 특례】**

**제33조의6** 지방공공단체가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시행한 광해 복구 사업에 대해 석탄 광업의 구조 조정의 완료 등에 수반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평성12년 법률 제16호. 이하 이 조에서 「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더욱 그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지는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전의 임시 석탄 광해 복구 법(소화27년 법률 제295호. 이하 이 조에서 「구복구법」이라고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부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경비 또는 정비법 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히려 종전의 예에 의한 것이라고 된 응급 공사에 관한 구 복구법제 5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전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또는 도도부현이 정비법부칙 제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오히려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진 구 복구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분간 지방채를 가지고 그 재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나라의 무이자대부금에 관한 지방채의 특례】

**제33조의6의2** 지방공공단체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 것에 의해 나라로부터 일본정신전화주식회사의 주식의 매불수입의 활용으로 인한 사회바존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소화62년법률제86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공적 건설사업에 의한 실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무이자 자금의 대부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당해 비용의 중당해 대부분을 받은 자금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분간 지방채를 가지고 그 재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석면 건강 등 피해 방지 사업과 관련되는 지방채의 특례】

**제33조의6의3** 지방공공단체가 석면에 의한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총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분간, 지방채를 가지고 그 재원으로 할 수가 있다.

### 【지방채의 허가 등】

**제33조의7** ①평성17년도까지의 사이에 있어서의 제5조 제5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호 중 「학교 그 외의 문교 시설」이라고 있는 것은, 「보통세(지방 소비세, 도부현 담배세, 시읍면 담배세, 광구세, 특별 토지보유세 및 법정의 보통세를 제외)의 세율이 모두 표준 세율 이상인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학교 그 외의 문교 시설」이라고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연도까지의 사이, 특별구가 지방채를 가지고 동항의 규정에 의해 바꾸어 읽을 수 있는 제5조 제5호에 기재된 사업비 및 구입비의 재원으로 할 수가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5조 제2항으로 내거는 세 중 동법 제7백 34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도가 부과하는 것(특별토지보유세를 제외)의 세율이 모두 표준 세율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③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310조의3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연도까지의 사이, 적용하지 않는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연도까지의 사이, 지방공공단체는, 지방채를 일으켜, 또는 채권 발행의 방법, 이율 혹은 상환의 방법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는, 정령으로 정하는 곳에 의해, 총무 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경미한 경우 그 외의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⑤총무 대신은, 전항의 총무 대신의 허가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 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⑥총무 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한 지방채와 관련해 원리 상환에 필요로 하는 경비 및 자치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중앙 부처 등 개혁 관계 법시행법(평성11년법률제 610호)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방재정법 제33조의7 제4항 및 지방 분권의 추진을 피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평성11년법률제87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방 자치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한 지방채와 관련되는 원리 상환에 필요로 하는 경비는, 평성18년도 이후에 있어서의 제5조의3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에 규정하는 지방채와 관련되는 원리 상환에 필요로 하는 경비로 간주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 사무(도도부현이 실시하는 허가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한다)는, 지방 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퇴직 수당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에 대한 관여의 특례】**

**제33조의8** ①지방공공단체는, 평성18년도부터 평성27년도까지의 사이 (이하 이 조에서 「특례 기간」이라고 한다.)에 한정해, 퇴직 수당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해당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행하는 지방채를 포함)를 행하고, 또는 채권 발행의 방법, 이율 혹은 상환의 방법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는, 제5조의3 제1항 및 제5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정령으로 정하는 곳에 의해, 총무 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경미한 경우 그 외의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지방공공단체는, 당해 년도 이후 특례 기간내에 있어서의 매년도에 지급해야 할 퇴직 수당의 합계액의 예상액, 직원의 수의 현황 및 장래의 간파해, 급여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그 외의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한 계획을 작성해, 이것을 동항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서에 따를 수 있어 제출해야 한다.

③제5조의3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에 대해, 동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와 관련되는 원리 상환에 필요로 하는 경비에 대해 준용한다.

④특례 기간에 있어서의 제5조의3 제6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다음 조 제1항 및 제3항으로부터 제5항까지」라고 있는 것은, 「다음 조 제1항 및 제3항으로부터 제5항까지 및 제33조의 8 제1항」이라고 한다.

⑤총무 대신은, 제1항의 총무 대신의 허가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 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 사무(도도부현이 실시하는 허가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한다)는, 지방 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 【구자금운용부 자금등의 조상상환과 관련되는 조치】

**제33조의9** ①정부는, 평성19년도부터 평성21년도까지의 사이에, 지방 공공단체로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 해당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대출할 수 있었던 구자금운용부 자금(자금운용부 자금법등의 일부

를 개정하는 법률(평성12년법률제99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자금운용부 자금법(소화26년법률제100호)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금운용부 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음.) 또는 평성5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대출할 수 있었던 공영기업금융공고의 자금 중 연리 5퍼센트 이상의 것에 대해 조상상환을 실시하려고 하는 취지의 신출경우에 대해, 해당 지방공공단체로부터 행정의 간소화 및 효율화에 관계되어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한 계획이 제출되어 해당 계획의 내용이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재무 행정 개혁에 상당 정도 이바지하는 것이며, 한편, 해당 계획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지방채의 금리와 관련되는 부담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곳(중)에 의해, 해당 조상상환과 관련되는 자금이 구자금운용부 자금일 때는 해당 조상상환에 응하는 것으로 해, 해당 조상상환과 관련되는 자금이 공영기업금융공고의 자금일 때는 공영기업금융공고에 대해서 조상상환에 응하도록(듯이)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해, 정부는, 조상상환에 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전으로 해서 조상상환과 관련되는 지방채의 원금 상환금 이외의 금전을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공영기업금융공고가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 조상상환에 응하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 【지방공공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경비의 특례】

**제34조** ①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귀환자에의 원호에 필요로 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제9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분간 나라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경비의 종목, 산정 기준 및 나라와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법률 또는 정령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홋카이도에 관한 특례】**

**제35조** 왼쪽으로 내거는 경비는, 당분간 제10조로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관계없이, 덧붙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1. 정령으로 정하는 홋카이도의 개발에 필요로 하는 경비
2. 정령으로 정하는 홋카이도의 하천, 도로, 사방, 항만 등의 토목사업, 재해 응급 사업 및 재해복구사업에 필요로 하는 경비

**【아동 부양 수당에 필요로 하는 경비와 관련되는 특례】**

**제36조** 아동 부양 수당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소화60년법률제48호) 부칙 제5조에 규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나라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요양의 급부 등에 필요로 하는 경비와 관련되는 특례】**

**제37조** 평성18년도부터 평성21년도까지의 사이에 한정해, 제11조의2 단서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조 단서 중 「관계되는 것」이라고 있는 것은, 「관계되는 것 및 소득의 적은 사람의 수에 응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의 상황 그 외의 사정을 감안해 실시하는 것 및 고액 의료비 공동 사업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거출금의 납부에 필요로 하는 경비중 도도부현의 부담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한다.

# 재정용자자금법

《개정》 평성12법099 · 구 · 자금운용부자금법

## 【목적】

**제 1 조** 이 법률은 재정용자자금을 설치하고 정부의 특별회계의 적립금 및 여유금 그 외의 자금에서 법률 또는 정령의 규정에 의해 재정용자자금에 예탁된 것, 재정용자자금특별회계의 적립금 및 여유금 또는 재정용자자금특별회계로부터의 이월금을 통합관리하고 그 자금으로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특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확실하며 유리한 운용으로 되는 용자를 행하는 것에 따라 공공의 이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재정용자자금의 설치】

**제 2 조**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용자자금을 설치한다.

## 【재정용자자금의 관리 및 운용 또는 구분정리】

**제 3 조** ① 재정용자자금은 채무대신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한다.

② 재정용자자금은 타의 정부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으로 한다.

## 【재정용자자금에 충당하는 재원】

**제 4 조** 재정용자자금은 다음 조 혹은 제6조 제1항 또는 타의 법률 혹은 정령의 규정에 의해 예탁된 자금(이하 「재정용자자금예탁금」이라 한다.), 재정용자자금특별회계의 적립금 및 여유금 및 특별회계법에 관한 법률(평성19년법률제23호) 부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조입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용자자금에의 예탁의 의무】**

**제 5 조** 정부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의 잉여금을 적립한 적립금(재정용자자금특별회계, 후생보험특별회계의 연금감정에 관계되는 적립금을 제외한다.)은 모두 재정용자자금에 예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고여유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금의 운용】**

**제 6 조** ① 국고여유금은 재정용자자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정부의 특별회계(재정용자자금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여유금은 재정용자자금에의 예탁의 방법에 의하는 외로 운용하여서는 안 된다. 단,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국채를 보유하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재정용자자금예탁금】**

**제 7 조** ① 재정용자자금예탁금의 계약상의 예탁기간(이하 「약정기간」이라 한다.)은 1개월 이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재정용자자금예탁금의 약정기간 만료전의 환부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예탁자는 그 환부를 받으려 하는 일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대신이 정하는 기간 이전에 사전에 그 취지를 재무대신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재정용자자금예탁금에는 약정기간에 따라 국채의 이율에 맞추어 재무대신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교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약정기간 만료 전에 환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예탁되어 있었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이자를 교부하지 않으며 당해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써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교부한다.

⑤ 재정용자자금예탁금에 대해서는 그 약정기간 만료일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간전의 환부를 한 날 외에 약정기간 1년 이상의 재정용자자금예탁금에 관해서는 6개월마다 채무대신이 정하는 날에 당해 예탁금의 경과예탁기간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를 지불한다.

⑥ 재정용자자금예탁금에 관해서는 예탁금증서를 발행한다.

### 【재정용자자금예탁금의 취급절차】

**제 8 조** 전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외 재정용자자금예탁금의 취급절차는 채무대신이 정한다.

### 【재정용자자금보충을 위한 일시 차입금 및 융통증권】

**제 9 조** ① 재정용자자금이 속하는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재정용자자금 특별회계의 부담에 있어서 일시 차입금을 하고 또한 융통증권을 발행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 및 융통증권의 한도액에 관해서는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금융자금특별회계의 부담에 대해서는 일시차입금을 하고, 또한 융통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고여유금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지불기한에 도달하지 아니한 일시차입금 또는 금융증권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시차입금 및 금융증권 또는 동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금은 일년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재정용자자금의 운용】

**제10조** ① 재정용자자금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2. 국가에 대한 대부

3.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관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며 또한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4. 전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대한 대부
5. 지방채
6.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대부
7. 특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국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 및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의 출자가 없는 것 가운데 특별의 법률에 의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가 발행하는 채권
8. 전호에 규정하는 법인에 대한 대부
9. 외국정부, 국제기관 및 외국의 특별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다음 항에서 「외국채」라고 함.)
10. 재정용자자금으로써 인수, 응모 또는 매입한 채권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자의 금융기관 그 외의 법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대한 대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외국채로 운용하는 재정용자자금의 액은 재정용자자금의 총액의 1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재정용자자금은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80조 제1항 각호에 게재된 조치를 가지고 필요가 있을 때, 동항 제1호에 규정하는 신탁의 수익권 또는 동항 제2호에 규정한 자산대응증권에 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재정용자자금운용계획의 자문】

**제11조** ①재무대신은 매년도 재정용자자금의 운용에 관해서 필요한 계획을 정하며 사전에 재정제도 등 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함.)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동일하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무대신이 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정한 바에 의해 그 자금운용계획을 용도별로 분류한 표를 당해 계획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정용자자금운용 보고서】**

**제12조** ①재무대신은 매년도 재정용자자금운용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해 년도 경과 후 4개월 이내에 심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당해 년도의 재정용자자금의 운용의 상황 및 운용자산의 이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당해 년도의 재정용자자금 특별회계의 대차조회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제1항의 보고서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전조 제2항의 분류에 응하여 재정용자자금의 운용상황을 정리한 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정용자자금의 출납집행명령권의 위임】**

**제13조** 재무대신은 재정용자자금의 출납집행의 명령을 부하(部下)의 부국(剖局)의 장에게 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재정용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4조** 재무대신은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용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일본은행이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 국채에 관한 법률

### 【국채사무의 취급】

**제 1 조** ① 국채의 발행가격, 이율, 상환기한 그 외 기채(起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원금상환, 이자 지불, 증권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대신이 정한다.

② 전항의 국채에 관한 사무는 재무대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본은행이 취급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차입금 및 일시차입금의 차입, 원금상환이자지불에 관해서 이를 준용한다.

《소화41년법4, 평성11년법160, 일부개정》

### 【국채의 발행과 등록】

**제 2 조** ① 국채에 관해서는 무기명 증권을 발행한다.

② 국채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증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대정10년법44, 소화18년법111, 평성14년법65, 일부개정》

### 【국채의 양도】

**제 2 조의2** 재무대신이 정하는 국채는 재무대신이 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평성14년법65추가》

### 【등록국채의 권리변동】

**제 3 조** 등록국채를 이전하고 또는 등록국채로써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등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로써 정부 그 외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채의 등록 일정기간내의 정지】**

**제 4 조** 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한 그 외의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채의 등록은 그 이자 지불기 전 1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를 정지할 수 있으며, 국채의 등록 제각(除却)에 관해서도 이와 같다.

《대정10년법44, 일부개정》

**【국채증권의 감실 또는 분실】**

**제 5 조** ①기명국채증권 또는 그 이표(利票)를 멸실한 경우에는 그 기명자로부터 즉시 이를 소관 취급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발견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때에는 대증권(代證券) 또는 대이표(代利票)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원금의 상환기 또는 이자의 지불기 개신 이후는 대증권 또는 대이표의 교부를 할 수 없다.

③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가 된 기명국채증권 또는 그 이표(利票)는 대증권 또는 대이표의 교부에 의해 그 효력을 잃는다.

**【증권분실자의 담보제공】**

**제 6 조** ①무기명 국채증권 또는 그 이표(利票)를 멸실 또는 분실한 자는 그 증권 또는 이표의 지참인이 상환 또는 지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 및 그 지불일 이후의 이자를 변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약속하고 담보를 제공하여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불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단, 취급은행이 확실히 인정한 보증인을 세워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있다.

②담보를 제공한 자가 채권의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로써 이것에 충당하고 과잉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 ③금전이외의 담보는 이를 공매에 붙인다.
  - ④공매에 관한 규정은 재무성령으로 이를 정한다.
- 《평성11년160 일부개정》

**【이표결격의 때의 공제】**

- 제 7 조** ①무기명 국채증권에 대해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증권에 부속하는 이표 중에 결격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금으로부터 공제한다. 단, 이미 이자 지불기가 개시된 이표에 관해서는 이와 같지 않다.
- ②전항 이표의 소지인은 언제라도 그 이표를 제출하여 공제금액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시행법의 증권실효의 규정 부적용】**

- 제 8 조** 민법시행법 제57조의 규정은 국채증권 및 그 이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채의 소멸시효】**

- 제 9 조** ①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에 있어서는 10년, 이자에 있어서는 5년으로 완성된다. 단, 외국에서 기채(起債)한 국채(외국에서 기채한 지방채 또는 사채로써 국가가 원리지불의무를 승계한 것을 포함한다)에 관해서는 당해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따를 수 있다.
- ②할부상환의 방법에 의해 상환하여야 할 국채의 부금(원금과 동시에 지불하여야 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
- 《대화10년법44,소화14년법60,소화29년법121,일부개정》

**부 칙**

1. 본법 시행의 기일은 칙령(勅令)으로 이를 정한다(명치39년령제134호에서 동년7월1일부터 시행).

일 본

2. 신규 공채증서발행조례에 의한 구공채의 부금에는 본법 중 이자의 규정을 부찰(賦札)에는 본법 중 이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채에 관한 현행법령 중 본법의 규정에 저촉하는 것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단, 시효에 관한 규정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4. 본법 시행 전에 정리공채조례의 규정에 의해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한 무기명 국채증권 및 그 이표의 처분에 관해서는 정리공채조례에 의한다.

## 중앙성청등개혁관계법시행법 초(抄)

평성11, 12, 22 법160

### 제16장 경과조치등

#### 【처분, 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301조** ①중앙성청등 개혁관계법 및 이 법률(이하 「개혁관계법등」이라 총칭함)의 시행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나라기관이 한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그 외의 처분 또는 통지 그 외의 행위는 법령에서 별단으로 정한 것이 없는 이상 개혁기관법등의 시행후는 개혁관계법등의 시행후의 법령에 당사규정에 기해서 상당국가기관이 하는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그 외의 처분 또는 통지 그 외의 행위로 한다.

②개혁관계법등의 시행의 때에 법령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나라기관에 대해 되어 지고 있는 신청, 신고 그 외의 행위는 법령에서 별단으로 정하는 것이 없는 이상 개혁관계법등의 시행후는 개혁관계법등의 시행후의 법령에 당사규정에 근거해서 상당국가기관에 대해서 되어진 신청, 신고 그 외의 행위로 한다.

③개혁기관법등의 시행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나라기관에 대해서 보고, 신고, 제출 그 외의 절차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 개혁관계법등의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개혁관계법등의 시행후는 이것을 개혁관계법등의 시행후 법령의 당사규정

에 의해 상당국가기관에 대해서 보고, 신고, 제출 그 외의 절차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절차가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개혁관계법등의 시행후의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전의 예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302조** 먼저 중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중전의 나라기관이 해야 할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그 외의 처분 또는 통지 그 외의 행위 또는 중전의 나라기관에 대해서 해야 할 신청, 신고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단으로 정하지 않는 한, 개혁관계법등의 시행후는 개혁관계법등의 시행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그 임무 및 소장사무의 구분에 응해서, 각각 상당국가기관이 해야 할 것으로 하고, 또한 상당국가기관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303조** 개혁관계법등의 시행전에 한 생위에 대해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중전의 예에 의한다.

**【명령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1304조** ①개혁관계법등의 시행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해 발휘되어진 국가행정조직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에 의해 개정전의 국가행정조직법(소화23년법률제120호. 다음항에 있어서 「구국가행정조직법」이라 함) 제12조 제1항의 총리부령 또는 성령은 법령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것 외, 개혁관계법등의 시행후는 개혁관계법등의 시행후 법령의 상당규정에 근거해서 발휘되어진 상당 내각부설치법 제7조 제3항의 내각부령 또는 국가행정조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국가행정조직법(다음항 또는 다음 조 제1항에 있어

서 『신국가행정조직법』이라 함) 제12조 제1항의 성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②개혁관계법등의 시행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발휘되어진 구국가행정조직법 제13조 제1항의 특별명령은 법령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것의 외, 개혁관계법등의 시행후는 개혁관계법등의 시행후의 법령의 상당규정에 근거해서 발휘되어진 상당내각부설치법 제58조 제4항(조직관계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후의 공내청법(소화22년법률제70호) 제18조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특별명령 또는 신국가행정조직법 제13조 제1항의 특별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개혁관계법등의 시행 때에 효력을 가진 금융재생위원회규칙에서, 제166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후의 금융기능의 재생을 위해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내각부령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개혁관계법등의 시행후는 내각부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내각부등의 조직에 관한 중앙성청등개혁추진본부령】**

**제1305조** ①중앙성청등개혁추진본부는 개혁관계법등의 시행전에 있어서, 개혁관계법등의 시행후의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및 환경성의 조직에 관한 사항에서 내각부설치법 제7조 제3항의 내각부령 또는 신국가행정조직법 제12조 제1항의 성령에서 정하여야 하는 것을 각각 중앙성청등개혁추진본부에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전항의 중앙 부처 등 개혁추진본부령은, 중앙 부처 등 개혁추진본부령이 정하는 곳에 의해,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때에는, 각각 그 때에 발휘되어진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정한 상당의 내각부령 또는 성령이 되는 것으로 한다.

**【비밀을 지킬 의무에 관한 경과 조치】**

**제1307조** ① 개혁관계법등의 시행 후는, 개혁관계법등의 시행 전의 노동 기준법 제105조(동법 제100조의2 제3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지방 자치법 제250조의9 제13항(동법 제251조 제5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선원법 제109조, 국영기업노동관계법(소화23년법률 제257호) 제26조 제5항, 운수성설치법(소화24년법률제157호) 제15조, 노동조합법 제23조, 전파법 제99의4에 대해 준용하는 국가 공무원법 제100조 제1항, 경찰법 제10조 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국가 공무원법 제100조 제1항, 원자력 위원회 및 원자력 안전 위원회 설치법(소화30년법률제188호) 제10조(동법 제22조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특허법 제200조, 실용신안법 제60조, 의장법 제73조, 지가 공시법 제18조 제1항, 공해 등 조정 위원회 설치법 제11조 제1항(동법 제18조 제5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공해 건강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3조 제1항, 항공사고조사위원회설치법 제10조 제1항,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평성4년법률제109호) 제15조 제8항, 중의원 의원 선거 구획정심의회 설치법(평성4년법률제3호) 제6조 제7항, 금융재생위원회 설치법 제28조에 있어 준용하는 동법 제11조 제1항 또는 동법 제38조 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전의 나라의 기관의 위원 그 외의 직원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구위원등」이라고 함)은, 각각,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의 이러한 규정(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에 있어서는,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전의 노동 기준법 제100조의2 제3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의 동법 제100조 제3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법 제105조의 규정으로 하고,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전의 운수성 설치법 제15조의 규정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의 국토교통성 설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으로 하고,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전의 금융 재생 위원회 설치법 제28조에 있어 준용하는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의 금융청설치법(평성10년법률 제130호) 제16조 제1항의 규정으로 하고,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전의 금융 재생 위원회 설치법 제38조 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의 금융청설치법부칙 제15조에 대해 준용하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 대해 같다)에 규정하는 나라의 기관의 위원 그 외의 직원 (이하 이 조에서 「신위원등」이라고 한다)인 것과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전의 이러한 규정에 규정하는 구위원등과 관련되는 그 직무상 또는 그 직무에 관해서 알 수 있던 비밀은, 각각,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의 이러한 규정에 규정하는 신위원등과 관련되는 그 직무상 또는 그 직무에 관해서 알 수 있던 비밀로 간주해,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의 이러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전의 과학기술회의 설치법(소화34년법률제4호) 제10조 제1항, 우주 개발 위원회 설치법(소화43년법률제40호) 제9조 제1항 또는 금융 재생 위원회 설치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전의 나라의 기관의 위원 그 외의 직원인 사람과 관련되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흘려서는 안 될 의무에 대해서는,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도,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전의 임시금리 조정법 제12조에 규정하는 금리 조정 심의회의 위원 또는 동심의회의 서기였던 사람이, 금리 조정 심의회의 의사에 관해서 알게 된 비밀에 관계되어,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로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는,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전의 소방법 제35조의3의2 제2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법 제34조 제2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법 제4조 제6항에 규정하는 종전의 소방청의 직원과 관련되는 검사 또는 질문을 실시했을 경우에 파악한 관계자의 비밀은,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후의 동항에 규정하는 소방청의 직원과 관련되는 검사 또는 질문을 실시했을 경우에 파악한 관계자의 비밀로 간주해,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는,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전의 직업 안정법 제51조의2에 규정하는 종전의 공공직업 안정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사람은,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의 직업 안정법 제51조의2에 규정하는 공공직업 안정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사람과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전의 직업 안정법 제51조의2에 규정하는 종전의 공공직업 안정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사람과 관련되는 그 업무에 관해서 파악한 동조에 규정하는 정보는,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의 직업 안정법 제51조의2에 규정하는 공공직업 안정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사람과 관련되는 그 업무에 관해서 파악한 동조에 규정하는 정보로 간주해,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직무상의 의무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제1308조** 개혁관계법등의 시행 후는,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전의 지방 자치법 제250조의9 제11항(동법 제251조 제5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건설업법제250의5 제2항(동법 제25조의7 제3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범죄자 예방갱생법 제8조 제2항, 운수성 설치법 제11조, 노동조합법 제19조의7 제2항(동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사회보험 의료 협의회법 제3조 제8항, 공직 선거법 제5조의2 제4항, 전과법 제99의8,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공안 심사 위원회 설치법(소화27년법률제242호) 제7조, 자치성 설치법(소화27년법률제261호) 제8조 제1항, 사

회보험 심사관 및 사회보험 심사회법 제24조, 경찰법 제9조 제2항, 원자력 위원회 및 원자력 안전 위원회 설치법 제7조 제2항(동법 제22조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노동 보험 심사관 및 노동 보험 심사회법 제310조, 지가 공시법 제15조 제8항, 공해 등 조정 위원회 설치법 제9조, 공해 건강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6조, 항공 사고 조사위원회 설치법 제8조 제2항,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7항, 중의원 의원 선거 구획정심의회 설치법 제6조 제6항, 금융 재생 위원회 설치법 제28조에 있어 준용하는 동법 제9조 또는 동법 제38조 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종전의 나라의 기관의 위원 그 외의 직원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구위원등」이라고 함)이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전에 행한 구위원등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위반, 그 외 구위원등인에 적절하지 않는 비행은, 각각,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의 이러한 규정(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에 있어서는,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전의 자치성 설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의 총무성 설치법 제14조의 규정으로 하고,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전의 운수성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의 국토교통성 설치법 제210조의 규정으로 하고,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전의 금융 재생 위원회 설치법 제28조에 있어 준용하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의 금융청 설치법 제14조의 규정으로 하고,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전의 금융 재생 위원회 설치법 제38조에 있어 준용하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의 금융청 설치법부칙 제15조에 대해 준용하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으로 한다.)에 규정하는 나라의 기관의 위원 그 외의 직원(이하 이 조에서 「신위원등」이라고 함)으로 간 직무상의 의무 위반 그 외 신위원등인에 적절하지 않는 비행으로 간주해,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후의 이러한 법률을 적용한다.

**【지방 자치법 제156조 제4항의 적용의 특례】**

**제1309조** ① 개혁관계법등의 시행 후의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 수산성, 경제 산업성, 국토교통성 또는 환경성의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지방 자치법(다음 항에 있어서 「신지방자치법」이라고 함) 제156조 제5항에 규정하는 기관 이외의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나라의 지방 행정 기관(지방 후생국 및 지방 후생 지국 및 지방 정비국을 제외함)이고,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때 종전의 총리부, 법무성, 외무성, 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 수산성, 통상 산업성, 운수성, 우정성, 노동성, 건설성 또는 자치성의 상당한 기관(이하 이 항에서 「상당의 구기관」이라고 함)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고, 한편, 그 상당한 구기관의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을 관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지방 후생국 또는 지방 후생 지국이고,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 때 종전의 후생성의 지방 의무국(지방 후생 지국에 있어서는, 종전의 후생성의 지방 의무 지국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한편, 종전의 후생성의 지방 의무국의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을 관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신지방자치법 제156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심판관의 제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38조** 심판관이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전에 종전의 심사관으로서 사정에 관여한 사건은,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후의 특허법 제139조 제6호(동법, 실용 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그 외의 법령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후에 심사관으로서 사정에 관여한 사건으로 간주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1344조** 제71조로부터 제76조까지 및 제1301로부터 전조까지 및 중앙 부처등 개혁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의 외, 개혁 관계법등의 시행에 관계되어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는, 정령으로 정한다.

#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번호】 (평성9년 12월 5일 법률제109호)

【시행년월일】 평성9년 12월 5일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여기에 공포함.

## 제 1 장 총 칙

### 【목적】

**제 1 조** 이 법률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수지가 현저하게 불균형한 상황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 재정구조개혁의 당면의 목표 및 국가의 재정운영의 당면의 방침을 규정함과 동시에 각 세출분야의 개혁의 기본방침, 집중개혁기간(평성10년부터 평성12년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동일.)에 있어서의 국가의 일반회계의 주요한 경비에 관계된 양적 축감목표 및 정부가 구축하여야 할 제도개혁 등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재정구조개혁의 취지】

**제 2 조** 재정구조개혁은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정세의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용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이 위기적 상황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장래를 향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확립하고 안심하며 풍족한 복지사회 및 건전하고 활력 있는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임을

감안하여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하며 재정수지를 건전화하고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

**제 3 조** 국가는 전조의 취지에 따라 재정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책무를 가진다.

**【재정구조개혁의 당면의 목표】**

**제 4 조** 재정구조개혁의 당면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평성17년도까지, 1회계연도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적자액(국제연합이 규정한 기준에 준거하여 경제기획청이 작성하는 국민경제계산의 체계(이하 「국민경제계산 체계」라고 한다.)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저축투자차액 및 지방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을 합산한 액으로, 0 미만의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를 0에서 공제한 액을 당해 회계연도의 국내 총생산(국민경제계산 체계에 있어서의 국내 총생산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액에서 제하고 얻어진 수치(다음 조에 있어서 「재정적자의 대국내총생산비」라고 한다.)를 백분의 3 이하로 할 것
2. 평성10년도부터 평성16년까지 각 년도에 국가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특례공채(재정법(소화22년법률제34호) 제4조 제1항 단서 조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공채 이외의 공채이며 1회계연도의 일반회계의 세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특별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현저히 이상한 또는 극심한 비상재해의 발생 또는 경제활동의 현저한 정체(국내총생산의 신장률이 낮은 사태가 계속되는 등의 법률에 정해진 정황을 말함.)가 국민 생활 등에 미칠 중대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의 실시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를 제외

하고, 그 발행액의 축감을 피하면서 일반회계의 세출(동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보정예산(이하 간단히 「보정예산」이라 한다.)이 작성된 경우에 있어서의 일반회계의 세출을 포함한다.)은 평성 17년도까지 특례공채에 관계되는 수입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함과 동시에 동년도의 예산에 있어서의 공채의존도(일반회계의 세입(보정예산이 작성된 경우에 있어서의 일반회계의 세입을 포함한다.)의 액에 있어서의 공채금 수입의 액(동법 제4조 제1항 단서 조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하는 공채에 관한 수입의 액 및 특례공채에 관한 수입의 액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동일.)를 평성9년도의 예산에 있어서의 공채의존도와 비교하여 인하할 것

《평성10법94·평성11법160·일부개정》

#### 【재정적자의 대국내총생산비의 공표】

**제 5 조** ① 평성10년도부터 평성15년도까지의 각 년도의 예산 및 당해 각 년도의 지방단체(지방교부세법(소화25년법률제211호)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방단체를 말한다. 제41조에 있어서도 동일.)의 세입세출 총액의 예정액의 관한 지방재정계획(동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지방단체의 세입세출 총액의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제41조에 있어서도 동일.)의 국회에 제출 후, 지체 없이 총무대신 및 재무대신은 당해 각 년도의 재정적자의 대국내총생산비의 예정수치를 계산하여 공표하도록 한다.

② 총무대신 및 재무대신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각 년도의 국민경제계산 체계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저축투자차액 및 지방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이 공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각 년도의 재정적자의 대국내총생산비를 계산하여 공표하도록 한다.

《평성10법94·평성11법160·일부개정》

### 【국가의 재정운영의 당면의 방침】

**제 6 조** ① 국가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구조개혁의 당면의 목표달성에 이바지하도록 재정운영에 있어서 일반세출액(일반회계의 세출액으로부터 국채비(특별회계에 관한 법률(평성19년법률제23호) 제42조 제1항의 규정 그 외의 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로의 이월금을 말한다.)의 액, 동법 제24조의 규정의 의한 일반회계로부터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특별회계의 이월금액 그 외의 정령에서 정하는 경비의 액을 합산한 액을 공제한 액을 말한다. 이하 동일.)을 억제함과 동시에, 다음에서 열거하는 관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모든 세출분야를 대상으로 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당면의 방침으로 한다.

1. 행정의 각 분야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이 분담하여야 할 역할을 재검토할 것
2. 행정의 각 분야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분담하여야 할 역할을 재검토할 것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따라 국민이 받는 이익의 수준과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국민부담의 수준간의 형평을 꾀할 것
4. 활력 있는 경제사회를 창출할 것
5.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
6. 국민부담율(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으로 되는 조세 및 인지수입의 액과 더불어 지방공공단체의 수입으로 되는 조세의 액을 합산한 액, 당해 회계연도의 국민경제계산 체계에서의 사회보장부담의 액 및 일반정부의 무기금고용자 복지귀속부담액을 합산한 액 및 당해 회계연도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적자액을 0에서 공제한 액을 합산한 액을 국민경제계산 체계에 있

어서의 국민소득의 액에서 제하고 얻어진 수치를 말한다.)을 백분의 오십을 상회하지 않도록 억제할 것

②정부는 평성10년도의 당초 예산(보정예산 및 재정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잠정예산 이외의 예산을 말한다. 이하 동일.)을 작성함에 있어서, 일반세출의 액이 평성9년도의 당초 예산의 일반세출의 액을 하회하도록 한다.

《평성10법23·일부개정》

## 제 2 장 각 세출분야의 개혁의 기본방침, 집중개혁 기간의 주요한 경비의 양적 축감목표 및 정부가 구축하여야 할 제도개혁 등

### 제 1 절 사회보장

#### 【사회보장관계비에 관한 개혁의 기본방침】

제 7 조 ①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장래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을 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본연의 의미에 관하여 검토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에 따라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관계비의 증가액을 가능한 한 억제하도록 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관계비란 생활보호, 사회복지, 사회보험, 보건위생대책 및 실업대책에 관하여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 【사회보장관계비의 양적축감 목표】

제 8 조 ①정부는 집중개혁기간에 있어서 각 년도의 당초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 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등에 의해 사회보장관계비의 액을 다음과 같이 억제하도록 한다.

1. 평성10년도의 당초 예산의 사회보장관계비의 액은 평성9년도의 당초 예산에 있어서의 사회보장관계비의 액에 3천억엔을 가산한 액을 하회할 것
2. 평성11년도의 당초 예산의 사회보장관계비의 액의 평성10년도 당초 예산에 있어서의 사회보장관계비의 액에 대한 증가액은 가능한 한 억제한 금액으로 할 것
3. 평성12년도의 당초 예산의 사회보장관계비의 액은 평성11년도의 당초 예산에 대한 사회보장관계비의 액에 대략 100분의 102를 곱한 액을 상회하지 않을 것

②전항의 경우에 사회보장관계비의 범위는 집중개혁기간의 각 년도의 당초 예산으로 정한다. 단, 평성9년도의 당초 예산의 사회보장관계비의 범위는 평성10년도의 당초 예산으로 정한다.

《평성10법94·일부개정》

#### 【의료보험제도개혁에 관한 검토】

**제9조** ①정부는 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평성12년도까지의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건강보험법(대정11년법률제70호), 국민건강보험법(소화33년법률제192호) 그 외의 법률에 근거하는 의료보험제도 등에 관해서 발본적인 개혁을 행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②정부는 고령자가 놓여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평성12년도까지 일정액 이상의 수입 등을 가진 고령자에 대한 노인보건법(소화57년법률제80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의료급부 등의 본연의 의미에 관해 검토를 행하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 【연금제도개혁에 관한 검토】

**제10조** ①정부는 후생연금보험법(소화29년법률제115호), 국민연금법(소화34년법률제141호) 및 공제각법(국민연금법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에서 열거하는 법률을 말함.) (이하, 「후생연금보험법등」이라고 한다.)에 근거하는 연금인 급부에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관해서의 장래의 세대의 부담의 억제를 피하기 위하여, 집중개혁기간 중에 있어서 최초로 행해진 재정 재계산(후생연금보험법 제8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계산등후생연금보험법등의 규정에 근거하는 보험이율 등의 재계산을 말한다. 제3항에서도 동일.)에 있어서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관해서 검토를 하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구축하도록 한다.

1. 주로 고령자가 장기에 걸쳐서 요양을 하는 의료시설 그 외의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에 대한 연금인 급부의 본연의 의미(在り方)
2. 연금의 액의 개정방법
3. 사업소에 사용되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연금인 급부의 현황과 본연의 의미
4. 연금인 급부를 받는 권리를 가지는 자(다음 항에서 「수급권자」라고 한다.)로 되는 연령
5. 연금인 급부의 수준
6. 그 외 장래 세대의 부담의 억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제외한다.)

②정부는 평성12년도까지 급부와 부담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함을 배려하면서 고령자가 놓여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액 이상의 수입 등을 가진 수급권자에 대한 후생연금보험법 등에 의한 연금인 급부액의 현황과 본연의 의미에 관하여 검토를 하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③정부는 집중개혁 기간 중에 최초로 행해진 재정 재계산에 있어서 세대간 및 세대내의 부담의 공평의 관점에서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

항에 관해서 검토를 하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1. 후생연금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근거하는 보험료율 등에 관하여 후생연금보험법 제81조 제6항 및 국민연금법 제87조 제5항에 의해 단계적으로 행할 보험료율 등의 인상의 타당성
2. 후생연금보험법 등에 근거하는 연금인 급부에 관계된 보험료 및 부금(掛金)의 부과 대상이 되는 보수의 범위

《평성13법101·일부 개정》

**【연금사업 등의 사무비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의 억제】**

**제11조** 정부는 후생연금보험법 등에 근거하는 연금사업 그 외의 사회보험사업의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제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본연의 의미에 관하여 검토함과 동시에 제8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양적 축감목표 및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구조개혁의 당면의 목표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평성10년부터 평성15년도까지의 사이에 후생연금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근거하는 연금사업의 사무 및 국가공무원 공제조합법(소화33년법률제128호) 및 지방공무원 등 공제조합법(소화37년법률제152호)에 근거하는 단기급부 및 장기급부와 관련된 조합의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금사업 등의 사무비」라고 한다.)의 일부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 이외의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라 연금사업 등의 사무비에 관련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을 억제하도록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재검토】**

**제12조** 정부는 평성10년도 당초 예산의 성립의 날까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고용보험법(소화49년법률제116호) 제37조의2에서 규정하는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의 본연의 의미에 관해 폐지를 포함하여

재검토를 행함과 동시에 동법에 근거하는 실업 등 급부에 관련된 국고부담 측면에서의 검토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 제 2 절 공공투자

### 【공공사업예산과 관련된 개혁의 기본방침】

**제13조** 정부는 공공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관하여 경제구조개혁을 조급히 추진할 필요성, 행정의 각 분야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적절한 역할부담 등의 관점을 고려하여 중점화 및 효율화를 꾀하도록 한다.

### 【공공투자관계비의 양적 축감목표】

**제14조** ①정부는 평성10년도의 당초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공공투자관계비의 액이 평성9년도의 당초 예산에서 공공투자관계비의 액에 100분의 93을 곱한 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정부는 평성11년도 및 평성12년도의 당초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공공투자관계비의 액이 당해 각 년도의 전년도의 당초 예산에서의 공공투자관계비의 액을 하회하도록 한다.

③전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공투자관계비란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회 자본으로서의 도로, 하천 그 외의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그 외의 공공적인 건설 또는 복구의 사업(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또는 확보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 및 관공서 실설의 건설 등의 사업(재정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④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의 공공투자관계비의 범위에 관해서 준용한다.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에서의 사업 양의 실질적 축감】**

**제15조** ①정부는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공공사업에 관하여 사업실시의 목표 및 양을 정하는 전국에 걸친 계획이며, 법률이 규정에 근거하여 책정되는 것 또는 정부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 중에 이 법률의 시행 즈음인 평성8년도 이전의 연도를 시기로 하는 것(주택건설계획법(소화41년법률제100호)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5개년계획 및 계획의 종기(終期)를 평성9년도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 전조의 취지 및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구조개혁의 당면의 목표를 고려하여, 당해 각 계획을 당해 각 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양을 변경 없이 당해 각 계획에 있어서의 기간에 비례하여 장기간의 계획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1개년 당 평균 사업량(당해 각 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양을 당해 각 계획의 기간의 연수에서 제하고 얻은 양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도 동일.)을 감축하도록 한다.

②정부는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으로 평성9년도를 시기(始期)로 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당해 각 계획」이라고 함.)에 관해서 전조의 취지 및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구조개혁의 당면의 목표를 고려하여, 장기적 시점에서 당해 각 계획의 기간에 관해 당해 각 계획과 동일한 공공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평성8년도를 종기(終期)로 하는 각 계획의 기간과 비교하여 장기의 기간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각 계획의 사업의 양에 관해서는 전항의 취지를 참작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1개년 당 평균 사업량을 억제하도록 한다.

제 3 절 문교(文教)

**【문교예산과 관련된 개혁의 기본방침】**

**제16조** 정부는 문교예산(학교교육, 사회교육, 학술 및 문화의 진흥 및

보급을 피하는 등을 위한 행정사무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으로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에 관해서 유아 또는 생도의 수의 감소에 맞춘 합리화, 수익자 부담의 철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적절한 역할분담 등의 관점에서 의무교육에 대한 일반회계의 부담 및 사립학교에 대한 조성 등의 본연의 의미에 관해서 검토하며 억제하도록 한다.

《평성15법117·일부개정》

### 【사립학교에 대한 조성의 총액의 양적 축감목표】

**제17조** ①정부는 집중개혁 기간에서의 각 년도의 당초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사립학교진흥조성법(소화50년법률제61호)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경상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국가의 보조금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사립학교의 경상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국가의 보조금에 한한다.)의 총액이 당해 각 년도의 전년도 당초예산에 있어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총액을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정부는 집중개혁 기간에서의 각 년도의 당초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사립학교진흥보조법(소화50년법률제61호)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경상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국가의 보조금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사립학교의 경상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국가의 보조금에 한한다.)의 총액이 당해 각 년도의 전년도의 당초 예산에서의 이들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총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평성15법117·일부개정》

### 【공립의무교육제학교 등의 교직원의 급여비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의 억제】

**제18조** 제16조의 취지를 고려함과 동시에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구조개혁의 당면의 목표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칙 제24조의 규

정에 의한 개정 전의 공립의무교육제학교의 학급편제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 및 공립 고등학교의 설치, 적정배치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5년 법률제14호) 부칙 제2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하는 학급편제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해, 이들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의 종료에 따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것으로 되는 재정상의 조치에 관해서는, 평성12년도까지의 사이에 강구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공립의무교육제학교 등의 교직원의 급여비 등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을 억제하도록 한다.

## 제 4 절 방 위

### 【방위 관계비와 관련한 개혁의 기본방침】

**제19조**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상의 관점과 경제사정 및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방위관계비에 관해서 절도 있는 방위력의 정비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서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의 긴요성을 배려하여, 억제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방위관계비란 자위대의 관리 및 운영과 이에 관한 사무, 조약에 근거하는 외국군대의 주류 및 일본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사이의 상호 방위원조협정의 규정에 근거하는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의 책무의 본방(本邦)에 있어서의 수행에 따른 사무 및 안전보장회의의 사무에 관한 것으로 하여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 【방위관계비의 양적 축감목표】

**제20조** ①정부는 집중개혁기간에 있어서의 각 년도의 당초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방위관계비(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 하에 설치된 오

키나와 현에 소재하는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시설 및 구역에 관련된 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특별행동위원회에 있어서 요약된, 동 협의심의회에서 승인된 오키나와 현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시설 및 구역의 정리, 총합 및 축소 및 오키나와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운용방법의 조정방책에 관련된 계획 및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경비(제3항에 있어서 「특별행동위원회 관계경비」라고 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의 액이 당해 각 년도의 전년도의 당초 예산의 방위관계비의 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란, 일본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됨과 동시에 안전보장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에 공헌하는 문제로써 안전보장문제의 기반을 이루는 것 가운데, 안전보장 문제에 관한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의 위원회를 말한다.

③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관계비 및 특별행동위원회 관계경비의 범위에 관해서 준용한다.

## 제 5 절 정부개발원조

### 【정부개발원조와 관련한 개혁의 기본방침】

**제21조** ①정부는 정부개발원조에 관해서 그 양적 확충이 국제적으로 현저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우리나라의 재정이 위기적 상황에 있는 것을 고려하여 그 양적 충당으로부터 질적 향상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정부개발원조란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개발도상의 상태에 있는 해외 지역 등(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개발도상지역 등」이라고 한다.)의 경제 및 사회개발 또는 인도지원

에 기여하고, 이로써 국제협력의 촉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발도상지역 등에 대해 행하는 협력 가운데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다음 호에서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기술협력
  - (2) 무상의 자금공여에 따른 협력
  - (3) 유상의 자금공여에 따른 협력(자금공여의 조건이 개발도상지역 등에 있어서 무거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금리, 상환기간 등에 관하여 관대한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4) (1)부터 (3)까지에서 열거 된 것 이외, 이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2. 전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관계되는 국제기관 등에 대하여 행하는 출자 및 자금의 거출 및 대부(동호 8의 조건이 붙어있는 것에 한한다.)로써 동호의 목적달성에 관련된 것
3. 전 제2호에서 열거하는 것과 관련된 조사, 연구, 기획, 입안, 실시 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사무

**【정부개발원조비의 양적축감 목표】**

**제22조** ①정부는 평성10년도의 당초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정부개발원조비의 액이 평성9년도의 당초 예산의 정부개발원조비의 액에 10분의 9를 곱한 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②정부는 평성11년도 및 평성12년도의 당초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정부개발원조비의 액이 당초 각 년도의 전년도의 당초 예산의 정부개발원조비의 액을 하회하도록 한다.

③전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부개발원조비란 전조 제2항에서 열거하는 것에 관하여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④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정부개발원조비의 범위에 관해서 준용한다.

## 제 6 절 농림수산

### 【농림수산관계예산에 관한 개혁의 기본방침】

**제23조** 정부는 농림수산업의 담당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에 관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행하고 시장원리의 도입 등을 한층 더 꾀하는 것에 의해, 농림수산관계예산(농림수산업의 개량발달 및 농림어가의 복지의 증진과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꾀하기 위한 행정사무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에 관하여 중점화 및 효율화를 꾀하는 것으로 한다.

### 【주요식량관계비의 양적축감 목표】

**제24조** ①정부는 집중개혁 기간의 각 년도의 당초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주요식량관계비의 액이 당해 각 년도의 전년도의 당초 예산의 주요식량관계비의 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주요식량관계비란, 주요식량의 계획적인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정부에 의한 주요식량의 매입, 수입 및 매도의 조치 및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③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주요식량관계비의 범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 7 절 과학기술

### 【과학기술진흥비에 관한 개혁의 기본방침 등】

**제25조** ①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평성7년법률제130호)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시에 있어서 원자력, 우주개발 및 방위와 관련된 연구에 관한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동 계획에 관해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이 위기적 상황에 있음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취급 하는 것으로 한다.

②정부는 과학기술진흥비에 관하여, 당해 경비와 관련된 연구개발의 적절한 평가를 행하고 그 결과를 예산배분에 반영시키는 것 등에 의해, 중점화 및 효율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집중개혁기간 중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진흥비 이외의 경비와의 균형에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③전항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진흥비란 국가의 시험연구기관, 대학, 민간 등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에 관하여, 주로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써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 **【과학기술진흥비의 양적축감 목표】**

**제26조** ①정부는 평성11년도 및 평성12년도의 당초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진흥비의 액의 당초 각 년도의 전년도의 당초 예산의 과학기술진흥비의 액에 대한 증가액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전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진흥비의 범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 **【연구개발기관 등의 통합 또는 폐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제27조** 정부는 집중개혁기간 중에, 국가의 시험연구기관, 특별 법률에 의해 특별 설립행위로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 등으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 및 특수법인 등에 속하는 연구소 등의 통합 또는 폐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제 8 절 에너지 대책

#### **【에너지 대책에 관한 개혁의 기본방침】**

**제28조**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는 관점에 서면서, 에너지 대책 특별회계의 에너지 수급감정(勘定)의 모든

세출을 재검토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당해 감정에의 이월금 액을 축감함과 동시에, 동 특별회계의 전원개발촉진감정에 관하여 모든 세출을 검토하고, 전원입지 대책 및 전원이용대책의 보다 나은 효율화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평성12법16·평성15법38·평성19법23·일부개정》

**【에너지 대책비의 양적축감 목표】**

- 제29조** ①정부는 집중개혁기간의 각 년도의 당초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에너지 대책비의 액이 당해 각 년도의 전년도의 당초 예산에 있어서의 에너지 대책비의 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에너지 대책비란 에너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등을 위하여 원자력 및 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석유 및 에너지 수급구조 고도화 대책 등에 관하여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 ③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에너지 대책비의 범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 9 절 중소기업대책

**【중소기업 대책비에 관한 개혁의 기본방침】**

- 제30조** ①정부는 중소기업 대책비에 관해서 중소기업자 등의 활력 및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모든 세출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대책비란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경영의 향상을 도모하는 시책에 관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중소기업 대책비의 양적축감 목표】**

**제31조** ①정부는 집중개혁기간에 있어서의 각 년도의 당초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대책비의 액이 당해 각 년도의 전년도의 당초 예산의 중소기업 대책비의 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대책비의 범위에 관해서 준용한다.

제10절 인건비

**【인건비의 억제】**

**제32조** 정부는 집중개혁기간 중에 있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따라 인건비(국가 공무원 이외의 자에 관한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 및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의 총액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절 그 외의 사항에 관한 경비

**【그 외의 사항에 관한 경비의 억제】**

**제33조** 정부는 집중개혁 기간에 있어서의 각 년도의 당초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각 년도의 일반세출 중 제7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및 전조에서 규정하는 경비 이외의 경비(이하 이 조에서 「그 외의 사항에 관한 경비」라고 한다.)의 총액이 당해 각 년도의 전년도의 당초 예산에 있어서의 그 외의 사항에 관한 경비의 총액을 최대한 상회하지 않도록 억제하도록 한다.

《평성15법117·일부개정》

## 제12절 보조금의 재검토

### 【보조금 등의 재검토】

**제34조** 국가는 경제사회 정세의 변화, 행정 각 분야의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와 민간과의 역할분담의 존재방식과 행정 각 분야의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역할분담의 본연의 의미를 고려하여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국가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특정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보조금(국가 이외의 자가 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경비에 관해서 부족하게 된 경우에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위탁비(국가의 사업 등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국가가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그 외에 상당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국가가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써 정령에서 정하는 것(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재검토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등의 삭감 등】

**제35조** ①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되는 보조금 등으로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교부되는 것 중, 제도 등 재검토대상 보조금 등(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도 동일.)에 관해서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에 관련된 제도 혹은 시책의 재검토 또는 당해 사업 등의 재검토를 행함에 따라, 당해 보조금 등의 삭감 또는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1. 국가의 안전의 확보 및 대외관계의 처리 등과 관련된 국가의 책무에 관한 것
2. 재해구조 또는 재해복구와 관련된 것

3. 법률에 근거하는 재산의 사용 또는 처분의 제한에 따른 당해 재산의 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증가를 완화시키는 것으로써 국가가 부담하는 것
  4.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집중개혁기간 중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급부의 근거로 되는 제도의 개혁에 관한 검토 또는 제도의 재검토를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 그 외의 정령에서 정하는 것
- ②정부는 집중개혁 기간에 있어서의 각 년도의 당초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외 보조금 등(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되는 보조금 등으로써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교부되는 것 가운데, 제도 등 재검토 대상 보조금 등 이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의 액의 작성 각청(재정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작성 각청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소관마다의 합산 액이 당해 각 년도의 전년도의 당초 예산에 있어서의 그 외 보조금 등의 액의 작성 각청의 소관마다의 합산 액에 10분의 9를 곱한 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 ③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그 외 보조금 등의 범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특수법인 등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등의 삭감 등】**

**제36조**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되는 보조금 등으로써 특수법인 그 외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법인(다음 조에 있어서 「특수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되는 것에 관해서는 교부의 대상으로 되는 사업 등의 재검토를 행함에 따라 당해 보조금 등의 삭감 또는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지방공공단체 및 특수법인 등 이외의 자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등의 삭감 등】**

**제37조** ①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되는 보조금 등으로써 지방공공단체 및 특수법인 등 이외의 자에 대하여 교부되는 것 가운데,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부의 대상으로 되는 사업 등과 관련된 제도 혹은 시책의 재검토 또는 당해 사업 등의 재검토를 행함에 따라 당해 보조금 등의 삭감 또는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1. 국가의 안전의 확보 및 대외관계의 처리 등과 관련된 국가의 책무에 관한 것
2. 법률에 근거한 재산의 사용 또는 처분의 제한에 따른 당해 재산의 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의 증가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
3.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집중개혁 기간 중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급부의 근거로 되는 제도의 개혁에 관한 검토 또는 제도의 재검토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그 외 정령에서 정하는 것

②정부는 집중개혁 기간에 있어서의 각 년도의 당초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되는 보조금 등으로써, 지방공공단체 및 특수법인 등 이외의 자에 대하여 교부되는 것 가운데,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액의 각성 각청의 소관마다의 합산 액이 당해 각 년도의 전년도에 당초 예산에 있어서의 동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액의 각성 각청의 소관마다의 합산 액에 10분의 9를 곱한 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동항의 보조금 등의 범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보조금 등의 교부의 결정에 관하여 각성 각청의 장이 강구하여야 할 조치】**

**제38조** 각성 각청의 장(재정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각성 각청의 장을 말한다.)는 보조금 등의 교부의 결정에 관하여 다음에서 열거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1. 보조금 등의 교부의 목적 등에 맞추어 당해 보조금 등과 관련된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결정액 등의 하한을 정할 것.
2. 보조금 등의 교부의 목적 등에 맞추어 당해 보조금 등의 교부의 결정의 개요 등을 공표하는 것으로 하며, 공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과 동시에 보조금 등에 있어서의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절차의 간소화 또는 합리화에 노력할 것.

### 제 3 장 지방재정의 건전화

####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39조** 지방공공단체는 제4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재정구조개혁의 당면의 목표달성에 이바지 하도록 국가의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호응 및 병행하여 재정구조개혁에 노력하여 그 재정의 자주적이며 자립적이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행재정상의 조치】

**제40조** 정부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의 자주적이며 자립적인 건전화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적절하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지방 일반 세출의 액의 억제 등을 위한 조치】

**제41조** ①정부는 제4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재정구조개혁의 당면의 목표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일반세출액(지방재정계획에 기재된 지방단체의 세출총액의 예상액에서 당해 예상액 중 지방채의 이자 및 원금상환금의 액 그 외 정령에서 정하는 경비의 액을 합산한 액을 공제한 액을 말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 동일.)이 억제된 것으로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②정부는 평성10년도의 지방단체의 세입세출 총액의 예상액에 관한 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의 지방 일반 세출의 액이 평성9년도의 지방 단체의 세입세출 총액의 예상액에 관한 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의 지방 일반 세출의 액을 하회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부 칙

### 【시행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 【검토】

제 2 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필요에 맞추어, 재정구조개혁의 실시 현황 등을 감안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의 현황과 본 연의 의미에 관해서 검토를 더하여,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구조 개혁의 당면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세출의 개혁과 축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부 칙 《평성10·6·5법94》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교부세법

소화25년 5월 30일 법률 제211호

지방재정평형교부금법을 여기에 공포한다.

## 【이 법률의 목적】

**제 1 조** 이 법률은, 지방단체가 자주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 및 행정을 집행할 권능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 재원의 균형을 도모함과 함께 지방 교부세의 교부의 기준의 설정을 통해 지방 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한 것에 의해, 지방자치의 본지의 실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방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화29년법101일부개정》

## 【용어의 의의】

**제 2 조** 이 법률에 있어, 다음 각호에 언급한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지방교부세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소득세, 법인세, 주세, 소비세 및 담배소비세의 각각의 일정비율의 금액으로 지방단체가 균등하게 행해져야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라가 교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2. 지방단체 도도부현 및 시읍면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 각 지방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해당 지방단체에 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재정수입액 각 지방단체의 재정력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해당 지방단체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측정단위 지방행정의 종류마다 설치하는 한편, 종류마다 그 양을 측정한 단위에, 매년도의 보통 교부세를 교부하기 위해 쓰인 것을 말한다.
6. 단위비용 도도부현 또는 시읍면마다, 표준적 조건을 구비한 지방단체가 합리적인 한편 타당한 수준에 따라 지방 행정을 행한 경우, 또는 표준적인 시설을 유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 그 밖에 이러한 것에 유사한 수입 및 지방세의 수입 중 기준재정수입액에 상당하는 것을 재원으로 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서 산정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의 비용(해당 측정단위의 수치에 있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 후의 측정 단위의 단위당의 비용)으로,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쓰는 지방행정의 종류마다의 경비금액을 결정하기위해, 측정단위의 수치에 곱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소화27년법166,소화29년법101,소화31년법100,소화31년법148,소화63년법112,평성원년법30,평성6년법111,평성11년법87,일부개정》

### 【운영의 기본】

**제3조** ①총무대신은, 항상 각 지방단체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노력하고,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고 한다.)의 총액을,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정 수요액이 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지방단체에 대해, 평등하게 그 초과액을 보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교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나라는, 교부세의 교부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지를 존중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그 용도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③지방단체는, 그 행정에 관해서, 합리적인 한편, 타당한 수준을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적어도 법률 또는 이것에 의거한 정령에 의해 의무지워진 규모와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화27년법166,소화27년법262,소화29년법101,소화35년법113,평성11법160,일부개정》

### 【총무대신의 권한과 책임】

**제 4 조** 총무대신은, 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에 언급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매년도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총액을 견적을 내야할 것
2. 각 지방단체에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금액을 결정하는 한편, 이것을 교부할 것
3. 제10조, 제15조, 제19조 또는 제20조의2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 각 지방 단체에 대한 교부세의 금액을 변경하고, 감액하는 한편, 반환시킬 것
4. 제18조에 정한 지방단체의 심사의 신고를 수리하고,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5. 제19조 제7항(제20조의2 제4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정한 이의의 신청을 수리하고,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6. 제20조에 정한 의견의 청취를 행하는 것
7. 교부세의 총액의 견적 및 각 지방단체에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금액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비하는 것
8. 수집한 자료에 근거해서, 항상 지방재정의 상황을 파악, 교부세 제도의 운용에 관한 개선을 도모한 것
9. 전각호에 정한 것 외에, 이 법률에 정한 사항

《소화27년법166,소화27년법262,소화29년법101,소화35년법113,소화37년법161,소화46년법24,평성5년법89,평성11년법160,일부개정》

**【교부세의 산정에 관한 자료】**

**제 5 조** ①도도부현의 지사는,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해당 도도부현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관한 자료, 특별교부세의 금액산정에 사용하는 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②시읍면장은,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해당 시읍면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 재정수입액에 관한 자료, 특별교부세의 금액산정에 사용하는 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도도부현의 지사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③도도부현의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고, 총무대신에게 송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기준재정수요액의 안에 포함되는 경비에 관계된 지방 행정에 관계가 있는 나라의 행정기관(내각부, 궁내청 및 내각부설치법(평성 11년 법률 제89호)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관 및 국가행정조직법(소화23년 법률 제120호) 제3조 제2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고 한다.)는, 총무대신이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할에 관계되는 행정에 관하고, 총무대신의 요구에 관계된 교부세 총액의 산정 또는 교부에 관해 필요한 자료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화27년법166,소화27년법262,소화29년법101,소화31년법148,소화33년법117,소화35년법113,소화36년법121,평성11년법87,평성11년법160, 일부개정》

**【교부세의 총액】**

**제 6 조** ①소득세, 법인세 및 주세 수입액의 각각 백분의 32, 소비세의 수입액의 백분의 29·5 및 담배소비세 수입액의 백분의 25를 가지고 교부세로 한다.

②매년도분으로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총액은, 해당 연도에 있어 소득세, 법인세 및 주세 수입전망액의 각각 백분의 32, 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의 백분의 29·5 및 담배소비세 수입전망액의 백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에 해당년도의 전년도 이전의 연도에 따른 교부세로, 아직 교부하고 있지 않은 금액을 가산하고, 또한 당해 전년도 이전의 년도에 있어 교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 한 금액을 당해 합산액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소화29년법101전면개정,소화31년법100,소화32년법130,소화33년법117,소화34년법97,소화37년법59,소화40년법39,소화41년법60,소화63년법112,평성원년법30,평성6년법111,평성18년법8,일부개정》

**【교부세의 종류 등】**

**제 6 조의2** ①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한다.

②매년도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총액은, 전조 제2항의 금액의 백분의9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매년도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특별교부세의 총액은, 전조 제2항의 금액의 백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소화29년법101추가,소화33년법117일부개정》

**【특별교부세의 금액 변경 등】**

**제 6 조의3** ①매년도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총액이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각 지방단체에 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초과액은, 당해년도의 특별교부세의 총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일 본

②매년도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보통 교부세의 총액이 계속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단체에 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과 현저하게 다르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 또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도의 개정 또는 제6조 제1항에 정한 비율의 변경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소화29년법101추가,소화30년법123일부개정》

### 【세입세출총액의 전망액 제출 및 공표의 의무】

제 7 조 내각은, 매년도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을 기재한 다음년도 지방단체의 세입세출총액의 전망액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것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일반에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지방단체의 세입총액의 전망액 및 다음의 각 항목이 언급하는 내역
  - (1) 각 세목마다의 과세표준액, 세율, 조정전망액 및 징수전망액
  - (2) 사용료 및 수수료
  - (3) 채권발행액
  - (4) 국고지출금
  - (5) 잡수입
2. 지방단체의 세출총액의 전망액 및 다음의 각호에 언급하는 그 내역
  - (1) 세출 종류마다의 총액 및 전년도에 대한 증감액
  - (2) 국고지출금에 근거한 경비총액
  - (3) 지방채의 이자 및 원금상환금

《소화27년법147,소화27년법262,소화29년법101,소화30년법123,일부개정》

### 【교부세의 금액 산정기일】

제 8 조 각 지방단체에 대한 교부세의 금액은, 매년도4월1일 현재에 의해 산정한다.

《소화29년법101일부개정》

###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의 경우 교부세의 조치】

**제9조** 전조의 기일 후에 있어, 지방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이 있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방단체에 대한 교부세의 조치에 관해서는, 다음의 각 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폐치분합에 근거한 하나의 지방단체구역이 그대로 다른 지방단체의 구역으로 된 때에는, 해당 폐치분합의 기일 후는, 해당 폐치분합전의 지방단체에 대하여 교부해야 했던 교부세의 금액을 해당 지방단체의 구역이 새롭게 속하는 것이 된 지방단체에 교부한다.
2. 폐치분합에 근거하는 하나의 지방단체의 구역이 분할된 때 또는 경계 변경이 있던 때는, 해당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의 기일 후, 해당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전의 지방단체에 대하여 교부해야 했던 교부세의 금액을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에 관계된 구역 또는 경계변경에 관계된 구역을 제외한 해당 지방단체의 구역을 기초로 하는 독립지방단체가 각각 해당 연도의 4월 1일에 존재했다고 가정한 경우에 있어, 이러한 지방단체에 대해 교부해야 했던 교부세의 금액에 배분하고, 당해 배분한 금액을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에 관한 구역이 속한 것으로 된 지방단체 또는 경계변경에 관한 구역이 속하는 것으로 되어있던 지방단체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소화27년법262,소화29년법101,소화35년법113,평성11년법160,일부개정》

### 【보통교부세의 금액산정】

**제10조** ①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지방단체에 대해서, 다음 항에 정하는 바에 의해 교부한다.  
 ②각 지방단체에 대해서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금액은, 해당 지방단체의 기준재정 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분항 중 「재원 부족액」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단, 각 지방단체

에 대하여 산정한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지방단체의 재원부족액 - 해당 지방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 ((재원부족액의 합산액 - 보통교부세의 총액) ÷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지방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의 합산액)

③총무대신은, 전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금액을, 늦어도 매년 8월 31일까지는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교부세 총액의 증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9월 1일 이후에 있어, 보통교부세의 금액을 결정하고, 또는 이미 결정된 보통교부세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통교부세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또한 변경한 때는, 이것을 해당 지방단체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⑤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일부의 지방단체에 관하여 이미 결정된 보통교부세의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일부러 다른 지방단체에 대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보통교부세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⑥해당 연도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보통 교부세의 총액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고 산정한 각 지방 단체에 대해서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합산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있어, 해당 부족액은 해당 년도의 특별교부세의 총액을 감액해서 이것을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소화27년법166,소화27년법262,소화27년법343,소화29년법101,소화30년법123,소화32년법130,소화33년법117,소화35년법113,평성11년법160, 일부개정》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

**제11조**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 단위의 수치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고 수정하고, 이것을 해당 측정 단위마다의 단위 비용에 따라 얻은 금액을 당해지방단체에 대해서 합산한 가격으로 한다.

### 【측정 단위 및 단위 비용】

제12조 ①지방 행정에 필요로 하는 경비내 각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경비의 종류를 구분해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것(다음 항에 있어 『개별산정경비』라고 한다)의 측정단위는 지방단체의 종류마다에 다음 표의 경비종류의 난에 게재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정단위의 난에 정해진 것으로 한다.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도부현	1 경찰비	경찰직원수	
	2 토목비		
	(1) 도로교량비		도로의 면적
			도로의 연장
	(2) 하천비	하천의 연장	
	(3) 항만비		항만에 따른 계류시설의 연장
			항만에 따른 외곽시설의 연장
			어항에 따른 계류시설의 연장
			어항에 다른 외곽시설의 연장
	(4) 그 외의 토목비	인구	
	3 교육비		
	(1) 초등학교비	교직원수	
	(2) 중학교비	교직원수	
	(3) 고등학교비		교직원수
			학생수
	(4) 특별지원학교비		교직원수
			학급수
	(5) 그 외의 교육비		인구
			고등전문학교 및 대학의 학생 수
			사립학교의 유아, 아동 및 학생의 수

지방단체의 종 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4 후생노동비	
	(1) 생활보호비	읍면인구
	(2) 사회복지비	인구
	(3) 위생비	인구
	(4) 고령자보건복지비	65세이상의 인구
		75세이상의 인구
	(5) 근로비	인구
	5 산업경제비	
	(1) 산업행정비	농가수
	(2) 산림행정비	공유이외 임야의 면적
		공유임야의 면적
	(3) 수산행정비	수산업자수
	(4) 상공행정비	인구
	6 총무비	
	(1) 징세비	세대수
	(2) 연급비	연구수급권자수
	(3) 지역진흥비	인구
	7 재해복구비	재해복구사업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 한 발행에 대해서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에 관한 원리상환금(상환 시기의 만료날에 대해서 원금의 전부 를 상환하는 것으로서 하는 발행에 대해서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 채에 있어서, 그 상환이 자본금 균등 만년부 상환의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원리 상환금에 상 당하는 금액, 이하동일

지방단체의 종 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8 보정예산채상환비	소화51년도에서 평성10년도까지의 각년도에 있어서 나라의 보정예산등에 대한 사업비의 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발행을 허가한 지방채에 관한 원리상환금 평성11년부터 평성14년까지 또한 평성16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년도에 있어서 나라의 보정예산등에 관한 사업비의 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에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금액
	9 지방세감수보전채상환비	지방세의 감수보전 때문에 소화61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발행에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금액
	10 지역재정특례대책채상환비	지역재정특례대책을 위해 소화61년도부터 평성5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발행을 허가된 지방채의 금액
	11 임시재정특례채상환비	임시재정특례대책을 위해 소화62년도부터 평성12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발행을 허가한 지방채의 금액
	12 재원대책채상환비	평성6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 년도의 재원대책을 위해 당해각년도에 있어서 발행에 대해서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금액
	13 감세보전채상환비	개인의 도부현주민세에 관한 특별감세등에 의해 평성6년도부터 평성8년도까지 및 평성10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 년도의 감수를 보전하기 위해 당해 각 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었었던 지방채의 금액

일 본

지방단체의 종 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14 임시세수입보전채상환비	임시세수입부전을 위해 평성9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던 지방채의 금액
	15 임시재정대책비상환금	임시재정대책을 위해 평성13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 각 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었던 지방채의 금액
읍면리	1 소방비	인구
	2 토목비	
	(1) 도로교량비	도로의 면적
		도로의 연장
	(2) 항만비	항만에 있어서 계류시설의 연장
		항만에 있어서 외곽시설의 연장
		어항에 있어서 계류시설의 연장
		어항에 있어서 외곽시설의 연장
	(3) 도시계획비	도시계획구역에 있어서의 인구
	(4) 공원비	인구
		도시공원의 면적
	(5) 하수도비	인구
	(6) 그 밖의 토목비	인구
	3 교육비	
	(1) 초등학교비	아동수
		학급수
		학교수
	(2) 중등학교비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3) 고등학교비	교직원수	
	학생수	

지방단체의 종 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4) 그 밖의 교육비	인구
		유치원의 유아수
	4 후생비	
	(1) 생활보호비	도시인구
	(2) 사회복지비	인구
	(3) 보건위생비	인구
	(4) 고령자보건복지비	65세이상 인구
		75세이상 인구
	(5) 청소비	인구
	5 산업경제비	
	(1) 농업행정비	농가수
	(2) 임업수상행정비	임업 및 수산업의 종사자 수
	(3) 상공행정비	인구
	6 총무비	
	(1) 징세비	세대수
	(2) 호적주민기본대장비	호적수
		세대수
	(3) 지역징흥비	인구
		면적
	7 재해 복구비	재해복구사업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발행에 대해서 동의 또는 허가 를 얻은 지방채에 관한 원리상환금
	8 벽지대책사업채상환비	벽지대책사업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발행에 대한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에 관한 원리상환금

지방단체의 종 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9 보정예산채상환비	소화11년도부터 평성10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나라의 보정예산등에 관한 사업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발행이 허가된 지방채에 관한 원리상환금
		평성10년도부터 평성14년도까지, 또한 평성16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나라의 보정예산등에 관한 사업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발행에 대해서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금액
	10 지방세감수보전채상환비	지방세의 수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소화61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 각 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발행에 동의 및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금액
	11 지역재정특례대책채상환비	지역재정특례대책을 위해 소화61년도부터 평성5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발행을 허가한 지방채의 금액
	12 임시재정특례채상환비	임시재정특례대책을 위해 소화63년도부 평성12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발행을 허가 받은 지방채의 금액
	13 재원대책채상환비	평성6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 년도의 재원대책을 위해 당해 각 년도에 있어서 발행에 대해서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금액
	14 감세보전채상환비	개인의 시읍면의 주민세에 대한 특별 감세등에 의해 평성6년도부터 평성8년까지, 또한 평성10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 년도의 감수를 보전하기 위해 당해 각 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진 지방채의 금액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15 임시세수입보전채상환비	임시세 수입 보전을 위해 평성9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 것으로 되어진 지방채의 금액
	16 임시재정대책채상환비	임시재정대책을 위해 평성13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진 지방채의 금액

②지방행정에 필요한 경비 중 개별산정경비이외의 것의 측정단위는 도부현 또는 읍면리마다에 인구 및 면적으로 한다.

③전 제2항의 측정 단위의 수치는, 다음 표의 상단에 언급한 측정 단위에 관하여, 각각 중난에 정한 산정의 기초에 의하고, 하난에서 언급한 표시 단위에 근거해서, 총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산정한다.

측정단위의 종류	측정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단위
1 인구	관보에 공시되어진 최근의 국세조사의 결과에 의한 당해 지방단체의 인구	인
2 면적	국토지리원에 의해서 공표된 최근의 당해지방 단체의 면적	평방킬로미터
3 경찰직원수	경찰법(소화29년법률제162호) 제57조에 규정한 정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산정한 당해도 부현의 경찰직원수	인
4 도로의 면적	도로법(소화27년법률제180호) 제28조에 규정한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 함)에 기재되어져 있는 도로에서 당해 지방단체가 관리하는 것의 면적	1000평방미터
5 도로의 연장	도로대장에 기재되어져 있는 도로에서 당해 지방단체가 관리하는 것의 연장	킬로미터

일 본

측정단위의 종류	측정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단위
6 하천의 연장	하천법(소화39년법률제167호) 제1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천현황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하천에서 당해 지방단체가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의 하안에서 당해 지방단체의 구역내에서 소재하는 것의 연장	킬로미터
7 항만에 있어 계류시설의 연장	항만법(소화25년법률제218호) 제49조의2 제1항의 항만대장(이하 『항만대장』이라 함)에 기재되어 있는 계류시설의 연장에서 당해 지방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항만에 관한 것	미터
8 항만에 있어서 외곽시설의 연장	항만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외곽시설(항만법 제2조 제5항 제9호의2에 기재된 폐기물관리시설 중 폐기물매립호안을 포함)의 연장에서 당해 지방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항만에 관한 것	미터
9 어항에 관한 계류시설의 연장	어항어장정비법(소화25년도법률제137호) 제36조의2 제1항의 어항대장(이하 『어항대장』이라 함)에 기재되어 있는 계류시설의 연장에서 당해 지방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어항에 관한 것	미터
10 어항에 관한 외곽시설의 연장	어항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외곽시설의 연장에서 당해 지방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어항에 관한 것	미터
11 도시계획구역에 관한 인구	최근의 국세조사의 결과에 의해 당해 지방단체의 인구에서 도시계획법(소화43년법률제100호) 제4조 제2항의 도시계획구역에 관한 것	인
12 도시공원의 면적	도시공원법(소화31년법률제79호)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시공원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도시공원에서 당해 시읍면이 관리하는 것의 면적	1000평방미터
13 초등학교의 교직원 수	공립의무교육제학교의 학급편제 및 교직원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소화33년법률제116호)에 규정하는 학급편제의 표준 및 교직원정수의 표준에 의해 산정한 당해 도부현의 구역내 시읍면립의 초등학교의 교직원에 관한 당해 도부현의 정수	인

측정단위의 종류	측정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단위
14 초등학교의 아동 수	최근의 통계법(소화22년법률제18호) 제3조에 규정하는 지정통계조사(이하 『지정통계조사』라 함)에서 학교에 관한 것(이하 『학교기준조사』라 함)의 결과에 의해 당해 시읍면립의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령아동의 수	인
15 초등학교의 학급 수	공립의무교육재학교의 학급편제 및 교직원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학급편제의 표준에 의해 산정한 당해 시읍면립의 초등학교의 학급 수	학급
16 초등학교의 학교 수	최근의 학교기준조사의 결과에 의해 당해 시읍면립의 초등학교의 수	교
17 중학교의 교직원 수	공립의무교육재학교의 학급편제 및 교직원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학급편제의 표준 및 교직원정수에 의해 산정한 당해 도부현의 구역내 시읍면립의 중학교 및 중등교육학교의 전제과정 및 당해 도부현립의 중학교(학교교육법(소화22년법률제26호) 제51조의10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에 따른 교육과 일괄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한함) 및 중등교육학교의 전제과정의 교직원에 관한 당해 도부현의 정수	인
18 중학교의 학생 수	최근의 학교기준조사의 결과에 의해 당해 시읍면립의 중학교(중등교육학교의 전지과정을 포함. 다음 호 및 제19호에 따라서 같음)에 재학하는 학령학생의 수	인
19 중학교의 학급 수	공립의무교육재학교의 학급편성 및 교직원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학급편제의 표준에 의한 산정한 당해 시읍면립의 중학교의 학급 수	학급
20 중학교의 학교 수	최근의 학교기본조사의 결과에 의해 당해 시읍면립의 중학교의 수	교

측정단위의 종류	측정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단위
21 고등학교의 교직원 수	<p>도부현에 있어서는 공립고등학교의 적정배치 및 교직원정수의 표준등에 관한 법률(소화36년법률제188호)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당해 도부현립의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을 포함. 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음)의 교직원정수(지방자치법(소화22년법률제67호)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 함)이 외의 당해 도부현의 구역내의 시읍면립의 고등학교의 정시제 과정에 관한 교장, 정교사, 조교사 및 강사의 수를 포함), 시읍면에 있어서는 공립고등학교의 적정배치 및 교직원정수의 기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당해 시읍면립의 고등학교의 교직원정수(지정도시이외의 시읍면에 있어서는 당해시읍면립의 고등학교의 정시제의 과정에 관한 교장, 정교사, 조교사 및 강사의 수를 뺀)</p>	인
22 고등학교의 학생 수	<p>최근의 학교기본조사의 결과에 의해 당해 지방단체립의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을 포함)에 재학하는 학생의 수</p>	인
23 특별지원학교의 교직원 수	<p>공립의무교육재학교의 교직원편제 및 교직원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학급편제의 표준 및 교직원정수의 표준에 의해 산정한 당해 도부현의 구역내 공립의 특별지원학교의 초등학부 및 중등부의 교직원에 관한 당해 도부현의 정수 및 공립고등학교의 적정배치 및 교직원정수의 표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교직원정수의 표준에 의해 산정한 당해 도부현의 구역내 공립 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의 교직원에 관한 당해 도부현의 정수</p>	인

측정단위의 종류	측정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단위
24 특별지원학교의 학급 수	공립의무교육재학교의 학급편제 및 교직원정원의 표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학급편제의 표준에 의해 산정한 당해 도부현립의 특별지원학교의 소학부 및 중등부의 학급 수 및 최근의 학교기준조사의 결과에 의해 당해 도부현립의 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의 학급 수	학급
25 고등전문학교 및 대학의 학생 수	최근의 학교기본조사의 결과에 의해 당해 도부현립의 고등전문학교 및 단기대학의 학과 및 전공과 및 대학(당해 도부현이 지방독립행정법인법(평성15년법률제118호)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설립단체인 동법 제68조 제1항의 공립대학법인의 설치 대학을 포함)의 학부, 전공과 및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수	인
26 사립 학교의 유아, 아동 및 학생의 수	최근의 학교기본조사의 결과에 의해 당해 도부현의 구역내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는 유아, 아동 및 학생의 수	인
27 유치원의 유아 수	최근의 학교조사의 결과에 의해 당해 시읍면립의 유치원에 재학하는 유아 수	인
28 읍면 인구	관보에서 공시되어진 최근의 국세조사의 결과에 의해 당해 도부현의 인구 중 읍면에 관한 것	인
29 도시 인구	관보에서 공시되어진 최근의 국세조사의 결과에 의해 당해 도시의 인구	인
30 65세 이상의 인구	최근의 국세조사의 결과에 의해 당해 지방단체의 65세이상의 인구	인
31 75세 이상의 인구	최근의 국세조사의 결과에 의해 당해 지방단체의 75세 이상의 인구	인
32 농가 수	최근의 농업에 관한 지정통계조사(이하 『세계농업센서스』라 함)의 결과에 의해 당해지방단체의 농가(농지법(소화27년법률제229호) 제2조 제7항에 규정하는 농업생산법인을 포함)의 수	호

일 본

측정단위의 종류	측정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단위
33 공유 이외의 임야 면적	최근의 세계농업센서스의 결과에 의해 당해 도부현의 임야(국유임야 및 도부현 및 분수림 특별조치법(소화33년법률제57호) 제9조 제2호에 기재한 삼림정비법인(이하 『삼림정비법인』이라 함)의 소관하는 임야를 뺀)의 면적	헥타르
34 공유임야의 면적	최근의 세계농업센서스의 결과에 의한 당해도부현의 구역내 도부현 및 삼림정비법인이 관리하는 임야의 면적	헥타르
35 수산업자 수	최근의 어업에 관한 지정통계조사의 결과에 의해 당해 도부현의 수산업자 수	인
36 임업, 수산업 및 광업의 종사자 수	최근의 국세조사의 결과에 의해 당해 시읍면의 임업 및 수산업의 종사자 수	인
37 호적 수	당해 시읍면의 호적법(소화22년법률제224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해 호적부에 등재된 호적 및 동법 117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호적부에 축적되어진 호적의 수	적
38 세대수	최근의 국세조사의 결과에 의해 당해 시읍면의 세대수	세대
39 연금수급권자 수	연금법(대정12년법률제48호)를 준용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해 년도의 전년도에 의해 당해도부현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및 당해 도부현의 퇴직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 당해 년도의 전년도에 따라 당해 도부현으로부터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수	인
40 재해복구사업비의 재원에 보충하기 위해 발행에 관한 동의 및 허가를 얻은 지방채에 관한 원리상환금	(1) 국고의 부담금을 받아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경비 및 나라에서 하는 재해 복구사업에 관한 부담금에 충당하기 위해 발행에 대해서 동의 및 허가를 받은 지방채의 당해연도에 따른 원리상환금 및 국고의 부담금을 받지 않고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고나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행한 지방채의 당해연도에 따른 원리상환금((6)에 게재하는 것을 뺀).	천엔

측정단위의 종류	측정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단위
	(2) 국고의 부담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지반침하, 지반변동 또는 해안침식의 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한 경비 또는 나라가 행하는 지반침하, 지반변동 또는 해안침식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한 부담금에 충당하기 위해 행한 지방채의 당해년도에 따른 원리상환금	
	(3) 국고의 부담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재해에 수반한 긴급의 사방사업, 산사태대책사업, 치산사업 및 하천사업에 관한 경비는 나라가 행하는 재해에 수반한 긴급의 사방사업, 산사태대책사업, 치산사업 및 하천사업에 관한 부담금에 충당하기 위해 행한 지방채에서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것의 당해년도에 따른 원리상환금	
	(4) 국고의 부담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특주도 양지대재해방지 및 진흥임시조치법(소화27년 법률제96호) 제3조 제1항의 사업계획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경비 또는 나라가 하는 당해 계획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부담금에서 충당하기 위해 행한 지방채에서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것의 당해년도에 따른 원리상환금	
	(5) 국고의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임시석탄광해복구법(소화27년 법률제295호)의 규정에 근거한 광해복구사업에 관한 경비 및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광해복구사업에 대해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거나, 동법 제5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출 변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또는 동법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행한 지방채의 당해년도에 따른 원리상환금	

측정단위의 종류	측정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단위
	(6) 극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의 재정 원조등에 관한 법률(소화37년법률제150호)제24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지방채의 당해 연도에 따른 원리상환금	
41 벽지대책사업 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발행에 대한 동의 및 허가를 얻은 지방채에 관한 원리상환금	벽지에 관한 공공적시설의 종합정비를 위한 재정상의 특별조치 등에 관한 법률(소화37년 법률제88호) 제6조에 규정하는 지방채에 관한 당해연도에 따른 원리상환금	천엔
42 소화51년도 부터 평성10년 도까지의 각 년 도에 따라서 나 라의 보정예산 등에 관한 사업 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을 허가 받 은 지방채에 관 한 원리상환금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 는 사업에 관한 경비 및 나라 등이 행하는 사 업에 관한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소화51년 도부터 평성10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발행을 허가 받은 지방채에서 당해 국고의 부 담금 또는 보조금 또는 나라 등이 행하는 사 업이 당해 각 년도의 나라 보정예산에 의해 추가 되어진 세출 또는 공공사업등예비경비의 사용에 관한 것 중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관한 당해 년도에 따른 원리상환금	천엔
43 평성11년도부 터 평성14년도까 지 및 평성16년 도부터 평성18년 도까지의 각년도 에 따른 나라의 보정예산등에 관 한 사업비의 재 원에 충당하기 위한 발행에 대 한 동의 및 허가 를 얻은 지방채 의 금액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 는 사업에 관한 경비 또는 나라 등이 행하는 사업에 관한 부담금에 충당하기 위해 평성11 년도부터 평성14년도까지 및 평성16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 각년도에 있어서 발행에 대해 서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에서 당해국 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 또는 나라 등이 행 하는 사업이 당해 각 년도의 나라 보정예산에 의해 추가 되어진 세출 또는 나라의 공공사업 등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것 중 총무대신이 지 정하는 것의 금액	천엔

측정단위의 종류	측정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단위
<p>44 지방세의 감수보정을 위한 소화61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년도에 따라 특별히 발행에 대해서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금액</p>	<p>도부현에 있어서 도부현 주민세의 소득을, 법인세율 및 이자율 등에 법인이 행한 사업에 대해서 도부현에 있어서는 도부현 주민세의 소득을, 법인세율 및 이자율 등에 법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세의 감수 보정을 위해, 소화61년도부터 평성14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발행하는 것을 허가 받은 지방채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액수, 또한 평성15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발행에 대해서 동의 및 허가를 얻은 지방채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액수, 시읍면에 있어서는 시읍면 주민세의 소득 및 법인세율 등에 지방세법(소화25년법률 제226호) 제71조의26의 규정에 의해 시읍면에 대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진 이자율에 관한 교부금(이하 『이자교부금』이라 함)의 감수 보정을 위해 소화61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발행하는 것에 동의 및 허가를 얻은 지방채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p>	<p>천엔</p>
<p>45 지역재정특례 대책을 위해 소화61년도부터 평성5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대해서 특별히 발행을 허가되어진 지방채의 금액</p>	<p>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당면 구상해야 할 조치의 일환으로서 나라의 보조금 등의 감축, 그 외의 임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소화56년 법률제93호)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나라의 특례부담액 또는 특례보조금의 감액 또는 지방채의 이자보금액의 감액, 그 외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당면 구상해야 할 조치의 일환으로서 되어진 초지개량법(소화24년 법률제195호)의 규정등에 근거로 특정 지역에 관한 나라의 부담액 또는 보조액의 감액에 수반하고, 이쪽의 감액에 의해서 지방부담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소화61년도부터 평성5년도까지의 각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발행을 허가 받은 지방채의 액</p>	<p>천엔</p>

측정단위의 종류	측정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단위
<p>46 임시개정특례대책을 위한 소화62년도(시읍면에 있어서는 소화63년도)부터 평성12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허가 받은 지방채의 액</p>	<p>나라의 보조금 등의 정리 및 합리화 및 임시특례등에 관한 법률(소화60년법률제37호)(평성2년법률제22호), 나라의 보조금 등의 임시특례등에 관한 법률(소화61년법률제45호)(평성3년법률제15호)등의 규정에 의해 개정후 법률의 규정등에 근거해 소화60년부터 평성4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나라의 부담 또는 보조의 비율의 감소 조치에 수반해서, 도로, 하천, 항만 그 외의 토목시설 등의 공공시설 또는 공용시설의 건설사업 등에 관한 나라의 부담액 또는 보조금의 감액에 의해 지방부담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소화62년도(시읍면에 있어서는, 소화63년)부터 평성12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발행을 허가 받은 지방채의 액</p>	<p>천엔</p>
<p>47 평성6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년도의 재원대책을 위해 당해 각년도에 있어서 발행에 대해서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p>	<p>일반공공사업, 공항정비사업, 공원녹지정비사업, 의무교육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사업등에 관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평성6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발행에 대해서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중에 당해 각 년도의 재원대책을 위해 발행에 대해서 동의 및 허가를 얻은 지방채로서 총무대신이 지정한 것의 액</p>	<p>천엔</p>
<p>48 개인의 도부현 주민세 또는 시읍면 주민세에 관한 특별감세 등에 의해 평성6년도부터 평성8년도까지 및 평성10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년도의 감수를 보정하기 위해 당해 각년도 있어</p>	<p>(1) 지방세법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평성6년법률제111호. 이하 『지방세법등개정법』이라함)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전의 지방세법부칙 제3조의4 규정에 의해 개인의 도부현 주민세 또는 시읍면 주민세에 관한 특별감세에 의해 평성6년도부터 평성8년도까지의 각년도의 감수액,  (2) 조세특별조치법(소화32년법률제26호) 제86조의4 제1항에 규정한 보통승용자동차의 양도등에 관한 소비세의 세율특례적용기간의 종료에 의해 평성6년도에 있어서 소비세의 수입 감소에 수반해 도부현 또는 시읍면에 대해서 양여되어진 소비양여세액의 감소에 의해 동년도까지 평성8년도까지의 각년도의 감수액</p>	<p>천엔</p>

측정단위의 종류	측정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단위
서 특별히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진 지방채의 액	(3) 지방세법등개정법의 시행에 의해 개인의 도부현 주민세 또는 시읍면 주민세의 평성6년도에서 평성8년도까지의 각년도의 감수액	
	(4) 지방세법 및 국유자산등소재시읍면교부금법의 일부를 개정 한 법률(평성9년법률제9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지방세법부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인의 도부현 주민세 또는 시읍면 주민세에 대한 특별감세에 의한 평성8년도의 감수액	
	(5) 지방세법의 일부를 개정 한 법률(평성11년 법률 제15호)에 의한 개정전의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인의 도부현 주민세 또는 시읍면 주민세에 관계된 특별 감세에 의한 평성10년도 및 평성11년도의 수입 감소액	
	(6) 지방세법의 일부를 개정 한 법률(평성11년 법률 제15호)에 의한 개정전의 지방세법 부칙 제11조의4 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취득세의 감액에 관계된 평성10년도의 수입 감소액	
	(7) 지방교부세법의 일부를 개정 한 법률(평성 18년법률제8호) 제8조에 의한 개정전의 지방 특례교부금 등의 지방재정의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평성11년법률제17호)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평성11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년도에 있어서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진 지방채의 액	
	(8) 지방재정법(소화23년법률제109호) 제3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평성15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년도에 있어서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측정단위의 종류	측정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단위
<p>49 임시세수입 보전을 위해 평성9년에 있어서 특별히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진 지방채의 액</p>	<p>도부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도부현의 평성9년도의 지방소비세의 수입전망액 및 소비양여세상당액(지방세법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평성6년 법률제111호) 부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년도에 양여된 폐지 전의 소비양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이하 이 호에 있어서 동일)의 수입전망액의 합산액으로부터 지방소비세교부금(지방세법 제72조의115의 규정에 의해 시읍면에 대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된 지방소비세에 관한 교부금을 말함. 이하 이 호에 있어 동일)의 교부전망액을 공제한 금액이 해당도 부현의 평성10년도 이후의 각 연도의 지방 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지방 소비세교부금의 교부전망액을 공제한 액에 비해 과소가 인정된 금액으로서 산정한 금액, 시읍면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해당 시읍면의 평성9년도의 지방소비세교부금의 수입전망액 및 소비양여세 상당액의 수입전망액의 합산액이 해당 시읍면의 평성10년도 이후의 각 연도의 지방 소비세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에 비해서 과소라고 인정된 금액으로 산정되어진 액</p>	<p>천엔</p>
<p>50 임시재정대책을 위해 평성13년도부터 평성16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 특별하게 행하는 것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p>	<p>(1) 지방교부세법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평성15년법률제10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방재정법 제33조의5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성13년도 및 평성14년도에 의해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진 지방채의 액                  (2) 지방교부세법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평성16년법률제18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방재정법 제33조의5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평성15년도에 있어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진 지방채의 액                  (3) 지방교부세법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평성19년법률제24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 전의 지방재정법 제33조의 5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성16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진 지방채의 액</p>	<p>천엔</p>

측정단위의 종류	측정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단위
----------	-----------------	------

④제1항의 측정 단위마다의 단위비용은, 별표제1에 정한대로 한다.

⑤제2항의 측정단위마다의 단위비용은, 별표제2에 정한대로 한다.

⑥지방 행정에 관계된 제도의 개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의해 전 제2항의 단위 비용을 변경한 필요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폐회중인 때에 한해, 정령으로 전 제2항의 단위 비용에 관한 특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이 법률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화27년법106,소화27년법166,소화27년법262,소화28년법209,소화29년법101,소화30년법123,소화31년법100,소화32년법130,소화33년법117,소화34년법97,소화34년법201,소화35년법67,소화35년법113,소화35년법115,소화36년법121,소화37년법59,소화37년법88소화38년법49,소화38년법96,소화39년법74,소화39년법168,소화40년법39,소화41년법60,소화42년법45,소화43년법4,소화43년법31,소화43년법101,소화44년법39,소화46년법24,소화48년법34,소화49년법46,소화51년법20,소화53년법38,소화53년법38,소화53년법87,소화54년법35,소화55년법46,소화56년법58,소화57년법45,소화58년법37,소화60년법44,소화61년법48,소화62년법95,소화63년법48,,평성원년법30,,평성2년법37,평성3년법49,평성4년법71,평성5년법56,평성6년법16,평성7년법41,평성8년법13,평성9년법10,평성10년법17,평성11년법16,평성11년법87,평성11년법160,평성12년법5,평성13년법9,평성13년법22,평성13년법92,평성14년법18,평성15년법10,평성16년법18,평성17년법12,평성18년법8,평성19년법21,평성19년법24, 일부개정》

### 【측정단위의 수치 수정】

**제13조** ①면적, 고등 학교의 학생 수, 그 밖의 측정 단위로, 그 안에 종류별이 있고, 또한, 그 종류별마다 단위당의 비용에 차이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그 종류별마다의 단위당의 비용의 차이에 따라 해당 측정단위의 수치를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전항의 측정 단위의 수치의 수정(이하 『종별수정』이라고 함)은, 해당 측정단위의 종류별마다의 수치에, 그 단위당의 비용 비율을 기초로해서 총무 성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③전조 제3항 및 전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측정 단위의 수치는, 지방단체마다에, 해당 측정 단위에 대한 다음 각호에 언급되어진 사항을 기초로서 제4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고 산정한 보정계수를 곱하고 보정한 것으로 한다.

1. 인구, 그 밖에 측정단위 수치의 다소에 의한 단계
2. 인구밀도, 도로 1킬로미터당 자동차 대수,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
3. 지방단체의 용태
4. 한랭도 및 적설도

④전항의 측정단위의 수치에 관계된 보정계수는, 경비의 종류마다, 또한 측정단위마다 각각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을 기초로서, 총무 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산정한 비율로 한다.

1. 전항 제1호의 보정(이하 『단계보정』이라고 함)은, 해당 행정에 필요한 경비액이 측정 단위의 수치의 증감에 따라 체감 또는 체증한 것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하고, 당해 단계보정에 관한 계수는, 초과누퇴 또는 초과누진의 방법에 의해 총무 성령에서 정한 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한 수치를, 해당율을 이용하지 않고 산정한 수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 행정권능 등의 차이가 있는 것에 의해 경비액이 고가 또는 저가로 되기 위해 제3호의1 수정이 적용된 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경비의 측정단위수치에 당해 고가로 되고 또는 저가로 되는 정도에 따른 총무 성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수치를 이용해서 당해 단계수정에 관한 계수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2. 전항 제2호의 수정(이하 「밀도수정」이라고 함)은, 해당 행정에 필요로 하는 경비액이 인구 밀도, 도로1킬로미터당의 자동차 대수,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이하 이 호에서 「인구밀도등」이라고 함)의 증감에 따라, 체감 또는 체증한 것에 관하여 행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밀도수정에 관계된 계수는, 초과 누퇴 또는 초과 누진의 방법에 따라 총무성령으로 정한 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한 인구 밀도 등을 해당율을 이용하지 않고서 산정한 인구 밀도 등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전항 제3호의 수정(이하 「태용(용태)수정」이라고 함)은 해당 행정에 필요한 경비의 측정단위당의 금액이, 지방단체의 태용에 따라서 각각 고가로 되거나 저가로 된 것에 대해서 행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태용 수정에 관계된 계수는, 다음에 기재된 점에 의해 산정한다.
  - (1) 도부현의 태용에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당해 도부현 구역내의 시읍면에 관해서 행정의 질 및 양의 차 또는 행정 기능 등의 차이에 근거해서, 고가로 되거나 저가로 되는 정도를 기초로서 시읍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종류에 따르고, 총무성령으로 정한 비율을 해당 구역내의 시읍면의 종류마다의 측정단위의 수치(해당 시읍면의 종류마다의 측정단위의 수치에 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적당치 않다 라고 인정되어진 경비에서 총무성령으로 정한 것에 관해서는, 인구 그 밖에 총무성령으로 정한 수치)를 곱하여 얻은 수치를 합산한 수치를 해당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시읍면마다의 수치를 합산한 수치로 나누어 산정한다.
  - (2) 시읍면의 태용에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행정의 질 및 양의 차 또는 행정 기능 등의 차이에 근거하고, 그 고가로 되거나 또는 저가이로 된 정도를 기초로서 시읍면의 종류에 따라서

총무 성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치를 해당율을 곱하지 않고서 산정한 수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초등학교비, 중학교비, 사회복지비, 노동비 그 밖의 경비에서 총무성령으로 정한 것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인구의 연령별구성, 공공시설의 정비 상황 그 밖에 지방단체의 태용에 따라서 해당 경비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관하여, 총무성령으로 정한 지표에 의하여 측정한 총무성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치를 해당율을 곱하지 않고 산정한 수치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전항 제4호의 수정(이하 『한랭수정』이라고 함)은, 해당 행정에 필요한 경비의 측정단위당의 금액이 한랭 또는 적설의 정도에 의하고 고가로 되거나 저가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행하진 것으로 하고, 해당 한랭수정에 관계된 계수는, 그 고가로 되는 급여의 차이, 한랭의 차 또는 적설의 차마다에 지역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고가로 되는 정도를 기초로 해서 총무성령으로 정한 비율을 해당 지역에 있어서 측정 단위의 수치(해당 지역에 있어서 측정 단위의 수치에 의한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또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진 경비로서 총무성령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인구)를 곱하여 얻은 수를 해당율을 이용하지 않고서 산정한 수치로 나누어서 얻은 수치의 합계수에 1을 가하고 산정한다.

⑤ 전조 제1항의 측정 단위의 수치에 관해서는, 제10항에 정한 것 외, 지방단체의 종류마다 다음 표의 경비의 종류의 난에 게재하는 경비에 관한 측정 단위의 난에 게재하는 측정 단위에 관하여, 각각 수정의 종류의 난에 언급한 수정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수정의 종류
도부현	1 경찰비	경찰직원수	단계수정, 용태수정 및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수정의 종류
			한랭수정
	2 토목비		
	(1) 도로 교량비	도로의 면적	밀도수정, 용태수정 및 한랭수정
		도로의 연장	용태수정 및 한랭수정
	(2) 하천비	하천의 연장	종류수정 및 용태수정
	(3) 항만비	항만에 있어서 계류시설의 연장	종별수정
		항만에 있어서 외곽시설의 연장	용태수정
		어항에 있어서 외곽시설의 연장	용태수정
	(4) 그 외의 토목비	인구	단계수정 및 밀도수정
	3 교육비		
	(1) 초등학교비	교직원수	용태수정 및 한냉수정
	(2) 중학교비	교직원수	용태수정 및 한냉수정
	(3) 고등학교비	교직원수	용태수정 및 한냉수정
		학생수	용태수정
	(4) 특수지원학교비	교직원수	용태수정 및 한냉수정
		학생수	밀도수정
	(5) 그 외의 교육비	인구	단계수정
		고등전문학교 및 대학의 학생수	종별수정
		사립학교의 유아, 아동 및 학생 수	종별수정

일 본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수정의 종류
	4 후생노동비		
	(1) 생활보호비	읍면부인구	밀도보정 및 한냉보정
	(2) 사회복지비	인구	단계보정, 밀도보정 및 용태보정
	(3) 위생비	인구	단계보정, 밀도 보정 및 용태보정
	(4) 고령자보건복지비	65세이상인구	단계보정, 밀도보정 및 용태보정
	(5) 노동비	인구	단계보정
	5 산업경제비		
	(1) 농업행정비	농가수	단계보정, 밀도보정 및 용태보정
	(2) 임야행정비	공유이상의 임야 면적	단계보정 및 용태보정
	(3) 수산행정비	수산업자수	단계보정
	(4) 상공행정비	인구	단계보정 및 용태보정
	6 총무비		
	(1) 징세비	세대수	단계보정 및 용태보정
	(2) 지역진흥비	인구	단계보정, 밀도보정,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7 재해복구비	재해복구사업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발행에 대해서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체에 관한 원리상환금	중별보정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수정의 종류
		소화51년도부터 평성10년도까지 의 각년도에 대 해서 나라의 보 정예산등에 관한 사업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발행이 허가되어 진 지방채에 관 한 원리상환금	종별보정
	8 보정예산채상환비	평성11년도부터 평성14년도까지 및 평성16년도부 터 평성18년도까 지의 각년도에 있 어서 나라의 보 정예산등에 관한 사업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발 행에 대해서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금액	종별보정
	9 지방세감수보정채 상환비	지방세의 감수보 정을 위해 소화 61년도부터 평성 18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특 별히 발행에 대 해서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 방채의 금액	종별보정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수정의 종류
	10 지역재정특례대책채상환비	지역재정특례대책을 위해 소화 61년도부터 평성 5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발행을 허가 되어진 지방채의 금액	종별보정
	11 임시재정특례채상환비	임시재정특례대책을 위해 소화 62년도부터 평성 12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발행을 허가되어진 지방채의 금액	종별보정
	12 재원대책채상환비	평성 6년도부터 평성 18년도까지의 각년도의 재원대책을 위해 당해 각년도에 있어서 발행에 대해서 동의 및 허가를 받은 지방채의 금액	종별보정
	13 감세보정채상환비	개인의 도부현주민세에 관한 특별감세등에 의한 평성 6년도부터 평성 8년도까지 및 평성 10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각년도의 감수를	종별보정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수정의 종류
		보정하기 위해 당해 각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채의 금액	
	14 임시세수보정채상환비	임시세수보정을 위해 평성9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채의 금액	종별보정
	15 임시재정대책채상환금	임시재정대책을 위해 평성13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채의 액	종별보정
시읍면	1 소방비	인구	단계보정, 밀도보정 및 용태보정
	2 토목비		
	(1) 도로교량비	도로의 면적	종별보정,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도로의 연장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2) 항만비	항만에 있어서 계류시설의 연장	종별보정,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항만에 있어서 외	용태보정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수정의 종류
		곽시설의 연장	
		어항에 있어서 계류시설의 연장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어항에 있어서 외곽시설의 연장	용태보정
	(3) 도시계획비	도시계획구역에 있어서 인구	용태보정
	(4) 공원비	인구	용태보정
	(5) 하수도비	인구	밀도보정 및 용태보정
	(6) 그 외의 토목비	인구	단계보정, 밀도보정 및 용태보정
	3 교육비		
	(1) 초등학교비	아동비	밀도보정,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학급수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학교수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2) 중등학교	학생수	밀도보정,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학급수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학교수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3) 고등학교비	교직원수	종별보정,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학생수	종별보정,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4) 그 외의 교육비	인구	단계보정, 밀도보정 및 용태보정
		유치원의 유아수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4 후생비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수정의 종류
	(1) 생활보호비	도시인구	단계보정, 밀도보정,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2) 사회복지비	인구	단계보정, 밀도보정 및 용태보정
	(3) 보건위생비	인구	단계보정, 밀도보정 및 용태보정
	(4) 고령자보건복지비	65세이상인구	단계보정, 밀도보정 및 용태보정
	(5) 청소비	인구	밀도보정 및 용태보정
	5 산업경제비		
	(1) 농업행정비	농가수	단계보정, 밀도보정,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2) 임야수산행정비	임업 및 수산업의 종사자수	밀도보정,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3) 상공행정비	인구	단계보정 및 용태보정
	6 총무비		
	(1) 징세비	세대수	단계보정, 밀도보정,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2) 호적주민기본대장비	호적수	단계보정, 밀도보정,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세대수	단계보정, 밀도보정,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3) 지역진흥비	인구	단계보정, 밀도보정,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면적	종별보정, 용태보정 및 한냉보정
	7 재해복구비	재해복구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	종별보정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수정의 종류
		행에 대해서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에 관한 원리상환금	
	8 보정예산채상환비	소화51년도부터 평성10년도까지의 각년도에 있어서 나라의 보정예산등에 관한 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이 허가되어진 지방채에 관한 원리상환금	종별보정
		평성11년부터 평성14년도까지 및 평성16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년도에 있어서 나라의 보정예산등에 관한 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에 대해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	종별보정
	9 지방세감수보정채상환금	지방세의 감수보정을 위해 소화61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년도에 있어서	종별보정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수정의 종류
		특별히 발행에 대해서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금액	
	10 지역재정특례대책상환비	지역재정특례대책을 위해 소화 61년도부터 평성 6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발행을 허가 되어진 지방채의 금액	종별보정
	11 임시재정특례채상환비	임시재정특례대책을 위해 소화 63년도부터 평성 12년도까지의 각 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발행을 허가 받거나 지방채의 금액	종별보정
	12 재원대책채상환비	평성 6년도부터 평성 18년도까지의 각 년도의 재원대책을 위해 당해 각 년도에 있어서 발행에 대해서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금액	종별보정
	13 감세보정채상환비	개인의 시읍면 주민세에 관해 특별감세 등에 의한 평성 6년도부터 평성 8년도까	종별보정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수정의 종류
		지 및 평성10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년도의 감수를 보정하기 위해 당해 각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진 지방채의 금액	
	14 임시세수보정채상환비	임시세수보정을 위해 평성9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진 지방채의 금액	종별보정
	15 임시재정대책채상환비	임시재정대책을 위해 평성13년도부터 평성18년도까지의 각년도에 있어서 특별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진 지방채의 액	종별보정

⑥전조 제2항의 측정단위의 수치에 대해서는 도부현 또는 시읍면마다에 인구에 있어서는 단계보정을, 면적에 있어서는 종별보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⑦단계수정, 밀도수정, 태용수정 및 한랭수정 중 둘 이상을 합쳐서 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측정 단위의 수치에 관계된 수정계수는, 둘 이상의 사유를 통하여1의 비율을 정하고, 또는각 사유마다 산정한

비율(둘 이상의 사유를 통하여 정한 비율을 이용해서 산정한 비율을 포함)을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연승 또는 가산하고 얻은 비율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⑧태용수정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4항 제3호의 시읍면은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인구집중지구의 인구, 경제구조 그 밖에 행정의 질 및 양의 차이를 표현하는 지표마다에 산정한 점수에 근거하여 구분하고, 또는 그에 가지는 행정권능 등의 차이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한다.

⑨한랭수정을 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4항 제4호의 지역은,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고, 급여의 차이, 한랭의 차 및 적설의 차금액, 시읍면의 구역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한다.

⑩인구, 학교 수 그 밖의 측정 단위의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는 감소한 지방단체, 폐치분합 또는 경계 변경이 있던 지방단체 및 조합(지방자치법 제2844조 제1항의 일부 사무 조합, 광역 연합 또는 사무소 사무 조합을 말함)을 조직하고 있는 지방단체에 관한 보정 계수의 산정방법 및 측정 단위의 수치의 보정후의 수치의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총무 성령으로 전 각항의 규정의 특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⑪재해복구비에 관한 측정 단위의 수치에 관해서는, 총무 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고, 해당 수치의 해당 지방단체의 세수 입액에 대한 비율에 따르고,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⑫전 각항에 정한 것 외, 보정 계수의 산정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총무 성령으로 정한다.

《소화27년법166,소화29년법101,소화30년법123,소화31년법100,소화32년법130,소화33년법117,소화34년법97,소화34년법201,소화35년법201,소화35년법113,소화36년법121,소화37년법59,소화38년법49,소화39년법74,소화42년법45,소화43년법31,소화44년법39,소화45년법51,소화46년

법24,소화48년법34,소화49년법46,소화51년법20,소화52년법39,소화53년법38,소화54년법35,소화55년법46,소화56년법58,소화57년법45,소화58년법36,소화59년법37,소화60년법44,소화61년법48,소화62년법95,소화63년법48,평성원년법30,평성2년법37,평성3년법49,평성4년법71,평성5년법56,평성6년법16,평성6년법49,평성7년법41,평성7년법41,평성8년법13,평성9년법10,평성10년법17,평성11년법16,평성11년법87,평성11년법160,평성12년법5,평성13년법9,평성14년법18,평성15년법10,평성16년법18,평성17년법12,평성18년법8,평성19년법24,일부개정》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

**제14조** ①기준재정수입액은, 도부현에 있어서 기준세율로써 산정한 해당 도부현의 보통세(법정외보통세를 제외)및 자동차 취득세 및 경유거래세의 수입전망액(이자할의 수입전망액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 도부현의 이자할의 수입전망액으로부터 이자할 교부금의 교부 전망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배당할의 수입 전망액에 대해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 도부현의 배당할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지방세법 제71조의47의 규정에 의하고 시읍면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진 배당할에 관계된 교부금(이하 「배당할교부금」이라고 함)의 교부 전망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주식 등 양도소득할의 수입 전망액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을 가지고 산정한 해당 도부현의 주식 등 양도소득할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동법 제71조의67의 규정에 의해 시읍면에 대해 교부 하는 것으로 되어진 주식등양도소득할에 관한 교부금(이하 「주식등양도소득할교부금」이라고 함)의 교부 전망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지방 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을 가지고 산정한 해당 도부현의 지방 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으

로부터 동법 제72조의115의 규정에 의해 시읍면에 대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진 지방 소비세에 관한 교부금(이하 「지방 소비세 교부금」이라고 함)의 교부 전망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골프장 이용세의 수입 전망액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을 가지고 산정한 해당 도부현의 골프장 이용세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 소재의 시읍면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진 골프장 이용세에 관계된 교부금(이하 「골프장 이용세 교부금」이라고 함)의 교부 전망액의 백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자동차 취득세의 수입 전망액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을 가지고 산정한 해당 도부현의 자동차 취득세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동법 제699조의32의 규정에 의해 시읍면에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진 자동차 취득세에 관한 교부금(이하 「자동차 취득세 교부금」이라고 함)의 교부전망액의 백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도로법 제7조 제3항의 도시(이하 「지정시」라고 함)를 포괄하는 도부현의 경유거래세 인수세의 수입 전망액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을 가지고 산정한 해당 도부현의 경유거래 인수세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지방세법 제700조의49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시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진 경유거래세에 관한 교부금(이하 「경유거래세 교부금」이라고 함)의 교부 전망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도부현의 지방세법 제485조의13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진 시읍면 담배소비세에 관계된 교부금(이하 「시읍면 담배소비세 도도부현 교부금」이라고 함)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금액, 해당 도부현의 지방도로양여세, 석유가스양여세 및 항공기 연료양여세의 수입 전망액 및 기준율로써 산정한 해당 도부현의 국유 자산 등 소재 시읍면의 교부금 및 납부금에

관한 법률(소화31년 법률 제82호) 제18조 제1항의 국유 자산 등 소재 도도부현 교부금(이하 「도도 부현 교부금」이라고 함) 및 동조 제2항의 일본 우정공사소유자산 소재 도도부현 납부금(이하 「도도부현 납부금」이라고 함)의 수입 전망액의 합산액, 시읍면에 있어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 시읍면의 보통세(법정의 보통세를 제외한다) 및 사업소세의 수입 전망액(시읍면 담배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 시읍면의 시읍면 담배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시읍면 담배소비세 도도부현 교부금의 교부 전망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시읍면의 이자할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금액, 해당 시읍면의 배당할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금액, 해당 시읍면의 주식등 양도소득할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금액, 해당 시읍면의 지방 소비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금액, 해당 시읍면의 골프장 이용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금액, 해당 시읍면의 자동차 취득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금액, 해당 시읍면의 특별토양여세, 지방도로양여세, 자동차 중량 양여세 및 항공기 연료 양여세의 수입 전망액 및 기준율로써 산정한 국유 자산 등 소재 시읍면 교부금 및 납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국유 자산등 소재 시읍면 교부금(이하 「시읍면 교부금」이라고 함) 및 동조 제2항의 일본 우정 공사용 자산 소재 시읍면 납부금(이하 「시읍면 납부금」이라고 함)의 수입 전망액의 합산액(지정시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 지정시의 보통세(법정의 보통세를 제외함) 및 사업소세의 수입 전망액(시읍면 담배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 지정시의 시읍면 담배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시읍면 담배소비세 도도부현 교부금의 교부 전망액의 100

분의 75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지정시의 이차할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금액, 해당 지정시의 배당할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금액, 해당 지정시의 주식등 양도소득할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금액, 해당 지정시의 지방 소비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금액, 해당 지정시의 골프장 이용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금액, 해당 지정시의 자동차 취득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금액, 해당 지정시의 경유인수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금액, 해당 지정시의 특별톤 양여세, 지방도로 양여세, 석유 가스 양여세, 자동차 중량 양여세 및 항공기 연료 양여세의 수입 전망액 및 기준율로써 산정한 해당 지정시의 시읍면 교부금 및 시읍면 납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기준 과세율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 말한 표준과세율(표준 과세율의 정함이 없는 지방세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에 정한 과세율로 한다)의 도부현이 지방이나 기업에게 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비율(동법 제72조의24의4에 규정한 과세표준에 의하고 부과한 영업세에 관해서는 해당 도부현이 동법 제72조의24의7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과세율을 기초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한 비율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비율로 한다), 시읍면세에 있어서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비율로 하고, 전항의 기준율은, 도도부현 교부금 및 도도부현 납부금에 있어서는 국유 자산 등 소재 시읍면 교부금 및 납부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비율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비율, 시읍면 교부금 및 시읍면 납부금에 있어서는 동항에 규정한 비율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비율로 한다.

③제1항의 기준재정 수입액은, 다음 표의 상단에 언급한 지방단체에 관하여, 각각 동표의 중단에 언급한 수입의 항목마다, 해당 하난

에 언급한 산정의 기초에 의해, 총무 성령으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지방단체의 종류	수입의 항목	기준세액등의 산정의 기초
도부현	1 도부현 주민세	
	(1) 균등할	전년도분의 균등할의 과세의 기초로 된 납세의무자수
	(2) 소득할	전년도분의 소득할의 과세의 기초가 된 납세의무자등의 수 및 과세표준 등의 금액
	(3) 법인세할	해당 도부현의 구역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갖는 법인에 관계된 전년도분의 법인세할의 과세표준 등의 금액
	(4) 이자할	전년도의 이자할의 과세표준 등의 금액
	(5) 배당할	전년도의 배당할의 과세표준 등의 금액
	(6) 주식등양도소득할	전년도의 주식 등 양도소득할의 과세표준 등의 금액
	2 사업세	
	(1) 개인이 행한 사업에 대한 영업세	전년도분의 개인의 영업세의 과세의 기초가 된 과세표준의 수치 및 납세의무자 수
	(2) 법인이 행한 사업에 대한 영업세	해당 도부현의 구역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갖는 법인에 관계된 전년도분의 영업세의 과세표준 등의 수치
	3 지방소비세	
	(1) 양도할	전년도의 양도할의 과세표준 등의 금액
	(2) 화물할	전년도의 화물할의 과세표준 등의 금액
	4 부동산취득세	전년도 및 이전 연도에 있어서 부동산취득세의 과세표준 등의 금액
	5 도부현 담배소비세	전년도의 도부현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수량
	6 골프장 이용세	해당 도부현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이

지방단체의 종류	수입의 항목	기준세액등의 산정의 기초
		용인원
	7 자동차세	해당 도부현의 구역내에 고정 유치장을 갖는 자동차의 대수
	8 광구세	광업법(소화25년법률제289호) 제59조에 규정한 광업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광구의 면적(지방세법부칙 제13조에 규정한 광구에 있어서는, 해당 광구에 관계된 강바닥의 연장) 및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의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한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소화53년법률제81호) 제32조에 규정한 특정 광업 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개발 광구의 면적
	9 고정자산세	해당 도부현의 구역내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349조의4에 규정한 대규모의 상환자산 또는 동법 제349조의5에 규정한 신설대규모 상환 자산으로 동법 제740조의 규정에 의하고 해당 도부현이 고정자산세를 과할 수 있는 것에 관한 해당 연도의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부터 동법 제349조의4 또는 제349조의5의 규정에 의하고 시읍면이 과할 수 있는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금액
	10 자동차 취득세	전년도 중에 있어서 해당 도부현의 구역내에 고정유치장을 갖고 있는 자동차의 취득 건수
	11 경유 인수세	전년도의 경유인수세에 관계된 과세표준인 수량
	12 시읍면 담배소비세	도도부현 교부금 해당 도도부현이 포괄한 시읍면의 전년도의 시읍면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수량 등
	13 지방도로 양여세	전년도의 지방도로 양여세의 양여액

지방단체의 종류	수입의 항목	기준세액등의 산정의 기초
	14 석유 가스 양여세	전년도의 석유 가스 양여세의 양여액
	15 항공기 연료 양여세	전년도의 항공기 연료 양여세의 양여액
	16 도도 부현 교부금 및 도도 부현 납부금	해당 도부현의 구역내에 있어서 국유 자산 등 소재 시읍면 교부금 및 납부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한 대규모의 상환자산 또는 동법 제6조에 규정한 신설 대규모 상환자산으로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해당 도부현에 도도부현 교부금이 교부 되어야 하는 것에 관한 해당 연도의 교부금 산정 표준액의 합계액으로부터 동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시읍면에 교부 되어야 할 해당 대규모의 상환 자산 또는 신설 대규모 상환 자산에 관계된 교부금 산정 표준액을 공제한 금액 및 동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해당 도부현에 도도부현 납부금이 납부되어야 하는 것에 관한 해당 연도의 납부금 산정 표준액의 합계액으로부터 동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시읍면에 납부된 것이 당연 해당 대규모의 상환 자산에 관계된 납부금 산정 표준액을 공제한 금액
시읍면	1 시읍면 주민세	
	(1) 균등할	전년도분의 균등할의 과세의 기초가 된 납세의무자 수
	(2) 소득할	전년도분의 소득할의 과세의 기초가 된 납세의무자등의 수 및 과세표준 등의 금액
	(3) 법인세할	해당 시읍면의 구역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갖는 법인에 관계된 전년도분의 법인세할의 과세표준 등의 금액
	2 고정자산세	

지방단체의 종류	수입의 항목	기준세액등의 산정의 기초
	(1) 토지	해당 시읍면에 있어서 토지의 지목마다의 일 평방 미터당의 평균 가격 및 그 지적
	(2) 가옥	해당 시읍면에 있어서 가옥의 일 평방 미터 정답의 평균 가격 및 바닥 면적
	(3) 상환자산	(1) 지방세법 제389조의 규정에 의하고 총무 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가격을 결정하고, 결정된 가격을 배분한 것의 해당 배분액 (2) 그 밖의 상환 자산 해당 시읍면이 과할 수 있는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 금액
	3 경자동차세	해당 시읍면의 구역 내에 고정유치장을 갖는 경자동차의 종류별의 대수
	4 시읍면 담배소비세	전년도의 시읍면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수량
	5 광산물세	광물의 생산량 및 산의 원가격
	6 특별토지보유세	전년도에 있어서 특별토지보유세의 과세표준액
	7 사업소세	전년도에 있어서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액(해당 연도에 있어 새롭게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된 시에 있어서는, 해당 연도에 있어서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 종업원 급여 총액)
	8 이자할 교부금	전년도의 이자할 교부금의 교부액
	9 배당할 교부금	전년도의 배당할 교부금의 교부액
	10 주식등 양도소득할 교부금	전년도의 주식등 양도소득할 교부금의 교부액
	11 지방 소비세 교부금	전년도의 지방 소비세 교부금의 교부액
	12 골프장 이용세 교부금	해당 시읍면에 소재 지나는 골프장의 이용인수
	13 자동차 취득세 교부금	전년도의 자동차 취득세 교부금의 교부액

일 본

지방단체의 종류	수입의 항목	기준세액등의 산정의 기초
	부금	부액
	14 경유 인수세 교부금	전년도의 경유 인수세 교부금의 교부액
	15 특별톤 양여세	전년도의 특별과 것 양여세의 양여액
	16 지방도로 양여세	전년도의 지방도로 양여세의 양여액
	17 석유 가스 양여세	전년도의 석유 가스 양여세의 양여액
	18 자동차 중량 양여세	전년도의 자동차 중량 양여세의 양여액
	19 항공기 연료 양여세	전년도의 항공기 연료 양여세의 양여액
	20 시읍면 교부금 및 시읍면 납부금	(1) 국유 자산등 소재 시읍면 교부금 및 납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호에 언급한 고정자산에 관계된 것 국유 자산 등 소재 시읍면 교부금 및 납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제10조 또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각 성, 각 청의 장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해당 고정자산의 소재지의 시읍면장에 통지한 고정자산의 가격 (2) 국유 자산등 소재 시읍면 교부금 및 납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일본 우정 공사가 소유한 고정자산에 관계된 것 국유 자산 등 소재 시읍면 교부금 및 납부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고 총무 대신이 배분하고 통지한 해당 고정자산의 가격

《소화26법133일부개정, 구법제15조조상, 소화28년법209, 소화30년법123, 소화31년법100, 소화32년법103, 소화32년법130, 소화33년법117, 소화35년법67, 소화35년법113, 소화36년법74, 소화37년법51, 소화37년법59, 소화38년법23, 소호38년80, 소화39년법29, 소화39년법74, 소화40년법35, 소화40년법39, 소화40년법157, 소화41년법40, 소화41년법60, 소화42년법45,

소화43년법4,소화44년법16,소화44년법39,소화45년법51,소화46년법24,소화46년법90,소화47년법13,소화48년법23,소화49년법19,소화50년법18,소화51년법39,소화52년법39,소화53년법38,소화63년법111,평성3년법7,평성5년법56,평성6년법111,평성9년법9,평성11년법160,평성13년법9,평성14년법98,평성15년법9,평성15년법10,평성16년법17,일부개정》

**【지방세의 과세 면제 등에 수반한 기준재정 수입액의 산정방법의 특례】**

**제14조의2**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시읍면이 다음 각 호에 언급한 토지 또는 가옥에 대해 고정자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해당 고정자산세에 관계된 불균일한 과세를 한 경우에 있어, 그 조치가 정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시읍면의 각 연도에 있어서 기준 재정 수입액은 동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시읍면의 해당 각 연도의 수입 감소액 중 총무 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고, 산정한 금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시읍면의 해당 각 연도(그 조치가 총무 성령으로 정한날 이후에 있어 행하여진 때는, 해당 수입 감소액에 관하여 해당 각 연도의 다음년도)에 있어서 기준 재정 수입액이 되어야하는 금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문화재보호법(소화25년법률제214호)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지정을 받았던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지정을 받았던 특별 사적, 특별 명승 또는 특별 천연기념물인 토지
2. 유서깊은 도시에 있어서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소화41년법률제1호)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았던 특별보존지구(동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해 특별보존지구로서 동법의 규정이 적용된 지구를 포함)의 구역 내에 있어서의 가옥 또는 토지

《소화41년법60,추가,소화49년법19,소화55년법60,평성11년법160,평성16년법61,일부개정》

**【특별 교부세의 금액의 산정】**

**제15조** ①특별 교부세는 제11조에 규정한 기준 재정 수요액의 산정방법에 의하고, 보충되어지지 않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것, 제14조의 규정에 의하고 산정된 기준 재정 수입액 속에 현저히 과대하게 산정된 재정 수입이 있을 것, 교부세의 금액의 산정 기일 후에 생긴 재해(그 복구에 필요로 한 비용이 나라의 부담에 의한 것은 제외함)등 때문에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고, 또는 재정 수입의 감소가 있을 것,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에 의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 또는 기준 재정 수입액의 산정방법의 확실성을 위해 생기는 기준 재정 수요액의 산정 과대 또는 기준 재정 수입액의 산정의 과소를 고려하더라도 또한, 보통 교부세의 금액이 재정 수요에 비하고 과소하다고 인정되어진 지방단체에 대해, 총무 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해당 사정을 고려여 교부한다.

②총무대신은 총무 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 단체에 교부해야 할 특별 교부세의 금액을, 매년도 2회로 나누어 결정되는 것으로 하고 그 결정은 제1회째는12월 중에, 제2회째는3월 중에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있어 제1회째의 특별 교부세의 금액의 결정은 그 총액이 해당 연도의 특별 교부세의 총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이 되도록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총무대신은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고 특별 교부세의 금액을 결정을 때는, 이것을 해당 지방단체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화27년법166,추가,소화27년법262,소화29년법101,소화32년법130,소화35년법113,소화46년법24,소화51년법20,평성1년법160,일부개정》

**【교부기간】**

**제16조** ①교부세는 매년도 다음의 표 상단에 언급한 시기에, 각각의 하단에 정한 금액을 교부한다. 단, 4월 및 6월에 교부해야 할 교부세에 관해서는, 해당 연도에 있어 교부해야 할 보통 교부세의 금액이 전년도의 보통 교부세의 금액에 비하고 현저하게 감소한 것이 인정된 지방단체 또는 전년도에 있어서는 보통 교부세의 교부를 받았지만, 해당 연도에 있어서는 보통 교부세의 교부를 받지 않는 것이 인정된 지방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교부해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교부시기	교부시기마다 교부하여야 할 금액
4월 및 6월	전년도의 해당 지방단체에 대한 보통 교부세의 금액에 해당 연도의 교부세의 총액의 전년도의 교부세의 총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고 얻은 금액의 각각 4분의 1에 상당한 금액
9월	해당 연도에 있어 교부해야 할 해당 지방단체에 대한 보통 교부세의 금액으로부터 4월 및 6월에 교부 한 보통 부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
11월	해당 연도에 있어 교부해야 할 해당 지방단체에 대한 보통 교부세의 금액으로부터 이미 교부 한 보통 교부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12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12월 중에 총무대신이 결정된 금액
3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3월 중에 총무대신이 결정된 금액

②해당 연도의 나라의 예산이 성립하지 않는 것, 나라의 예산의 추가 또는 수정에 의하고 교부세의 총액에 변경이 있던 것, 대규모 재해가 있던 것 등의 사유에 의해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는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교부세의 교부기간 및 교부기간마다 교부해야 할 금액에 관해서는, 나라의 잠정 예산의 금액 및 그 성립의 상황, 교부세의 총액의 변경의 정도, 전년도의 교부세의 금액, 대규모 재해에 의한 특별한 재정 수요의 액등을 가지고 하고, 총무 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특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도부현 또는 시읍면이 전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각 교부시기에 교부를 받은 교부세의 금액이 당해연도분으로서 교부받아야 할 교부세의 금액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도부현 또는 시읍면은 그 초과액을 지체없이 나라에 환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4월1일 이전 1년내 및 4월2일부터 당해연도의 보통교부세의 4월 또는 6월에 교부하여야 할 금액이 교부되어질 때까지 지방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이 있던 경우에 있어서 전년도에 관계지방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방법은, 제9조의 규정에 준해서 총무성령으로 정한다.

《소화27년법166,소화27년법262,소화29년법101,소화31년법100,소화32년법130,소화33년법117,소호35년법113,소화36년법121,소화1년법20,평성11년법160,일부개정》

**【시읍면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에 관한 도도부현지사의 의무】**

**제17조** ①도도부현지사는 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당해 도도부현의 구역내에 있어서 시읍면에 대해 교부하여야 할 교부세의 금액 산정 및 교부에 관한 의무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의무를 취하기 위해 당해 시읍면의 재정 상황을 적정하게 알고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화27년법262,소화29년법101,소화46년법24,일부개정》

## 일본의 재정관련 법령

1. 公庫의 豫算 및 決算에 關한 法律  
소화26년 3월 31일 일본 법률 제99호
2. 地方公營企業法 중 예산회계관련 규정  
제 정 : 소화27년 8월 1일 법률 제292호  
최종개정 : 평성16년 6월 9일 법률 제85호

### 公庫의 豫算 및 決算에 關한 法律

소화26년 3월 31일 일본 법률 제99호

#### 【통칙】

제 1 조 국민생활금융공고, 주택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 중소기업 금융공고, 공영기업 금융공고 및 오키나와(沖繩)진흥개발금융공고 (이하, ‘공고’라 한다)의 예산의 작성 및 집행 및 결산의 작성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연도】

제 2 조 공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되고 이듬해 3월 31일에 종료된다.

**【예산의 작성 및 제출】**

**제 3 조** ①공고는 매 사업년도의 예산을 작성하고, 이를 주무장관을 경유하여 재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예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 연도의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서류
2. 오래 전 연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3. 전년도 및 해당 사업 연도의 예정 손익계산서 및 예정 대차대조표
4. 기타 해당 예산에 참고가 되는 서류

③제1항의 예산의 작성 및 제출의 절차에 관해서는 재무대신이 이를 정한다.

**제 4 조** ①재무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예산의 제출을 받았을 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정을 하고, 각의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②내각은 전조 제1항의 예산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의의 결정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을 국가의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에는 전조 제2항 각호에 언급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산의 형식 및 내용】**

**제 5 조** ①공고의 예산은 예산총칙 및 수입지출예산으로 한다.

②전항의 예산 총칙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설치한다.

1. 차입금의 차입의 한도액(국민생활 금융공고 및 중소기업 금융공고에 있어서는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의 한도액, 주택금융공고에 있어서는 정부에서의 차입금의 한도액 및 시중은행 기타 민

간에서의 장기차입금의 한도액, 농림어업금융공고에 있어서는 차입금 농림어업금융공고법(소화27년 법률 제355호)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 차입금을 제외한다)의 한도액, 오키나와(沖繩)진흥개발금융공고에 있어서는 정부에서의 차입금의 한도액 및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오키나와(沖繩)진흥개발금융공고(소화47년 법률 제31호)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 차입금을 제외한다)의 한도액으로 하여, 공영기업금융공고법(소화32년 법률 제83호)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차입금을 제외한다)

2. 국민생활채권, 공영기업채권, 주택금융공고채권, 주택금융공고 근로자재산형성 촉진 제도주택채권, 주택금융공고주택택지채권, 중소기업채권, 오키나와(沖繩)진흥개발금융공고채권, 오키나와(沖繩)진흥개발금융공고 근로자재산형성 촉진제도주택채권, 오키나와(沖繩)진흥개발금융공고주택택지채권 및 농림어업금융공고채권의 발행(외국통화로 지불된 국민생활채권, 주택금융공고채권 또는 오키나와(沖繩)진흥개발금융공고 채권 또는 외국을 발행지로 하는 공영기업채권, 중소기업채권 또는 농림어업금융공고채권을 분실하였던 자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채권의 발행은 제외한다)의 한도액

3. 전 제2호에 언급한 것 외, 예산의 집행에 관하고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의 수입지출예산에 있어서 수입은, 대부금의 이자 그 밖에 자산의 운용에 관계된 수입, 수입보험료(주택 금융 공고 및 중소기업 금융 공고의 경우에 한한다), 출자에 대한 배당금(농림어업금융공고 및 오키나와(沖繩) 진흥개발금융공고의 경우에 한한다) 및 채무보증 요(주택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및 오키나와(沖繩)진흥개발 금융공고의 경우에 한한다), 사채의 이자(중소기업금융공고 및 오키나와(沖繩) 진흥개발금융공고의 경우에 한한다), 회수금(중소기업

금융공고의 경우에 한한다), 대부 수수료 및 지불 방법 변경 수수료 (주택금융공고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속 잡수입으로 하여, 지출은 차입금(국민생활금융공고에 있어서는 국민생활채권, 공영기업 금융공고에 있어서는 공영기업채권, 주택금융공고에 있어서는 주택금융공고채권 및 주택금융공고근로자재산형성촉진제도주택채권, 중소기업금융공고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채권, 오키나와(沖縄)진흥개발금융공고에 있어서는 오키나와(沖縄)진흥개발금융공고채권 및 오키나와(沖縄)진흥개발금융공고 근로자재산형성촉진제도 주택채, 농림어업금융공고에 있어서는 농림어업금융공고채권을 포함한다)의 이자, 기탁금(오키나와(沖縄)진흥개발금융공고의 경우에 한한다)의 이자, 주택금융공고주택 택지채권 또는 오키나와(沖縄)진흥개발금융공고 주택택지채권의 이자(할인의 방법으로써 발행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환금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의 상환), 지불 보험금(주택 금융 공고 및 중소기업 금융 공고의 경우에 한한다), 채무보증에 관계된 변제금(주택 금융 공고, 중소기업 금융 공고 및 오키나와(沖縄)진흥개발금융공고의 경우에 한한다), 사무취급비 업무위탁비 및 부속 제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의 수입지출예산은 수입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따라 이것을 관항으로 구분하고, 지출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따라 항으로 구분한다.

⑤전 제4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공고 예산의 형식 및 내용은 재무대신이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예비비】**

**제 6 조** 공고는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고의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예산의 의결】**

제 7 조 공고 예산의 국회의결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산의결의 예에 의한다.

**【예산의 통지】**

제 8 조 ① 내각은, 공고의 예산이 국회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국회의결한 바에 따르고, 주무장관을 경유하여 그 취지를 공고에 통지한다.

② 공고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③ 재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회계검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목의 구분】**

제 9 조 ① 공고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았던 바에 따르고, 수입에 있어서는 항을 목으로, 지출에 있어서는 항(예비비의 항을 제외한다)을 목으로 구분하고 그 예산을 주무장관을 경유하여 재무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구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회계검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정예산】**

제 10 조 ① 공고는, 예산의 작성 후에 발생한 사유에 기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예산을 작성하고, 보정예산의 작성에 따라 변경된 제3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서류(전년도에의 예정 손익계산서 및 예정 임차 대조표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주무장관을 거쳐 재무대신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단, 예산의 추가에 관계된 보정예산은 예산의 작성 후에 생긴 사유에 기하여 특히 긴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3조 제3항,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보정예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제4조 제1항 중 “전조 제1항”은 “제10조 제1항”로, 동조 제3항 중 “전조 제2항 각호에 언급한다”는 “제10조 제1항에 규정한다”로 대체한다.

## 제11조 삭제

### 【잠정예산】

제12조 ①공고는 필요한 경우 일 사업연도 중의 일정기간에 관계된 잠정예산을 작성하고 이것에 당해 기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기타 당해 예산에 참고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장관을 거쳐 재무대신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3조 제3항,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예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제4조 제1항 중 “전조 제1항”은 “제12조 제1항”으로, 동조 제3항 중 “전조 제2항 각호에 언급한다”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제12조 제1항에 규정한다”로 대체한다.

③잠정예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예산이 성립한 때에는 실효한 것으로 보며 잠정예산에 의거한 지출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예산에 의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 공고는 지출예산에 관해서는 당해 예산의 각항에서 정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산의 전용 및 유용】

제14조 ①공고는 예산에 정한 각항의 경비의 금액에 관해서는 각항 사이에 예산을 상호 전용할 수 없다. 단, 예산의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재무대신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②공고는 재무대신이 지정한 각목의 경비의 금액에 관해서는, 재무대신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목의 사이에 있어 상호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고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재무대신이 지정한 목 이외의 목의 경비의 금액에 관해서는 동일 항 중에서 당해 목의 사이에 있어 상호간에 유용할 수 있다.

④공고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예산의 전용 또는 유용의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는 주무장관을 거쳐야 한다.

⑤재무대신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전용 또는 유용에 관하여 승인을 할 때는, 그 취지를 공고 및 회계검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고 예산의 전용 또는 유용을 한 경비의 금액에 관해서는 수입지출의 결산보고서에 이를 명확히 하고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예산의 전용 또는 유용을 한 경비의 금액에 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5조 삭제

### 【예비비의 사용】

제16조 ①공고는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금액 및 적산(積算)의 기초를 명확히 한 예비비 사용서를 작성하고 주무장관을 경유하여 재무대신에게 송부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재무대신이 매 사업연도에 지정한 각목의 경비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②공고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사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이유, 금액 및 적산의 기초를 명확하게 한 예비비 사용서를

작성하여 주무장관을 거쳐 재무대신 및 회계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승인 또는 결정에 관계되어 예비비사용서에 기재된 경비에 대해서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결산의 완결】**

**제17조** 공고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작성, 제출 등】**

**제18조** ①공고는 매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이러한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타인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의 사용에 제공된 것으로서 재무대신이 정한 것을 말한다. 다음 조 제1항에 있어서도 동일하다)을 포함한다. 이하, ‘재무제표’라 한다)을 작성하고 해당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결산완결 후 1월 이내에 주무장관을 거쳐 재무대신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고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대신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재무제표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업무보고서 및 동항의 감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각 사무소에 비치하여 財務省습으로 정한 기간동안에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항에 규정한 부속명세서 및 업무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財務省습으로 정한다.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출 등】**

**제19조** ①공고는 결산 완결 후 제5조 제4항 및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예산의 구분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해당 결산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21조까지 동일)를 작성하고, 해당 결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의 의견을 붙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대신의 승인을 받은 때는, 해당 승인에 관계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주무장관을 경유해서 재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받았을 때는 이것에 동항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내각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공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이 행해진 때에는, 지체없이 동항의 결산보고서 및 감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각 사무소에 비치하고 재무성령(財務省令)으로 정한 기간동안 일반적인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에 관해서는 재무대신이 이를 정한다.

**【결산보고서 등의 회계 감사원에의 송부】**

**제20조** 내각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공고의 결산보고서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동조 제1항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익년 11월 30일까지 회계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 등의 국회에의 제출】**

**제21조** 내각은 회계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공고의 결산보고서에 제19조 제1항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국가의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 본

**【재무대신에 대한 보고 등】**

**제22조** 재무대신은 공고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고에 대해 수지의 실적 또는 전망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공고의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실지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실시 규정】**

**제23조**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절차 및 그 밖에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附 則

1. 이 법률은 소화26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하고 본칙의 규정은 공고의 소화26년도분의 예산부터 적용한다.

## 地方公營企業法 중 예산회계관련 규정

제 정 : 소화27년 8월 1일 법률 제292호

최종개정 : 평성16년 6월 9일 법률 제85호

### 제 1 장 總 則

#### 【법률의 목적】

**제 1 조** 이 법률은 지방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의 조직, 재무 및 이에 종사하는 직원의 신분 취급 기타 기업경영의 근본기준, 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 연합에 관한 특례 및 기업의 재정의 재건에 관한 조치를 정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동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

**제 2 조** ①이 법률은 지방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중 다음에 열거한 사업(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공영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
4. 자동차운송사업
5. 철도사업

6. 전기사업

7. 가스사업

②전항에 정한 경우 외에 다음 조에서 제6조까지 제17조로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로부터 제41까지 및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하, ‘재무규정 등’이라 한다)은 지방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중 병원사업에 적용한다.

③전 제2항에 정한 경우 외의 지방공공단체는 정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고 조례(지방자치법(소화22년 법률 제67호) 제284조 제1항의 일부 사무조합(이하, ‘일부사무조합’이라 한다)또는 광역연합(이하, ‘광역 연합’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규약)로 정한 바에 의하고, 그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경영의 기본원칙】**

**제 3 조** 지방공영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을 발휘함과 동시에 그 본래의 목적인 공공복리를 증진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공영기업의 설치】**

**제 4 조** 지방공공단체는 지방 공영기업의 설치 및 그 경영의 기본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공영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제 5 조** 지방공영기업에 관한 법령과 조례, 규칙 및 그 밖의 규정은, 전부 제3조에 규정한 기본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국가의 배려】**

**제 5 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공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처분 그 밖의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지방공영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등의 특례】**

**제 6 조** 이 법률은 지방공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소화23년 법률 제109호) 및 지방공무원법(소화25년 법률 제261호)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 한다.

**제 3 장 財 務**

**【특별회계】**

**제17조** 지방공영기업의 경리는 제2조 제1항에 열거한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행하는 것으로 한다. 단 동조 동항에서 열거한 사업을 둘 이상 경영하는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는, 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례로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마련할 수 있다.

**【경비의 부담의 원칙】**

**제17조의2** ①다음에서 열거하는 지방공영기업의 경비로서 정령으로 정한 것은, 지방공공단체의 일반회계 또는 그 외 특별회계에 있어서 출자, 장기대부, 부담금 지출 등의 방법에 의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 그 성질상 해당 지방공영기업의 경영에 수반한 수입으로써 충당한 것이 적당치 않은 경비
2. 해당 지방공영기업의 성질상 능률적인 경영을 행해도 여전히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한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비

②지방공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공공단체의 일반회계 또는 그 외 특별회계로서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지방공영기업의 경영에 수반한 수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보조】**

**제17조의3** 지방공공단체는 재해의 복구 등 특별한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그 외 특별회계로부터 지방공영기업의 특별회계에 보조할 수 있다.

**【출자】**

**제18조** ①지방공공단체는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일반회계 또는 그 외 특별회계로부터 지방공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②지방공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출자를 받는 경우, 이익이 상황에 따라 납부금을 일반회계 또는 해당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한 것으로 한다.

**【장기대부】**

**제18조의2** ①지방공공단체는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일반회계 또는 그 외 특별회계로부터 지방공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로 대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지방공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장기의 대부를 받은 경우, 적정한 이자를 일반회계 또는 해당 다른 특별회계에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 연도】**

**제19조** 지방공영기업의 사업 연도는 지방공공단체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계리의 방법】**

**제20조** ①지방공영기업에 있어서는 그 경영성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모든 비용 및 수익을 그 발생의 사실에 기하여 계상하고 또한 그 발생한 연도에 올바르게 할당하여야 한다.

②지방공영기업에 있어서는 그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자산 자본 및 부채의 증감 및 이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기하고 또한, 적당한 구분 및 배열의 기준과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산 자본 및 부채에 관해서는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요금】

**제21조** ①지방공공단체는 지방공영기업의 급부에 관하여 요금을 징수한 것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금은 공정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의 적정한 원가를 기초로 하여 지방공영기업이 건전한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企業債에 관한 배려】

**제22조** 국가는 지방공영기업이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방공영기업의 건설 개량 등에 필요로 한 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이하, ‘기업채’라고 한다)의 상환의 이연, 차환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금 사정이 허락하는 한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상환기한을 정하지 않는 기업채】

**제23조** 지방공공단체는 기업채 중, 지방공영기업의 건설에 필요로 한 자금으로 충당한 것에 대해서는 상환기한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영기업의 매 사업 연도의 이익상황에 따라 특별 이자를 부담케 할 수 있다.

### 【예산】

**제24조** ①지방공영기업의 예산은 지방공영기업의 매 사업연도의 업무 예정량 및 그것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의 대강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지방공공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공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의 원안에 기하여 매 사업연도 지방공영기업의 예산을 작성하고 연도개시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지방공영기업의 업무를 위해 직접 필요한 경비가 부족한 경우, 관리자는 해당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늘어난 수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기업의 업무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자는 지체없이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차기 회의에 그 취지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예산에 관한 설명서】

**제25조**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지방공영기업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공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정령으로 정한 예산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의 이월】

**제26조** ①예산에 정한 지방공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로 한 경비 중, 연도 내에 지불 의무가 생기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그 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 사업연도의 지출예산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단, 지출예산의 금액 중, 연도 내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를 위해 연도 내에 지불 의무가 생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관리자는 그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전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예산을 이월한 경우, 관리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에게 이월액 사용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차기 회의에서 그 취지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출납】

**제27조** 지방공영기업의 업무에 관계된 출납은 관리자가 행한다. 단, 관리자는 지방공영기업의 업무집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한 금융기관으로서 지방공공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금융기관에, 해당 지방공영기업의 업무에 관계된 공금의 출납 사무 일부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 【공금의 수납 등의 감사】

**제27조의2** ①감사위원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관리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지방공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공금의 수납 또는 지급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감사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를 하는 때에는, 감사의 결과에 관한 보고를 지방공공단체의 장과 의회 및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업출납원 및 현금취급원】

**제28조** ①지방공영기업을 경영한 지방공공단체에 해당 지방공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 등의 회계사무를 담당케 하기 위해, 기업출납원 및 현금취급원을 둔다. 단, 현금취급원에 한해서는 이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기업출납원 및 현금취급원은 기업 직원 중에서 관리자가 명한다.

③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명령을 받고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④현금취급원은 상사의 명령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공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현금출납사무를 담당한다.

### 【일시차입금】

**제29조** ①관리자는 예산내의 지출을 위해 일시 차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은 당해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단, 자금부족으로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이 불가능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차환할 수 있다.

③전항 단서규정에 의해 차환된 차입금은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단, 차입금으로써 이를 상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산】

**제30조** ①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2월 이내에 해당 지방공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증서류, 당해 연도의 사업 보고서 및 정령으로 정하고 있는 그 외 서류를 모아 당해 지방공공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공공단체장은 결산 및 전항의 서류를 감사위원의 심사에 붙여야 한다.

③감사위원이 전항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영기업의 운영이 제3조의 규정의 취지에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지방공공단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의 심사에 붙인 결산을 감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늦어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을 경과한 후에 최초로 소집된 정례회인 의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결정은 감사위원의 합의에 의한다.

⑥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결산을 의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심사대상인 해당 연도의 사업 보고서 및 정령으로 정한 그 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결산에 관하여 작성해야 할 서류는 해당연도의 예산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결산보고서 및 손익계산서, 잉여금 계산서 또는 결손금 계산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로 하고 그 양식은 총무성령으로 정한다.

### 【계리상황의 보고】

**제31조** 관리자는 매월 말일에 시산표(試算表) 등 당해 기업의 계리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익월 20일까지 해당 지방공공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잉여금】

**제32조** ①지방공영기업은 매 사업연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으로써 그 결손금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그 잔액의 20분의 1보다 많은 금액을 감채적립금 또는 이익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매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의 처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기업체의 상환으로 충당하는 경우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매 사업 연도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로 해당 내용을 가리키는 명칭을 붙인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자본잉여금은 정령(政令)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할 수 없다.

**【결손의 처리】**

**제32조의2** 지방공영기업은 매 사업연도 결손이 생긴 경우,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이익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으로써 그 결손금을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제33조 ①** 지방공영기업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은 관리자가 행한다.

② 전항의 자산 중 그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정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 중요한 것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영기업의 사용에 제공되는 행정재산이 지방자치법 제238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징수하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리자가 정한다.

**【공급의 징수 또는 수납의 위탁】**

**제33조의2** 관리자는 지방공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공급의 징수 또는 수납사무에 관해서는 수입의 확보 및 주민의 편익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원의 배상책임】**

**제34조** 지방자치법 제243조의2의 규정은 지방공영기업의 업무에 종사한 직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규칙”은 “규칙 또는 기업 관리규정”으로, 동조 제8항 중 “의회의 동의를 얻고”는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로 대체하는 외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자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공영기

업의 업무에 종사한 직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 경우에 한하고, 동법 제243조의2 제3항 중“보통지방공공단체장”은 “관리자”로, 동조 제8항 중 “보통지방공공단체장”은 “관리자”로, “미리 감사위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은 “관리자가 미리 감사위원의 의견을 듣고,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이 당해 의견”으로, 동조 제10항 중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은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해당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으로, “한 처분”은 “한 재결”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로, 동조 제12항 중 “이의 신고”는“심사청구”로 대체한다.

#### 【재무규정 등이 적용된 경우의 관리자의 권한】

**제34조의2**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재무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경우, 관리자의 권한은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행한다. 단, 관리자의 권한 중 해당 기업의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 및 결산에 관계된 것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출납장 또는 수입역(收入役)에게 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정령에의 위임】

**제35조** 본 장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공영기업의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政令)으로 정한다.

# 회계감사원법

## 제 1 장 조 직

### 제 1 절 총 칙

#### 【회계감사원의 지위】

제 1 조 회계감사원은 내각에 대해서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조직】

제 2 조 회계감사원은 삼인의 검사관을 가진 구성으로 검사관회의와 사무총국으로 이것을 조직한다.

#### 【원장의 임명】

제 3 조 회계감사원장은 검사관 중 호선된 자에 대해 내각에서 이를 임명한다.

### 제 2 절 검사관

제 4 조 ①검사관은 양원의 동의를 거쳐 내각에서 이를 임명한다.

②검사관 임기가 만료 또는 결원이 생긴 경우에 국회가 폐회중이거나, 중의원의 해산으로 양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내각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검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일 본

③전항의 경우에 임명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국회에서 양원의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양원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검사관은 당연 그 직에서 퇴임한다.

④검사관의 해임은 천황이 이것을 인증한다.

⑤검사관의 급여는 별도의 법률에 정한다.

《소화22년209,소화25년법165,소화33년법86,평성11년법36,일부개정》

### 【검사관의 임기 및 정년】

**제 5 조** ①검사관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재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검사관이 임기 중에 결한 때에는 후임 검사관은 전임의 검사관의 잔여임기동안 재임한다.

③검사관이 만65세에 달한 때에는 퇴관한다.

### 【집무불능 또는 의무위반에 의한 퇴관】

**제 6 조** 검사관은 다른 검사관의 합의에 따라,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의 집행이 어렵다고 결정되거나 또는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 있어서, 양원의 결의가 있을 때 퇴관한다.

《평성11년법36 일부개정》

### 【실관】

**제 7 조** 검사관은 형사재판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진 때는 그 직을 상실한다.

### 【신분의 보장】

**제 8 조** 검사관은 제4조 제3항 후단 및 전 제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소화25년법165,평성11년법36 일부개정》

**【겸임의 금지】**

**제 9 조** 검사관은 다른 직을 겸하거나 국회의원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혹은 의회의 의원으로 될 수 없다.

《평성18년법53 일부개정》

**제 3 절 검사관 회의**

**【의장】**

**제10조** 검사관 회의의 의장은 감사원 원장으로 한다.

**【의결사항】**

**제11조** 아래의 사항은 검사관 회의에서 이를 결정한다.

1.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원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고
- 2의2. 제30조의2에 규정한 보고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대상의 결정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증명에 관한 사항
5. 제31조 및 정부계약의 지불지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소화24년 법률제256호) 제13조 제2항의 규정 및 예산집행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소화25년법률제172호) 제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동법 제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의한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2조(예산집행의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및 동법 제1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예산 집행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 제5조(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제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및 재검정

일 본

7.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
8.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표시 또는 조치의 요구
9. 제37조 및 예산 집행의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 표시

《소화25년법172,소화27년법251,소화31년법137,소화59년법87,소화61년법93,평성17년법112 일부개정》

## 제 4 절 사무총국

### 【소장사무 및 조직】

**제12조** ①사무총국은 심사관 회의의 지휘감독 하에 서무 및 검사와 심사사무를 관장한다.

②사무총국의 총괄부서 및 다음의 5국을 둔다.

제1국

제2국

제3국

제4국

제5국

③관방 및 각국의 사무 분장 및 분과는 회계검사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화30년법110 일부개정》

### 【직원】

**제13조** 사무총국에 사무총장 1인, 사무총국 차장 1인, 비서관, 사무관, 기술관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소화30년법110 일부개정》

**【직원의 임면진퇴】**

**제14조** ①전조의 직원의 임면 및 승진과 퇴임은 검사관 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원장이 이를 행한다.

②원장은 전항의 권한을 검사관 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화30년법110 전면개정》

**【사무총국장 및 차장】**

**제15조** ①사무총장은 사무총국의 업무를 총괄 수리하고 공문에 서명한다.

②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총장이 결한 때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국장】**

**제16조** ①각국에 국장을 둔다.

②국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한다.

《소화30년 법110 전면개정》

**【비서관 및 사무관】**

**제17조** ①비서관은 검사관을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②사무관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 검사 또는 심사사무에 종사한다.

《소화30법110 일부개정》

**【기술관】**

**제18조** 기술관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기술에 종사한다.

《소화30년법110 일부개정》

**【지국】**

**제19조** 회계검사원은 회계검사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 사무총국의 지국을 둘 수 있다.

**제 5 절 회계검사원 정보공개 심사회**

**제19조의2** 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평성11년법률제42호)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불복제기에 대한 조사심의를 위해 회계검사원에 회계검사원 정보공개 심사회를 둔다.

② 회계검사원 정보공개 심사회는 위원 3인으로 조직한다.

③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평성11년법43,추가,평성15년법61일부개정》

**제19조의3** ① 위원은 우수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양원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 또는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국회의 폐회 또는 중위원의 해산으로 양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원장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향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서 임명 후 최초의 국회에서 양원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양원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원장은 즉시 그 위원을 파면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결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재임할 수 없다.

⑥위원의 임기가 만료한 때는 당해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⑦원장은 위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에게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기타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비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원의 동의를 얻어 그 위원을 파면할 수 있다.

⑧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을 물러난 뒤도 마찬가지이다.

⑨위원은 재임중 정당 또는 그 외의 정치적단체의 관계인으로 되거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⑩위원의 급여는 별도의 법률에 정한다.

《평성11년법43,추가》

**제19조의4**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평성15년법률제60호) 제3장의 규정은 회계감사원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의 조사심의의 절차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경우에 있어서 동장의 규정중 「심사회」로 있는 것은 「회계감사원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로 바꿔 읽은 것으로 한다.

《평성15년법61 추가》

**제19조의5** 제19조의3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비밀을 누설한 자는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성11년법43,추가,평성15년법61,일부개정,구법제19조의4조하》

**제19조의6** 제19조의2에서 전조까지 정한 것 이외에, 회계감사원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심사회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회계감사원규칙에서 정한다.

《평성11년법43,추가,평성15년법61일부개정,구법제19조의5조하》

## 제 2 장 권 한

### 제 1 절 총 칙

#### 【검사】

**제20조** ① 회계검사원은 일본국 헌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 검사를 행하는 외에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 검사를 행한다.

② 회계검사원은 상시 회계검사를 행하여 회계경리를 감독하고 그 적정을 기하는 한편 그 시정을 도모한다.

③ 회계검사원은 정확성, 규범과의 합치, 경제성, 효율성 및 효용성의 관점 기타 회계검사원상 필요한 관점에서 검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평성9년법126, 일부개정》

#### 【결산의 확인】

**제21조** 회계검사원은 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지출 결산을 확인한다.

### 제 2 절 검사의 범위

#### 【필요적 검사사항】

**제22조**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의 매월 수입 지출
2. 국가가 소유한 현금 및 물품 및 국유재산의 수불
3. 국가의 채권 상실 또는 국채 기타 채무의 증감

4. 일본은행이 국가를 위해 취급하는 현금, 귀금속 및 유가증권의 수불
5. 국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회계
6. 법률에 의해 특별히 회계검사원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정해진 회계

《소화31년법137 일부개정》

### 【임의적 검사사항】

**제23조** ①회계검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또는 내각의 청구가 있을 때는 아래에서 열거된 회계경리의 검사를 할 수 있다.

1. 국가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유가증권 또는 국가의 보관하는 현금 및 물품
2. 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를 위해 취급하는 현금,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
3.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또는 대출금, 손실보상 등의 재정원조를 부여하고 있는 회계
4.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는 회계
5. 국가가 자본금을 출자한 것이 더욱 출자를 하고 있는 것의 회계
6. 국가가 차입금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불을 보증하고 있는 것의 회계

②회계검사원이 전항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할 때는 이것을 관계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소화30년법110,소화31년법137,소화59년법71,소화59년법87,소화61년법93,평성17년법112, 일부개정》

### 제 3 절 감사의 방법

#### 【서류의 제출】

**제24조** ①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회계감사원이 정하는 계산 증명의 직무규칙에 따라 상시로 계산서(당해 계산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 전자 계산기에 의해 정보처리용으로 제공할 것을 회계감사원 규칙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도 동일.)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증거서류(당해 증거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를 회계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수불에 대해서는 전항의 계산서 및 증거서류에 대신하여 회계감사원이 지정하는 다른 서류(당해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을 포함)를 회계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다.

《평성14년법152 일부개정》

#### 【실지의 검사】

**제25조** 회계감사원은 상시 또는 임시로 직원을 파견하고 현장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실지의 감사를 받는 것은 이것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성17년법112 일부개정》

#### 【장부등의 제출요구 및 질문등】

**제26조** 회계감사원은 검사상의 필요에 따라 감사를 받는 것의 장부, 서류 기타 자료 혹은 보고서의 제출을 구하거나 또는 관계자에 질문 혹은 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장부 서류 그

외의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또는 질문되거나 또는 출두가 요구 되어진 것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평성14년법152,평성17년법112 일부개정》

**【사고의 보고】**

**제27조**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받는 회계경리에 관한 아래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관청 기타 이에 준하는 책임이 있는 자는 바로 그 뜻을 회계검사원에 보고해야 한다.

1. 회계와 관계가 있는 범죄가 발각된 때
2. 현금,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망실을 발견한 때

**【자료의 제출 및 감정 등의 의뢰】**

**제28조** 회계검사원은 검사상의 필요에 따라 관청, 공공단체 기타 자에 대해 자료의 제출, 감정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 4 절 검사보고

**【검사보고에 기재하는 사항】**

**제29조** 일본국 헌법 제90조에 따라 작성한 검사보고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 확인
2.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금액과 일본은행이 제출한 결산서의 금액과의 부합 유무
3. 검사의 결과 법률, 정령(政令) 혹은 예산에 위반하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유무
4. 예비비의 지출에서 국회의 승인 절차 유무
5. 제31조 및 정부계약의 지불지연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예산집행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동

법 제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 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6. 제32조(예산집행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동법 제1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예산 집행 직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 제5조(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제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
7.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견을 표시하거나 또는 조치를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8.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을 표시하거나 또는 조치를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소화25년법172,소화27년법251,소화31년법137,소화59년법87,소화61년법93 일부개정》

### 【국회의에의 설명】

**제30조** 회계검사원은 전조의 검사결과에 관해 국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출석시키거나 또는 서면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제30조의2** 회계검사원은 제34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표시 또는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 그 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회 및 내각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평성17년법112 추가》

### 【국회의 요청에 의한 검사 및 보고】

**제30조의3** 회계조사원은 각 의원 또는 각의원의 위원회 또는 참의원의 조사회로부터 국회법(소화22년법률제79호) 제105조(동법 제54조의

4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해 요청이 있던 때는 당해 요중에 관해 특정의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평성9년법126,추가, 평성17년법112, 구법제30조의2조하》

## 제 5 절 회계 사무직원의 책임

### 【징계처분의 요구】

**제31조** ①회계검사원은 검사의 결과,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현저하게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하는 때는 소속장관 기타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계산서 및 증거서류의 제출을 해태하는 등 계산 증명의 직무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소화30년법110,소화59년법87,소화61년법93, 일부개정》

### 【변상책임의검정 및 변상명령】

**제32조** ①회계검사원은 출납직원이 현금을 망실한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해태하였기 때문에 국가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가를 심리하고 그 변상책임의 유무를 검토한다.

②회계검사원은 물품 관리법(소화31년법률제11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의 관리행위를 한 것 또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의해, 물품을 망실하거나 또는 손상시켜 기타 국가에 손해를 입힌 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국가

일 본

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가를 심리하고 그 변상책임의 유무를 검정한다.

③ 회계검사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검정한 때는 소속장관 기타 출납직원 또는 물품관리 직원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자는 전 제2항의 검정에 따라 변상을 명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변상책임은 국회의 의결에 근거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⑤ 회계검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납직원 또는 물품관리 직원의 변상책임이 없다고 검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계산서 및 증거서류의 오류 탈류 등에 의해 검정이 부당하다고 발견한 때에는 5년간에 한정하여 재검정할 수 있다. 전 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소화25년법172, 소화31년법137, 일부개정》

#### 【범죄의 검찰청에의 통고】

**제33조** 회계검사원은 검사의 결과,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직무상 범죄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그 사무를 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소화30년법110, 소화59년법87, 소화61년법93, 일부개정》

### 제 6 절 잡 칙

#### 【위법 또는 부당한 회계경리의 처리】

**제34조** 회계검사원은 검사의 진행에 수반하여 회계 경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장관 또는 관계자에 대해 당해 회계 경리에 대한 의견 표시 또

는 적당한 조치 요구 및 그 후의 경리에 대한 시정개선 처벌을 가할 수 있다.

**【회계경리취급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의 심사요구에 대한 판정】**

**제35조** ① 회계검사원은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의 회계경리의 취급에 관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검사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구할 것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판정을 주무관청 또는 기타 책임자에 통지해야 한다.

② 주무관청 또는 책임자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 그 통지된 판정에 근거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화30년법110,소화59년법87,소화61년법93 일부개정》

**【개선의 의견표시 또는 요구】**

**제36조** 회계 검사원은 검사의 결과 법령, 제도 또는 행정에 관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된 때는 주무관청 기타 책임자에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거나 또는 개선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의 제정개폐 및 직무상의 혐의에 대해서 의견의 표시】**

**제37조** ① 회계검사원은 아래의 경우에 미리 그 통지를 받아 이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1. 국가의 회계경리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
2. 국가의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부기의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

②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그 직무집행에 관해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회계검사의 의견을 구한 때는 회계검사원은 이에 대해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소화30년법110,소화59년법87,소화61년법93,일부개정》

### 제 3 장 회계검사원 규칙

#### 【규칙제정권】

제38조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회계 검사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회계검사원이 이를 정한다.

# 회 계 법

소화22년 3월 31일 법률 제35호

내용현재 : 평성18년 6월 7일

시행기일 : 평성19년 4월 1일

## 제 1 장 총 칙

### 【출납의 완결기한 및 회계연도소속 구분】

**제 1 조** ① 회계연도에 속한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익년도 7월31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② 세입 및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이를 정한다.

### 【수입지출의 통제】

**제 2 조** 각성 각청의 장(재정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각성 각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동일)은 소장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즉시 이를 사용할 수는 없다.

## 제 2 장 수 입

### 【세입의 징수 및 수납의 원칙】

**제 3 조** 세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징수 또는 수납해야 한다.

《소화29법36·일부개정》

**【세입사무의 관리】**

**제 4 조** 재무대신은 세입의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무 일반을 관리하며, 각 성 각청의 장은 그 소장의 세입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평성11법160·일부개정》

**【세입징수업무의 위임 및 분장】**

**제 4 조의2** ①각성 각청의 장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각성 각청 소속 직원에게 그 관장하는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각성 각청의 장은 필요할 경우,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에게 전항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각성 각청의 장은 필요할 경우,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 또는 다른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에게 세입 징수관(각성 각청의 장 또는 제1항 혹은 전항 규정에 의해 위임된 직원을 말함. 이하 동일)사무의 일부를 분장시킬 수 있다.

④전 제3항의 경우에, 각성 각청의 장은 당해 각성 각청 또는 다른 각성 각청에 두어진 관직을 지정하는 것에 의해 그 관직에 있는 자에게 당해사무를 위임하거나 또는 분장시킬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입징수관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직원은 분임 세입징수관이라 한다.

《소화27법4·추가, 소화46법96·일부개정》

**【세입의 징수권한】**

**제 5 조** 세입은 세입징수관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소화27법4·소화29법36·일부개정》

**【세입의 징수방법】**

**제 6 조** 세입징수관은 세입을 징수하는 때는 이를 조사결정하고 정령

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해서 납입 고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화29법36·소화45법111·일부개정》

**【세입의 수납권한 및 수납업무】**

**제 7 조** ①세입은 출납관사가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단, 출납원에 수납 사무를 분장시키는 경우 또는 일본은행에 수납 사무를 취급시키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②출납관사 또는 출납원은 세입을 수납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일본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소화29법36·일부개정》

**【징수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제 8 조** 세입의 징수 직무는 현금출납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 단,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정령에서 특례를 마련할 수 있다.

**【과년도수입 및 반납금환입】**

**제 9 조** 출납을 완결한 년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재년도의 수입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지출을 완료한 세출의 반납금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각각 지불한 세출 금액에 환입할 수 있다.

### **제 3 장 지출부담행위 및 지출**

#### **제 1 절 총 칙**

**【지출부담행위 및 지출 사무의 관리】**

**제10조** 각성 각청의 장은 그 관장하는 지출부담행위(재정법 제34조의

일 본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출부담행위를 말한다. 이하 동일)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소화24법24·소화27법4·일부개정》

## 제 2 절 지출 부담행위

### 【지출부담행위의 준칙】

**제11조** 지출 부담행위는 법령 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화24법24·일부개정》

### 【특정 경비에 관한 지출부담행위의 제한】

**제12조** 각성 각청의 장은 재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할당된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 행위 중 동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비에 관련한 것에 근거하여 지출 부담행위를 행하는 데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된 지출부담 행위의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소화24법24·소화27법4·일부개정》

### 【지출부담행위사무의 위임 및 분장】

**제13조** ①각성 각청의 장은 당해 각성 각청의 소속 직원에게 그 각성 각청이 관장하는 지출부담 행위에 관련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각성 각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에게 전항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각성 각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 또는 다른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에게 지출 부담행위 담당관(각성 각청의 장 또는 제1항 혹은 전항에서

규정에 의해 위임된 직원을 말함. 이하 동일)사무의 일부를 분장시킬 수 있다.

④제4조의2 제4항의 규정은 전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출 부담행위 담당관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직원은 분임지출 부담행위 담당관이라 한다.

《소화27법4·전개, 소화29법90·소화46법96·일부개정》

### 【지출부담행위의 확인 및 등기】

**제13조의2** ①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이 지출부담행위 하는 데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지출 부담행위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를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지출관에게 송부하여 당해 지출 부담행위가 당해지출 부담행위 담당관에 대해서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시달된 세출 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 채무부담 행위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의 확인을 받고 그와 동시에 당해 지출 부담행위가 지출 부담행위에 관한 장부에 등기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지출 부담행위 담당관이 동행에서 규정하는 지출관을 겸하는 때는 그 확인은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분임지출 부담행위 담당관이 지출 부담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전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행 전단 중 ‘지출 부담행위 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은 ‘분임 지출 부담행위 담당관이’ 라고 ‘지출 부담행위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라고 하는 것은 ‘지출 부담행위 담당관이 소속하는 각 분임 지출 부담행위 상당의 관리가 행하는 지출 부담행위의 한도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소화27법4·전개, 소화29법90·소화46법96·일부개정》

### 【지출부담행위의 인증】

**제13조의3** ①각성 각청의 장은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해당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에게 그 각성 각

청이 관장하는 지출 부담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인증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②각성 각청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각성 각청, 소속 직원의 지출부담 행위를 인증할 수 있다.

③제4조의2 제4항의 규정은 전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출 부담행위의 인증을 행하는 직원은 지출 부담행위 인증관이라 한다.

《소화27법4·전개, 소화46법96·일부개정》

#### **【지출부담행위의 인증이 행해지는 경우의 절차】**

**제13조의4** 전조의 경우에서 지출 부담행위 담당관이 지출 부담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부담행위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를 지출 부담행위 인증관에게 송부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받고 그와 동시에 당해 지출 부담행위가 지출 부담행위에 관한 장부에 등기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소화27법4·전개, 소화29법90·일부개정》

#### **【인증 기관과 지출부담행위 기관의 분립】**

**제13조의5** 지출 부담행위의 인증 직무는 지출 부담행위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 단,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정령에서 특례를 마련할 수 있다.

《소화27법24·추가》

### 제 3 절 지 출

#### **【지출의 준칙】**

**제14조** ①각성 각청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근거하여 지출하려고 하는 때에 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된 지불계획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②작성 각청의 장은 전항의 금액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지불 부담행위의 확인 또는 확인을 받고 동시에 지불 부담행위에 관한 장부에 등록된 것이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

《소화24법24·소화27법4·일부개정》

### 【지출의 방법】

**제15조** 작성 각청의 장은 그 소장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근거하여 지출하려고 하는 때는 현금의 교부에 대신하여 일본은행을 지불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고 또는 채무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내의 이관을 위해 국고금 대체서(이하 ‘국고금 대체서’라고 함) 혹은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지불을 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 지시서(이하 ‘지불 지시서’라고 함)를 일본은행에 교부해야 한다.

《평성11법160·평성14법152·일부개정》

### 【수표발행의 제한】

**제16조** 작성 각청의 장은 채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단,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주임 직원 또는 일본은행에 대해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소화27법4·일부개정》

### 【자금전도】

**제17조** 작성 각청의 장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의 지불 경비, 청에서 사용하는 잡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주임 직원으로 하여금 현금지불을 하게 하지 않으면 사무의 취급에 지장을 주는 경비로 정령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현금지불을 하게 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소화27법4·일부개정》

**【연도 개시 전 지출】**

**제18조** ①각성 각청의 장은 전조에 규정하는 경비에서 정령에서 정한 것에 충당하는 경우에 한 해 필요 부득이 한 때는 재무대신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 주임 직원에 대해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재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한 때는 일본은행 및 회계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소화27법4·평성11법160·일부개정》

**【국채원리급자금등의 교부】**

**제19조** 재무대신은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국채의 원리 지불 및 국가의 보관에 관련하는 현금의 이자 지불 사무를 취급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일본은행에 교부할 수 있다.

《소화26법104·평성11법160·일부개정》

**【현금의 교환사용】**

**제20조** ①각성각청의 장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불을 시키기 위해 주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보관에 관련한 세입금, 세출금 또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교환 사용케 할 수 있다.

②각성 각청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세출금에 교환 사용한 현금을 전보하기 위해 그 전보 자금을 당해 직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소화24법161·소화27법4·평성14법98·일부개정》

**【격지불자금의 교부】**

**제21조** ①각성 각청의 장은 채권자에게 지불을 하는 경우에 정령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는 필요한 자금을 일본은행에 교부하고 지불을 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정령에서 정하는 출납관리에 대해 제17조 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금을 교부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소화40법42·일부개정》

**【전금불 및 개산(概算)불】**

**제22조** 각성 각청의 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 또는 개산으로 지불을 하지 않으면 사무에 지장을 줄 것 같은 경비에서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금 지불 또는 개산 지불을 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평성14법98》

**【지출사무의 위임】**

**제24조** ①각성 각청의 장은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에게 그 소장에 속하는 세출금을 지출하기 위한 수표 지불 또는 국고금 대체서 혹은 지불 지시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각성 각청의 장은 필요가 있을 때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에게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제4조의2 제4항의 규정은 전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각성 각청의 장 또는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직원은 지출관 이라고 한다.

《소화27법4·전개, 소화46법96·평성14법152·일부개정》

**제25조** 삭제

《소화27법4》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제26조** 세출의 지출 직무는 현금 출납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 단,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령에서 특례를 마련할 수 있다.

《소화46법96·일부개정》

**【과년도지출】**

**제27조** 과년도에 속하는 경비는 현재년도의 세출 금액에서 이를 지출해야 한다. 단, 재정법 제3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재무대신이 지정하는 경비 외 그 경비 소속년도의 매항의 금액 중 불필요하게 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평성11법160·일부개정》

**제 4 절 지 불**

**【일본은행의 지불】**

**제28조** ①일본은행은 지출관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경우에 그 수표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상을 초과한 것이라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지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일본은행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자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지출관이 그 자금의 교부를 위해 발행한 수표의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채권자 또는 출납관리에 대해 지불할 수 없다.

**제 4 장 계 약**

**【계약업무의 관리】**

**제29조** 각성 각청의 장은 제10조 규정의 의하는 외에 그 소관에 관련하는 판매, 대차, 청부 기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소화36법236·전개》

**【계약업무의 위임 및 분장】**

**제29조의2** ①각성 각청의 장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에게 전조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각성 각청의 장은 필요가 있는 때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에게 전항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각성 각청의 장은 필요가 있는 때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 또는 그 밖의 다른 성청 소속의 직원에게 계약담당관(각성 각청의 장 또는 제1항 혹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사무 일부를 분장시킬 수 있다.

④제4조의2 제4항의 규정은 전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담당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직원은 분임 계약 담당관이라 한다.

《소화36법236·추가, 소화46법96·일부개정》

**【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제29조의3** ①계약 담당관 및 지출 부담행위 담당관(이하 ‘계약 담당관 등’이라고 한다)은 판매, 대차, 청구 기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하여 신청을 받도록 하여 경쟁에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②전항의 경쟁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및 동항의 공고 방법 기타 동항의 경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③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해 경쟁에 참가해야 하는 자가 소수로 제1항의 경쟁에 붙일 필요가 없는 경우 및 동항의 경쟁에 붙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에 붙이는 것으로 한다.

④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이 경쟁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긴급의 필요에 의해 경쟁에 붙일 수 없는 경우 및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제29조의4** ①계약 담당관 등은 전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경쟁에 붙이려고 하는 경우 그 경쟁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그 자의 견적 금액 계약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보증금을 납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단,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보증금 납부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 또는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 기타 담보의 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입찰 및 경매】

**제29조의5** ①제29조의3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이하 ‘경쟁’이라고 함)은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경매에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을 행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는 이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없다.

#### 【계약 상대방의 결정】

**제29조의6** ①계약 담당관은 경쟁에 붙이는 경우에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목적에 따라 예정가격의 제한 범위 내에서 최고 또는 최저의 가격으로 신청한 자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한다. 단, 국가의 지불 원인으로 되는 계약 중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으로 되어야 할 자의 신청에 관계하는 가격에 따라서는 그 자에 의한 당해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의 제한 범위내의 가격으로 신청한 다른 자 중에서 최저의 가격으로 신청한 자를 당해 계약의 상대방으로 할 수 있다.

②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과 국가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재산과의 교환에 관한 계약 기타 그 성질 또는 목적에서 전항의 규정보다 어려운 계약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및 기타 조건이 국가에 있어 가장 유리한 조건(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다음으로 유리한 것)을 가지고 신청한 자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할 수 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제29조의7** 제29조의4 의 규정에 따라 납부되는 보증금(그 납부에 대신하여 제공되는 담보를 포함) 중 낙찰자(전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의 상대방으로 되는 자를 말함. 이하 다음 조에 있어서 동일)의 납부에 관계하는 자는 그 자가 계약을 맺지 않는 때는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 【계약서의 작성】

**제29조의8** ①계약 당사자등은 경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했을 때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했을 때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 보증금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관등이 계약의 상대방과 함께 계약서에 기명날인 하지 않으면 당해계약은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계약보증금의 납부】

**제29조의9** ①계약 당사관등은 국과와 계약을 맺는 자로 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납부의 연기가 인정되는 경우에 확실한 담보가 제공되는 때 그 자가 물품의 대금을 즉납하는 경우 기타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시킬 수 있다.

②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대해서 이를 준용한다.

###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29조의10** 전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계약보증금(그 납부에 대신하여 제공되는 담보를 포함)은 이를 납부한 자가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는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손해의 배상 또는 위약금에 대해서 계약에서 별단의 정함이 있는 때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계약이행의 감독 및 검사】

**제29조의11** ①계약 당사자등은 공사 또는 제조 기타에 관련한 청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보조자에 명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감독을 해야 한다.

②계약 당사관 등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청부계약 또는 물건의 매입 기타 계약에 대해서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보조자에 명하여 그 받는 급부의 완료 확인(급부의 완료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공사 혹은 제조에서 이미 완성된 부분 또는 물건에서 이미 납부된 부분의 확인을 포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③전 제2항의 경우에 계약의 목적인 물건의 급부 완료 후 상당의 기간 내에 당해 물건에 대해 파손, 변질, 성능의 저하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는 교환,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뜻의 특약이 있고 당해급부의 내용이 담보된다고 인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감독 또는 전항의 검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각성 각청의 장은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감독 및 제2항의 검사를 당해계약에 관계하는 계약 당사관 등 및 그 보조자 이외의 당해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 또는 다른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

#### 【익년도 이후에 결친 급부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의12** 계약당사관 등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익년도 이후에 걸쳐 전기, 가스 혹은 물의 공급 또는 전기 통신 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 년도의 이들 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급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제 5 장 시 효

####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제30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서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하지 않는 때에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에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시효에 의한 권리의 절대적 소멸과 민법의 준용】

**제31조**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시효에 의한 소멸에 대해서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때는 시효의 원용을 요하지 않

고 또한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에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서도 또한 같다.

②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기타 사항(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에 관해서 적용해야 할 기타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에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납입고지의 시효중단의 효력】**

**제32조**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 고지는 민법 제153조(전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 **제 6 장 국고금 및 유가증권**

####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의 제한】**

**제33조** 각성 각청의 장은 채권의 담보로서 징수하는 것 외에 법률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면 공유 혹은 사유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 **【일본은행의 국고금출납업무】**

**제34조** ①일본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일본은행에서 받아들인 국고금은 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 **【일본은행의 국가의 유가증권 등의 취급】**

**제35조** 국가는 그 소유 또는 보관에 관계하는 유가증권의 취급 및 그 보관에 관계하는 현금의 이자 지불을 일본은행에 명할 수 있다.

**【일본은행의 국고금출납 등에 관한 검사】**

**제36조** 일본은행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 국채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의 지출, 제19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를 받은 자금의 수지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해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해서 회계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행의 배상책임】**

**제37조** 일본은행이 국가를 위해 취급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해서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의 일본은행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7 장 출납관리**

**【출납관사의 의의 및 직무】**

**제38조** ①출납관사라는 것은 현금 출납보관을 관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출납관리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을 출납 보관해야 한다.

**【출납관사의 임명】**

**제39조** ①출납관리는 각성 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이 이를 명한다.  
②각성 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전항의 출납관리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출납 관리 또는 당해 출납관리 혹은 분임 출납관리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는 출납관리 대리를 명할 수 있다.

**【출납원】**

**제40조** ①각성 각청의 장은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납관리, 분임출납 관리 및 출납관리 대리 이외의 직원에 현금 출납보관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 출납보관 사무를 취급하는 직원은 이를 출납원이라 한다.

**【타성청직원인 출납관사 및 출납원의 임명】**

**제40조의2** ①각성 각청의 장은 필요가 있을 때에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을 출납관리, 분임출납 관리 또는 출납관리 대리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각성 각청의 장은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다른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을 출납원으로 할 수 있다.

**【출납관리의 변상책임】**

**제41조** ①출납관리가 그 보관에 관계하는 현금을 망실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해태한 때는 변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출납관리는 단지 자신의 사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단, 분임출납 관리, 출납관리 대리 또는 출납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현금상실의 통지】**

**제42조** 각성 각청의 장은 출납관리가 그 보관에 관계하는 현금을 망실한 때는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재무대신 및 회계 검사원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납관리에 대한 검정전의 변상명령】**

**제43조** ①각성 각청의 장은 출납관리의 보관에 관련하는 현금의 망실이 있는 경우에 회계 검사원의 검정 전에도 그 출납관리를 대해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회계 검사원이 출납관리에 대해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검정한 때는 그 기납의 변상금은 즉시 환부해야 한다.

**【분임출납관리등의 책임】**

제44조 분임출납관리, 출납관리 대리 및 출납원은 그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그 책임을 진다.

**【출납원에 관한 준용규정】**

제45조 출납관리에 관한 규정은 출납원에 대해서 이를 준용한다.

## 제 8 장 잡 직

**【재무대신의 예산집행감독】**

제46조 ①재무대신은 예산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각성 각청에 대해 수지의 실적 혹은 불입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하고 예산의 집행상황에 대해서 현장감독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각의의 결정을 거쳐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필요한 지시를 행할 수 있다.

②재무대신은 예산의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자신 또는 각성 각청의 장에 위탁하여 공사의 청부계약자, 물품의 납입자,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자(보조금의 종국적인 수령자를 포함) 또는 조사, 시험, 연구 등의 위임을 받는 자에 대해서 그 상황을 감독하고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세출예산이월 수속 및 승인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46조의2 각성 각청의 장은 재정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월의 절차 및 동법 제43조의3에서 규정하는 익년도에 걸쳐 지출해야 할 채무의 부담(이하 ‘이월명허비(繰越明許費)에 관계하는 익년도에 걸친 채무의 부담’이라고 함)의 수속에 관한 사무를 당해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 또는 다른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에게 재무대신은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승인에 관한 사무를 재무성 소속의 직원에게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세입징수관등의 사무의 대리】**

**제46조의3** ①각성 각청의 장은 다음에서 들고 있는 자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이들이 제4조의2 제4항(제13조 제4항, 제13조의3 제3항,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의2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관직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 관직에 있는 자가 결한 때를 포함)에서 필요한 때는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 또는 다른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에게 그 사무를 대리시킬 수 있다.

1. 세입 징수관, 지출 부담행위 담당관 및 계약담당관 및 이들의 분임관
2. 지출 부담행위 인증관 및 지출관

②각성 각청의 장은 필요가 있는 때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 또는 다른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에게 전항 각호에서 들고 있는 자(동항의 규정에 의해 이들 자의 사무를 대리하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시킬 수 있다.

**【회계기관의 장부, 보고서 등의 제작 등의 의무】**

**제47조** ①재무대신, 세입징수관, 각성 각청의 장, 지출 부담행위 담당관, 지출 부담행위 인증관, 지출관, 출납관리 및 출납원 및 일본은행은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그와 동시에 보고서 및 계산서를 제작하여 이를 재무대신 또는 회계 검사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출납관리, 출납원 및 일본은행은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납한 세입금 또는 세출금에 대해서 세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도도부현지사 등에의 회계사무의 위임】

**제48조** ① 국가는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입, 세출, 세입세출 외 현금, 지출 부담행위, 지출 부담행위의 확인 또는 인증, 계약(지출 부담행위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이하 동일), 이월의 수속 및 이월명허비(繰越明許費)에 관계하는 익년도에 걸친 채무의 부담 수속에 관한 사항을 도도부현의 지사 또는 지사가 지정하는 계원이 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행하는 세입, 세출, 세입세출 외 현금, 지출 부담행위, 지출 부담행위의 확인 또는 인증, 계약, 이월의 소속 및 이월명허비(繰越明許費)에 관계하는 익년도에 걸친 채무의 부담 수속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기타 회계에 관한 법령 중 당해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행하는 것으로 된 사무는 지방자치법(소화22년법률제67호)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 사무로 한다.

### 【세출외의 국고금의 불출의 방법】

**제49조** 제15조의 규정은 각성 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이 세출금의 지출에 의하지 않는 국고금의 불출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행정수속에 있어서 정보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제49조의2**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의 규정에 따른 소속 기타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수속 등에서의 정보통신 기술 이용에 관한 법률(평성14년 법률 제151호)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서류등의 전자적 기록에 의한 작성】**

**제49조의3** ①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 등(서류, 계산서 기타 문자, 도형 등 사람이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종이 기타 유체물을 말한다. 다음 항 및 다음 조에 있어서도 동일)에 대해서는 당해 서류 등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해 정보 처리용으로 제공되어진 것으로 채무대신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항 및 다음 조 제1항에서도 동일.)의 작성으로 당해 서류 등의 작성에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전자적 기록은 당해 서류 등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서류 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의 기명날인에 대해서는 기명날인에 대신하여 씨명 또는 명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채무대신이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자적기록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

**제49조의4** ①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의 규정에 따라 서류 등의 제출에 대해서는, 당해 서류 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기타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채무대신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도 동일)으로 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서류 등의 제출이 전자적 방식에 의해 행해진 때는 당해 서류 등의 제출을 받아야 할 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갖추어진 파일로의 기록이 된 때에 당해 제출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50조** 이 법률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政令)에서 이를 정한다.